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金 裕 燦(啓明大 教授) 外

머 리 말

1961. 9. 9 도입된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5,5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세무환경은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2005년부터 법률서비스 및 세무·회계서비스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며, 전문자격사 업무의 토털서비스(Total Service)시대의 도래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화·정보화·개방화의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무사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세무사제도(1994년), 일본의 세리사제도(1995년), 독일세무사법(1996년), 오스트리아 세무사제도(2001년)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세무사제도 선진국인 독일의 세무사법령 개정분을 보완하였으며, 일본의 세리사관계법령 및 회칙 그리고 미국의 등록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세무사도 조세법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며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세무사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지향되어야 할 점이다.

이와 같이 각국의 세무사법령 및 세무사제도에 대한 연구자료는 향후 우리의 세무사제도 발전방향을 설계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강의와 연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김유찬 계명대학교수님과 본회 서광석 연구이사를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3年 3月
韓國租稅研究所
所 長
經營學博士

林 香 淳

目 次

獨逸 稅務士法令

第 1 部 稅務士法	11
第 2-1 部 稅務士法施行令	85
第 2-2 部 勤勞所得稅納稅組合法施行令	111

日本 稅理士法令

第 1 部 稅理士法	123
第 2 部 稅理士法施行令	179
第 3 部 稅理士法施行規則	195
第 4 部 日本稅理士會連合會會則	217

美國 - 辯護士，公認會計士，登錄代理人，登錄保險計理士 및 鑑定士의 IRS에서의 代理行爲에 관한 規程

섹션 -10.0 파트별 主要 內容	259
서브파트 A - 代理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에 관한 規定	259
서브파트 B - IRS에서의 代理行爲와 관련된 義務와 制限事項	274
서브파트 C - 徵戒節次에 관한 規定	290
서브파트 D - 鑑定士의 資格剝奪 規定	305
서브파트 E - 總則	314

目 次

독일 세무사법령

제 1 부 세무사법

제 1 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세무대리의 실행	12
제 1 절 적용범위	제1조 12
제 2 절 자격	제3조~제4조 13
제 3 절 금지와 금지명령	제5조~제7조 15
제 4 절 기타 규정	제8조~제12조 16
제 2 장 근로소득세납세조합	18
제 1 절 업무	제13조 18
제 2 절 인가	제14조~제20조 18
제 3 절 의무	제21조~제26조 20
제 4 절 감독	제27조~제30조 24
제 5 절 위임명령	제31조 25

제 2 편 세무사제도

제 1 장 총칙	제32조~제34조 26
제 2 장 업무수행 요건	27
제 1 절 인적 요건	제35조~제39a조 27
제 2 절 면허	제40조~제48조 32
제 3 절 세무법인	제49조~제55조 38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56조~제72조 41
제 4 장 직업조직	제73조~제88조 48
제 5 장 직업재판	57
제 1 절 의무위반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처벌	제89조~제94조 57

제 2 절 법원	제95조~104조	58
제 3 절 절차규정		61
1. 총칙	제105조~제111조	61
2. 제1심 절차	제112조~제125조	63
3. 상소	제126조~제131조	67
4. 증거의 보전	제132조~제133조	69
5. 직무수행 및 대리의 금지	제134조~제145조	69
제 4 절 절차비용, 처벌 및 비용의 집행과 말소	제146조~제152조	72
제 5 절 직업재판권에 대한 적용규정	제153조	74
제 6 절 경과규정	제154조~157조	75
제 7 절 위임명령	제158조	77

제 3 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

제 1 장 행위 및 불행위를 이유로 한 집행	제159조	79
제 2 장 질서위반	제160조~제164조	79

제 4 편 최종규정	제164a조~제168조	82
------------------	--------------------	----

제 2-1 부 세무사법시행령

제 1 편 세무사시험	제1조~제32조	86
제 2 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제34조~제38조	95
제 3 편 세무법인의 인가	제40조~제41조	97
제 4 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제42조~제44조	98
제 5 편 직업등록부	제45조~제50조	101
제 6 편 직업책임보험	제51조~제56조	105
제 7 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58조	109

제 2-2 부 근로소득세납세조합법시행령

제 1 편 근로소득납세조합의인가	제1조~제4조	112
제 2 편 사무소 및 사무소 소장	제4a조~제4b조	113
제 3 편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명칭	제5조~제8조	114
제 4 편 최종규정	제10조	116

獨逸 稅務士法令

제 1 부

세무사법(Steuerberatungsgesetz)

제	정	1961. 8. 16.
제 1차 개정		1975. 11. 4.
제 2차 개정		1976. 12. 14.
제 3차 개정		1980. 9. 18.
제 4차 개정		1989. 6. 9.
제 5차 개정		1990. 12. 13.
제 6차 개정		1992. 2. 25.
제 7차 개정		1992. 12. 21.
제 8차 개정		1993. 4. 27.
제 9차 개정		1993. 9. 27.
제10차 개정		2001. 12. 22.

제 1 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Vorschriftenüber die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제 1 장 세무대리의 실행

(Ausübung der Hilfe in Steuersachen)

제 1 절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제 1 조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 ① 본법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세무대리(Hilfeleistung)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방법과 유럽공동체법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약국법에 규정된 조세 및 환급금(Vergütung)에 관한 사무. 다만 연방재무관청 또는 주재무관청이 관할하는 것에 한한다.
 2. 물세 또는 부동산취득세에 관한 사무
 3. 주법 또는 주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조세에 관한 사무
 4. 전매물품에 관한 사무
 5. 기타 연방재무관청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사무.
다만 당해 사무에 관하여 연방법 또는 주법상 세무권리구제방법(Finanzrechtsweg)이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 ② 세무대리에는 다음 각호의 대리업무도 포함한다.
1. 조세형사사건 및 조세질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사건의 대리
 2. 과세에 있어 중요한 장부와 문서의 작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
 3. 조세환급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대리
- ③ 본법은 대리인과 보조자의 허가에 관한 개별적인 절차법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자격(Befugnis)

제 2 조 업무로서의 세무대리(Geschäftsmäßige Hilfeleistung)

업무로서 하는 세무대리는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主業·副業 또는 有償·無償의 업무이든 관계없이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 무제한 세무대리의 자격(Befugnis zu unbeschränkt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는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1. 세무사, 세무대리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niedergelassene europäische Rechtsanwälte), 공인회계사 및 선서 회계사(vereidigte Buchprüfer) [改正 2001. 12. 22]
2.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합명회사 [改正 2001. 12. 22]
3. 세무법인, 변호인법인, 공인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改正 2001. 12. 22]
4. 독일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한 나라에서 직업활동을 하면서, 그곳 거주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세무대리와 함께 유럽 공동체 조약 제50조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업명칭은 거주국가에서 당해 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식명칭만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갖춘 자는, 거주국가 내에 자신이 속해있는 직업단체 및 거주국가 명을 부기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세무대리 자격 범위는 거주국가에서 정한 자격 범위에 따른다. [改正 2001. 12. 22]

제 4 조 한정 세무대리의 자격(Befugnis zu beschränkt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는 업무로서 한정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1. 공증인(Notare). 다만 연방공증인법상 권한범위 내에 한한다.
2. 변리사(Patentanwälte) 및 변리사법인. 다만 변리사법상 권한범위 내에 한한다.
3. 관할권이 있는 관청 및 공공법인과 공공법인 및 영조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상급 감사기관(die überörtlichen Prüfungseinrichtung) 감사
4. 타인의 재산 또는 신탁목적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의 보관인 및 재산관리인. 다만 당해 재산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상업을 하는 기업가. 다만 그 기업가의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고객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협동조합의 감사조직과 중앙회 및 신탁기관. 다만 감사조직과 중앙회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회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것에 한한다.
7. 직역대표(Berufsvertretung)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사단. 다만 사단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연방추방법 제95조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직역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농림업에 관한 단체로서 정관 목적사업이 평가법(Bewertungsgesetz)에 규정된 농림업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는 단체. 다만 그 세무대리는 “농업장부관리소”(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자를 통하여 행하는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상 통상 발생하는 부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 노동행위 또는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a) 운송기업. 다만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수입세 사무 또는 소비세 처리에 관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b) 기타의 영업기업. 다만 그 기업이 통관업무와 관련된 수입세사무를 세무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사용자. 다만 사용자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사무를 세무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근로소득세납세조합(Lohnsteuerhilfvereine).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 한 세무대리활동에 있어서 소속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 a) 비독립 근로소득(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기타 반복되는 계속적 소득(소득세법 제22조 제1호) 또는 생계활동 소득(소득세법 제22조 제1a호)을 목표로 하는 경우
 - b) 농업 및 임업, 영업 또는 독립 근로에서 오는 소득을 목표로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래를 할 경우
 - c) 총 9,000 유로, 합산의 경우 18,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자격은 소득세와 가산세의 대리 업무에 한한다. 허용되는 한 조합은 1999년 투자 추가수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보유 주책과 투자에 의한 소득증가에 있어서의 세무대리 및 소득세법의 의미에서 가족 전체의 소득정산에 대한 세무대리를 할 권한이 있다. 실직하게 된 회원들은 계속해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12. 국내 금융기관, 자본법인, 자본법인에 의하여 임명된 신탁관재인 또는 영업협동조합 및 경제협동조합. 다만 자본수입의 채권자를 대리한 소득세법상의 자본소득세의 환급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공적으로 임명된 보험계리평가인(versicherungsmathematische Sachverständige). 다만 연금준비금, 보험기술준비금, 연금금고와 부조금고에의 납입금 산정과 직접 관련하여 그 위탁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호주택건설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1항의 의미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자
15. 호주법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 범위의 틀 안에서 파산법 제305조 1항 1호의 의미에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직무수행처

제 3 절 금지와 금지명령(Verbot und Untersagung)

제 5 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금지(Verbot der unbefugten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 ①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한 개인 또는 단체 이외의 자는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특히 조세사건에 있어서 업무로서 조언을 할 수 없다. 제4조에 규정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자격 내에서만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 ② 개인이나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무업무를 행하고 있다는 혐의 사실을 세무관청 또는 세무사협회가 인지한 경우에는 과태료절차를 개시할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6 조 무자격 세무대리금지의 예외(Ausnahmen vom Verbot der unbefugten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제5조의 세무대리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문적 근거에 의한 감정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일
2. 조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친족을 위한 무료의 세무대리
3. 과세에 중요한 장부 및 기록을 함에 있어서 기계적 과정을 실행하는 일. 이 경우 증거서류의 기장과 기장지도(Buchungsanweisung)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상적인 영업거래의 기장, 일상적인 임금계산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 다만 상업직업교육을 수료한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였거

16 독일 세무사법령

나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예비교육을 받은 후 최소 주당 16시간 이상 최소 3년간 회계활동 실무를 쌓은 자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제 7 조 세무대리의 금지명령(Untersagung d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경우에 세무대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종업원 자격으로서의 행위가 제5조의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
 3. 조세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세무관청에 의해 거부당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改正 2001. 12. 22〕
- ②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은 제4조 제7호에 규정한 단체가 그 목적에 합치되는 행위를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 주최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1항에 규정한 개인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 12. 22〕
- ③ 재무관청의 관할권은 금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되, 보조적으로는 주된 업무가 행하여진 지역에 의한다.

제 4 절 기타 규정(Sonstige Vorschriften)

제 8 조 광고선전(Werbung)

- ①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직무 또는 제3자의 직무를 언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②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서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한 계약 위탁을 꾀한 광고선전은 금지된다.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개인 및 법인은 세무대리에 적용되는 직업규정에 따라 세무대리권한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다.
- ④ 제6조 제4호에 규정한 자는 세무대리에 관한 자격을 언급할 수 있으며, 부기사(Buchhalter)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검증부기사(Geprüfter Bilanzbuchhalter)” 또는 “세무전문가(Steuerfachwirt/Steuerfachwirtin)”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한 자는 그 명칭으로 광고선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자는 제6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자신이 하는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9 조 환급금(Vergütung)

- ①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를 그 근거 또는 액수에 있어서 사안의 종결 또는 대리활동의 성공에 의존한다거나, 약정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의도하는 조세경감, 절세 또는 조세환급금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위탁 중개에 따른 수수료 또는 기타 이득의 일부를 주거나 받는 행위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 또는 종류를 불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의무위반 및 다른 정보에 대한 통지(Mitteilungen über Pflichtverletzungen und andere Informationen)

- ① 제3조 또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직무상 의무위반 혐의의 근거사실을 세무관청 또는 세무사협회가 인지하게 된 경우, 전달 기관의 견해에서 법률효과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법 제83조 및 조세법 제30조는 이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 ② 법원과 관청은 전달 기관의 견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자연인과 법인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심사허가, 심사면제, 선임 및 재선임, 선임 취소 또는 철회
 2. 세무법인 또는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 철회 또는 취소
 3. 의무위반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처벌절차 또는 징계절차 개시
 다만 이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의 이해관계가 관계자의 비밀유지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상의 이용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법 제83조 및 조세법 제30조는 이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 ③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3조에 따른 기타 자격권한을 가질 경우, 세무관청 및 세무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그리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주무관청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달 기관의 견해에서 법률효과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1 조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 수집 및 이용(Erhebung und Verwendung personenbezogener Daten)

본법에 따라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으며, 장차 소송절차 목적을 위해서도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본법 제83조 및 조세법 제30조는 이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2 조 외국조세법의 대행(Hilfeleistung im Abgabenrecht fremder Staaten)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개인 및 단체는 외국조세법에 관련되는 사무에 있어서 세무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규정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제3자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2 장 근로소득세납세조합(Lohnsteuerhilfvereine)

제 1 절 업무(Aufgaben)

제13조 목적 및 업무범위(Zweck und Tätigkeitsbereich)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그 소속 회원에 대한 세무대리를 위하여 근로자가 조직한 자조기관이다.

[改正 2001. 12. 22]

-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2 절 인가(Anerkennung)

제 14 조 인가의 요건과 업무의 개시(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Aufnahme der Tätigkeit)

- ①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정관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세납세조합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1. 그 업무가 오로지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그 소속회원

- 에 대한 세무대리만을 할 것 [改正 2001. 12. 22]
2. 단체의 주소와 업무관리가 동일한 상급 재무국의 관할구역에 속할 것
 3. 단체의 명칭이 광고에 해당하는 아무런 구성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보장되어 있을 것 [改正 2001. 12. 22]
 5.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세무대리에 있어서 회원의 회비 이외에 특별한 보수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 [改正 2001. 12. 22]
 6. 민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
 7. 단체가 이사회 회원 또는 그 회원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원 총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을 것 [改正 2001. 12. 22]
 8. 감사결과와 중요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한 후(제22조 제7항 제2호) 3개월 이내에 회원총회를 개최하며, 회원총회에서는 특히 업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감사 대상연도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의 면책을 토의할 수 있을 것 [改正 2001. 12. 22]

회원총회에 갈음하여 회원의 이익이 충분하게 확보가 보장되는 경우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는 회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세무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위험(제25조 제2항)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인가를 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제 15 조 인가관청과 정관(Anerkennungsbehörde, Satzung)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 세무청이 관할한다.
-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신청에는 정관의 인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정관 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 세무청에 정관 변경의 결의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인가수수료(Gebühren für die Anerkennung)

단체가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00 유로의 수수료를 주 세무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20 독일 세무사법령

제 17 조 인가증서(Urkunde)

주 세무청은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을 인가함에 있어서 인가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명칭사용(Bezeichnung "Lohnsteuerhilfverein")

조합은 그 명칭에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인가의 실효(Erlöschen der Anerkennung)

- ① 인가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조합의 해산(Auflösung)
 2. 인가의 포기(Verzicht)
 3. 권리능력의 상실(Verlust)
- ② 인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 세무청에 서면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Rücknahme und Widerruf der Anerkennung)

- ① 주 세무청은 인가 후 인가거부사유가 명백한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주 세무청은 다음의 경우에 인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1. 조합이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요건을 사후에 상실한 경우. 다만 주 세무청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업무집행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정관의 요건과 사실상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세무대리 업무의 수행 또는 합법적인 업무집행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改正 2001. 12. 22]
- ③ 인가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하기 전에 그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 절 의무(Pflichten)

제21조 기록의무(Aufzeichnungspflicht)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속하여 동시에 완전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지체없이 독일어로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각 회원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은 협회의 재산과는 구별하여 보관하고,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업무개시와 매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당해 시점에서 조사한 재고를 기초로 그 자산가치와 부채를 기록하고 재산목록표(Vermögenübersicht)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증거문서 및 그 외의 서류는 질서정연하게 수집하고,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기록 및 재산목록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증거문서, 기타의 서류, 기록 및 재산목록표의 보관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증거문서 및 기타의 서류의 보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기록의무 및 장부작성의무에 관한 다른 법률의 각 규정은 이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2 조 업무감사(Geschäftsprüfung)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기장 및 재산목록표(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완전성 및 정확성과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정관에 정하여진 업무와 실제의 업무집행과의 일치여부에 관하여 매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1인 또는 2인 이상의 업무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업무감사인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제한 세무대리의 자격이 있는 개인과 법인
 - 2. 소속회원의 정규감사 또는 임시감사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감사조직으로서, 적어도 그 협회의 법정대리인(gesetzlicher Vertreter) 1인이 세무사, 세무대리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선서회계사인 감사조직 [改正 2001. 12. 22]
- ③ 감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자, 특히 감사대상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이사회 구성원, 특별대리인 또는 근로자인 자는 업무감사인이 될 수 없다.
- ④ 업무감사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록 및 협회의 서신교환의 열람을 보장하고, 현금시제 및 기타 자산가치의 재고조사를 허락하여야 한다. 업무감사인이 세밀한 감사실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석명과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⑤ 업무감사인은 성실하고 편견없는 감사 및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업무감사인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무단히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신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를 해태한 업무감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22 독일 세무사법령

(Gesamtschuld)을 진다.

- ⑥ 업무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이사회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감사보고서의 수령 후 1개월 이내, 늦어도 사업년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관할 주 세무청에 보고서 등본을 송부하는 일
 - 2. 감사보고서의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의 중요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일

제 23 조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세무대리의 업무수행과 사무소(Ausübung d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im Rahmen der Befugnis nach §4 Nr. 11, Beratungsstellen) (改正 2001. 12. 22)

- ①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세무대리는 사무소에 소속된 자만이 할 수 있다. 각 사무소마다 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장은 동시에 다른 하나의 사무소 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그 주소를 둔 주 세무청의 관할구역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사무소 소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1.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 범위에 해당하는 자 [改正 2001. 12. 22]
 - 2. 상업직업교육기관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그와 동등한 예비교육을 받은 후, 연방재무관청 또는 주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영역에서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3년간 본직으로 종사한 자 [改正 2001. 12. 22]
 - 3.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분야에서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3년간 사무원 자격으로 본직에 종사한 자. 최소 3년의 업무활동에 교육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1. 12. 22]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자는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④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은 사무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주 세무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소의 개설과 폐쇄
 - 2. 사무소 소장의 임면과 해임
 - 3.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범위 내에서 조합의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改正 2001. 12. 22]

- ⑤ 사무소 소장의 임명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3항의 요건이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사무소는 관할 감독관청(제27조 제2항)의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등록부에 사무소와 소장을 등록한 때로부터 그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 24 조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미결 세무의 처리
(Abwicklung der schwebenden Steuersachen im Rahmen der Befugnis nach §4 Nr. 11) (改正 2001. 12. 22)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가 실효, 취소 또는 철회된 때에는 주 세무청은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의 미결 세무의 처리를 위한 수탁자의 임명을 허가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수탁자는 제23조 제3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제1항의 허가는 최장 6개월간으로 할 수 있다. 허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이 경우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5 조 책임면제와 책임보험(Haftungsausschluss, Haftpflichtversicherung)

- ① 조합은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소속 회원에 대한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조합의 기관과 고용인의 과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② 조합은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책임위험에 대하여 적당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법 제 158c조 제2항에 규정한 관할관청은 주 세무청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제68조는 이를 준용한다.

제 26 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일반의무(Allgemeine Pflichten der Lohnsteuervereinigungen)

- ①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성실하며, 비밀을 엄수하되, 광고선전(Werbung, 제8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1. 12. 22]
- ②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와 함께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1. 12. 22]
- ③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자는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에 관한 서류원본은 회원의 근로소득세 사무에 대한 조합의 업무종료 후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제 4 절 감독(Aufsicht)

제 27 조 감독관청(Aufsichtsbehörde)

- ① 주 세무청(감독관청)은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을 감독한다.
- ② 상급 재무국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무소도 주 세무청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주소를 관할하는 주 세무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이 본법의 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감독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감독관청에의 출두의무와 감독관청의 권한(Pflicht zum Erscheinen vor der Aufsichtsbehörde, Befugnisse der Aufsichtsbehörde)

- ①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이사회 구성원과 제4조 제11호에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조합의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요구가 있을 때에 감독관청에 출두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록 원본과 업무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주 세무청으로부터 감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감독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또는 업무시간 내에 근로소득세납세조합과 제1항에 제기한 자의 사무소에 출입할 권한을 가진다.
- ③ 감독관청은 사무소에 소장이 없거나 소장으로 임명된 자가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26조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가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 29 조 감독관청의 회원총회 참가(Teilnahme der Aufsichtsbehörde an Mitgliederversammlungen)

- ① 회원총회의 개최는 늦어도 2주 전에 해당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청은 회원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30 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등록부(Verzeichnis der Lohnsteuerhilfvereine)

- ① 주 세무청은 다음의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1. 상급 재무구역 내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세납세조합
 - 2. 주 세무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무소
- ② 위의 등록부는 합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5 절 위임명령(Verordnungsermächtigung)

제 31 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관한 시행규칙(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en Vorschriften über die Lohnsteuerhilfvereine)

- ① 연방재무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1.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절차
 -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비치, 작성 및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등록에 필요한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제반 신고의무
 - 3. 사무소의 개설과 폐쇄 및 사무소 소장의 임명절차
 - 4. 사무소 소장의 임명에 필요한 진술 및 보고
- ② 주 정부는 제1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주 세무청에 할당된 업무를,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2 편

세무사제도(Steuerberaterordnung)

제 1 장 총칙(Allgemeine Vorschriften)

제 32 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①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업무위탁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자유업으로서 그 직무를 행한다. 그 업무는 영업(Gewerbe)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법인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세무사의 책임으로 그 법인을 운영한다는 뜻의 증명을 요한다.

제 33 조 업무내용(Inhalt der Tätigkeit)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세무사무를 상담하고(beraten) 위임인을 대리하며(vertreten) 세무사무의 처리 및 세법상의 의무이행에 조력하여야 한다. 조세형사사건 및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사건에 대한 대리 및 세법상 기장의무의 이행(Erfüllung von Buchführungspflichten), 특히 세무대차대조표의 작성과 그에 대한 세법상의 판단에 관한 조력도 그 업무에 속한다. [改正 2001. 12. 22]

제 34 조 주된 사무소와 그 외의 사무소(Berufliche Niederlassung, weitere Beratungsstellen)

- ① 주된 사무소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가 그 업무를 주로 집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58조에 의하여 고용된 세무사와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자의 정규직 근무지를, 다수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고용된 근무지를 말한다. 주된 사무소는 고용한지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직업상의 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장으로는 각기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내에 있거나 또는 다른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체결국 내에 소재할 경우, 본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된 사무소의 담당 세무사협회는 신청에 따라 본항 제2문으로부터의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가 다른 협회지구에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조항을 인가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 외의 해당 사무소를 담당하는 세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에만 예외조항의 인가가 허용된다. [改正 2001. 12. 22]

제 2 장 업무수행 요건(Voraussetzungen für die Berufsausübung)

제 1 절 인적 요건(Persönliche Voraussetzungen)

제 35 조 시험허가, 시험, 시험면제 및 재시험(Zulassung zur Prüfung, Prüfung, Befreiung von der Prüfung, Wiederholung der Prüfung)

-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그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세무사로 임명될 수 있다.
- ②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 ③ 시험 결과는 지원자에게 통보된다.
- ④ 시험은 2회 응시할 수 있다.
- ⑤ 시험허가, 시험 및 시험면제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의 재량이다.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는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36 조 응시요건(Voraussetzungen für die Zulassung zur Prüfung)

- ① 세무사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자 또는 대학의 타 학부에서 경제학

을 최소 8학기 이상 정규 이수한 후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2년간 종사한 자

2. 전문대학에서 경제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자 또는 대학의 타 학부에서 경제학을 최소 8학기 이하 정규 이수한 후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3년간 종사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직업상인 양성교육기관의 졸업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10년간 직업교육을 마치거나, 또는 검증부기사나 세무전문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세무실무영역에서 본직으로 7년간 종사한 자
2. 세무행정기관에 상급직 공무원 또는 그와 비슷한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으며, 최소 7년간 담당자로 종사했거나 적어도 그와 동등한 자리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실무란 연방 또는 주 세무관청이 관장하는 세무영역에서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을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제기한 제반요건들을 충족시킨 것에 대한 증빙서류들은 제158조 제1호 a에 서술된 공문서식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응시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37 조 세무사시험(Steuerberaterprüfung)

①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세무사의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3과목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改正 2001. 12. 22]

③ 세무사시험의 응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조세절차법(Steuerliches Verfahrensrecht)
2. 소득세 및 소득세(Steuern vom Einkommen und Ertrag)
3. 평가법, 상속세 및 토지세(Bewertungsrecht, Erbschaftsteuer und Grundsteuer) [改正 2001. 12. 22]
4. 소비세와 유통세, 관세법 개론(Verbrauchund Verkehrsteuern, Grundzüge des Zollrechts) [改正 2001. 12. 22]
5. 상법, 민법개론, 회사법개론, 파산법개론 및 유럽공동체법개론(Handelsrecht sowie Grundzüge des Bürgerlichen Rechts, des Gesellschaftsrechts, des Insolvenzrechts und des Recht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改正 2001. 12. 22]

6. 경영학 및 회계제도(Betriebswirtschaft und Rechnungswesen)

7. 국민경제(Volkswirtschaft)

8. 직업법(Berufsrecht)

전체 분야가 시험대상일 필요는 없다. [改正 2001. 12. 22]

제 37a 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험(Prüfung in Sonderfällen)

- ① 공인회계사와 선서회계사 및 공인회계사시험과 선서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신청에 의해 약식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약식시험에서는 제37조의 제3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험과목을 생략한다. 시험은 2과목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 ②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의 하나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체결국(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국적을 지니고 있고, 독일 외의 다른 회원국 또는 체약국에서 독립 세무대리면허를 지니고 있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최소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졸업한 학위 인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정한 1988년 12월 21일의 유럽경제공동체조약(Nr. 89/48/EWG) 제1조 g와 유럽공동체 준칙(AB1. EG 1989 Nr. L 19 S. 16) 제4조 제1항 b에서 정한 적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다.
- ③ 다른 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관할 관청이 발급한 모든 자격증명서는 제2항에서 제기한 대학학위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응시자가 최소 3년간 대학교육과정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Nr. 89/48/EWG) 제1조 a에서 정한 동등한 자격의 직업교육을 수료한 경우 및 응시자가 다른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있음을 그 해당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세무사라는 직업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다른 회원국 또는 체약국 출신의 응시자는 최소 3년간 그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받은후 유럽경제공동체조약(Nr. 89/48/EWG) 제3조 b에 따라 2년간의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서 제기한 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세무사로서의 직업을 독일 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적성검사에는 직업수행상 필요한, 제37조 제3항에서 제기한 과목의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성검사는 여러 가지 시험과목들 중 최대 2과목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행한다. 응시자가 국립대학, 국가가 인정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증명서로써 제37조 제3항에서 제기한 과목들 중에서 면제를 받고 싶어하는 과목이 요구하는 지식의 주요 부분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⑤ 약식시험과 적성검사에 대한 기타 규정은 세무사시험규정을 적용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37b조 시험의 관할(Zuständigkeit für die Prüfung)

- ① 시험은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이 구성한 시험위원회가 관할한다. 필요에 따라 다수의 시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시험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응시자가 주된 직업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관할하거나, 응시자가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에서 관할한다. 다수의 주소가 있는 때에는 응시자가 주로 체류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장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응시자가 독일 국내에 개설하려고 하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에서 시험을 관할한다. 응시자가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개설하려고 할 경우라면, 응시자가 응시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이 시험을 관할한다.
- ④ 약정을 통해 시험 감독을 다른 주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최고관청에 위임할 수도 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관할권은 시험의 허가와 시험의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37c (삭제 2001. 12. 22)

제 37d (삭제 2001. 12. 22)

제 38 조 시험면제 요건(Voraussetzungen für die Befreiung von der Prüfung)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시험을 면제한다.
 1. 독일대학에서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강의를 담당하였던 교수 [改正 2001. 12. 22]
 2.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전직 조세사건 담당 판사
 3. 전직 고위공무원 및 이에 버금가는 사무원 [改正 2001. 12. 22]
 - a)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 b) 연방 및 주의 입법기관, 재정 재판소, 최고 관청 및 회계감사원에서 최소 10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

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改正 2001. 12. 22]

4. 전직 고위공무원 및 이에 버금가는 공직 종사자 [改正 2001. 12. 22]

a) 적어도 15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b) 연방 및 주의 입법기관, 재정 재판권을 가진 재판소, 최고 관청 및 회계감사원에서 최소 15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분야를 담당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자리에서 활동한 자.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改正 2001. 12. 22]

②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은 시험면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 및 공무원 교육과정인 국가행정교육전문학교의 교수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또는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제 38a 조 구속력 있는 회답(Verbindliche Auskunft)

- ①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은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 응시 허가 또는 시험면제에 필요한 각 요건들의 충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회답을 준다.
- ② 장소적 관할(örtliche Zuständigkeit)에 있어서는 제37b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9 조 시험허가, 시험 및 구속력이 있는 회답의 수수료(Gebühren für Zulassung, Prüfung, Befreiung und verbindliche Auskunft)

- ① 응시자가 시험허가신청 또는 시험면제신청에 대한 결정과 시험허가 또는 시험면제의 각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회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에 75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응시자는 시험에 대하여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이 지정한 기일까지 500유로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응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는 시험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응시자가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이 지정한 기일까지 수험을 포기할 경우에는 응시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응시자가 최종 필기시험 종료 전까지 포기할 경우에는 응시료의 반액을 반환한다.

[改正 2001. 12. 22]

제 39a 조 결정의 철회(Rücknahme von Entscheidungen)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 행위를 담당하는 세무행정 관할 주 최고관청에 의해 응시허가, 시험결정 또는 시험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에 의한 사기, 협박 또는 뇌물수수와 같은 불온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2. 취득자가 본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기재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改正 2001. 12. 22]
 3. 그 위법성을 취득자가 알고 있거나 개략적 과실의 결과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 [改正 2001. 12. 22]

제1문에 규정한 철회근거가 응시허가에만 관계된다고 한다면, 시험결정 역시 취소되어야만 한다. 철회 후에는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라 세무사 시험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협회는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미에서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관은 처리 결과에 대해 면허 또는 철회를 관할하는 세무사협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법 제83조 및 조세기본법 제30조는 이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면허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실들이 통보된다면, 제2문에 따라 통지가 될 때까지 절차는 정지된다. [改正 2001. 12. 22]
- ③ 철회를 하기 전에는 당해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2 절 면허(Bestellung)

제 40 조 면허담당 세무사협회와 면허절차(Bestellende Steuerberaterkammer, Bestellungsverfahren)

-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이 면제된 응시자에게 관할 세무사협회는 신청에 의해 세무사의 면허를 교부한다. 면허담당 세무사협회의 지역적 관할권은 응시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응시자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거나 면제받은 지역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 최고관청이 소재하는 지구의 세무사협회가 면허를 관할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면허를 수여하기 전에 세무사협회는 응시자가 인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1.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 [改正 2001. 12. 22]
 2.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공직 복무자질을 상실한 경우 [改正 2001. 12. 22]
 3.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또는 중독으로 인하여 세무사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改正 2001. 12. 22]
 4. 행동거지가 세무사로서의 직업의무를 준수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경우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면허는 거부될 수 있다.
1.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이 제39a조 제1항에 의거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2. 응시자가 그 직업에 상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경우(제57조 제4항)
 3. 직업책임보험의 청약에 관하여 잠정적인 배상약속(Deckungszusage) 또는 고용주의 공동보험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④ 제2항 제3호의 거절이유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사협회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협회가 선임한 의사의 건강 감정서(鑑定書)를 받아서 제출할 것을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한다. 의사의 감정은 반드시 응시자에 대한 검진에 근거해야 하며, 국공립병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응시자에 대한 임상 관찰도 거쳐야 한다. 감정에 드는 비용은 응시자가 물어야 한다. 충분한 이유 없이 응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사협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면허를 거부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응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면허의 거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⑥ 응시자가 면허신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50유로의 수수료를 관할 세무사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수수료규정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0a 조 (삭제 2001. 12. 22)

제 41 조 세무사의 면허증서(Berufsurkunde)

- ① 응시자는 세무사의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때로부터 세무사의 면허를 취득한다.
- ② 세무사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관할 세무사협회에 세무사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뜻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세무대리사(Steuerbevollmächtigter)

세무대리사는 본법에 의거하여 세무대리사 면허를 받은 자이다. 세무대리사 면허에 관한 법령은 세무사 면허법령을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제 43 조 직업명칭(Berufsbezeichnung)

- ① 직업명칭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라고 한다. 여성은 여성세무사 또는 여성세무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업 세무사는 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상기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의 직업명칭은 그 명칭이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직업상의 거래에는 그 밖의 부가적인 명칭 및 전 관직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위 또는 국가가 수여한 칭호를 표시하는 부가적인 명칭의 사용은 허용된다.
- ④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명칭은 본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대리업무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밖의 명칭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문의 규정은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1. 12. 22]

제 44 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 ① 평가법상 농림업에 대한 세무대리영역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세무대리사, 변호사 및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는 신청에 의하여 직업명칭 외에 추가로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내에 있는 세무사협회에서 이 자격을 부여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제1항 제1문의 의미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은 세무사협회 내에 조직하는 전문지식위원회가 실시하는 구술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통해 특별한 전문지식을 인정받고 최소 3년간 장부를 작성하는 농림업 세무대리를 한 자는 신청에 의하여 구술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면제의 신청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사협회가 농업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 또는 이에 의해 지정된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변호사 또는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일 때에는,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법인은 적어도 1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가진 경우, 그 법인의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본법 제4조 제8호에 정한 조합은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조합의 명칭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농업장부관리소를 유지하고 있는 공법상 법인(제4조 제3호) 및 제4조 제7호에 규정한 사단(社團)은 장부관리소의 장이 그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장부관리소에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⑥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사용자격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면허 철회 또는 취소의 실효와 함께, 혹은 변호사 또는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로서의 면허 허가의 실효 또는 철회와 함께 소멸한다.
- ⑦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사용자격은 직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농업장부관리소”라는 명칭의 부여신청 처리에 대하여는 150유로의 수수료를 관할 세무사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제 45 조 면허의 실효(Erlöschen der Bestell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면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실효한다.
 - 1. 사망(Tod)
 - 2. 관할 세무사협회에 대한 포기(Verzicht)
 - 3. 확정적인 자격박탈(rechtskräftige Ausschließung aus dem Beruf)
[改正 2001. 12. 22]
 - 4. 제39a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험에 의한 결정 또는 시험 면제에 대한 결정의 확정적인 철회 [改正 2001. 12. 22]
제2호에 제기한 포기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에 대한 지역적 관할권이 있는 세무사협회에 조서(Protokoll) 또는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직업재판과정에서 직업소송에 대한 포기선언은 관할 세무사협회에 포기의사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그 외에 세무대리사로서의 면허는 세무사로서의 면허를 받으면 실효한다.

제 46 조 면허의 취소 및 철회(Rücknahme und Widerruf der Bestell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고의에 의한 사기, 협박이나 뇌물수수를 통하여 또는 본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기재를 통하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철회할 수 있다.

1. 영리를 위한 활동 또는 그 직업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改正 2001. 12. 22]
2.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공직 복무자질을 상실한 경우
3. 그 직무수행으로부터 발생할 책임위험에 대하여 지정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파산한 경우. 다만 파산으로 인하여 위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파산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명부(파산법 제2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15조)에 등재된 경우에는 파산으로 추정한다.
5. 송달대리인이 국내 주소지를 명기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를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 송달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모든 인적 사항 또는 주소 변경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지금까지 속해있던 세무사협회의 소속원으로 남는다. [改正 2001. 12. 22]
6. 면허 후 6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改正 2001. 12. 22]
7.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또는 중독으로 인하여 그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改正 2001. 12. 22]

③ 제2항 제7호에 의거한 면허의 철회로 인해 행해지는 절차에 있어서는 제40조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다. 충분한 이유 없이 관할 세무사협회가 지정한 기한내에 감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감정을 통해 규명되어질 제2항 제7호의 근거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그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추정이 나오게 된다. [改正 2001. 12. 22]

④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로서의 면허는 세무사협회를 통해 취소되거나 또는 철회되어진다. 지역적 관할권은 주된 사무소에 따르고, 제2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하여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장소에 따른다. 제40조 제1항 제3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외국에 소재하는 주된 사무소에 있어서 지역적 관할권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소재 하였던 최후의 주된 사무소에 따른다. 최후의 주된 사무소가 존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면허를 발부한 그 지역 내의 세무사협회에서 지역적 관할권을 지닌다. 면허의 취소 또는 철회 전에 당해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47 조 직업명칭의 사용자격 상실(Erlöschen der Befugnis zur führung der Berufsbezeichnung)

- ① 면허의 실효, 취소 또는 철회에 의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라는 직업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의 자격을 표시하는 부가적인 명칭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관할 세무사협회는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면허의 권리를 포기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신청에 의하여 계속해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릴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③ 관할 세무사협회는 제2항에 의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면허의 실효,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사후에 알았거나 그 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 허가의 취소와 철회 전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8 조 재면허(Wiederbestellung)

- ① 전직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실효된 경우. 직업재판절차(제114조)를 개시한 후 면허를 포기하게 되는 때에는, 8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격박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실효의 경우에 확정적인 자격박탈이 사면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확정적인 자격박탈 후 최소 8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 또는 철회되고, 취소 또는 철회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4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면허에 준용한다.
- ③ 재면허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자는 125유로의 수수료를 관할 세무사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수수료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제 3 절 세무법인(Steuerberatungsgesellschaft)

제 49 조 법인의 법형식, 허가 세무사협회 및 정관(Rechtsform der Gesellschaft, anerkennende Steuerberaterkammer, Gesellschaftsvertrag)

- ①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법인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당해 법인이 그 신탁업무로 인하여 상사회사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한 경우에 세무법인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세무법인으로서의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소재지 내에 있는 세무사협회가 관할한다. 세무법인으로서의 인가신청서에는 법인계약이나 정관의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법인계약이나 정관 또는 주주나 대표자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경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는 각 인가서의 인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상업등기부 또는 합명회사 등기부에 등기된 때에는, 등기부의 인증등본 또는 공증을 추후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50 조 인가요건(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 ①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세무사인 경우에만 세무법인의 인가를 할 수 있다. 세무사, 이사회의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소 1인의 주된 사무소가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 ② 세무사 외에도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서회계사 및 세무대리사도 세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③ 관할 세무사협회는 세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한 능력이 있는 자가 세무사와 같이 세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취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인적 신뢰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수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세무사,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세무사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는 기명식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법인의 승인이 없으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 유한회사의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도 제 2문과 같다.
- ⑥ 직업책임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잠정적인 배상약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할 수 없다.

제 50a 조 자본요건(Kapitalbindung)

- ①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경우에만 세무법인의 인가를 할 수 있다.
 1. 세무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및 세무대리사, 제50조 제3항이 제기한 이사회의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직무를 인가 받고 활동하는 자 또는 세무법인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2. 제3자의 계산으로 세무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물적회사인 경우에는 지분이 제1호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것
 4.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출자를 제1호에 제기한 자가 인수하였을 것
 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의 주주,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의결권의 다수가 세무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귀속하고 있을 것 [改正 2001. 12. 22]
 6. 법인계약에 세무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및 세무대리사인 자만이 법인의 권리행사대리권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것 [改正 2001. 12. 22]
-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가 그 목적이 오로지 세무법인의 지분의 보유에 있는 민법상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그 자의 세무법인의 지분은 그 자의 민법상 조합의 지분에 비례한다. 재단 또는 등기된 사단이 오로지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는 자의 노령자 관리 및 그 유족에 대한 원조를 하고 그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 제1호의 직에 속하는 자로 본다.

제 51 조 인가수수료(Gebühren für die Anerkennung)

- ① 법인은 세무법인의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관할 세무사협회에 500 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수수료규

정과 다르게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법인은 제50조 제3항에 의한 예외적 인가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관할 세무사협회에 150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 제2항에 의거한 수수료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1. 12. 22]

제 52 조 인가증서(Urkunde)

세무법인을 인가하는 경우 관할 세무법인은 인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 세무법인의 명칭사용(Bezeichnung "Steuerberatungsgesellschaft")

법인은 그 상호에 "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4년 7월 25일자 합명회사법(BGBI. I S. 1744)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직업들의 명칭을 부가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54 조 인가의 실효(Erlöschen der Anerkennung)

- ① 인가는 다음의 경우에 실효한다.

1. 법인의 해산
2. 인가의 포기

- ② 인가의 포기는 관할 세무사협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적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미결 세무들을 합법적으로 청산함에 있어서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사협회는 한 명 또는 다수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이 경우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 55 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Rücknahme und Widerruf der Anerkennung)

- ① 관할 세무사협회는 인가를 거부하였어야 할 사정이 인가 후 밝혀진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사협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 그 인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1. 법인이 본법에 따라 규정된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2. 법인의 인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에 추후 누락이 생겼을 경우

다만 법인이 관할 세무사협회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에 적합한 상태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으로 인하여 제50a조에 열거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위 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 ③ 취소 또는 철회 전에 그 세무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취소 또는 철회가 법인에 이사회,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이유로 발생할 경우, 그 취소 또는 철회의 결정에 대해 모든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⑤ 이 경우 제54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Rechte und Pflichten)

제 56 조 기타 직업조합의 결성(Weitere berufliche Zusammenschlüsse)

-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공동 업무활동을 위해 직업상 고유 자격범위 내에서 다른 세무사, 세무대리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변호사협회의 소속 회원 및 변리사협회의 소속 회원과 함께 지역적(örtlich) 조합 및 초 지역적(überörtlich)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공증인인 동시에 변호사의 경우는 단지 변호업무에 한하여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 외 공증인인 동시에 변호사와의 조합결성은 공증인 직업법의 규정 및 요구에 따른다. 조합에는 적어도 조합 소속회원이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사무실 또는 다수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회원들에게 있어서 사무실은 그 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공동 업무활동을 위해 직업상 고유 자격범위 내에서 다른 세무사, 세무대리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변호사협회의 소속 위원 및 변리사협회 소속 회원과 합명회사를 결성할 수 있다. 이때의 합명회사는 세무법인으로 인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53조 제2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 제2문 내지 제4문을 이에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른 세무사, 세무대리사, 공인회계사, 선서회계사, 변호사협회의 소속 위원 및 제3조 제2호와 제3호에 제기한 협회와 사무연맹(Bürogemeinschaft)을 맺을 수 있다.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을 이에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주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와의 결성이 허용된다. 다만 이들이 교육과 자격에 있어서 제3조 제1호에 제기한 직업들에 버금가는 하나의 직업 활동을 외국에서 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에 필요한 요건들이 본질적으로 본법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경우라야 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과 법인관계에 있어서의 변경은 관할 세무사협회의 직업규정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직업활동에 대한 계약 및 그 변경을 제시해야 한다.

제 57 조 직업상의 일반적인 의무(Allgemeine Berufspflichten)

-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unabhängig) 자기의 책임하에(eigenverantwortlich) 성실히 임하고 (gewissenhaft), 비밀을 엄수하며(verschwiegen), 직업의 품위에 반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의 직업 또는 직업의 품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직무수행 이외에 있어서도 그 직업이 요구하는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활동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과 특히 일치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또는 선서회계사
 2. 상담을 포함하여 타인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직업활동(frei-berufliche Tätigkeit)
 3. 경영자문, 감정 또는 수탁 및 재산목록과 손익계산서의 법규정 준수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
 4. 전문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다만, 국가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인 전문학교의 교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 12. 22]
 5. 자유저작 및 자유로운 강연과 교육
 6.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와 선서회계사 시험에 대한 준비 및 세무사협회 소속 회원과 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행사 및 강연행사의 개최
[改正 2001. 12. 22]
- ④ 특히 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활동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직업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1. 영업행위(gewerbliche Tätigkeit)
 2. 제3항 제4호 및 제58조와 제59조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Tätigkeit als Arbeitnehmer)

제 57a 조 광고선전(Werbung)

광고선전은 형식 및 내용상 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개별 사안에

있어서 계약위탁을 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제 58 조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Tätigkeit als Angestellter)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밖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감사조직 및 협동조합의 신탁기관 또는 공법상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초 지역 감사기구의 책임자 또는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2.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장부관리소 또는 사무소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
3. 장부관리소, 각각의 장부관리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1인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장부관리소 또는 사무소의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4. 다음 각호에 열거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사단의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 a) 모든 구성원이 오로지 제3조가 정한 개인 및 법인인 경우
 - b) 주요 목적이 오로지 그 구성원이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경영에 있는 경우
5. 세무사협회의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제73조 및 제85조)
6.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들의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단, 이 법인들이 제56조 제4항에 제기한 법인에 버금가고, 직업활동에 필요한 요건들이 본질적으로 본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경우라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협회의 사원의 경우에는, 단지 그 이사회의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무한책임사원, 소속 회원 또는 그 밖의 주주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교육과 자격에 있어서 제3조 제1호에 제기한 직업들에 버금가는 하나의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그 직업활동에 필요한 요건들이 본질적으로 본법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협회인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된다.
7. 유럽 경제 이익단체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다만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및 모든 소속 회원들이 유럽의 세무상담, 회계감사 또는 법률상담 활동을 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59 조 공법상 고용관계 또는 공직관계 속에서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i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oder Amtsverhältnis)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선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선출되

어 공법상의 고용관계 또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수입사무를 명예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문의 경우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직업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준수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할 세무사협회는 신청에 의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스스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60 조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

-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만이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독립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 세무사, 세무대리사 또는 세무법인의 서명권한이 있는 대표자
 3. 제58조에 따라 서명권을 갖고 세무대리를 하는 사원
- ② 서명권이 있는 대표자 또는 사원으로서 그 의무에 따른 행위(제57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자기 책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 61 조 세무행정에 종사하였던 자(Ehemalige Angehörige der Finanzverwaltung)

세무행정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및 사원은 공직으로 부터 퇴직한 후 3년간은 퇴직 직전 3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세무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제 62 조 보조자의 비밀엄수의무(Verschwiegenheitspflicht der Gehilfen)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가 아닌 그 보조자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 63 조 수입거부통지(Mitteilung der Ablehnung eines Auftrags)

직업상 시간의 부족으로 위임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즉시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표시를 지체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4 조 수수료규정(Gebührenordnung)

-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공포한 수수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연합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수료금액은 적당한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시간의 소비
 2. 목적물의 가격
 3. 업무의 종류
- ② 수수료를 취득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위임받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와 마찬가지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수수료 청구의 양도 또는 수수료 징수의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청구가 확정적이고 첫 번째 집행시도가 아무런 소득 없는 결과를 빚었으며 세무사가 위임자의 명확한 서류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5 조 소송대리의 인수 의무(Pflicht zur Übernahme einer Prozessvertretung)

세무사는 조세법원에서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조세법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잠정적이고 무보수로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지위를 인수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이에 대하여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6 조 문서원본(Handakten)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위임 종료 후 7년간 관련문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무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위임인에게 문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고 위임인이 6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 전에도 소멸한다.
- ② 본조에 말하는 문서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임인으로부터 또는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와 그 위임인간의 서신의 교환 및 위임인이 이미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보존하고 있는 문서 및 내부목적으로 작성된 업무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업무서류의 보존의무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수수료와 경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위임인에게 원본의 양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본 또는 개별적인 문서의 불법 압류가 경우에 따라, 특히 극히 미미한 변제금액 때문에 신뢰를 깨뜨리게 될지도 모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7 조 직업책임보험(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독립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그 직무수행상 생기는 책임보험에 대하여 적당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법 제158c조 제2항이 규정하는 관할관청은 세무사협회로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67a 조 손해배상청구권의 계약상 한도(Vertragliche Begrenzung von Ersatzansprüchen)

- ① 위임인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관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처럼,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배상청구권은 제한될 수 있다.
 1. 개별 사안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하한선까지로 문서 약정을 한 경우
 2. 보험을 통한 보호가 성립하는 한에서, 최저보험금액의 수배에 이르는 액수를 미리 계약조건으로 작성한 경우
- ② 손해배상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미리 작성한 계약조건을 통해 업무상 고유 자격 범위 내에서 위임을 처리하고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협회 회원에 한정된다. 그러한 제한에 대한 동의서에는 다른 설명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위임인의 서명이 들어있어야 한다.

제 68 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Verjährung von Ersatzansprüchen)

위임인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69 조 일반적 대리인의 임명(Bestellung eines allgemeinen Vertreters)

- ①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1개월 이상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일반적 대리인의 임명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사협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사협회가 대리인을 임명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제40조 및 제42조)이어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고유한 자격 범위 내에서 대리인에게는 자신이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갖는 법적 자격이 부여된다. 대리인은 자기 책임 하에 활동하지만, 그 활동에 따른 비용은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민법 제666조, 제667조 및 제670조를 적용한다.
- ③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제1항 제1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거나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임명 신청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무사협회는 직무상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스스로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거나 제1

항 제2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사전에 요청 받았으나 이를 위해 주어진 법정기한이 결실 없이 지났을 경우에 비로소 대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직무상 대리인으로 임명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 대리업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그 거부에 대한 허가는 관할 세무사협회에서 결정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직무상 선임된 대리인은 업무를 위한 공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며 아울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포함하여 업무에 속하는 대상물들을 보유하고 그 인도를 요구할 권리와 사용할 권리가 있다.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 피대리인은 직무상 선임된 대리인에게 담보 제공에 필요한 적정 재원을 지급해야만 한다. 당사자들이 그 재원의 액수나 담보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제공되어야 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피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사협회가 수수료의 액수를 결정한다. 대리인은 합의 혹은 결정에 의해 정해진 재원에 대해 미리 가불하여 쓸 권리가 있다. 결정된 재원에 대해 세무사협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의 책임을 진다. [改正 2001. 12. 22]
- ⑤ 대리인의 임기는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며, 최장 2년으로 한다. 제59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관계 또는 공직관계의 기간동안에 대리인의 임명이 이루어진다. 임명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⑥ 직무상 임명된 대리인은 임기만료 후 2년 동안은 자신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책임을 수행했던 그 피대리인의 위임인을 위해 활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 70 조 업무청산인의 임명(Bestellung eines Praxisabwicklers)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사협회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업무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임명한다. 청산인이 미결업무를 아직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분명하게 생각되는 경우,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임명기간을 최대한 약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청산인은 미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진행중인 업무를 속행하되, 새로운 위임사무를 인수할 수 없다. 고유한 자격범위 내에서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상속인의 자격이 청산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 ③ 이 경우 제69조 제2항 및 제4조가 적용된다.
- ④ 청산인의 임명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 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가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실효되거나 제46조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전 세무

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업무를 위해서도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71 조 업무수탁자의 임명(Bestellung eines Praxistreuhanders)

- ①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업무를 그 사망 시점에서 아직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일정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할 세무사협회는 상속인의 신청으로 3년까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수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사망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상속인의 계산과 비용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자는 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의 임명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업무능력의 흠결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관계로 인하여 그 임명이 철회되었거나(제46조 제2항 제7호), 제57조 제4항에 제기한 이유를 근거로 그 임명을 포기한 이전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1항의 요건을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⑤ 이 경우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제 72 조 세무법인(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① 본법 제34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57a조, 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6조 내지 제71조의 각 규정은 세무법인 및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아닌 세무법인의 이사회와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및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조합의 사원과 그 밖에 법률, 정관 또는 조합의 계약에 의거하여 마련된 조합 감사기관에 속하는 구성원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직업조직(Organisation des Berufs)

제73조 세무사협회(Steuerberaterkammer)

- ① 동일한 주 세무청 관할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직업회의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 직업회의소는 “세무사협회”라 칭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협회는 주 세무청 소재지에 그 주소를 둔다. 세무사협회는 공법상 법인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주 세무청이 해체되거나 통폐합될 경우라도 종래 조직된 협회들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제 74 조 회원자격(Mitgliedschaft)

- ① 세무사협회의 회원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외에 주 세무청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세무법인이 된다.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된 사무실을 두지 않은 세무사와 세무대리사는 그 면허를 받은 지역의 세무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46조 제2항 제6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改正 2001. 12. 22]
- ② 그밖에 세무사협회의 회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아닌 자로서, 주 세무청 관할구역 내에 그 주소를 둔 세무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법인의 대표자(Geschäftsführer)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改正 2001. 12. 22]

제 75 조 합동세무사협회(Gemeinsame Steuerberaterkammer)

- ① 세무사협회는 관련 세무사협회의 일치된 결의로써 하나 또는 다수의 주 세무청 관할구역 또는 다수 주의 영역에 대하여 단일의 합동세무사협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세무청에 조직된 개별 세무사협회는 해산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다수의 주가 결성한 단일의 합동세무사협회에 대하여 관계 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제 76 조 세무사협회의 목적사업(Aufgaben der Steuerberaterkammer)

- ① 세무사협회는 회원 전체의 직업상 권익을 옹호하고 그 의무이행을 감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협회는 특히 다음의 각호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改正 2001. 12. 22]
 1. 직업상 의무에 대한 문제(제57조)에 관하여 회원과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
 2. 신청에 의하여 회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
 3. 신청에 의하여 회원과 그 위임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
 4. 회원의 의무이행(제57조)을 감독하고 징계권(제81조)을 행사하는 일
 5. 직업재판 재판부의 명예직 배석법관의 추천인명부를 주사법행정청에 제출하는 일(제99조 제3항)
 6. 세무사와 세무대리사 및 그 유가족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만드는 일
 7. 법원, 주재무관청 또는 다른 행정청이 요구하는 감정을 하는 일

8. 직업교육에서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
9. 세무사의 직업에 대한 시험위원회의 업계대표자를 추천하는 일 [改正 2001. 12. 22]
10. 본법 제2편 제2장 및 제6장에서 세무사협회에 지정한 과제를 인지하는 일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사협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한 업무를 이사회와 각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밖의 업무들은 제77a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서들에 위임되어질 수 있다. 제2항 제4호의 두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④ 제2항 제10호에 따른 세무사협회의 책임 업무를 인지함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상 지역적 관할권을 지니는 세무사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세무사협회에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해당 세무사협회의 정관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⑤ 그밖에 세무사협회는 직업등기부를 작성할 임무를 지닌다. [改正 2001. 12. 22]
- ⑥ 세무사협회는 후진 양성을 촉진할 권리를 가진다. [改正 2001. 12. 22]

제 77 조 이사회(Vorstand)

세무사협회의 이사회는 회원이 선출하여 이를 구성한다. 협회의 개인회원인 자만 이사회에 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77a 조 이사회회의 각 부서(Abteilungen des Vorstandes)

- ① 세무사협회의 정관에서 허용되는 한에서 이사회는 많은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하며, 그 업무의 수행은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각각의 부서는 최소 3인의 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서원들은 자신들 중에서 1인의 의장과 1인의 서기 및 그 대리인들을 선출한다.
-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사회는 각 부서의 수 및 그 구성원들을 확정하고,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하며, 각 부서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동시에 다수의 부서에 속해도 무방하다. 부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또는 개개 부서원들의 변동이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연도 중간에라도 지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각 부서에 대해 세무사협회의 본사 밖에서 회의를 개최할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⑤ 각 부서는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서 이사회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⑥ 이사회가 마땅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각 부서 혹은 부서장이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부서 대신에 결정을 내린다.

제 78 조 정관(Satzung)

각 세무사협회는 스스로 그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79 조 회비 및 수수료(Beiträge und Gebühren)

- ① 회원은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규정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비는 회원총회가 이를 정한다.
- ② 세무사협회는 특별사업이나 특별활동의 청구 또는 본법 제2편 제2장 및 제6장의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규정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회비 및 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세무사협회의 청구권은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행정비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제 80 조 세무사협회에 출두할 의무(Pflicht zum Erscheinen vor Steuerberaterkammer)

- ① 감독사건 및 항고사건에 있어서 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소환된 경우, 세무사협회의 개인 회원은 세무사협회에 출두하여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세무사협회의 기관, 위임을 받은 이사회 또는 기관의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협회 관할 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세무법인이 세무사협회의 개인 회원을 통해 대리되지 않고 있거나 더 이상 대리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조항은 그 개인 회원이 아닌 법적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改正 2001. 12. 22]

제 81 조 이사회의 징계권(Rügerecht des Vorstandes)

- ① 세무사협회 회원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경미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2조 및 제109조 제2항을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이사회는 세무사협회 회원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의무

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6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③ 징계를 하기 전에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회원의 행위를 징계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의 등본은 세무사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검찰청,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6조). [改正 2001. 12. 22]
- ⑤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82 조 직업재판에 의한 결정신청(Antrag auf berufsgerichtliche Entscheidung)

- ①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회원은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법원(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재판부)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할권은 징계를 한 이사회가 속한 세무사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신청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반대진술(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항)은 세무사협회의 이사회가 한다. 검찰청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세무사협회의 회원이 청구하거나, 지방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두변론이 인정된다. 구두변론의 일시 및 장소는 세무사협회의 이사회, 세무사협회의 회원 및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증거조사의 방법 및 범위는 지방법원에서 정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는 직권으로 이를 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중요한 모든 사실 및 증거 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사협회 회원의 책임이 경미하고 직업재판의 개시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해서 징계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다. 이사회가 징계를 한 후에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 또는 계속하지 아니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④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결정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지체없이 상급 지방법

원의 검찰청에 신청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결정서의 등본도 송부한다.

- ⑤ 징계결정에 반하는 직업재판의 결정을 바라는 신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검찰청이 세무사협회의 이사회가 징계한 것과 동일한 행위 때문에 세무사협회의 해당 회원에게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한 경우, 직업재판의 절차가 확정력 있는 종결에 이를 때까지 그 신청 절차를 정지한다. 제91조 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정지 종료후 징계가 무효임을 확정한다. [改正 2001. 12. 22]

제 83 조 이사의 비밀엄수의무(Pflicht der Vorstandsmitglieder zur Verschwiegenheit)

- 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퇴임 후에도 이사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세무사협회 회원, 응시자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알게된 사항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기관에 협력하기 위하여 참가한 회원 및 세무사협회의 사원 또한 같다. [改正 2001. 12. 22]
- ② 제1항에 제기한 자는 이사회 또는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세무사협회 회원, 응시자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관청의 재판절차에서 송달 또는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엄수의무가 해제된 경우에만 이를 진술하거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그 밖의 비밀엄수의무 및 등기거부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인·허가는 법규재량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인·허가는 세무사협회의 지위 또는 업무를 고려하고 또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2001. 12. 22]

제 84 조 협의회(Arbeitsgemeinschaft)

- ① 다수의 세무사협회는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리능력이 없는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다만 감독권 또는 법률상 각 세무사협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 밖의 업무를 협의회에 이양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② 제83조에 제기한 자가 협의회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협의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3조 제1항의 규정은 협의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제 85 조 연방세무사연합회(Bundessteuerberaterkammer)

- ① 세무사협회는 연방직업회의소를 조직한다. 연방직업회의소는 “연방세무사연합회”라 칭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연방세무사연합회는 공법상 법인으로 한다.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한다.
- ③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이사회는 세무사협회에서 선임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한다. 정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제8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 86 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목적사업(Aufgaben der Bundessteuerberaterkammer)

- ① 연방세무사연합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업무는 특히 다음 각호에 계기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세무사협회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세무사협회의 견해를 조사하고, 또한 공동토의의 방법으로 다수의견을 확정하는 일
[改正 2001. 12. 22]
 2. 정관으로서의 직업규정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일
 3. 세무사협회의 복지후생시설(제76조 제2항 제6호)을 위한 준칙을 정하는 일 [改正 2001. 12. 22]
 4. 세무사협회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연방세무사연합회의 견해를 관할법원 및 관청에 주장하는 일 [改正 2001. 12. 22]
 5. 관청 및 기관에 대하여 세무사협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
[改正 2001. 12. 22]
 6. 입법에 관여하고 있는 연방관청, 단체 또는 연방법원이 요청하는 감정을 하는 일
 7. 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촉진시키는 일
-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 및 그 개정은 연방세무사연합회 조직으로서의 정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관은 연방재무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재무부가 그 정관 및 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무효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관 및 개정을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정식 공고 수단인 기관지에 공시할 수 있다. 공시되는 달 첫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이 시행되고 난 후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보다 상위

의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재무부는 그 정관을 폐지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④ 정관은 법적 규정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기의 책임 하에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
 2. 비밀엄수의 의무
 3. 허용되는 광고 및 직업에 위배되는 광고
 4. 무자격 세무대리에 있어서의 협력 금지
 5. 위임인, 조합원, 법원, 관청 및 세무사협회에 대한 직업상의 태도 및 제 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직업상의 태도
 6. 약정된 업무활동 및 약정되지 않은 업무활동
 7. 직업책임보험 및 책임면제와 책임제한
 8. 위임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9. 수수료 및 지출비용의 약정, 산정, 보전 및 강제 징수
 10. 소송비용대리업무상의 의무
 11. 특정 조세법 영역에 대한 특별 지식의 보유를 나타내는 명칭 사용을 위한 요건
 12. 주된 사무소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
 13. 경계를 넘어선 업무에서 요구되는 행동
 14.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활동의 합동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의무
 15. 세무법인의 설립, 형성 및 활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무
 16. 업무의 청산 및 위임
 17. 세무전문보조원의 양성

제 86a 조 정관회의의 구성 및 기능(Zusammensetzung und Arbeitsweise der Satzungsversammlung)

- ① 정관회의는 연방세무사연합회 의장, 세무사협회 회장 및 그 밖의 회원(파견단원 Delegierte) 등으로 구성된다. 연방세무사연합회는 정관회의의 업무를 수행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파견단원은 협회회의에서 각 세무사협회의 회원들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세무사협회의 개인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파견단원의 수는 협회회원수에 따라 할당한다. 세무사협회 회원 수가 개시일 기준으로 1,500명마다 1인의 대표단원과 1인의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무사협회에 있어서 최소 2인의 파견단원과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협회회원 수

는 정관회의가 소집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改正 2001. 12. 22]

- ③ 정관회의의 모든 회원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관회의에서 각자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 ④ 정관회의소집은 연방세무사연합회 의장에 의해 6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최소 5개의 세무사협회 또는 정관회의 회원의 1/4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와 함께 정관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안건들을 제시하는 경우 연방세무사연합회 의장은 6주 이내에 정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⑤ 정관에 별 변동이 없을 경우, 연방세무사연합회 의장이 정관회의의 의장직을 맡으며, 연방세무사연합회 의장이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상 대리인이 정관회의의 의장직을 맡는다.
- ⑥ 정관회의는 소속회원의 최소 2/3가 출석하는 경우에 정족수가 된다. 직업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정관회의의 의결은 정관회의 전체 회원의 다수결로 결정되며, 그 밖의 의결 건은 참석 회원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 ⑦ 정관회의에서 결정된 의결 원문은 의사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 의사록에는 의장 및 정관회의에서 정한 서기의 서명이 들어있어야 하며, 이 문서는 연방세무사연합회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한다.
- ⑧ 정관회의는 정관 속에 절차와 관련한 그 밖의 세세한 항목들을 규정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87 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회비(Beiträge zur Bundessteuerberaterkammer)

연방세무사연합회는 회비규정에 따라 세무사협회로 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회비규정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정한다.

제 88 조 국가의 감독(Staatsaufsicht)

- ①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은 당해 주내에 소재하는 세무사협회를 감독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세무사연합회를 감독한다.
- ③ 감독은 법률 및 정관의 준수여부, 특히 세무사협회에 부여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 5 장 직업재판(Berufsgerichtsbarkeit)

제 1 절 의무위반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처벌(Die berufsgerichtliche Ahndung von Pflichtverletzungen)

제 89 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Ahndung einer Pflichtverletzung)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 외의 행위가 개개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직무의 수행 또는 직업의 신망을 위하여 필요한 존경과 신뢰를 중대한 방법으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 행위를 직업재판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로 한다.
- ③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행위가 행위 당시의 직업재판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제 90 조 직업재판의 처벌종류(Berufsgerichtliche Maßnahmen)

- ①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Warnung)
 2. 견책(Verweis)
 3. 25,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Geldbuße) [改正 2001. 12. 22]
 4. 자격박탈(Ausschließung aus dem Beruf)
- ②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은 견책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 91 조 징계 및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Rüge und berufsgerichtliche Maßnahme)

- ① 세무사협회 이사회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한 사실(제81조) 여부에 불구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지방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을 확인하지 못하여 징계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제82조) 그 결정 당시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징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 또는 직업재판 판결의 확정력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의 개시가 확정력에 의하여 각하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92 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처벌(Anderweitige Ahndung)

법원 또는 관청이 형벌, 징계처분, 명예재판상의 처벌, 기타 직업재판상의 처벌 또는 질서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직업재판에 의한 추가적인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징계를 중지한다. 자격박탈은 다른 형벌 또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3 조 의무위반의 공소시효(Verjährung der Verfolgung einer Pflichtverletzung)

- ① 자격박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위반에 대한 소추의 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형법 제78조 제1항, 제78a조 제1문 및 제78b조 및 제78c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동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제1문에 따른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기간 만료가 중지된다. [改正 2001. 12. 22]

제 94 조 세무사협회의 기타 소속회원에 대한 규정(Vorschriften für Mitglieder der steuerberaterkammer, die nicht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sind)

- ① 제5장(직업재판)의 각 규정은 제74장 제2항에 따라 세무사협회에 소속된 자에게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자격박탈 대신에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박탈한다.
- ③ 직업재판절차에서 명예직법관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직업재판의 재판부는 세무사사건부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제 2 절 법원(Die Gerichte)

제 95 조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Kammer für Steuerberater 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Landgericht)

-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1심은 세무사협회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세무

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로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하나의 주에 다수의 세무사협회가 있는 경우에 주정부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집중심리(Zusammenfassung)가 특히 통일적인 판결의 확보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규명령으로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을 하나 또는 수개의 지방법원에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본법에 의하여 어느 주의 지방법원이 관할할 업무를 관련 주와의 합의에 따라 다른 주의 지방법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공판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공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외에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배석으로 참가한다.

제 96 조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Senat für Steuerberater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Oberlandesgericht)

-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2심은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은 주대법원에도 배당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③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공판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공판에 있어서는 그 외에 배석인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참가한다.

제 97 조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Senat für Steuerberaterund Steuerbevollmächtigtensachen beim Bundesgerichtshof)

- ① 직업재판절차의 제3심은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로 한다.
-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공판 외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로 구성하여 판결한다. 공판에 있어서 사건부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3명의 판사와 배석인 2명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 구성한다.

제 98 조 (삭제 1989. 6. 9)

제 99 조 배석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 als Beisitzer)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보할 배석의 직은 명예직법관(ehrenamtliche Richter)으로 한다.
- ② 명예직법관은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의 경우 주사법행정청이 4년간의 임기

로 임명한다. 명예직법관은 그 임기만료 후 재임할 수 있다.

- ③ 명예직법관은 세무사협회의 이사회가 주사법행정청에 제출하는 추천인 명부 중에서 선임한다. 주사법행정청은 각 법원에 필요한 명예직법관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주사법행정청은 사전에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 추천인 명부에는 적어도 임명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2배수의 인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④ 명예직법관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때에는 잔여 임기에 한하여 후임자를 임명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은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명예직법관에 대하여 세무사협회를 연방세무사연합회로, 주사법행정청을 연방법무장관으로 하여 이를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 ⑥ 주 사법행정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자격을 하위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100 조 배석의 임명요건 및 거부권(Voraussetzungen für die Berufung zum Beisitzer und Recht zur Ablehn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세무사협회의 이사에 선임될 자격(제77조)이 있는 자 중에서 명예직법관을 임명한다. 명예직법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각급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서만 배석으로 임명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명예직법관은 동시에 세무사협회의 이사회구성원이 되거나 세무사협회의 주요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③ 다음 각호에 계기한 자는 배석직을 거절할 수 있다.
 - 1. 65세를 넘은 자
 - 2. 최근 4년내에 세무사협회의 이사이었던 자
 - 3. 질병 또는 불구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자

제 101 조 배석의 해임(Enthebung vom Amt des Beisitzers)

- ① 다음 각호에 있어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제95조 및 제96조의 경우에는 지명 관할권이 있는 관청의 청구에 의하여, 제97조의 경우에는 연방법무장관의 청구에 의하여 배석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1. 배석의 임명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 2. 배석직 임명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
 - 3. 배석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이 규정한 청구에 대하여 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민사부가, 본법 제9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민사부가 이를 결정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구성원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2항이 규정한 결정 전에 당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02 조 명예직법관의 지위와 비밀엄수의무(Stellung der ehrenamtlichen Richter und Pflicht zur Verschwiegenheit)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명예직법관으로서 참여하는 법정에서 직업법관(Berufsrichter)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명예직법관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관하여 누구에 대하여도 그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증언에 대한 허가는 법원장이 한다.

제 103 조 법정 참여순위(Reihenfolge der Teilnahme an den Sitzungen)

명예직법관은 법원장이 업무년도 개시전에 2명의 최연장 명예직법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각 법정에 참여한다.

제 104 조 명예직법관의 보수(Entschädigung der ehrenamtlichen Richter)

명예직법관은 명예직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제 3 절 절차규정(Verfahrensvorschriften)

1. 총칙(Allgemeines)

제 105 조 절차에 관한 규정(Vorschriften für das Verfahren)

직업재판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6 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불구속(Keine Verhaftung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체포, 구금 또는 구인되지 아니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없다.

제 107 조 변호(Verteidigung)

- 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직업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에
제기한 자 외에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각 규정은 직업
재판절차의 변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8 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기록열람(Akteneinsicht des Steuer-
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협회의 이사회 및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 또
는 고발장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을 열람하고 공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증
거물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3항, 제5
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09 조 직업재판절차와 형벌절차 또는 과태료절차와의 관계(Verhältnis des
berufsggerichtlichen Verfahrens zum Strafoder Bußgeldverfahren)

- ① 의무위반의 혐의가 있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기소를 한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되, 형사소송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직업재판절
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기소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보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절차를 세무사 또는 세무
대리사의 개인사정으로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재판절차에
서 형벌규정 또는 과태료규정의 법률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무죄선고를
하게된 법원의 판결대상 사실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무위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거로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
- ③ 법원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소송 또는 과태료소송판결의 사실인정은 직업재
판절차에 있어서도 구속력이 있다. 다만 직업재판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구
성원 다수가 의심하는 인정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취지
는 직업재판의 판결이유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3문에 따른 직업재판절차가 속행될 때, 직업재판절차에 있어서 유
죄선고 또는 무죄선고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이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종결된 직업재판절차의 재
심 역시 허용된다. 직업재판절차의 재심은 검사 및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가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 110 조 기타의 직업재판절차와 직업재판권과의 관계(Verhältnis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zu den Verfahren anderer Berufsgerichtsbarkeiten)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의무위반이 동시에 다른 직업상의 징계권, 명예 재판권 또는 직업재판권에 계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의무위반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업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의무위반이 중대하여 자격박탈을 목적으로 직업재판절차가 개시되는 때에 한하여 직업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결한다.
- ② 검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 대리사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절차개시에 관한 관할 검찰청과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절차를 개시할 관할 검찰 청 또는 관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검찰청 또는 관청은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 검찰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징계권, 명예재판권 또는 직업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동시에 다른 직업상 징 계권, 명예재판권 또는 직업재판권에 따라야 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재판관할의 유무를 먼저 확정한 경우 그 결정은 다른 법원을 구속한다.
- ④ 공법상의 고용관계 또는 공직관계로 인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제59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1 조 직업재판절차의 정지(Aussetz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직업재판절차상 판결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판결될 경우에는 직업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 제1심 절차(Das Verfahren im ersten Rechtszug)

제 112 조 지역 관할권(Örtliche Zuständigkeit)

지방법원의 지역 관할권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절차개시 당시 소속된 세

64 독일 세무사법령

무사협회의 소재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이 시기 이후 사무소를 다른 회의지구로 이전한다 해도 관할권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改正 2001. 12. 22]

제 113 조 검찰청의 협조(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소송절차에서 검찰청의 업무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있는 고등법원 검찰청이 이를 수행한다.

제 114 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Einleit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직업재판절차는 검찰청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개시한다.

제 115 조 절차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Einleitung des Verfahrens)

- ① 검찰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한 결정을 세무사협회의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세무사협회 이사회는 검찰청의 결정에 대하여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③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의한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Antrag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auf Einleit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의무위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검찰청에 청구해야 한다. 세무사협회의 이사회가 징계가 내려진(제81조) 행위로 인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그 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改正 2001. 12. 22]
- ② 검찰청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은 이유를 부기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이 이유 중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

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검찰청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고등법원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고등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의 존부에 대한 확인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직업재판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의무위반의 혐의가 충분히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실행은 검찰청이 행한다.
- ④ 고등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 또는 증명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거나 세무사협회 이사회에 의한 징계를 행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117 조 소장의 내용(Inhalt der Anschuldigungsschrift)

소장(제114조,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3항)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의무위반을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소문). 또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공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8 조 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Entscheidung übe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 ① 공판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사건을 공판에 붙일 것을 허가한다.
- ② 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공판절차개시의 각하결정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 검찰청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 119 조 각하결정의 확정력(Rechtskraftwirkung eines ablehnenden Beschlusses)

공판절차의 개시가 취소불가능한 결정으로 각하된 때에는 직업재판절차의 개시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20 조 개시결정의 송달(Zustellung des Eröffnungsbeschlusses)

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소환장과 함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의 사후 제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21 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불출석 공판(Hauptverhandlung trotz Ausbleibens des Steuerberaters oder Steuerbevollmächtigten)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환하고, 그 소환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이 진행된다는 뜻이 명시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 없이도 공판을 개시할 수 있다. 공시에 의한 소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22 조 비공개공판(Nichtöffentliche Hauptverhandlung)

- ① 공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세무사나 세무대리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의 공개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비공개공판에는 주 법무행정청의 대표자, 고등법원장 또는 그 수임자와 고등법원의 검찰공무원의 입장을 허락한다. 연방재무장관의 대리인, 세무행정 에 대한 주 최고관청의 대표자, 세무사협회의 대표자의 입정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는 방청인으로 입정할 수 있다. 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방청인으로서 그 입장을 허락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123 조 수탁법관에 의한 증거조사(Beweisaufnahme durch einen ersuchten Richter)

지방법원의 세무사와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구법원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을 촉탁할 수 있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은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이 공판에 출석하는데 지장이 예견되거나 원거리로 인하여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판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124 조 조서의 낭독(Verlesen von Protokollen)

-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이미 직업재판절차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취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의 낭독여부를 법규 재량으로 결정한다.
- ② 법원의 결정에 앞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공판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공판에 출석하는데

지장이 예견되거나 원거리로 인하여 출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에 응할 경우에는 이전의 심문조서의 낭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증인 또는 감정인은 수탁법관의 심문을 받는 경우(제123조) 조서의 낭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검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제123조 제2문에 규정한 요구가 각하되고 그 각하이유가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낭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5 조 판결(Entscheidung)

- ① 공판은 심리에 따른 판결의 선고로 종료한다.
- ② 판결은 무죄선고, 유죄 또는 재판절차의 중지를 선고한다.
- ③ 직업재판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중지된다.
 1. 면허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거나 제4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된 때
 2.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이 면제된 경우

3. 상소(Rechtsmittel)

제 126 조 항고(Beschwerde)

항고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은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이를 관장한다.

제 127 조 항소(Berufung)

-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에 항소할 수 있다.
- ② 항소는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사건부 판결이 선고된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없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 ③ 항소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④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외에 본법 제121조 내지 제125조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8 조 제2심에서의 검찰청의 협조(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im zweiten Rechtszug)

제2심에서의 검찰청의 업무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있는 고등법원 검찰청이 수행한다.

제 129 조 상고(Revision)

- ①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판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자격박탈이 선고된 경우
 2.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검찰청의 구형에 반하여 자격박탈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판결에서 상고를 허락한 경우
- ②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원칙적이고 중요한 법률문제(Rechtsfragen) 또는 직업상의 의무문제(Fragen der Berufspflichten)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허가한다.
- ③ 상고의 불허에 대하여 판결문의 송달후 1개월 이내에 독립된 항고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항고는 고등법원에 하여야 한다. 항고장에는 원칙적인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항고로써 판결의 확정력은 중단된다.
- ⑤ 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방대법원이 결정으로 판결한다. 항고가 만장일치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할 필요가 없다.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항고의 각하결정으로 확정력이 생긴다. 항고를 인정한 경우에는 항고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상고기간이 개시된다.

제 130 조 상고의 제기와 절차(Einlegung der Revision und Verfahren)

- ① 상고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판결의 선고시로부터 개시된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기간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상고신청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③ 연방대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 외에 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다른 주의 고등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제 131 조 연방대법원에 대한 검찰청의 협조(Mitwirkung der Staatsanwaltschaft vor dem Bundesgerichtshof)

연방대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찰청의 업무는 연방검찰총장이 수행한다.

4. 증거의 보전(Die Sicherung von Beweisen)

제 132 조 증거보전명령(Anordnung der Beweissicher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가 실효, 취소 또는 철회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직업재판절차가 중지된 경우로서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자격박탈이 예견될 때에는 검찰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결정과 동시에 증거보전을 명할 수 있다. 증거보전명령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가 증거를 채택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직업재판부의 법관 중 1인에게 증거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33 조 절차(Verfahren)

- ①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가 자격박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는 청구인의 요구에 구속됨이 없이 법규재량에 따라 절차의 범위를 정한다.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 ② 증인은 예외규정이 있거나 허가가 없는 한 선서를 하고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검찰청과 전직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전직의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국내에 체재하고 지방법원에 그 주소 및 성명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보전을 위한 기일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직무수행 및 대리의 금지(Das Berufs-und Vertretungs-verbots)

제134조 금지의 요건(Voraussetzung des Verbots)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자격박탈의 판결을 받을 유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검찰청은 직업재판절차의 개시 전에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서에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사에게 책임이 있는 의무위반과 그 증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심리와 판결에 대하여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공판의 개시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법원 또는 직업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35조 구두변론(Mündliche Verhandlung)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과하는 결정은 구두변론을 거쳐야만 선고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구성, 소환 및 구두변론에 관하여는 다음 항 이하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결을 하는 법원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소환장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책임이 있는 의무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용적시하고, 그 증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소환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증거조사의 범위는 검찰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요구에 구속됨이 없이 법원이 법규재량으로 정한다.

제 136 조 금지에 대한 표결(Abstimmung über das Verbot)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에 대한 결정은 투표권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7 조 공판에 부대한 금지선고(Verbot im Anschluss an die Hauptverhandlung)

법원이 자격박탈을 선고할 경우 공판절차에 직접 부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대리의 금지를 명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8조 결정서의 송달(Zustellung des Beschlusses)

결정서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9조 금지의 효력(Wirkungen des Verbots)

- ① 금지결정은 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직무수행의 금지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대리의 금지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법원이나 관청에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대리권 또는 복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원, 관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혹은 다른 조세사건의 대리인과 서면으로 교섭할 수 없다.
- ④ 직업수행의 금지 또는 대리의 금지가 선고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자기의 사무와 조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자기 가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직무수행의 금지 또는 대리 금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력도 또한 같다.

제 140 조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Zu widerhandlungen gegen das Verbot)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의 고의로 위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감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격을 박탈한다.
- ② 법원 또는 관청은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의 위반하여 출두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기피하여야 한다.

제 141 조 항고(Beschwerde)

- ①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②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선고한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③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서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외에 본법 제 135조 제 1항, 제 2항 및 제 4항, 제 136조 및 제 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2 조 금지의 실효(Außerkrafttreten des Verbots)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효한다.

1. 자격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때
2.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의 공판절차의 개시가 각하된 때

제 143 조 금지의 취소(Aufhebung des Verbots)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에 처할 요건이 흠결되거나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지를 취소한다.
- ② 취소는 제 13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 ③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때에는 새로운 구두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 14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의 즉시항고가 미결 중인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취소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144 조 금지의 통지(Mitteilung des Verbots)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결정은 지체없이 관할 세무사협회 의장에게 인증 등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 ②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가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5 조 대리인의 임명(Bestellung eines Vertreters)

- ① 직무수행 또는 대리 금지를 선고받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세무사협회는 대리인을 임명한다. 당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대리인의 임명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적당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 ② 대리인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이 경우 제69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준용된다.

제 4 절 절차비용, 처벌 및 비용의 집행과 말소(Die Kosten in dem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 und in dem Verfahren bei Anträgen auf berufs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Rüge. Die Vollstreckung der berufsgerichtlichen Maßnahmen und der Kosten. Die Tilgung)

제 146 조 수수료의 면허와 지출비용(Gebührenfreiheit, Auslagen)

직업재판절차 및 징계에 관한 직업재판의 결정신청절차(제82조)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대신 법원비용법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替當金)만을 징수한다.

제 147 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 비용(Kosten bei Anträgen auf Einleitung des berufsgerichtlichen Verfahrens)

- ① 검찰청의 판단(제116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청구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15조 제2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세무사협회가 그 청구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48 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Kostenpflicht des Verurteilten)

- ① 직업재판절차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동시에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직업재판절차상 면허의 실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진행의 결과 직업재판상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증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절차(제132조 및 제133조)에서 발생한 비용은 직업재판절차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직업재판절차에서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가 인용되지 않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동시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소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그 비용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만 부담한다.
- ③ 확정판결로 종료된 절차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비용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9 조 징계에 대한 비용부담의무(Kostenpflicht in dem Verfahren bei Anträgen auf berufs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Rüge)

- ① 징계에 관한 직업재판의 청구가 이유없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48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법원이 직업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징계가 무효임(제82조 제5항 제2문)을 확인하거나, 지방법원이 제82조 제3항 제2문의 규정에 따라 징계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방법원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게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직업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그 청구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기각된 때에는 제148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82조 제3항 제2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결정이 취소되거나, 직업재판 절차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무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제9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징계의 무효가 확인된 경우에(제82조 제5항 제2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채당금은 세무사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50 조 세무사협회의 책임(Haftung der Steuerberaterkammer)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은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소속된 세무사협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51 조 직업재판상의 처벌 및 비용의 강제집행(Vollstreckung der berufsggerichtlichen Maßnahmen und der Kosten)

- ① 자격박탈(제90조 제1항 제4호)은 판결의 확정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확정력이 증명되는 판결문의 인증등본을 근거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등록부에서 말소한다.
- ② 경고 및 견책(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은 확정력 있는 판결로써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과태료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절차가 확정력이 있는 결심으로 종료된 후에 행하여진 자격박탈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과태료와 병행하여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하여도 과태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52 조 전과말소(Tilg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가 기록부상의 기재는 경고에 관하여는 5년후, 견책 또는 과태료에 관하여는 10년 후에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그 처벌전과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관하여 작성한 기록부에서 삭제·파기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벌전과는 그 후의 직업재판상의 처벌시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 ② 기간은 직업재판상의 처벌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하게 된 날부터 개시한다.
- ③ 기간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명예재판절차, 직업재판절차 또는 징계절차가 계속중이거나 다른 직업재판절차에 의한 처벌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또는 과태료가 선고된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 ④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는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은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징계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改正 2001. 12. 22]

제 5 절 직업재판권에 대한 적용규정(Für die Berufsgerichtsbarkeit anzuwendende Vorschriften)

제 153 조 직업재판권에 대한 적용규정(Für die Berufsgerichtsbarkeit anzuwendende Vorschriften)

직업재판권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및 재판비용법 등을 적절히 준용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6 절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

제 154 조 기존 법인(Bestehende Gesellschaften)

- ① 1989년 6월 16일에 인가를 받은 세무법인은 인가효력이 남아있다. 법인이 제4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된 기관의 위임사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후에 그러한 기관의 위임사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자자의 상태 또는 그 지분관계 또는 투표권이 법률행위 또는 상속의 개시에 따라 변경되고, 지분 또는 투표권이 제50a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2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출자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사협회가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법상 단체의 지분이 업무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공법상의 단체에 이전될 경우에는 당해 관할 세무사협회는 인가의 철회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본법 제50a조 제1항 제1호나 제2항 제2문 또는 회계감사규정 제28조 제4항의 자본결합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제1항 제3문 및 제4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 세무법인에 참여한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사협회에 의해 허용된 예외의 인가를 근거로 제1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해 법인의 주주가 탈퇴하고 그 결과 그의 지분 혹은 투표권이 1994년 5월 19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주주였던 다른 사람에게 인도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수 및 그 지분비율 또는 투표권이 변경되고, 변경이 일어난 해당 법인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직역대표(Berufsvertretung)의 변경 이전에 조직된 경우
 2. 당해 법인의 주주 수 및 그 지분비율 또는 투표권이 변경되고, 그것이 농업분야의 구조적 변경에 따른 결과인 경우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55 조 세무사법의 제4차 개정에 의한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 aus Anlass des Vier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euerberatungsgesetzes)

- ① 1989년 6월 15일부로 시행되는 법률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을 가진 법인 및 단체는, 담당 세무대리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도적인 사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에서,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 또는 영업에 의한 소득 - 농업 경영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입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에 대한 조사가 아닌 한에서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그 세무대리가 1989년 6월 16일 이후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갖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 영리사업으로서의 세무대리를 행할 자격을 상실한다.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은 개개의 경우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1989년 6월 16일 현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을 갖게된 단체는, 적어도 1인의 업무집행자가 당해 명칭을 직업 명칭에 부가하여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단체의 명칭에 계속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예비교육요건은 1989년 6월 16일 이전에 행한 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56 조 세무사법의 제6차 개정에 의한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 aus Anlass des Sechs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euerberatungsgesetzes)

통일조약 제3조에 계기한 지역에서 전문대학을 수료하였거나,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대학 교육을 시작하였거나 또는 전문대학을 수료하고 4년간 실무 영역에서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지원자에게 있어서는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이 준용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57 조 세무사 업무활동에 대한 법규 개정에 의한 경과규정(Übergangsvorschriften aus Anlass des Gesetzes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über die Tätigkeit der Steuerberater)

- ①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소송대리인은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 ②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제 부가계원은 업무로서 한정된 세무대리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 ③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잠정적인 면허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제40a조 제1항 제6문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만료와 함

게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며,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제 46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따라 철회결정의 지속성이 발동하면서 비로소 실효된다.

- ④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시험허가에 대한 본법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자 시험허가부터 적용된다.
- ⑤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시험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본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⑥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본법 제2편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세무사협회에 지정된 임무는 종래의 관할 재무관청이 2000년 12월 3일까지 대리하도록 한다.
- ⑦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200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주 세무청은 본법 제2편 제2장의 업무에 있어서의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에 대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157a조 (삭제 2001. 12. 22)

제157b조 (삭제 2001. 12. 22)

제 7 절 위임명령(Verordnungsermächtigung)

제 158 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에 관한 시행령 위임(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en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① 연방정부는 연방세무사연합회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1. a) 시험허가, 시험면제 및 구속력 있는 회답 - 특히 제36조, 제37a조, 제38조 및 제38a조가 요구하는 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에 관련한 - 등의 절차 [改正 2001. 12. 22]
 - b) 시험의 실시, 특히 시험범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및 시험평가에 대한 사정 [改正 2001. 12. 22]
 - c) 재시험 절차
 - d) 시험위원회의 구성 [改正 2001. 12. 22]
- 2. 면허에 관한 사항

3. 세무법인의 인가절차에 관한 사항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술시험에 관한 사항, 특히 시험범위, 시험의 면제 및 “농업장부관리소” 명칭의 부여 절차
 5. 직업등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등록의무
 6. 책임보험의 체결과 유지, 보험계약의 내용, 범위, 제외 및 최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 ② 주 정부는 제2편 제2장에서의 재무관청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에 대한 위임 업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주 세무청에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3 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Zwangsmittel, Ordnungswidrigkeiten)

제 1 장 행위 및 불행위를 이유로 한 집행(Vollstreckung wegen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제 159 조 강제수단(Zwangsmittel)

강제수단의 적용은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en)

제 160 조 무자격세무대리(Unbefugte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 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가 규정한 실행가능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자
- ② 질서위반은 최고 5,000유로까지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61 조 “세무법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농업장부관리소” 등의 명칭보호 (Schutz der Bezeichnungen “Steuerberatungsgesellschaft”, “Lohnsteuerhilfeverein” und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 ① 자격 없이 “세무법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또는 이들 명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한 것으로 한다.
- ② 질서위반은 최고 5,000유로까지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62 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위반(Verletzung der den Lohnsteuerhilfvereinen obliegenden Pflichten)

-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한 조합은 질서위반을 한 것으로 한다.
1. 제14조 제11항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관의 변경을 관할 주 세무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차 업무감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 제7항 제1호에 위반하여 업무감사보고서 등본을 관할 주 세무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송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 제7항 제2호에 위반하여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회원에게 감사결과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같은 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한 경우
 7. 제23조 제4항에 위반하여 관할 주 세무청에 사무소의 개설 또는 폐쇄, 사무소 소장의 임명 또는 해임, 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감독관청에 회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정한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고 5,000유로까지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9호에 정한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고 1,000유로까지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63 조 조합소속의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의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 von Personen, deren sich der Verein bei der Hilfeleistung in Steuersachen im Rahmen der Befugnis nach §4 Nr. 11 bedient)

- ①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4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자격 범위 내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 자는 질서위반을 한 것으로 한다.
- ②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고 25,000유로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2001. 12. 22]

제 164 조 절차(Verfahren)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행정관청은 세무서로 한다. 조세기본법 제387조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그 밖의 과태료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조세기본법 제4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11호와 제2항 및 제412조를 준용한다.

제 4 편

최종규정(Schlussvorschriften)

제 164a 조 행정절차(Verwaltungsverfahren)

- ① 본법 제1편, 제2편 제2장 및 제6장, 제3편 제1장이 규정한 공법상 또는 직업법상의 사무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실행은 조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 ②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인가의 취소 또는 철회(제20조), 사무소의 폐쇄명령(제28조 제3항),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의 취소 또는 철회(제46조) 또는 세무법인의 인가(제55조) 등의 실행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정지한다. 이 경우 조세기본법 제361조 제4항 제2문과 제3문 및 조세법원법 제69조 제5항 제2문 내지 제4문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문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대리의 실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발효를 금지할 수 있다. [改正 2001. 12. 22]

제 164b 조 수수료(Gebühren)

- ① 본법이 신청서식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염두에 둘 경우, 신청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결정하기 전에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수수료는 절반만 납부하여도 된다.

제 165 조 위임(Ermächtigung)

본법과 그 시행령의 문언(文言)에 대하여 각 적용시점에서 법률의 문언을 새로이 다듬고 그 낱자를 부기하며 조문(條文)의 순서를 새롭게 하여 공포하고, 동시에 문언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일을 연방재무장관에게 위임한다.

제 166 조 종래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Fortgeltung bisheriger Vorschriften)

자알란트(Saarland)주의 세무사협회 및 세무대리자협회의 관리업무는 유지된다. 자알란트 주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특히 공법상 단체의 형식을 가진 관리업무의 유지,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회원자격, 정관 및 직무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全文改正 2001. 12. 22]

제 167 조 자유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Freie und Hansestadt Hamburg)

자유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시 정부는 관청의 관할권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함부르크시의 특별한 행정기구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다.

제 168 조 법률의 효력발생(Inkrafttreten des Gesetzes)

- ① 본법은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법의 공포후 역월로 3개월이 되는 월의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66조 제2항의 규정은 본법을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 2-1 부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DVStB))**

제정 1979. 11. 12(BGB1. I S. 1922)

개정 1991. 8. 19(BGB1. I S. 1797)

개정 1993. 4. 27(BGB1. I S. 512)

개정 2000. 6. 24(BGB1. I S. 874)

1979년 11월 12일 공포한 세무사법(BGB1. I S.1922)은 2000년 6월 24일(BGB1. I S.874)자 세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법률(7. StBÄndG)을 통해 최종 개정되었다. [改正 2000. 6. 24]

제 1 편

세무사시험(Prüfungsordnung für Steuerberater)

제 1 조 허가절차(Zulassungsverfahren)

- ① 세무사시험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이하 “주 최고관청”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시험허가신청서는 주 최고관청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허가 신청서는 바로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
- ③ 주 최고관청은 응시자의 기재사항이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심사한다. 주 최고관청은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속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 ④ 결정결과는 주 최고관청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 2 조 (삭제 2000. 6. 24)

제 3 조 (삭제 1991. 8. 19)

제 4 조 시험허가신청(Antrag auf Zulassung zur Prüfung)

- ① 시험허가신청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응시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주체재지, 주거주지, 직업 및 본직으로 종사하는 직업의 장소 [改正 2000. 6. 24]
 2. 설치 예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응시자가 과거에 시험허가를 신청한 사실 여부와 그 신청서의 제출처
 4. 응시자의 국적
-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상 및 직업경력을 정확히 기재한 이력서
 2. 세무사시험의 법정예비교육요건에 대한 시험성적표, 학위증, 자격증명서의 인증사본
 3. 응시자의 종래 직업활동, 특히 연방 또는 주 세무관청이 관리하는 조세분야의 업무종류와 범위가 기재된 증명서 및 현재까지 응시한 관련시험에 관한 증명서의 인증사본, 또한 근무시간에 관한 증명서

[改正 2000. 6. 24]

4. 여권사진 1매

제 5 조 그 밖의 증명서(Sonstige Nachweise)

- ① 법 제37a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선서회계사라는 사실 또는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선서회계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대한 관할 사무소의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② 법 제37a조 제2항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1.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약국(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국적증명서 [改正 2000. 6. 24]
 2. 응시자가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것과 이를 가지고 응시자가 이들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출생지 회원국 관할관청의 증명서 [改正 2000. 6. 24]
 3. 세무사업을 만 2년간 수행하였다는 증명서 및 1988년 2월 21일의 유럽경제공동체 준칙 제3조 b(AB1. EG 1989 Nr. L 19, S. 16)가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육수료증명서 [改正 2000. 6. 24]
 4. 응시자가 최소교육기간의 대부분을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 보내었거나,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 적어도 3년간의 직업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증명서. 다만 그 국가가 제3국의 학위증, 시험성적표, 그 밖의 자격증명서를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 6. 24]
 5. 법 제37b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시험에서 면제될 시험분야에 대한 규정 및 그 시험분야에서 습득된 지식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할 제 서류는 응시자가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독일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서류는 인증번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험허가(Zulassung zur Prüfung)

- ① 시험허가는 그 허가 직후의 시험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 이후의 시험에 관하여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응시자가 시험허가 결정시기에 연방 또는 주 세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본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는 예비교육요건을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예비교육요건을 늦어도 필기시험 전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주 최고관청이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 7 조 구속력 있는 회답 교부에 대한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verbindlichen Auskunft)

- ① 구속력 있는 회답의 교부신청은 소정의 서식지에 의한다.
- ② 구속력 있는 회답은 서면형식으로 한다. 회답에는 제4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한 회답을 포함해야 한다.
- ③ 회답이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요건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후에 실현된 사실이 회답에서 적시한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다.
- ④ 회답은 그 회답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개정된 때에는 그 구속력을 잃는다.
- ⑤ 절차에 대하여는 본 시행령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8 조 시험면제신청(Antrag auf Befreiung von der Prüfung)

- ① 제1조 제1항 및 제4조는 응시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를 변경하여 과거에 시험허가 또는 시험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응시자는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제기한 증명서 대신에 다음 각호의 증명을 시험면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강의한 교수의 종류 및 기간에 관하여 응시자가 소속한 또는 소속하였던 독일의 전문대학의 증명서 [改正 2000. 6. 24]
 2.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연방 또는 주 세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근무한 업무의 종류와 기간에 관하여 다음에 제기한 자가 발행한 증명서 [改正 2000. 6. 24]
 - a) 최종 근무지 관청 [改正 2000. 6. 24]
 - b) 응시자가 독일 연방하원의 원내 교섭단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의 의장단 [改正 2000. 6. 24]

제 9 조 (삭제 2000. 6. 24)

제 10 조 시험위원회(Prüfungsausschuss)

- ① 세무사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세무행정청의 고위직 공무원 3인 또는 이에 버금가는 관리직원,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세무사 3인 또는 2인 및 경제계의 대표자 1인
주최고관청은 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대리인을 임명한다.

- ② 시험위원 및 그 대리인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된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의 잔여임기로 한다. 세무사가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세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제계의 대표자가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경제행정을 관할하는 주최고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③ 위원회는 다수결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허가자료 및 시험자료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위원은 자신의 업무활동 중에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닌다. [改正 2000. 6. 24]
- ⑤ 세무관청의 공무원 또는 관리직원이 아닌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져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⑥ 시험위원회 위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의 보수는 수수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改正 2000. 6. 24]

제 11 조 내지 제13조 (삭제)

제 14 조 시험의 실시(Durchführung der Prüfungen)

- ① 주 최고관청은 허가한 응시자에 대하여 통상 매년 1회 시험위원회에 의한 시험을 시행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시험위원회의 시험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구술시험에는 관할 주 최고관청의 대표자 및 관할 세무사협회 이사회의 대표자가 참가할 수 있다. 그 외의 자의 참석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제 15 조 시험의 평점과 평균점(Prüfungsnoten, Gesamtnoten)

- ① 각 시험성적은 다음 6단계의 평점으로 평가한다.
 - 평점 1. 수 특히 우수한 성적(sehr gut)
 - 평점 2. 우 평균을 현저하게 상회한 성적(gut)
 - 평점 3. 미 모든 점에서 평균적 요구에 합치하는 성적(befriedigend)
 - 평점 4. 양 개별적인 결점을 제외하고 평균적 요구에 합치하는 성적(ausreichend)
 - 평점 5. 불량 결점이 현저하고, 전체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성적(mangelhaft)

평점 6. 불가 완전히 불충분한 성적(ungenügend)

각 평점간의 중간단계를 두어 평가할 수도 있다.

- ② 평균점은 각 평점의 합계를 그 과목 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결과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는 절사한다.

제 16 조 필기시험(Schriftliche Prüfung)

- ① 필기시험은 감독관의 감독하에 3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필기시험 중 2과목은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분야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의 필기시험은 부기 및 대차대조표제도 중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범위는 이외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 ③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세무사시험(법 37a조)의 필기시험은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분야 내에서 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문은 이를 준용한다. [改正 2000. 6. 24]

제 17 조 필기시험의 시험소집 통지(Ladung zur schriftlichen Prüfung)

주 최고관청은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응시자에게 늦어도 제1시험일의 1개월 전에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필기시험의 답안작성(Fertigung der Aufsichtsarbeiten)

- ① 필기시험의 시험문제는 주 최고관청에서 출제한다. 주 최고관청은 허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및 답안작성시간을 결정한다. 답안작성시간은 1과목당 최소 4시간, 최고 6시간으로 한다. 주 최고관청은 답안에 응시자의 주소 및 서명 또는 수험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4]
- ② 시험문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험문제는 출석한 응시자에게 배포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밀봉하여 각 시험당일에 감독관에게 배부한다.
- ③ 주 최고관청은 신청이 있으면 신체장애자에게 필기시험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장애에 상응하는 감경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답안작성시간은 1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시험허가를 신청할 때 하여야 한다. 주 최고관청은 국공립병원 의사의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감독(Aufsicht)

- ① 주 최고관청은 답안작성이 언제나 감독하에 행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은 시험일에 출석한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면전에서 시험문제가 봉인되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여 시험문제를 배포한다.

감독관은 답안작성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하고, 답안은 늦어도 시험 시간종료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과 답안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주소와 서명 또는 수험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시켜야 한다.

- ③ 감독관은 응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보조용구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부정 행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④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응시자를 시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퇴장 당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일의 답안작성을 계속할 수 없다.

제 20 조 필기시험 중의 행동(Verhalten während der schriftlichen Prüfung)

- ① 응시자는 필기시험의 답안을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다른 응시자와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응시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도 아니된다. 응시자는 주 최고관청이 제공하였거나 허용한 보조용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응시자는 답안작성시간의 종료시에 답안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안에는 응시자의 주소 및 서명 또는 수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응시자는 시험 중의 행동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방해로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답안작성시간의 종료 전까지, 감독관에게 의사표시로써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시험의 포기(Rücktritt von der Prüfung)

- ① 응시자는 마지막 필기시험의 종료시까지 주 최고관청 또는 시험감독관에 대하여 시험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응시자가 1과목만이라도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포기의 경우에는 전체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필기시험에 관한 기록(Niederschrift über die Aufsichtsarbeit)

감독관은 각 시험일에 특히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답안작성시간의 시작 및 종료
2. 적발한 부정행위 및 기타의 규칙위반
3. 결석한 응시자의 이름,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장에서 퇴장 당한 응시자 또는 답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의 이름
4. 시험진행의 방해에 대한 이의제기(제20조 제4항) 및 이에 대한 조치
5. 응시자의 시험포기

제 23 조 부정행위와 규칙위반(Täuschungsversuche, Ordnungsverstöße)

- ① 응시자가 부정행위 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보조용구를 사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시험위원회는 그 답안을 “불가”로 평가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를 시험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②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는 응시자를 시험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③ 시험배제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필기시험의 평가(Bewertung der Aufsichtsarbeiten)

- ① 시험위원회는 시험평가를 위하여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의 제안에 따라 다수결로써 그 위원의 대리인을 필기시험시험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각 필기시험의 답안은 최소 2명의 시험위원이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시험위원 및 제2시험위원). 제1시험위원의 평가를 제2시험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시험위원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③ 시험의 평가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이 평가한 일치된 평점안을 시험위원회의 평점으로 한다. 평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은 일치된 평점안에 합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시험위원이 일치된 공통의 평점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가 평점을 결정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 외의 모든 경우에는 시험위원회가 평점을 결정한다.
- ⑥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답안은 “불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 25 조 필기시험의 결과와 구술시험의 배제(Ergebnis der schriftlichen Prüfung, Ausschluss von der mündlichen Prüfung)

- ① 필기시험에 대하여는 평균점을 기재한다.
- ② 응시자가 필기시험에 대한 평균점이 4.5를 넘는 경우에는 구술시험에서 제외시킨다. 시험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改正 2000. 6. 24]
- ③ 주 최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응시자에게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 26 조 구술시험(Mündliche Prüfung)

- ① 주 최고관청은 구술시험에 응시할 응시자에 대하여 늦어도 그 2주전에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할 때 필기시험의 일부평점을 통보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 ② 구술시험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언제든지 시험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 ③ 구술시험은 법 제37조 제3항에 계기한 시험과목 중 하나에 대하여 응시자의 약술보고 및 6개의 시험단위로 구성한다. 시험단위에서는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범위 중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기간동안 시험위원회의 6인 위원이 각각 하나의 시험단위를 맡아 활동한다. [改正 2000. 6. 24]
- ④ 약식 세무사시험(법 제37a조 제1항)에서 약술보고의 대상 및 응시자에 대한 질문은 법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계기한 시험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⑤ 적성검사(법 제37a조 제2항)에서 구술의 대상 및 응시자에 대한 질문은 법 제37조 제3항에 계기한 시험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의 대상 및 응시자에 대한 질문은 법 제37a조 제4항 제4문에 따라 누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 6. 24]
- ⑥ 전문사항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는 응시자에게 시험개시 반시간 전에 3가지의 주제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 ⑦ 각 응시자의 시험시간은 9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방해로 인하여 구술의 준비과정 또는 구술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구술시험의 종료 전까지, 감독관 또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사표시으로써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이를 구술시험에 준용한다.

제 27 조 구술시험의 평가(Bewertung der mündlichen Prüfung)

- ① 구술시험에서 보고와 각 시험단위는 각각 별도로 평가한다.
- ② 평점은 시험위원회의 결정한다.
- ③ 구술시험에 대하여는 하나의 총점만 기재한다.

제 28 조 시험의 결과와 재시험(Ergebnis der Prüfung, Wiederholung der Prüfung)

- ① 시험위원회는 구술시험에 이어 즉시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한다. 필기시험의 평균점과 구술시험의 총점을 합하여 2로 나눈 수치가 4.1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은 합격으로 한다.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시험합격 여부를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주 최고관청의 대표자 자격이다. 평점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응시자가 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응시자는 산출된 결정 근거의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 ③ 재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시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시험평가에 대한 사정(Überdenken der Prüfungsbewertung)

- ①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이의를 제기하고 주 최고관청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결정이 아직 그 효력을 발하기 전인 경우, 시험관은 시험성적에 대한 평가를 사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 인해 재정법원규칙 제47조에 규정한 항고 소송의 조사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한다.
- ② 주 최고관청은 소송 신청자에게 사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30 조 구술시험에의 불참(Nichtteilnahme an der mündlichen Prüfung)

- ① 구술시험은 응시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구술시험을 보지 아니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국공립병원 의사의 증명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응시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구술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후 시험을 볼 수 있다.
- ③ 응시자가 충분한 이유없이 구술시험을 결시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 31 조 구술시험에 관한 기록(Niederschrift über die mündliche Prüfung)

- ① 구술시험에 관하여는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1. 참석자의 성명
 - 2. 시험의 결과 및 응시자에 대한 통지
 - 3. 제28조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시험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대한 논의 [改正 2000. 6. 24]
 - 4. 특별한 사건
- ② 기록의 초본은 응시자의 원본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필기시험답안의 보존(Aufbewahrung der Aufsichtsarbeiten)

필기시험의 답안은 시험종료 후 최소 2년간 주 최고관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없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33조 (삭제)

제 2 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Bestellung als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r)

제 34 조 면허절차(Bestellungsverfahren)

- ① 세무사 면허신청에 관한 결정은 관할 세무사협회가 담당한다.
- ② 면허신청은 소정의 서식지에 의한다.
- ③ 응시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주체재지, 주거주지, 직업 및 본직으로 종사하는 직업의 장소
 2. 설치 예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응시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내지는 시험에 면제받은 때와 해당 주의 최고관청명
 4. 응시자가 과거 이미 면허신청을 한 사실의 여부와 그 신청서의 제출처
 5. 응시자의 경제상태에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6. 최근 12개월 이내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응시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또는 수사절차에 계류되어 있는지의 여부. 직업재판 절차 및 조세기본법과 세무사법상의 과태료절차에 대하여도 역시 같다.
 7. 응시자가 면허 취득 후 세무사업 이외의 업무를 계속 또는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업무내용
 8. 응시자가 관할 세무사협회에 제출하기 위한 신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받게 된 응시자는 이와 별도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징계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의 여부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에 수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성공적으로 치러진 세무사시험 또는 세무사시험면제에 대한 관할 주최고 관청의 증명서의 인증사본
 2. 여권사진 1매
 응시자가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는 선서회계사인 경우, 이와 별도로 응시자는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나 철회 또는 응시자에 대한 직업재판절차의 개시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관할 직업단체 또는 그 밖의 관할 사무소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세무사협회는 응시자의 기재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심사한다. 세무사협회는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속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35 조 직업증서(Berufsurkunde)

직업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면허세무사협회의 명칭 [改正 2000. 6. 24]
2. 설치장소 및 일자 [改正 2000. 6. 24]
3. 응시자의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4. 응시자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를 받았다는 표시
5. 직인
6. 서명

응시자의 다른 직업의 표시는 직업증서에 이를 기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학위 또는 국가가 수여한 칭호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 36 조 (삭제 2000. 6. 24)

제 37 조 (삭제 2000. 6. 24)

제 38 조 재면허(Wiederbestell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재면허 신청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사협회가 이를 결정한다.
- ② 재면허 신청은 소정의 서식지에 의한다.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이를 준용한다.
- ③ 면허세무사협회는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결정에 앞서 면허의 실효 또는 철회 당시에 응시자가 소속된 세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0조 제4항이 이를 준용한다.
- ④ 다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도 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39 조 (삭제 2000. 6. 24)

제 3 편

세무법인의 인가(Anerkennung als Steuerberatungsgesellschaft)

제 40 조 절차(Verfahren)

- ① 세무법인으로서의 인가신청은 그 법인의 지구내에 소재하는 세무사협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법 제 32조 제3항 제2문)의 성명, 직업, 주된 사무소 및 그밖에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자의 성명, 직업, 주된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改正 2000. 6. 24]
- ② 관할 세무사협회는 법인의 정관을 근거로 법 제32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세무사가 회사경영의 책임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세무법인의 인가에 대한 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改正 2000. 6. 24]
- ③ 인가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관할 세무사협회는 제41조가 규정한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세무법인을 인가한다. 상업등기부 또는 합명회사 등기부에 등기를 하기 전에 관할 세무사협회는 먼저 상업등기부 또는 합명회사 등기부에 등기될 때까지 모든 인가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가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 41 조 인가증서(Anerkennungsurkunde)

인가증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 세무사협회의 명칭 [改正 2000. 6. 24]
2. 인가의 장소 및 일자
3.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改正 2000. 6. 24]
4. 세무법인으로 인가하였다는 표시
5. 직인
6. 서명

인가증서에는 상호 외에 법인의 다른 명칭을 기재할 수 없다.

제 4 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Verleihung der Berechtigung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제 42 조 특별한 전문지식의 입증(Nachweis der besonderen Sachkunde)

- ①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부여신청은 신청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세무사협회에 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는 신청인의 지금까지의 직업 경력과 직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전문지식위원회 앞에서 치르게 될 구술시험을 통해 특별한 전문지식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또는 이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밖에 필요한 증명 서류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구술시험은 다음 과목을 포함한다.

1. 농림업의 과세상 특수성
2. 농지법(일자 상속법) 내지 민법상 상속규정
3. 농지임대차법
4. 부동산거래법
5. 농업금융제도의 기초
6. 회계제도 및 통계를 포함한 농업경제학

이 모든 분야를 모두 시험과목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각 신청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세무사협회는 구술시험에 응시하는 신청인에게 늦어도 2주전에 이에 대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술시험은 전문지식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언제든지 시험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전문지식위원회는 구술시험에 들어가자마자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장은 전문지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시험합격 여부를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평점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 ⑥ 신청인이 구술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외에 신청을 하기전에

적어도 5개의 장부를 작성하는 농림업 경영업체에서 3년간 세무상담을 행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세무상담은 법 제58조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까지 포함된다.

- ⑦ 법 제44조 제2항 제2문이 정한 교육은 제3항에 계기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1. 농업분야 대학 졸업

2. 그밖에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교육으로서 제1문이 정하는 교육 개별 참가자의 졸업시험 또는 기타 학업성적증명이 없는 전문세미나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⑧ 신청서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2문이 정하는 해당 교육 및 실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무사협회는 신청서와 증명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 또는 이에 의해 지정된 관청에, 그리고 신청인이 변호사 또는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일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변호사협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⑨ 구술시험의 면제신청에 대한 거절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43 조 전문지식위원회(Sachkunde-Ausschuss)

- ① 구술시험은 세무사협회에 조직된 전문지식위원회에서 판정한다.
- ② 시험은 또한 다른 세무사협회에 조직된 전문지식위원회로 위임할 수도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의 경우 구술시험 검열과 관련된 업무는 다른 세무사협회가 대리한다. 이 경우 법 제4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된다.
- ③ 전문지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한 인물들로 구성한다.
1. 세무사협회의 대표자 2인,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2. 농업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 또는 이에 의한 지정관청의 대표자
- ④ 세무사협회는 원칙적으로 3년 임기의 전문지식위원회 위원 및 대리인을 임명한다. 하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의 잔여임기로 한다. 농업을 관할하는 주 최고관청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을 하기 전에 그 대리인 또는 주 최고관청에 의해 지정된 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이를 준용한다.
- ⑤ 위원회는 다수결로써 결정한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44 조 부여와 부여증서(Verleihung, Verleihungsurkunde)

- ①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의 부여는 증서의 교부로써 한다.
- ② 증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부여 세무사협회의 명칭 [改正 2000. 6. 24]
 - 2. 증서수령인의 성명 및 직업명
 - 3. 증서에 표시된 자에게 직업명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부가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
 - 4. 부여의 장소 및 일자
 - 5. 직인
 - 6. 서명

제 5 편

직업등록부(Berufsregister)

제 45 조 등록부 관리기관(Registerführende Stelle)

- ① 직업등록부는 관할 세무사협회가 이를 관리한다. 세무사협회는 직업등록부의 관리를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 6. 24]
- ② 모든 직업등록부상의 등록 및 말소는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외 세무법인의 말소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재판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③ 직업등록부의 열람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에게 허용한다.

제 46 조 등록(Eintragung)

직업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1.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가 등록부를 관리하는 지역(등록부 관할구역) 내에서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주된 사무소를 등록부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
 - a)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 b) 면허일자 및 면허부여 관청 또는 세무사협회 [改正 2000. 6. 24]
 - c)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 d) 주된 사무소의 주소
 - e) 법 제5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직업상의 결합 [改正 2000. 6. 24]
 - f) 주된 사무소 이외의 모든 사무소 및 그 사무소 소장의 성명
 - g)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송달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한 a) 및 c) 내지 g)에 게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2. 등록부 관할구역에서 인가를 받았거나 그 주소를 등록부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
 - a) 상호 또는 명칭 및 법인형식 [改正 2000. 6. 24]
 - b) 세무법인의 인가일자 및 인가를 한 주최고관청 또는 세무사협회 [改正 2000. 6. 24]
 - c)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 d) 주소 및 우편수신처
 - e)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의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사원의 성명 [改正 2000. 6. 24]
 - f) 주된 사무소 이외의 모든 사무소 및 그 사무소 소장의 성명
- 또한 a) 및 c) 내지 f)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3. 등록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주된 사무소의 명칭 및 장소
 - b)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 c)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주소
 - d)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사무소 소장의 성명
- 또한 a) 내지 d)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4. 등록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세무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세무법인의 상호, 주소 및 법인형식
 - b)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
 - c)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주소
 - d)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의 사무소 소장의 성명
- 또한 a) 내지 d)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제 47 조 말소(Löschung)

- ① 직업등록부에서 말소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면허가 실효되거나 집행 요건을 갖춘 채 취소 또는 철회되었을 경우 [改正 2000. 6. 24]
 - b) 주된 사무소가 등록부 관할구역 이외로 이전하게 된 경우
 - 2.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제기한 사항
 - a) 인가가 실효되거나 집행 요건을 갖춘 채 취소 또는 철회되었을 경우 [改正 2000. 6. 24]
 - b) 주소가 등록부 관할구역 이외로 이전하게 된 경우
 - 3.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폐쇄한 경우 그 사무소
- ②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에 관한 등록은 세무법인이 제44조 제3항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 48 조 보고의무(Mitteilungspflichten)

- ① 직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계기한 자가 관할 세무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1. 제46조 제1호의 경우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 제46조 제2호의 경우 등록된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3. 제46조 제4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설치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改正 2000. 6. 24]
 4. 제46조 제4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설치한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 ② 직업등록부에서 말소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에 계기한 자가 관할 직업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7조 제1항 제1호 b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
 2. 제47조 제1항 제2호 b의 경우에는 그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3.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한 자
 4. 제47조 제2항의 경우는 그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제 49 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이 있는 단체, 사단 및 법인(Vereine, Personenvereinigungen und Körperschaften, die zur Führung der Bezeichnung "Landwirtschaftliche Buchstelle" befugt sind)

- ① 직업등록부에는 또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단체 및 사단으로서 그 주소가 등록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2.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에 부가하여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공법상의 법인 및 사단의 장부관리소로서 그 주소가 등록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말소한다.
- a) 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단 또는 법인이 해산된 경우
 - b) 법 제44조 제4항 또는 제5항이 계기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c) 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의 주소 또는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단 또는 법인의 장부관리소를 등록부 관할구역 이

외로 이전하는 경우

- ③ 등록 또는 말소는 단체, 사단 또는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말소는 직권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50 조 신고의무(Anzeigepflichten)

세무법인의 법적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및 법 제50a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은 매년 1월에 사원의 성명, 직업, 주소, 주된 사무소, 소유주식, 기본출자액 또는 자본출자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당해 대표권이 있는 기관의 구성원 또는 대표권이 있는 사원 및 법 제50a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이 서명한 사원명부를 관할 세무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의 명부 제출후 사원의 신상 또는 직업 및 그 관여범위에 관하여 변경이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신고하면 충분하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6 편

직업책임보험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제 51 조 보험의무(Versicherungspflicht)

- ① 독립적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은 그 직업활동(법 제33조, 제5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책임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면허 또는 인가기간 동안 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78조 또는 제83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할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도 보험에 의한 담보를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오로지 위임인을 위한 자유 협력자로 활동하는 독립적 세무사·세무대리사는 자유 협력 및 법 제63조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위험이 위임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배상이 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의무로 충분하다.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대한 보호는 위임인의 보험증명서를 통해 증명한다. 자유협력 외에 독자적인 위임이 보호될 경우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58조에 따라 오로지 피고용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에 대하여는 제2문이 적용된다. [改正 2000. 6. 24]
- ④ 보험계약은 독일 국내에서 영업할 자격을 지닌 보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감독법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일반 보험규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52 조 최저보험금액(Mindestversicherungssumme)

- ① 최저보험금액은 1 보험사고당 25만 유로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자기보유는 1,500유로까지 허용한다. 제3자가 손해를 주장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 또는 세무법인의 인가가 실효하는 경우에는 자기보유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 6. 24]
- ③ 1 보험년도에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년 최고 보상한도를 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최소 100만 유로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 53 조 기타의 보험계약의 내용(Weiterer Inhalt des Versicherungsvertrages)

- ① 보험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보험계약이 유효한 동안 발생한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호가 사법적인 내용의 법적 책임의무소송을 그 결과로 수반하게 된다는 것
 2. 일반적 대리인, 업무청산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그 리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직업활동 또는 대리활동 금지기간 동안 계속 하여 보험에 의한 보호가 유지된다는 것. 다만 공동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공동피보험자의 해외 위험분에 대한 보험자의 납부금을 국내에서 유로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 [改正 2000. 6. 24]
-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관할 세무사협회에 보험계약의 시기와 종기, 해 약고지 및 본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에 의한 보호를 침해하는 보 험계약의 변경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보험금은 각 개인적인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납부 금의 최고액을 의미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금의 1회 납부 액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 a) 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다수의 개인
 - b) 다수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똑같은 손해와 관련된 것
 - c) 위반으로 인한 모든 결과와 관련된 것. 이 때, 해당업무가 서로 법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연관이 될 경우, 아주 똑같거나 같은 종류의 실수 원인에서 기인한 여러가지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해서는 똑같은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의 납부금은 최저보험금액의 5배로 제한할 수 있다.

제 53a 조 제외사항(Ausschlüsse)

- 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에 의해 그 책임이 제외될 수 있다.
 1.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권
 2. 출납업무시 결손액, 지급이행시 위반사항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용인의 횡 령으로 발생한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
 3. 외국내의 거주지,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영업활동으로 인 한 배상청구권
 4. 터키를 제외한 비유럽국가들의 법 위반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배상청구권
 5.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 크로아티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의 법원 및 터키를 제외한 비유럽국가들의 법원에서 행해지는 배상청구권 [改正 2000. 6. 24]

- ②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의 법 위반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에 의해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세법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업무에 있어서 청구소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 6. 24]

제 54 조 다른 직업책임보험의 인가(Anerkennung anderer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en)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 동시에 변호사, 독일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럽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선서회계사로 임명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131b조 제2항, 제131f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시에 변호인법인, 공인회계법인 또는 선서회계법인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의무는 그 직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책임보험을 체결하면 충분하다. 다만 보험계약이 제52조 내지 제53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 6. 24]

제 55 조 면허전 보험계약체결의 증명(Nachweis des Versicherungsabschlusses vor der Bestellung)

- ①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면허를 신청하여 독립적으로 그 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면허 세무사협회에 본 시행령에 합치하는 직업책임보험의 체결을 보험자의 확인서로써 이를 증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잠정적인 배상약속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의 철회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배상약속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관할 세무사협회에 보험자의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의 인증사본으로써 직업책임보험의 체결을 증명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 ② 세무법인의 인가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6조 변경에 대한 신고(Anzeige von Veränderungen)

보험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종료, 해약고지 및 본 시행령이 정한 보험에 의한 보

108 독일 세무사법령

호를 침해하는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자의 변경, 직업활동형식의 변경에 의한 보험의무의 개시와 종료, 잠정적인 배상약속의 확약의 철회를 법 제67조에 따라 관할 세무사협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 6. 24]

제57조 (삭제 2000. 6. 24)

제 7 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Übergangsund
Schlussvorschriften)

제 58 조 경과규정(Übergangsregelung)

- 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시험허가에 대한 본 시행령의 규정은 2001년 시험허가부터 적용한다.
- ②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시험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본 시행령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③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있어서 본 시행령 제2편 및 제4편에 나오는 세무사협회에 대한 지정과제는 종래의 관할 세무행정관청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리한다. [全文改正 2000. 6. 24]

제 59 조 (삭제 2000. 6. 24)

제 2-2 부

근로소득세납세조합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Lohnsteuerhilfsvereine(DVLStHV))**

1975년 7월 15일자 근로소득세납세조합법시행령(BGB1. I S. 1906)은 2000년 6월 24일자(BGB1. I S. 874) 세무사 업무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7. StBÄndG)을 통해 최종 개정되었다. 1990년 12월 31일자 법 제1항 제9호(BGB1. I S. 2756)를 통해 개정된 1975년 11월 4일자 공고 판(BGB1. I S. 2735)에 들어 있는 세무사법 제31조를 근거로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공고한다.

제 1 편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Anerkennung als Lohnsteuerhilfverein)

제 1 조 신청(Antrag)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에 대해서는 조합의 거주지역내에 소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주 세무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2 조 증명(Nachweise)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신청시 정관(법 제15조 제2항)의 인증등본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능력의 취득에 관한 증명
2. 이사회 회원의 성명 및 주소가 적힌 목록
3. 세무사법 제4조 제11호에 따른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통해 발생하게 될 책임의무위험에 대한 보험의 성립에 관한 증명
[개정 2000. 6. 24]
4. 인가를 관장하는 주 세무청(제1조)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 예정인 사무소의 목록. 다만 그 이유와 증명이 부가된, 제4a조 및 4b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통지사항에 한한다.
5.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의 사본

제 3 조 인가증서(Anerkennungsurkunde)

인가증서(법 제17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관청의 명칭
2. 인가의 장소 및 일자
3. 조합의 상호 및 소재지
4.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표시
5. 직인
6. 서명

제 4 조 인가거부(Ablehnung der Anerkennung)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거부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편

사무소 및 사무소 소장

(Beratungsstellen, Beratungsstellenleiter)

제 4a 조 사무소의 개설(Eröffnung einer Beratungsstelle)

사무소개설에 관한 통지(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주소
2. 다른 기업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만일 있다면 어떠한 공간적, 개인적 및 조직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에 관한 사항

제 4b 조 사무소 소장의 임명(Bestellung eines Beratungsstellenleiters)

- ① 사무소 소장의 임명에 관한 통지(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는 이를 허가 받는 사무소의 주소 및 사무소 소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직업
2. 그 이전에 이미 세무사법 제4조 제11호에 따른 자격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및 만일 있다면 어떤 근로소득납세조합인지에 관한 사항 [改正 2000. 6. 24]
3. 계속해서 근로소득 납세조합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의 여부 및 만일 그럴 의사가 있다면 어떤 다른 근로소득납세조합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직업활동에 관한 증명, 특히 활동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진술과 더불어 제23조 제3항 제1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대한 증명
2.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의 사무소 소장의 견해
 - a) 자신의 경제상태에 하자가 없다는 것.
 - b) 최근 12개월 이내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형사절차 또는 수사절차에 계류되어 있는지 여부, 직업재판절차 및 조세기본법과 세무사법상의 과태료절차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c)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행적증명서의 교부를 연방주민등록관청에 신청하였다는 것.

제 3 편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명칭(Verzeichnis der Lohnsteuerhilfvereine)

제 5 조 등록(Eintragung)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등록되어야 한다.

1. 상급 재무구역 내에 소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소득납세조합 및 다음 각호
a) 조합 경영진의 성명, 거주지 및 주소
b)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 일자 및 인가를 허락한 주 세무청
c) 이사회 회원의 성명 및 주소
d) 조합의 전체 사무소 및 a, c 및 항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2. 상급 재무구역 내에 있는 사무소 및 다음 각호
a) 조합 이사회의 성명, 거주지 및 주소
b) 사무소의 주소
c) 사무소 소장의 성명 및 주소
또한 a) 내지 c)에 제기한 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제 5a 조 등록거부(Ablehnung der Eintragung)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등록부 속에 사무소 또는 사무소 소장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4를 준용한다.

제 6 조 말소(Löschung)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등록부에서 말소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경우의 근로소득납세조합
a) 근로소득납세조합의 인가가 말소되거나 또는 확실히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b) 주소 및 업무관리가 상급 재무구역 이외로 이전한 경우
2. 사무소가 폐쇄된 경우의 사무소

제 7 조 신고의무(Meldepflichten)

근로소득납세조합의 대리권한자는 등록 또는 말소가 필요한 사건 개시 후 2주 내에 등록부를 작성하는 주 세무청에 제5조 제1호 a), c) 및 제2호, 제6조 제1

호 b)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동시에 본 법규의 규정에 따른 통지로 적용한다.

제 8 조 등록 및 말소에 관한 통지(Mitteilung über Eintragung und Löschung)

- ① 등록부를 작성하는 관청은 사무소 개입에 필요한 요건(법 제23조 제6항)인 등록을 하도록 근로소득납세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이 주소와 업무관리를 다른 주 세무청 구역내에 가지게 될 경우라도, 이러한 통지는 역시 송달되어야 한다.
- ② 조합이 등록부에서 말소되는 경우, 조합 사무소의 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주 세무청 및 관할 등기법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편

최종규정(Schlußvorschriften)

제 9 조 (삭제)

제 10 조 시행(Inkrafttreten)

본 시행령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日本 税理士法令

目 次

일본 세리사법령

제 1 부 세리사법

제 1 장	총칙	제1조~제4조	124
제 2 장	세리사시험	제5조~제17조	127
제 3 장	등록	제18조~제29조	133
제 4 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제30조~제43조	137
제 5 장	세리사의 책임	제44조~제48조	142
제 5 장의 2	세리사법인	제48조의2~제48조의21	144
제 6 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49조~제49조의21	149
제 7 장	잡칙	제50조~제57조	155
제 8 장	벌칙	제58조~제64조	158
부 칙			160

제 2 부 세리사법시행령

제 1 조	(세리사업무의 대상이 아닌 조세)	179
제 1 조의2	(신고 등)	179
제 1 조의3	(회계에 관한 사무)	180
제 2 조	(회계검사 등에 관한 행정사무)	180
제 3 조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180
제 4 조	(회계에 관한 사무)	181
제 5 조	(법률상 자격을 가지는 자)	181
제 6 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의 기준)	181
제 6 조의2	(수험수수료 등)	181
제 6 조의3	(세리사회의 통지)	181
제 7 조	(세리사회의 설립)	181

제 7 조의2 (세리사회의 회칙 변경)	182
제 8 조 (총회의 소집)	182
제 9 조 (총회의 의사)	182
제 10 조 (회원명부)	183
제 11 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설립)	183
제 11 조의2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의 변경)	183
제 12 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총회)	183
제 12 조의2 (자격심사회의조직 및 운영)	183
제 13 조 (세리사회의 보고)	184
제 14 조 (임시 세무서류의 작성 등을 허가하는 임직원이 속한 법인 기타 단체)	184
제 14 조의2 (행정서사가 세무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는 조세)	184
제 15 조 (당해 직원의 증표휴대)	184
부 칙	185

제 3 부 세리사법시행규칙

제 1 장 세리사의 업무	제1조	196
제 1 장의2 세리사시험	제1조의2~제7조	196
제 2 장 등록	제8조~제14조의3	201
제 3 장 잡칙	제15조~제26조	205
부 칙		208

제 4 부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제6조)	218
제 2 장 임원	(제7조~제18조)	219
제 3 장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제19조~제21조)	221
제 4 장 고문, 상담역 및 평의원	(제22조~제24조)	222
제 5 장 총회	(제25조~제32조)	223
제 6 장 세리사의 등록	(제33조~제50조)	224
제 6 장의2 세리사법인의 신고	(제50조의2~제50조의7)	229
제 7 장 자격심사회	(제51조~제54조)	231

제 8 장	세제심의회	(제55조~제58조)	232
제 9 장	품위유지	(제59조~제62조)	233
제 10 장	장부작성	(제63조~제64조)	233
제 11 장	연수	(제65조~제65조의2)	234
제 12 장	세무원조	(제66조~제67조)	235
제 13 장	감독	(제68조~제73조)	235
제 14 장	회비 및 거출금	(제74조~제77조)	237
제 15 장	서무 및 회계	(제78조~제86조)	237
제 16 장	새로이 설립된 세리사회 등에 관한 특례	(제87조~제91조)	240
부 칙			242

第 1 部 稅理士法

(日本 稅理士法)

制定 1951. 6. 15 法律 第237號
改正 1952 法第216號, 1952 法第262號, 1953 法第164號,
1953 法第165號, 1954 法第 95號, 1955 法第155號,
1956 法第165號, 1960 法第113號, 1961 法第137號,
1961 法第145號, 1962 法第 67號, 1962 法第161號,
1965 法第 36號, 1966 法第 85號, 1967 法第 36號,
1968 法第 21號, 1970 法第 8 號, 1971 法第101號,
1978 法第 82號, 1980 法第 26號, 1981 法第 64號,
1983 法第 78號, 1985 法第 86號, 1986 法第 66號,
1988 法第108號, 1988 法第110號, 1991 法第 73號,
1993 法第 89號, 1995 法第 91號, 1997 法第 9 號,
1999 法第 87號, 1999 法第102號, 1999 法第151號,
1999 法第160號, 2000 法第 49號, 2001 法第 38號,
2001 法第129號

第1章 總 則

第1條(稅理士의 使命) 稅理士는 稅務에 관한 專門家로서 독립된 公정한 입장에서 申告納稅制度의 理念에 따라 納稅義務者의 信賴에 부응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에 規定된 納稅義務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使命으로 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第2條(稅理士의 業務) ① 稅理士는 他人의 요구에 응하여 租稅(印紙稅, 登錄免許稅, 關稅, 法定外普通稅(地方稅法(1950년 法律 第226號) 第13條의 3 第4項에 規定하는 道府縣 法定外普通稅 및 市町村 法定外普通稅를 말한다), 法定外目的稅(同項에 規定하는 法定外目的稅를 말한다)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음에서 揭記하는 事務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1953 法 第165號, 1954 法 第95號, 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1988 法 第108號, 1999 法 第87號 改正)

1. 稅務代理

稅務官公署(稅關官署를 제외하고, 國稅不服審判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租稅에 관한 法令이나 行政不服審査法(1962년 法律 第160號)의 規定에 입각한 申告, 申請, 請求 또는 不服請求(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行爲를 포함하고, 酒稅法(1953년 法律 第6號) 第2章의 規定에 관련된 申告, 申請 및 不服請求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以下「申告 등」이라 한다)에 관하거나, 또는 당해 申告 등이나 稅務官公署의 調査나 處分에 관하여 稅務官公署를 상대로 하는 主張이나 陳述에 관하여 代理 또는 代行하는 것(다음 號의 稅務書類의 작성에 그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962 法 第67號, 第161號, 1980 法 第26號 改正)

2. 稅務書類의 作成

稅務官公署에 대한 申告 등에 관계되는 申告書, 申請書, 請求書, 不服請求書 기타 租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입각해서, 作成하고 또한 稅務官公署에 提出하는 書類로서 財務省令으로 정한 것(以下「申告書 등」이라 한다)을 作成하는 것을 말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3. 稅務相談

稅務官公署에 대한 申告 등, 第1號에 規定하는 主張이나 陳述 또는 申告書 등의 작성에 관하여 租稅의 課稅標準 등 (國稅通則法(1962 法律 第66號) 第2條 第6號 가項부터 바項까지 계기하는 事項 및 地方稅에 관련된 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計算에 관한 事項에 관하여 相談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② 稅理士는 前項에 規定하는 業務(以下「稅理士業務」라고 한다)외에 稅理士의 名稱을 사용하여 他人의 要求에 응하여 稅理士業務에 부수해서 財務書類의 作成, 會計帳簿의 記帳의 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事務를 업무로 할 수 있다. 단 다른 法律에서 그 事務를 업무로 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事項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③ 前2項의 規定은 稅理士가 다른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第48條의 2 에 規定하는 稅理士法人을 말한다. 다음 章, 第4章 및 第5章에서 같다)의 補助者로서 이 項들의 業務에 從事해도 무방하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2條의2 ① 稅理士는 租稅에 관한 事項에 관하여 裁判所에서 補佐人으로서 辯護士인 訴訟代理人과 함께 出頭하여 陳述할 수 있다.(2001년 法 第38號 追加)

② 前項의 陳述은 當事者 또는 訴訟代理人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當事者 또는 訴訟代理人이 同項의 陳述을 바로 취소하거나 또는 更正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上同)

第3條(稅理士의 資格)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は 稅理士가 될 資格을 갖는다. 단,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者에 대해서는 租稅에 關한 事務 또는 會計에 關한 事務로서 政令에 정한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하여 2年 以上을 必要로 한다.(195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1.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1980 法 第26號 改正)
2. 第6條에 정한 試驗科目의 全部에 대하여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試驗이 免除된 者 (上同)
3. 辯護士(辯護士가 될 資格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上同)
4. 公認會計士(公認會計士가 될 資格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上同)

② 公認會計士法(1948年 法律 第103號) 第16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 第2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는 者は 이 法律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認會計士로 간주한다.

第4條(缺格條項) 다음 各호의 1에 해당하는 者は 法 前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가 될 資格이 없다.(1980 第26호, 1999 法 第151號 改正)

1. 未成年者
2. 成年被後見人(중래의 금치산자) 또는 被保佐人(중래의 準금치산

- 자)(1999 法 第151號 改正)
3. 破産者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國稅나 地方稅에 관한 法令 또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禁錮 以上の 刑을 받은 者로서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5. 國稅나 地方稅에 관한 法令 또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罰金刑을 받은 者 또는 國稅犯則團束法(1900 法律 第67號)(地方稅法에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關稅法(1954 法律 第61號)(噸稅法(1957 法律 第37號) 및 特別噸稅法(1957 法律 第38號)에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通告處分(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에 관계되는 通告處分을 제외한다)을 받은 者로서 각각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그 通告의 취지를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1961 法 第137號, 2001 法 第38號 改正)
 6. 國稅나 地方稅에 관한 法令 및 이 法律 이외의 法令의 規定에 따라 禁錮 以上の 刑을 받은 者로서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001 法 第38號 改正)
 7. 懲戒處分에 의하여 稅理士業務의 수행이 금지된 者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8. 國家公務員法(1947 法律 第120號), 國會職員法(1947 法律 第85號)또는 地方公務員法(1950 法律 第261號)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免職의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1956 法 第165號, 1971 法 第101號, 1978 法 第82號, 1980 法 第26號 改正)
 9. 辯護士法(1949 法律 第205號) 또는 外國辯護士에 의한 法律事務 취급에 관한 特別措置法(1986 法律 第66號), 公認會計士法, 辦理士法(2000년 法律 第49號), 司法書士法(1950 法律 第197號), 行政書士法(1951년 法律 第4號), 社會保險勞務士法(1968 法律 第89號) 또는 不動產의鑑定評價에 관한法律(1963 法律 第152號)의 規定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辯護士會로부터의 除名,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士補의 登錄抹消, 辦理士, 司法書士 또는 行政書士의 업무의 금지, 社會保險勞務士의 失格處分 또는 不動產鑑定士나 不動產鑑定士補의 登

錄抹消 處分을 받은 者로서 그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이들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업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자를 제외한다) (1956 法 第165號, 1971 法 第101號, 1978 法 第82號, 1980 法 第26號, 1981 法 第64號, 1985 法 第86號, 1986 法 第66號, 2000 法 第49號 改正)

10. 稅理士의 登錄이 拒否된 者 중 第22條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 또는 第25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의 登錄이 취소된 者로서, 이러한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2章 稅理士試驗

第5條(受驗資格)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理士試驗을 응시할 수 있다.(2001년 法 第38號 改正)

1. 會計士補(會計士補가 될 資格을 갖춘 者를 포함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2. 다음에 계기하는 事務 또는 業務에 從事한 기간이 通算해서 3年 이상이 되는 者 (2001 法 第38號 改正)
 - 가. 稅務官公署에서 事務 또는 기타 官公署에서 國稅(關稅, 噸稅 및 特別噸稅를 제외한다, 第24條, 第36條, 第41條의3 및 第46條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
 - 나. 行政機關에서 政令에 정하는 會計檢査, 金融檢査 또는 會社 기타 團體의 經理에 관한 行政事務
 - 다. 銀行, 信託會社, 保險會社 또는 特別法律에 의해 設立된 金融業務를 영위하는 法人에 있어서 政令에 정하는 대출 기타 資金의 運用(貸出先의 經理에 대한 審査를 포함한다)에 관한 事務
 - 라. 法人(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特別會計를 포함한다) 또는 事業을 영위하는 個人的 會計에 관한 事務로서 政令에 規定한 것
 - 마. 稅理士나 稅理士法人, 辯護士나 辯護士法人 또는 公認會計士, 會計士補나 監査法人의 業務의 補助事務

바.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 기타 政令에 정하는 法律上 資格을 가진 者の 業務

3. 學校教育法(1947 法律 第26號)의 規定에 의한 大學이나 高等專門學校를 卒業한 者로 이들 學校에서 法律學 또는 經濟學을 修了한 者 또는 同法 第5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해 同法에 의한 大學을 卒業한 者와 同等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財務省令에 정하는 學校에서 法律學 또는 經濟學을 수료한 者(上同)

4. 司法試驗 第2次 試驗에 合格한 者(上同)

5. 國稅審議會가 法律學 또는 經濟學에 관해 前2號에 제기한 者와 同等 이상의 學力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者(上同)

② 前項 第2號에 제기된 事務 또는 業務의 2 이상 從事한 者는 이들 事務 또는 業務의 둘 이상 從事한 期間을 通算하는 경우에 그 期間이 3年 이상이 될 때는 稅理士試驗에 응시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改正)

③ 前2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第1項 第2號에 제기한 事務 또는 業務와 유사한 事務 또는 業務로서 國稅審議會의 認定을 받은 事務 또는 業務는 同號에 제기한 事務 또는 業務로 간주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④ 第1項 第5號 및 前項에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認定의 절차에 관하여는 財務省令으로 정한다.(上同)

第6條(試驗의 目的 및 試驗科目) 稅理士試驗은 稅理士가 되는데 必要한 學識 및 그 應用能力을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判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에 정한 科目에 대하여 행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1. 다음에 제기한 科目(가目中서 目까지 제기한 科目에 있어서는 國稅通則法 기타 法律에 정하는 당해 科目에 관한 事項을 포함한다. 이하 「稅法에 속하는 科目」이라 한다) 중 受験者가 선택하는 3科目. 단, 가目 또는 나目に 제기한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1953 法 第164號, 1954 法 第95號, 1962 法 第67號, 1980 法 第26號, 1988 法 第108號 改正)

가. 所得稅法

나. 法人稅法

다. 相續稅法

라. 消費稅法 또는 酒稅法 중 1科目

마. 國稅徵收法

바. 地方稅法 중 道府縣民稅(都民稅를 포함한다) 및 市町村民稅(特別

區民稅를 포함한다)에 관한 部分 또는 地方稅法 중 事業稅에 관한 部分 중 1科目

사. 地方稅法 중 固定資產稅에 관한 部分

2. 會計學 중 簿記論 및 財務諸表論의 2科目 (이하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이라 한다)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7 條(試驗科目의 一部 免除 등) ①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試驗科目 중 一部科目에 대하여 政令으로 정한 基準 이상의 성적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해 그 후에 행해지는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試驗을 免除한다.

② 稅法에 속하는 科目 기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項 및 다음 條 第1項 第1號에 있어서 「稅法에 속하는 科目 등」이라 한다)에 관한 研究로 석사 학위(學校教育法 第68條의2에 規定하는 學位를 말한다. 다음 項 및 다음 條 第1項에 있어서 같다)를 수여받은 者로서 稅理士試驗에서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1科目에 대해서 政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성적을 받은 者가 당해 研究가 稅法에 속하는 科目 등에 관한 것이라는 國稅審議會의 認定을 받은 경우에는, 試驗科目 중 당해 1科目 이외의 稅法에 속하는 科目에 대해서 前項에 規定된 政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기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項 및 다음 條 第1項 第2號에서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등」이라 한다)에 관한 研究로 碩士學位를 수여받은 者로서 稅理士試驗에서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중 어느 1科目에 대해서 政令에 정하는 基準 以上の 成績을 받은 者가 당해 研究가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등에 관한 것이라는 國稅審議會의 認定을 받은 경우에는, 試驗科目 중 당해 1科目 이외의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에 대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上同)

④ 稅理士試驗의 試驗科目이었던 科目 중 試驗科目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成績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당해 科目은 前條 第1號에 제기된 試驗科目으로 간주한다.(1953 法 第164號 追加, 2001 法 第38號 改正)

⑤ 第2項 및 第3項으로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認定節次에 관해서는 財務省令으로 정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8 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해서는 그 申請에 의해 稅理士試驗에서 당해 각호에 제기하는 科目의 試驗을 免除한다.(1980 法 第

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大學 등(學校教育法の 規定에 의한 大學이나 高等專門學校 또는 同法 第68條의2 第3項 第2號에 規定하는 大學이나 大學院에 相當하는 教育을 行하는 課程이 설치된 教育施設을 말한다. 다음 號에서 같다)에서 稅法에 속하는 科目 등의 教授, 助教授 또는 講師의 職에 재직한 期間이 通算해서 3年 이상이 되는 者 및 稅法에 속하는 科目 등에 관한 研究로 博士學位를 授與받은 者에 관하여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2001 法 第38號 改正)
2. 大學 등에서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등의 教授, 助教授 또는 講師의 職에 재직한 期間이 通算해서 3年 이상 되는 者 및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등에 관한 研究로 博士學位를 수여받은 者에 대해서는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上同)
3. 會計士補(會計士補가 될 資格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4. 官公署에서의 事務 중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 消費稅 또는 酒稅의 賦課 또는 이들 國稅에 관한 法律의 立案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10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것(1953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88 法 第108號 改正)
5. 官公署에서의 國稅에 관한 事務 중 前號에서 規定하는 事務 이외의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15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것.(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6. 官公署에서의 事務 중 道府縣民稅(都民稅를 포함한다), 市町村民稅(特別區民稅를 포함한다), 事業稅 또는 固定資産稅의 賦課 또는 이들 地方稅에 관한 法律의 立案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10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地方稅에 관한 것.(1954 法 第9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7. 官公署에서의 地方稅에 관한 事務 중 前號에서 規定하는 事務 이외의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15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地方稅에 관한 것.(1980 法 第26號 改正)
8. 第6號에 規定하는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15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9. 第7號에 規定하는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20年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해서는 稅法에 속하는 科目 (1980 法 第26號 追加)
10. 다음에 記기한 者로 官公署에서의 國稅나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管理하거나 또는 監督하는 일을 職務로 하는 職 또는 國稅나 地方稅에 관한 고도의 知識이나 經驗을 必要로 하는 事務를 처리하는 것을 職務로 하는 職으로서 財務省令에 정하는 職에 在職한 期間이 通算해서 5年 이상이 되는 者 중 國稅審議會가 指定한 研修(財務省令에 정하는 要件을 충족시키는 연수 중 國稅審議會가 稅理士試驗의 試驗科目 중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에 대해서 前條 第1項에 規定하는 成績을 받은 者가 지닌 學識과 동등한 정도의 學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指定한 연수를 말한다)를 修了한 者에 대하여는 會計學에 속하는 科目 (1980 法 第26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 가. 第4號부터 第6號까지 規定하는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23年 이상이 되는 者
 - 나. 第7號에 規定하는 事務에 從事한 期間이 通算해서 28年 이상이 되는 者
 - 다. 가목에 規定하는 期間을 通算한 年數의 23분의 28에 相當하는 年數와 나목에 規定하는 期間을 通算한 年數를 合계한 年數가 28年 이상이 되는 者

② 前項 第1號 또는 第4號로부터 第9號까지 規定하는 職 또는 事務 중 試驗의 免除科目이 동일한 職 또는 事務의 둘 이상에 從事한 者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職 또는 事務에 대해서 이들 號에 規定하는 年數를 10年으로 하는 비율에 의하여 年數를 換算하여 이들 職 또는 事務의 둘 이상에 從事한 期間을 通算한 경우에, 그 期間이 10年 이상이 될 때에는 그 申請에 따라 稅理士試驗에서 당해 科目의 試驗을 免除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第1號 또는 第8號나 第9號에 規定하는 職 또는 事務에 從事한 者에 관하여는 당해 職 또는 事務에 從事한 期間을 稅法에 속하는 科目 중 國稅에 관한 과목 또는 地方稅에 관한 科目 중 어느 하나를 면제하는 다른 事務에 從事한 期間에 通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1953 法 第165號, 1954 法 第9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88 法 第108號, 1999 法 第160號.)

第 9 條(受驗手數料 등) ① 稅理士試驗을 응시하려고 하는 者는 實費를 감안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의 受驗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1966 法 第85號 改正)

② 第7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으려고 하는 者는 실비를 감안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의 認定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2001년 法 第38號 追加)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한 受験手數料는 稅理士試驗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2001 法 第38號 改正)

第 10 條(合格의 取消 등) ① 國稅審議會는 부정한 수단으로 稅理士試驗을 치르거나 또는 치르려고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停止시키거나 또는 合格 決定을 취소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② 國稅審議會는 第7條 第2項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 또는 第8條 第1項 각 호의 規定에 의한 免除를 決定한 후, 당해 認定 또는 免除를 받은 者가 虛偽 또는 부정한 事實에 입각해서 그 認定 또는 免除를 받은 者라고 判明되었을 때에는 그 認定 또는 免除를 취소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國稅審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받은 者에 대해서 情狀에 의해 3年 이내의 期間을 정해서 稅理士試驗을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11 條(合格證書 등) ①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에게는 당해 試驗에 合格한 것을 증명하는 證書를 수여한다.

② 試驗科目 중 一部 科目에 대하여 政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成績을 받은 者에게는, 그 基準 이상의 成績을 받은 科目을 通知한다.

第 12 條(試驗의 執行) ① 稅理士試驗은 國稅審議會가 실시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② 稅理士試驗은 每年 1 회 이상 실시한다.

第 13 條(試驗의 細部事項) 이 法律로 정하는 것 이외에 稅理士試驗(第8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포함한다)의 執行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財務省令으로 정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第 14 條부터 第 17 條까지 削除 (1980 法 第26號 削除)

第3章 登 録

第 18 條(登録) 税理士가 될 자격이 있는 者가 税理士가 되고자 할 때는 税理士名簿에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姓名, 生年月日, 事務所の 名稱 및 所在地 기타 事項의 登録을 받아야 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19 條(税理士名簿) ① 税理士名簿는 日本税理士會連合會에 비치한다. (1961 法 第136號 改正)

② 税理士名簿의 登録은, 日本税理士會連合會가 행한다.(上同)

③ 日本税理士會連合會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税理士名簿를 磁氣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事項을 확실히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第41條 및 第48條의10에 있어서 같다)로써 만들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20 條(變更登録) 税理士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한 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는 지체없이 變更登録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 21 條(登録의 申請) ①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録을 하고자 하는 者는 同條에 規定하는 事項 기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기재한 登録申請書를, 第3條 第1項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税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税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申請書에는 그 副本 3통을 첨부하고, 同項의 税理士會는 당해 申請書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당해 副本 1통씩을 당해 申請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 그리고 당해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町村(特別區 및 全部事務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都道府縣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22 條(登録에 관한 決定) ① 日本税理士會連合會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申請書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申請者가 税理士가 될 資格을 가지고, 또한 第24條 各號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者라고 인정하였을 때는 税理士名簿에 登録하고, 당해 申請者가 税理士가 될 資格을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同條 各號 중 하나에 해당되는 者라고 인정했을 때는 登

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에 관련있는 者에 대하여 登錄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등록을 거부하려고 할 때는 第49條의16에 規定하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에 입각해서 해야만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해 申請者에 그 취지를 通知하여 상당 기간 내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1961 法 第137號 改正)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名簿에 登錄하였을 때는 당해 申請者에게 稅理士證票를 交付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할 때는 그 理由를 附記한 서류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申請者에 通知하여야만 한다.(1961 法 第137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④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할 경우에는 당해 申請者가 稅理士가 될 자격 또는 第24條 각호에 規定하는 登錄拒否事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할 事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虛僞로 기재하여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提出한 者일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서류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23 條(國家 등과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간의 通知) ① 稅務署長 및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長은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提出한 者가 稅理士가 될 資格이 없거나 또는 다음 條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라고 인정될 때는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書의 副本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事實을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通知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改正)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拒否하였을 때는 그 취지를 國稅廳長 및 당해 申請者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町村 및 都道府縣의 長에게 通知해야만 한다.(1961 法 第137號 改正)

第 24 條(登錄拒否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理士의 登錄을 받을 수 없다.(1980 法 第26號 改正)

1. 懲戒處분에 의하여 辯護士, 外國法事務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나 社會保險勞務士의 業務가 停止된 者 또는 不動產鑑定業者의 業務에 관한 不動產의 鑑定評價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不動產鑑定士나 不動產鑑定士補로 현재 그 處分을 받고 있는 者 (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1986 法 第66號 改正)

2. 報酬를 받는 公職(國會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議會의 議員職 및 非常勤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者
3.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하거나 면하려고 한 경우, 또는 면하게 하였거나, 면하게 하려고 한 者로 그 行爲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1961 法 第137號 改正)
4. 不正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환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者로서 그 行爲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961 法 第137號 改正)
5. 國稅 또는 地方稅 또는 會計에 관한 事務에 대하여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行爲를 한 者로서 그 行爲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961 法 第137號 改正)
6. 心身의 장애로 인하여 稅理士業務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者 (上同)
7.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稅理士의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로서의 適格性이 결여된 者 (上同)

第 24 條의2(登録이 拒否된 경우 등의 審査請求) ①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이 拒否된 者는 당해 處分에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行政不服審査法의 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62 法 第161號,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申請書를 提出한 者는 당해 申請書를 提出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 申請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登録이 拒否된 것으로 보고 國稅廳長에 대하여 前項의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審査請求가 있었던 날에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登録을 拒否한 것으로 간주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62 法 第161號 追加)

③ 前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棄却하는 경우에 審査請求人이 第22條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國稅廳長은 裁決書에 그 취지를 附記하여야 한다.(1962 法 第161號 追加)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가 理由가 있을 때는 國稅廳長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여야 한다.(上同)

第 25 條(登録의 取消)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로 登録을 한 者가

다음의 各號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第49條의16에 規定하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에 따라 당해 登錄을 취소할 수 있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51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稅理士가 될 資格 또는 第24條 各호에 規定하는 登錄拒否 事由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여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書를 提出하여 그 申請에 따라 당해 登錄을 한 者임이 判明되었을 때.(2001 法 第38號 追加)

2. 第24條 第6號에 規定하는 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上同)

3. 2年 이상 계속하여 所在가 不明일 때 (上同)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項 第1號 또는 第2號의 어느 것에 해당하게 되어서 同項의 規定에 의해 登錄을 취소할 때는 그 理由를 附記한 서류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處分을 받는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93 法 第89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前條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登錄이 취소된 者에 있어서 당해 處分에 不服이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62 法 第161號, 1980 法 第26號, 1993 法 第89號, 1999 法 第151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26條(登錄의 抹消)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가 다음의 各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1. 그 業務를 廢止하였을 때

2. 死亡했을 때

3.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4. 前號에 規定하는 것 이외에 第4條 第2號로부터 第9號까지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와 기타 사유에 의해 稅理士의 資格을 상실한 때 (上同)

② 稅理士가 前項 第1號, 第2號 또는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신고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第27條(登錄 및 登錄抹消의 公告)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의 登錄을 한 때 및 당해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 및 登錄을 抹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28 條(稅理士證票의 返還) ① 稅理士의 登錄이 말소되었을 때는 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稅理士證票를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返還하여야 한다. 稅理士가 第43條의 規定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前項 후단의 規定에 해당하는 稅理士가 稅理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申請에 의해 稅理士證票를 그 者에게 再交付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29 條(登錄의 細部事項) 이 法律에 정하는 것 외에 登錄의 절차, 登錄의 抹消, 稅理士名簿, 稅理士證票 기타 登錄에 관한 細部事項에 대해서는 財務省令으로 정한다.(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第 4 章 稅理士의 權利 및 義務

第 30 條(稅務代理 權限의 明示) 稅理士는 稅務代理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稅務官公署에 提出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31 條(特別委任을 요하는 事項) 稅理士는 稅務代理를 할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行爲를 할 때는 特別委任을 받아야 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1. 不服申請의 取下 (1962 法 第161號 改正)
2. 代理人의 選任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32 條(稅理士證票의 提示)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稅務代理를 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稅務代理에 관련있는 稅理士가 稅務官公署의 職員과 面接할 때는 당해 稅理士는 稅理士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改正)

第 33 條(署名捺印의 業務) ①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稅務代理를 할 경우에 있어서 租稅에 관한 申告書 등을 작성하여 稅務官公署에 提出할 때는 당해 稅務代理와 관련있는 稅理士는 당해 申告書 등에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申告書 등이 租稅의 課稅標準 등에 관한 申告書 또는 租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の 還給請求에 관한 書類일 때에는 당해 申告書 등에는 本人(그 者가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の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1965 法 第36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稅務書類를 作成한 때에는 당해 稅務書類의 作成에 관련있는 稅理士는 당해 書類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改正)

③ 稅理士는 前2項의 規定에 따라 署名捺印한 때에는 稅理士임과 기타 財務省令에 정하는 事項을 附記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署名捺印의 유무는 당해 書類의 効力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⑤ 第1項 後段의 規定은 法人稅法(1965년 法律 第34號) 第151條 또는 地方稅法 第72條의35의 規定(法人의 代表者 등의 署名捺印)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1965 法 第36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33 條의2(計算事項, 審査事項 등을 記載한 書類의 添附) ①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은 國稅通則法 第16條 第1項 第1號에 계기한 申告納稅方式 또는 地方稅法 第1條 第1項 第8號 또는 第11號에 계기한 申告納付 또는 申告納入의 方法에 의한 租稅의 課稅標準 등을 기재한 申告書を 作成하였을 때는 당해 申告書の 作成에 관하여 計算, 整理 또는 相談에 응한 事項을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記載한 서류를 당해 申告書에 添附할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5 法 第36號, 1968 法 第21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은 前項에 規定하는 租稅의 課稅標準 등을 記載한 申告書로 他人이 작성한 것에 대하여 相談을 받고 이를 審査한 경우에 당해 申告書가 당해 租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따라 作成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 審査한 事項 및 당해 申告書가 당해 法令의 規定에 따라 作成되었다는 취지를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류를 당해 申告書에

添附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前2項의 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稅理士는 당해 서류에 기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附記하여 署名捺印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34 條(調査의 通知) 稅務官公署의 당해 職員은 租稅의 課稅標準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者에 대해서 당해 申告書와 관련된 租稅에 관하여 사전에 그 者에게 日時·場所를 通知하여 그 帳簿書類(그 作成을 대신하여 電磁的 記錄(電子의 方式, 磁氣의 方式 기타 사람의 知覺에 의해서는 認識할 수 없는 方式으로 만들어지는 記錄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을 말한다)의 作成이 되고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電磁的 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調査하는 경우에 당해 租稅에 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稅理士가 있을 때는 당해 稅理士에 대해서 그 調査의 日時·場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1954 法 第95號, 1956 法 第165號, 1965 法 第36號, 1968 法 第21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129號 改正)

第 35 條(意見의 聽取) ① 稅務官公署의 당해 職員은 第33條의2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하는 서류(이하 이 項 및 다음 項에서 「添附書類」라고 한다)가 添附되어 있는 申告書を 提出한 者에 대해서 당해 申告書와 관련된 租稅에 관해 사전에 그 者에게 日時·場所를 通知하여 그 帳簿書類를 調査하는 경우에 당해 租稅에 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提出하는 稅理士가 있을 때는 당해 通知를 하기 전에 당해 稅理士에 대해서 당해 添附書類에 記載된 事項에 관해 意見を 진술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添附書類가 添附되어 있는 申告書에 대하여 國稅通則法 또는 地方稅法の 規定에 의한 更正을 해야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添附書類에 記載되어진 바에 따라 당해 更正의 基因이 되는 事實에 관하여 稅理士가 計算, 整理하고 또는 相談에 응하거나 또는 審査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稅務署長(당해 更正이 國稅廳 또는 國稅局¹⁾의 당해 職員의 調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國稅廳長 또는 國稅局長²⁾)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당

1) 우리나라의 地方國稅廳에 해당함.

2) 우리나라의 地方國稅廳長에 해당함.

해 稅理士에 대하여 당해 事實에 관하여 意見을 진술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申告書 및 이에 添附된 書類의 調査에 따라 課稅標準 등의 計算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에 따르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와 그 계산에 오류가 있어 更正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2 法 第6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國稅不服審判所의 담당 審判官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租稅에 대한 不服申請과 관련된 事實에 관해 調査하는 경우에 당해 不服申請에 대해서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提出하는 稅理士가 있을 때는 당해 稅理士에 대하여 당해 事實에 관하여 意見을 진술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1962 法 第67號, 1970 法 第8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④ 前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有無는 이들 規定에 規定하는 調査에 관련된 處分, 更正 또는 不服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裁決의 効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1953 法 第164號, 1956 法 第165號, 1962 法 第67號, 1970 法 第8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36 條(脫稅相談 등의 禁止) 稅理士는 부정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제받거나 부정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는 일에 관해서 指示하거나, 相談에 응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行爲를 하여서는 안된다.(1961 法 第137號 改正)

第 37 條(信用失墜行爲의 禁止) 稅理士는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를 해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된다.

第 38 條(秘密嚴守의 義務) 稅理士는 정당한 이유없이 稅理士業務에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漏泄하거나 또는 盜用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를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第 39 條(會則遵守의 業務) 稅理士는 소속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을 지켜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제 39 條의2(研修) 稅理士는 소속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시행하는 研修를 받고, 그 資質의 向上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0 條(事務所의 設置) ① 稅理士(稅理士法人의 社員(財務省令으로 정하

는 者를 포함한다. 第 4 項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다음 項 및 第 3 項에서 같다) 및 稅理士法人은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한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改正)

② 稅理士가 設置하여야 하는 事務所는 稅理士事務所라고 稱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稅理士는 稅理士事務所를 둘 이상 設치하여서는 안된다.(1980 法 第26號 改正)

④ 稅理士法人의 社員은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한 事務所를 設치하여서는 안된다.(2001 法 第38號 改正)

第 41 條(帳簿作成의 義務) ① 稅理士는 稅理士業務에 관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委託者別로 또 件別로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作成 또는 稅務相談의 內容 및 그 전말을 記載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② 前項의 帳簿는 閉鎖 후 5 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③ 稅理士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第 1 項의 帳簿를 磁氣디스크로 만들 수 있다.(2001 法 第38號 改正)

第 41 條의 2(使用人 등에 대한 監督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해 使用人 기타 從業員을 使用할 때는 稅理士業務의 適正한 遂行에 結合이 없도록 당해 使用人 기타 從業員을 監督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第 41 條의 3(助言義務) 稅理士는 稅理士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委託者가 부정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면제받고 있는 事實, 부정하게 國稅 또는 地方稅의 還給을 받은 事實 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課稅標準 등의 計算의 基礎가 될 만한 事實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은폐하거나 또는 假裝하고 있는 事實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助言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第 42 條(業務의 制限)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했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에서 稅理士가 된 자는 離職後 1년간은 그 離職前 1년 이내에 근무하였던 職의 업무에 속하는 事件에 대하여 稅理士業務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단, 國稅廳長의 承認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956 法 第165號 改正)

第 43 條(業務의 停止) 稅理士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辯護士, 外國法事務辯護士,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 또는 社會保險勞

務士の業務가 停止되었을 경우 또는 不動産鑑定業者의 業務에 관하여 不動産鑑定士 또는 不動産鑑定士補가 不動産의 鑑定評價業務 遂行을 禁止당한 경우에는 그 處分을 받고 있는 동안 稅理士業務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가 報酬가 있는 公職에 就任하여 그 職에 있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1986 法 第66號 改正)

第5章 稅理士の責任

第44條(懲戒의 種類) 稅理士에 대한 懲戒處分은 아래의 3종류로 한다.

1. 戒告
2. 1年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
3. 稅理士業務의 禁止 (1961 法 第137號 改正)

第45條(脫稅相談 등을 한 境遇의 懲戒) ① 財務大臣³⁾은 稅理士가 고의로 眞正한 事實에 反해서 稅務代理 또는 稅務書類를 作成 하였을 때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는 1年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 또는 稅理士業務의 禁止處分을 할 수 있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160號 改正)

② 財務大臣은 稅理士가 상당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前項에 規定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는 戒告 또는 1年 이내의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第46條(一般的인 懲戒) 財務大臣은 前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외에 稅理士가 第33條의2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添附하는 서류에 虛僞의 記載를 하였을 때 또는 이 法律 또는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는 第44條에 規定하는 懲戒處分을 할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3) 우리나라의 財政經濟部長官에 해당함.

第 47 條(懲戒의 節次 등) ①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稅理士에 대하여 地方稅에 관한 前 2 條에 規定하는 行爲 또는 事實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財務大臣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의 姓名 및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行爲 또는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1980 法 第 26 號, 1999 法 第 160 號, 2001 法 第 38 號 改正)

② 稅理士會는 그 會員에 대하여 前 2 條에 規定하는 行爲 또는 事實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財務大臣에 대하여 당해 會員의 姓名 및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 및 그 行爲 또는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上同)

③ 누구라도 稅理士에 대하여 前 2 條에 規定하는 行爲 또는 事實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財務大臣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의 姓名 및 그 行爲 또는 事實을 通知하여 적정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上同)

④ 財務大臣은 前 2 條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하고자 할 때는 國稅審議會에 자문하여 그 議決에 따라야 한다.(1980 法 第 26 號, 1993 法 第 89 號, 1999 法 第 160 號 改正)

⑤ 財務大臣은 前 2 條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의 懲戒處分을 할 때는 그 理由를 附記한 서류에 의하여 그 취지를 당해 稅理士에 通知하여야 한다.(上同)

第 47 條의 2(登錄抹消의 制限)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가 懲戒의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第 26 條 第 1 項 第 1 號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稅理士의 登錄抹消를 할 수 없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第 48 條(懲戒處分의 公告) 財務大臣은 第 45 條 또는 第 46 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하였을 때는 遲滯없이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1961 法 第 137 號, 1980 法 第 26 號, 1999 法 第 160 號 改正)

第 5 章의 2 稅理士法人

(本章 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2(設立) 稅理士는 이 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理士法人(稅理士業務를 組織적으로 행함을 目的으로 하여 稅理士가 共同으로 設立한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 3(名稱) 稅理士法人은 그 名稱 중에 稅理士法人이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4(社員の 資格) ① 稅理士法人의 社員은 稅理士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다음에 개기하는 者는 社員이 될 수 없다.

1. 第43條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 당해 業務의 停止期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2. 第48條의20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法人이 解散 또는 業務의 停止를 명령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處分日 이전 30日 이내에 그 社員이었던 者로 그 處分日로부터 3년(業務의 停止命令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業務의 停止期間)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5(業務의 範圍) 稅理士法人은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이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條 第2項의 業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6 前條에 規定하는 것 이외에 稅理士法人은 第2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가 處理할 수 있는 事務를 당해 稅理士法人의 社員 또는 使用人인 稅理士(이하 이 條 및 第48條의20 第4項에서 「社員 등」이라고 한다)에게 행하여지는 事務의 委託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稅理士法人은 委託者에게 당해 稅理士法人의 社員 등 중에서 그 補佐人을 選任시켜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7(登記) ① 稅理士法人은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를 하

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면 이것으로 第3者에 對抗할 수 없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8(設立의 節次) ① 稅理士法人을 設立하기 위해서는 그 社員이 되려고 하는 稅理士가 共同으로 定款을 만들어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商法(1899 法律 第48號) 第167條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定款에 대하여 準用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定款에는 적어도 다음에 게기하는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의 姓名 및 住所
5. 社員의 出資에 관한 事項
6. 業務의 執行에 관한 事項

第 48 條의9(成立의 時期) 稅理士法人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에 따라 成立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0(成立의 申告 등) ① 稅理士法人은 成立하였을 때는 成立日로부터 2주일 이내에 登記簿謄本 및 定款의 사본을 添附하여 그 취지를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한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이하 이 章에서 「本店所在地의 稅理士會」라고 한다)를 經由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신고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理士法人의 名簿를 作成하여 이를 國稅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前項의 名簿를 磁氣디스크로써 만들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1(業務를 執行하는 權限) 稅理士法人의 社員은 모든 業務를 執行하는 權利를 가지며 義務를 진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2(社員의 常駐)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에는 그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인 社員을 常駐시켜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3(定款의 變更) 稅理士法人은 定款을 變更하였을 때는 變更日로부터 2주일 이내에 變更에 관련된 事項을 本店所在地의 稅理士會를 經由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신고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4(社員의 競業의 禁止) 稅理士法人의 社員은 本人 또는 第3者를 위해 그 稅理士法人의 業務의 範圍에 속하는 業務를 행하거나 또는 다른 稅理士法人의 社員이 되어서는 안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5(業務의 執行方法) 稅理士法人은 稅理士가 아닌 者에게 稅理士業務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6(稅理士의 權利 및 義務 등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1條, 第30條, 第31條, 第34條로부터 第37條까지 第39條 및 第41條로부터 第41條의 3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에 대하여 準用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17(法定脫退) 稅理士法人의 社員은 다음에 제기하는 理由에 의하여 脫退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1. 稅理士의 登錄의 抹消
2. 定款에 정하는 理由의 發生
3. 總社員의 同意
4. 除名

第 48 條의18(解散) ① 稅理士法人은 다음에 제기하는 理由에 의하여 解散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1. 定款으로 정하는 理由의 發生
2. 總社員의 同意
3. 다른 稅理士法人과의 合併
4. 破産
5. 解散을 命令하는 裁判
6. 第48條의20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命令

② 稅理士法人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이외에 社員이 1명이 된 그 날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간 그 社員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6개월을 經過하였을 때에 解散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稅理士法人은 第1項 第3號의 事由 이외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하였을

때는 解散日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취지를 本店所在地의 稅理士會를 經由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신고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 19(合併) ① 稅理士法人은 總社員의 同意가 있을 때는 다른 稅理士法人과 合併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合併은 合併後 存續하는 稅理士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稅理士法人이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에 의하여 그 効力이 발생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稅理士法人은 合併하였을 때 合併日로부터 2주일 이내에 登記簿謄本(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稅理士法人에 있어서는 登記簿謄本 및 定款의 사본)을 添附하여 그 취지를 本店所在地의 稅理士會를 經由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신고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 20(違法行爲 등에 관한 處分) ① 財務大臣은 稅理士法人이 이 法律 또는 이 法律에 따른 命令에 違反하거나 또는 運營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稅理士法人에 대하여 戒告 또는 1年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の 停止를 명하거나 또는 解散을 명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前項의 處分에 관하여 準用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の 절차에 회부된 稅理士法人은 清算이 종료된 후에도 이 條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당해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存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④ 第1項의 規定은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法人을 處分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稅理士法人의 社員 등에 대하여 第45條 또는 第46條에 해당하는 事實이 있을 때에는 그 社員 등인 稅理士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함께 행함을 막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8 條의 21(民法의 準用 등) ① 民法(1896년 法律 第89號) 第50條, 第55條 및 第81條부터 第83條까지 그리고 非訟事件節次法(1898년 法律 第14號) 第35條 第2項, 第36條, 第126條 第1項, 第134條로부터 第135條의 5까지, 第135條의 8, 第136條의 2, 第137條, 第138條 및 第138條의 3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民法 第83條 중 「主務官廳」으로 되어 있는 것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로 대체하여 적용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② 商法 第32條, 第33條 및 第34條로부터 第36條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

人的 帳簿 기타 書類에 대하여 同法 第58條 및 第59條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에 대하여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法 第33條 第3項 중 「貸借對照表가 서류로써 만들어졌을 때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貸借對照表는」으로, 同條 第4項 중 「貸借對照表가 서류로써 만들어졌을 때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貸借對照表에는」으로, 同法 第58條 및 第59條 第1項 중 「株主」라고 되어 있는 것은 「社員」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2001 法 第129號 改正)

③ 商法 第68條,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74條 第2項 및 第3項 및 第75條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內部關係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法 第74條 第2項 중 「前項」으로 되어 있는 것은 「稅理士法(1951년 法律 第237號) 第48條의14」로 대치하는 것으로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④ 商法 第76條로부터 第83條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外部關係에 관하여 準用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2001 法 第129號 改正)

⑤ 商法 第84條, 第86條 第1項 및 第2項(除名 및 代表權의 喪失에 관한 部分에 한한다) 및 第87條로부터 第93條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社員의 脫退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法 第86條 第1項 第2號 중 「第74條 第1項」으로 되어 있는 것은 「稅理士法 第48條의14」로 대치하는 것으로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⑥ 商法 第100條, 第103條로부터 第106條까지 및 第109條로부터 第111條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合併에 대하여 準用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⑦ 商法 第116條로부터 第119條까지, 第120條로부터 第122條까지, 第124條 第1項 및 第2項, 第125條, 第126條, 第128條로부터 第133條까지(第130條 第2項 및 第3項을 제외한다), 第134條의2로부터 第136條까지, 第138條 및 第143條로부터 第145條까지의 規定은 稅理士法人의 清算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法 第117條 第2項 및 第122條 中 「第94條 第4號 또는 第6號」로 되어 있는 것은 「稅理士法 第48條의18 第1項 第5號 또는 第6號 또는 第2項」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2001 法 第129號 改正)

⑧ 破産法 (1922年 法律 第71號) 第127條의 規定의 適用에 대하여는 稅理士法人은 合名會社로 간주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6章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

第49條(稅理士會) ① 稅理士는 國稅局의 管轄區域마다 한 개의 稅理士會를 設立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稅理士會는 會員인 稅理士의 數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數를 초과할 경우에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廳長에 대하여 당해 稅理士會가 設立되어있는 區域內에서 새로이 稅理士會를 設立할 수 있는 區域(이하 「指定區域」이라고 한다)을 정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國稅廳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었을 때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請求를 한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內에서 指定區域을 정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改正)

④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區域이 정해졌을 때는 당해 指定區域內에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事務所의 登錄을 한 稅理士는 당해 指定區域에 한 개의 稅理士會를 設立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追加, 2001 法 第38號 改正)

⑤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稅理士會가 設立되었을 때는 그 設立時에 당해 稅理士會가 設立된 指定區域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稅理士會(이하 이 項에서 「前의 稅理士會」라고 한다)가 設立되어 있었던 區域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고, 당해 前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었던 區域 중 당해 指定區域 이외의 區域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廳長이 정한 것으로 하고, 당해 前의 稅理士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⑥ 稅理士會는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의 使命 및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支部(第49條의3 第1項에 規定하는 支部를 말한다) 및 會員에 대한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⑦ 稅理士會는 法人으로 한다.(1956 法 第165號 改正)

⑧ 稅理士會는 그 名稱 중에 稅理士會라는 文句를 사용하여야 한다.(上同)

第49條의2(稅理士會의 會則) ① 稅理士는 稅理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會則을 정하여 그 會則에 대하여 財務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改正)

② 稅理士會의 會則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2. 入會 및 退會에 관한 規定
3. 任員에 관한 規定
4. 會議에 관한 規定
5. 稅理士의 品位維持에 관한 規定
6. 會員의 研修에 관한 規定 (2001 法 第38號 追加)
7. 會員의 業務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관한 規定 (2001 法 第38號 追加)
8. 稅理士業務에 관계되는 使用人 기타 從業員에 대한 監督에 관한 規定 (1980 法 第26號 追加)
9. 委託者의 經濟的 理由에 의하여 無償 또는 現저히 저렴한 報酬로 행하는 稅理士 業務에 관한 規定 (上同)
10. 會費에 관한 規定
11. 庶務 및 會計에 관한 規定

③ 稅理士會의 會則의 變更(政令으로 정하는 重要な 事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은 財務大臣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 効力이 발생하지 않는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改正)

第 49 條의 3(稅理士會의 支部) ① 稅理士會는 한 개의 稅務署의 管轄區域마다 支部를 設置하여야 한다. 단, 國稅局長의 承認을 받았을 때는 인접하는 2개 이상의 稅務署의 管轄區域을 地區로 하여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支部는 稅理士會의 目的達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支部에 所屬된 會員에 대한 指導, 連絡 및 監督을 행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第 49 條의 4(成立時期) 稅理士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第 49 條의 5(登記) ① 稅理士會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를 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② 前項의 規定에 따라 登記하여야 하는 事項은 登記後가 아니면 이로써 第三者에 對抗할 수 없다.(上同)

- 第 49 條의 6(入會 및 退會 등) ① 稅理士는 登錄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그 登錄을 받은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1956 法 第 165 號 追加, 1980 法 第 26 號, 2001 法 第 38 號 改正)
- ② 稅理士는 登錄을 받은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를 所屬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에 所在地가 있는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로 變更하는 취지의 申請을 하였을 때는 그 變更의 登錄申請을 하였을 때에 당연히 從前의 所屬 稅理士會를 退會하고, 變更後의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 ③ 稅理士法人은 그 成立時에 당연히 稅理士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 ④ 稅理士法人은 主된 事務所 이외에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또는 稅理士法人의 各 事務所를 各 所屬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으로 移轉하였을 때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新所在地에서 그 취지를 登記하였을 때에 당연히 당해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 ⑤ 稅理士法人은 그 事務所의 移轉 또는 廢止에 의하여 所屬 稅理士會의 區域內에 稅理士法人의 事務所를 지니지 않게 되었을 때는 舊所在地에서 그 취지를 登記하였을 때에 당연히 당해 稅理士會를 退會한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 ⑥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은 所屬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의 變更(第 49 條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區域의 變更을 포함한다)이 있고,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가 所屬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設立되어 있는 區域에 포함되었을 때는 그 區域의 變更이 있었을 때에 당연히 從前의 所屬 稅理士會를 退會하고, 그 區域의 變更後의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1980 法 第 26 號 追加, 2001 法 第 38 號 改正)
- ⑦ 稅理士는 第 26 條 第 1 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당해 所屬 稅理士會를 退會한다.(上同)
- ⑧ 稅理士法人은 解散하였을 때에 당연히 所屬 稅理士會를 退會한다.(2001 法 第 38 號 追加)
- ⑨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은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置되어 있는 稅理士會의 支部에 所屬한 것으로

한다.(1980 法 第26號 追加,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49 條의7(任員) ① 稅理士會에 會長, 副會長 기타 會則으로 정하는 任員을 둔다.(1956 法 第165號 追加)

② 會長은 稅理士會를 代表하여 그 會務를 總括한다.(上同)

③ 副會長은 會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의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하고, 會長이 缺員이 된 때는 그 職務를 수행한다.(上同)

第 49 條의8(總會) ① 稅理士會는 매년 定期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② 稅理士會는 必要로 인정될 때에는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上同)

③ 稅理士會의 會則의 變更, 豫算 및 決算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第 49 條의9(總會의 決議 등의 報告) 稅理士會는 總會의 決議 및 任員의 就任 및 退任을 財務大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종전 第49條의 11, 1999 法 第160號 一部改正)

第 49 條의10(紛議의 調停) 稅理士會는 會員의 業務에 관한 紛議에 대하여 會員 또는 當事者 기타 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調停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9 條의11(建議 등) 稅理士會는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에 관한 制度에 대하여 權限있는 官公署에 建議하거나 또는 그 諮問에 答申할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종전 第49條의 12, 2001 法 第38號 종전 第49條의10)

第 49 條의12(合併 및 解散) ① 國稅局의 管轄區域이 變更됨으로써 그 區域內에 있는 稅理士會가 合併 또는 解散할 必要가 있을 때는 그 稅理士會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合併 또는 解散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② 商法 第100條(債權者의 異議) 및 第103條(合併의 效果)의 規定은 稅理士會가 合併하는 경우에, 民法 第73條로부터 第76條까지, 第78條로부터 第80條까지 및 第82條 및 民法施行法(1898年 法律 第11號)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法人의 清算)은 稅理士會가 解散하는 경우에 準用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稅理士會가 合併하였을 때는 合併에 따라 解散한 稅理士會에 所屬된 稅理士는 당해 合併後 存續하거나 또는 合併에 따라 設立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중전 第49條의 13,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 11一部改正)

第 49 條의13(日本稅理士會連合會) ① 全國의 稅理士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를 設立하여야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의 使命 및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의 業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한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고, 동시에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事務를 행함을 目的으로 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法人으로 한다.(1956 法 第165號 改正)

④ 稅理士會는 당연히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員이 된다.(上同)

第 49 條의14(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중전 第49條의15一部改正, 2001 法 第160號 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13一部改正)

1. 第49條의2 第2項 第1號, 第3號로부터 第5號까지, 第10號 및 第11號에 계기하는 事項
2.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規定
3. 第49條의16에 規定하는 資格審査會에 관한 規定
4. 第41條 第1項의 帳簿 및 그 記載에 관한 規定
5. 稅理士會의 會員의 研修에 관한 規定
6. 第49條의2 第2項 第9號에 規定하는 稅理士業務의 實施基準에 관한 規定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의 變更(前項 第2號에 계기하는 事項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重要な 事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은 財務大臣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그 効力이 발생하지 않는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중전 第49條의15一部改正, 1999 法 第160號 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13一部改正)

第 49 條의15(稅理士會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49條의2 第1項, 第49條의

4. 第49條의5, 第49條의7로부터 第49條의9까지 및 第49條의11의 規定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準用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중전 第49條의15一部改正, 1980 法 第26號 중전 第49條의16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14一部改正)

第 49 條의16(資格審査會)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資格審査會를 設置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資格審査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請求에 의하여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登錄의 拒否 또는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에 대하여 審議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③ 資格審査會는 會長 및 委員 4인으로써 組織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④ 會長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長으로써 이를 역임한다.(上同)

⑤ 委員은 會長이 財務大臣의 承認을 받아 稅理士, 國稅 또는 地方稅의 行政事務에 從事하는 職員 및 學識經驗者 중에서 委嘱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99 法 第160號 改正)

⑥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缺員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⑦ 前各項에 規定하는 것 이외에 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政令으로 정한다.(1961 法 第137號 追加, 1980 法 第26號 중전 第49條의17一部改正, 1999 法 第160號 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15)

第 49 條의17(總會의 決議의 取消) 財務大臣은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總會의 決議가 法令 또는 그 稅理士會나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에 違反하고 기타 公益을 해치는 때에는 그 決議를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중전 第49條의16改正)

第 49 條의18(貸借對照表 등)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每事業年度, 第49條의 15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第49條의 8 第3項으로 規定하는 總會의 決議를 거친 후, 지체없이 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를 官報에 公告하는 동시에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收支計算書 및 附屬明細書 및 會則으로 정하는 事業報告書 및 監事의 意見書를 事務所에 비치하여 두고,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期間, 일반의 열람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49 條의 19(一般的 監督) ① 財務大臣은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適正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가 있을 때는 이들 團體로부터 報告를 요구하고 그 행하는 業務에 대하여 勸告하거나 또는 당해 職員으로 하여금 이들 團體의 業務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시킬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1999 法 第160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의 徵取 또는 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查를 위하여 인정되어진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종전 第49條의 17, 1980 法 第26號 종전 第49條의 19, 1999 法 第160號 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종전 第49條의 17)

第 49 條의 20(民法의 準用) 民法 第44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第50條(法人의 住所) 및 第55條(代表權의 委任)의 規定은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準用한다. (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종전 第49條의 18, 1980 法 第26號 종전 第49條의 20, 2001 法 第38號 종전 第49條의 18)

第 49 條의 21(政令에의 委任) 이 法律로 정하는 것 이외에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設立, 運營, 合併, 解散 및 清算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政令으로 정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종전 第49條의 19, 1980 法 第26號 종전 第49條의 21一部改正, 2001 法 第38號 종전 第49條의 19)

第 7 章 雜 則

第 50 條(臨時 稅務書類의 作成 등) ① 國稅局長(地方稅에 대하여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은 租稅의 申告時期에 있어서 또는 그 管轄區域내에 災害가 있었을 경우 기타 特別히 必要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申告者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 이외의 者에 대하여 그 申請에 의하여 2개월 이내의 期間을 제한하는 동시에 租稅를 指定하여 無報酬

로 申告書 등의 作成 및 이와 관련된 課稅標準 등의 計算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相談에 응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단, 그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 및 民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法人 기타 團體의 任員 또는 職員에 한한다.

② 第33條 第2項 및 第4項,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에게 準用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一部改正)

第51條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 등) ① 辯護士는 所屬辯護士會를 경유하여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國稅局의 管轄區域내에서 수시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改正)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는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範圍에 있어서 第1條, 第30條, 第31條, 第33條로부터 第38條까지, 第41條로부터 第41條의3까지, 第43條 前段, 第44條로부터 第46條까지(이들 規定 중 稅理士業務의 禁止處분에 관한 部分을 제외한다), 第47條, 第48條, 第54條 및 第55條의 規定의 適用에 대하여는 稅理士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第33條 第3項 및 第33條의2 第3項 중 「稅理士라는 것과 기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이라고 한 것은 「第5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한 辯護士인 내용 그리고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한 辯護士法人의 業務로써 同項의 業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名稱」으로 한다.(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③ 辯護士法人(辯護士法으로 規定하는 社員全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局長에게 通知되어 있는 法人에 한한다)은 所屬辯護士會를 거쳐서 國稅局長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國稅局의 管轄區域내에서 수시로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④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法人은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範圍에 있어서 第33條, 第33條의2, 第48條의16(第39條의 規定을 準用하는 部分을 제외한다), 第48條의20(稅理士法人에 대한 解散의 命令에 관한 部分을 제외한다), 第54條 및 第55條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稅理士法人으로 본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51條의2(行政書士가 행하는 稅務書類의 作成) 行政書士는 行政書士의 名稱을 사용하여 他人의 요구에 응해서 골프장利用稅, 自動車稅, 輕自動車稅, 自動車取得稅, 事業所稅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에 관하여 稅務書

類의 作成을 業으로써 행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追加, 1988 法 第110號, 1997 法 第9號 改正)

第 52 條(稅理士業務의 制限)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아닌 者는 이 法律에 別도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稅理士業務를 행해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53 條(名稱의 使用制限) ① 稅理士가 아닌 者는 稅理士 또는 稅理士事務所 또는 이들과 類似한 名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1980 法 第26號 追加)

② 稅理士法人이 아닌 者는 稅理士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2001 法 第38號 追加)

③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아닌 團體는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또는 이들과 類似한 名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④ 前3項의 規定은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이 아닌 者 그리고 稅理士會 및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아닌 團體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된 名稱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54 條(稅理士의 使用人 등의 秘密을 지킬 義務)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의 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正當한 理由없이 稅理士業務에 關하여 알게 된 秘密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洩露하여서는 안된다.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의 使用人 기타 從業員을 그만두게 된 후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2001 法 第38號 改正)

第 55 條(監督上의 措置) ① 國稅廳長은 稅理士業務의 適正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으로부터 報告를 要求하거나 또는 당해 職員으로 하여금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에게 質問하거나 또는 그 業務에 關한 帳簿書類를 檢査시킬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2001 法 第38號 改正)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의 聽取, 質問 또는 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查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1956 法 第165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56 條 削除 (1962 法 第161號 削除)

第 57 條(事務의 委任) ① 國稅廳長은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한 事務를 國稅局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改正)

② 國稅廳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國稅局長 또는 稅務署長에게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趣旨를 告示하여야 한다.(上同)

第8章 罰 則

第 58 條 第36條(第48條의16 또는 第50條 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59 條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稅理士가 될 資格을 가지지 않은 者로서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그 資格에 관하여 虛僞의 申請을 하고 稅理士名簿에 登錄시킨 者(2001 法 第38號 追加)
2. 第38條(第50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2001 法 第38號 追加)
3. 第5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2001 法 第38號 追加)

② 前項 第2號의 罪는 告訴가 없으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2001 法 第38號 追加)

第 60 條 다음의 各號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45條 또는 第46條 또는 第48條의20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았을 경우에 그 處分에 違反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한 者(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61 條 다음의 各號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者는 10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1. 第5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53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001 法 第38號 追加)

第 62 條 第49條의19 第1項 또는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 質問 또는 檢査에 대하여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의 報告를 하거나 質問에 答辯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檢査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忌避한 者는 3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63 條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8條, 第59條 第1項 第3號, 第60條 第3號(第48條의20 第1項에 관련된 部分에 한한다), 第61條 또는 前條의 違反行爲를 하였을 때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각 本條의 罰金刑을 賦課한다.(1980 法 第26號, 2001 法 第38號 改正)

第 64 條 다음의 各號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稅理士法人의 社員 또는 清算人 또는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任員은 30만圓 이하의 過料에 처한다.(2001 法 第38號 追加)

1. 이 法律에 입각한 政令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記하는 것을 怠慢時하였을 때 (2001 法 第38號 追加)
2. 第48條의21 第1項에서 準用하는 民法 第8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請求를 怠慢時하였을 때 (2001 法 第38號 追加)
3. 定款 또는 第48條의21 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2條 第1項의 會計帳簿 또는 貸借對照表에 記載해야할 事項을 記載하지 않았거나 또는 不實記載를 하였을 때 (2001 法 第38號 追加)
4. 第48條의21 第6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100條 第1項 또는 第3項(同法 第117條 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合併하거나 또는 財産을 處分하였을 때 (2001 法 第38號 追加)
5. 第48條의21 第7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13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財産을 分配하였을 때 (2001 法 第38號 追加)

附 則

1. 이 法律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1개월을 경과한 날(195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稅務代理士法은 폐지한다. 단, 同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稅務代理士의 許可에 관한 規定은 이 法律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개월간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지고 그 期間滿了日까지 同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신청한 者에 대하여는 1952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그 效力을 가진다.
3. 稅務代理士法の 廢止前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다음에 제기하는 者(辯護士 및 公認會計士인 者를 제외한다)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가 될 자격을 가진다. 단, 이들은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令으로 정하는 30時間 이상의 稅法에 관한 講習 또는 研修를 거친 후가 아니면 稅理士의 登錄을 받을 수 없다.
 - ① 이 法律施行時 現在 舊 稅務代理士法の 規定에 의한 稅務代理士의 허가를 받은 者
 - ②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계속 그 효력을 가진 舊 稅務代理士法の 規定에 의한 稅務代理士의 허가를 받은 者
5. 이 法律施行時 現在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인 者로 오로지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한 기간 또는 오로지 地方稅의 賦課에 관한 事務에 從事한 기간이 각각 통산하여 15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는 者는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稅法 및 會計學에 관하여 稅理士試驗의 合格者와 동등 이상의 學識을 가졌다는 내용의 試驗委員의 認定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가 될 資格을 가진다.
6. 前項에 規定하는 者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委員의 認定을 받고자 할 때는 이 法律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개월 이내에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節次에 따라 그 認定을 試驗委員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7. 試驗委員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에 따라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했을 때 또는 그 認定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내용을 申請者에게 通知한다.
8. 1951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된 公認會計士 第3次 試驗 또는 特別公認會計士 試驗에 합격한 公認會計士는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令으로 정하는 30시간 이상의 稅法에 관한 강습 또는 연수를 거친 후가

아니면 稅理士의 登錄을 받을 수 없다.

9. 다음에 제기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律施行日부터 起算하여 3개월간(그 기간내에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한 경우에는 당해 申請에 따라 稅理士의 登錄을 받은 날 또는 당해 申請의 却下處分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이 法律施行日에 稅理士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法律의 規定(稅理士의 登錄 및 稅理士證票에 관한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이 法律施行時 現在 稅理士 業務를 행하기 위한 事務所를 2 이상 설치한 때는 이 法律施行日에 있어서 그 設置에 대하여 第40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의 의한 國稅廳長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① 第4項 第1號에 제기된 者
 - ② 이 法律施行時 現在 稅務代理業을 행하고 있는 辯護士
 - ③ 이 法律施行時 現在 舊稅務代理士法の 規定에 따른 稅務代理士의 許可를 받은 公認會計士
10. 前項 前段의 規定은 第4項 第2號에 제기하는 者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前項 前段 중 「이 法律施行日」은 「舊稅務代理士法の 規定에 의한 稅務代理士의 許可를 받은 날」로 대치한다.
11. 前2項의 規定은 第4條의 規定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12. 舊稅務代理士法에 따른 稅務代理士會는 이 法律施行日에 第49條 第4項에 規定하는 사무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法人이 된 것으로 한다.
13. 前項의 法人(이하 「舊稅務代理士會」라고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舊稅務代理士法 및 舊稅務代理士法施行規則(1942년 大藏省令 第13號)의 規定(國稅廳長 및 國稅局長의 감독에 관한 規定을 제외한다)의 예에 따른다. 단, 舊稅務代理士會의 會員은 同會를 退會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稅理士는 새로 同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4. 舊稅務代理士會의 會員이 同會를 退會한 경우의 그 退會한 者에 대한 財産의 分與에 대하여는 이 法律施行時 現在 同會의 會員인 者의 3분의 2 이상 多數決로써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舊稅務代理士會는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할 수 있다.
16. 舊稅務代理士會는 法人稅法の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法 第5條 第1項에 規定하는 法人으로 간주한다.

17. 舊稅務代理士會는 그 組織을 변경하여 稅理士會가 될 수 있다.
18. 舊稅務代理士會는 前項의 規定에 따라 그 組織을 변경하여 稅理士會가 되는데는 이 法律施行日부터 起算하여 3개월 이내에 會員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써 定款을 작성하고 大藏省令으로 정하는 節次에 따라 그 定款에 대하여 大藏大臣(재정경제부 장관)의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19. 大藏大臣⁴⁾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따라 그 認可를 하였을 때 또는 그 認可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내용을 申請者에게 通知한다.
20. 第17項의 規定에 따른 조직변경은 第18項의 規定에 따른 大藏大臣의 認可에 의하여 그 效力이 발생한다.
21. 第17項의 規定에 따른 조직변경이 그 效力이 발생한 경우에는 第18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로써 稅理士會의 設立許可로 간주하여 民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設立登記에 관한 同法 및 非訟事件 節次法(1956년 法律 第14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22. 舊稅務代理士會는 第18項에 規定하는 기간내에 定款의 認可申請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당해 認可申請을 했으나, 그 認可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期間滿了日 또는 그 인가를 하지 않은 내용의 通知를 받은 날에 解散한다.
23. 前項의 規定에 따라 舊稅務代理士會가 解散하였을 때는 會長이 그 清算人이 된다. 단, 會長이 缺員인 때 또는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그 清算人이 된다.
24. 前項의 規定에 따라 清算人이 될 者가 없을 때 또는 清算人이 결원이 되었을 때 또는 清算人에게 事故가 생겼을 때는 總會가 選任한 者가 清算人이 된다.
25. 舊稅務代理士會의 殘餘財産의 處分에 관하여는 會員의 3분의 2 이상 多數決로써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舊稅務代理士會의 清算은 國稅廳長이 감독한다.
27. 民法 第73條, 第78條부터 第80條까지, 第83條 및 第84條 第6號(同法 第79條의 公告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規定(法人의 清算)은 舊稅務代理士會의 清算에 준용한다.
28. 當分간 第4條 第5號 중 「地方稅法」은 「地方稅法 또는 舊地方稅法(1948년 法律 第110號)(地方稅法 附則 第3項에서 舊地方稅法 規定의

4) 우리나라의 財政經濟部長官에 해당함(2001년에 大藏省이 財務省으로 개칭되어 현재는 財務大臣이 우리나라의 財政經濟部長官에 해당한다).

예에 따르는 것이 되었을 경우를 포함한다)」로 대치한다.(1980 法 第 26號 改正)

29. 1951년 및 1952년에 실시된 稅理士試驗에 관하여는 第6條 第1號 중 「地方稅法 중 附加價値稅에 관한 부분」은 「地方稅法 중 附加價値稅에 관한 부분 또는 事業稅(特別所得稅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으로 대치한다.(1952 法 第216號 改正)
30. 1981년 4월 1일부터 1986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第6條의 規定에 따른 稅理士試驗 외에 특별한 稅理士試驗을 행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31.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前項의 規定에 따른 稅理士試驗을 받을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追加)
 - ① 官公署에서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전담한 기간이 통산 20 年 이상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事務의 구분에 따라 政令으로 정하는 年數 이상이 되는 者 (1951 法 第137號 改正)
 - ② 計理士 또는 會計士補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이 되는 者 (1956 法 第165號, 1961 法 第137號 改正)
32.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은 稅理士審査會가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 또는 會計에 관한 實務에 대하여 행한다.(1956 法 第 165號 追加, 1980 法 第26號 改正)
33.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의 合格者를 정할 경우에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試驗成績에 따르는 외에 受験者의 第31項 各號에 規定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年數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1956 法 第165號 追加)
34.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은, 第3條 第1項 및 第48條의 5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으로 간주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1961 法 第137號, 1980 法 第26號 改正)
35. 第9條의 規定은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에 대하여 준용한다.(1956 法 第165號 追加)
36. 前 5項에 정하는 것외에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藏省令으로 정한다.(上同)

附則(抄) (1952 法 第216號 地方稅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 이 法律은 공포일(1952년 6월 28일)부터 시행(중략)한다.(以下 省略)

附則(抄) (1952 法 第262號 自治廳設置法の 시행에 따른 관계法律의 정비에 관한 法律)

1. 이 法律은 自治廳設置法(1952년 法律 第261號) 施行日[195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53 法 第164號 富裕稅法을 폐지하는 法律)

1. 이 法律은 195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附則(抄) (1953 法 第165號 相續稅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 이 法律은 195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附則(抄) (1954 法 第95號 地方稅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 이 法律은, 公布日[195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附則(抄) (1955 法 第155號 辯護士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 이 法律은, 公布日[195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附 則(1956 法 第165號)

1. 이 法律은 公布日[195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第51條의2 및 第5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第42條의 改正規定은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從事하고 있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으로 이 法律의 施行後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하고 있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으로 이 法律의 施行前에 離職한 者의 재직중에 자신이 관여한 사건과 관련된 稅理士業務의 制限에 대하여는 이 法律의 施行後 1년간은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稅理士는 이 法律의 시행일로부터 起算하여 4개월 이내에 改正後의 稅理士法(이하 「新法」이라 한다)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稅理士會(이하 「新稅理士會」라고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1980 法 第26號 改正)
4. 이 法律의 施行時 現在 존재하는 改正前의 稅理士法(이하 「舊法」이라고 한다)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설립된 稅理士會(이하 「舊稅理士會」라고 한다)는 이 法律의 施行日로부터 당해 舊稅理士會의 주된 事務

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國稅局의 관할구역내에서 附則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新稅理士會가 설립된 날 이후 60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동일한 國稅局의 관할구역내에 존재하는 2개 이상의 舊稅理士會에 대하여는 이 法律의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新法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1980 法 第26號 改正)

5. 이 法律의 施行時 현재 존재하는 舊稅理士會로 前項의 規定에 따라 종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해산한 것은 前項 및 新法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清算이 終了하는 날까지는 계속 종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6. 全國의 新稅理士會는 가능한 조속히 日本稅理士會連合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7. 이 法律의 施行時 現在 존재하는 舊法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設立한 稅理士會連合會(이하「稅理士會連合會」라고 한다)는 이 法律의 施行日부터 前項의 規定에 따라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설립된 날 이후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기간(그 기간내에 해산한 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는 그 清算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新法 第53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新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舊稅理士會 또는 稅理士會連合會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免許稅를 면제한다.(1967 法 第36號 改正)
9. 都道府縣은 新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舊稅理士會 또는 稅理士會連合會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不動產取得稅를 부과할 수 없다.
10. 이 法律의 施行前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以下 省略)

附則(抄) (1960년 法 第113號 自治廳設置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61 法 第137號)

1. 이 法律은 公布日[1961년 6월 15일]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이 정하는 날[196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第3條 第1項, 第4條 第5號, 第5條, 第8條, 第24條, 附則 第30項, 附則 第

31項 및 附則 第34項의 改正規定 그리고 附則 第9項의 規定은 公布日로부터, 第36條의 改正規定은 同日부터 起算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改正後의 稅理士法(이하 「新法」이라 한다) 第4條 第7號 및 第26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改正前의 稅理士法(이하 「舊法」이라 한다)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에 따라 稅理士의 登錄을 취소된 者는 新法の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행할 것을 금지된 者로 간주한다.
3. 新法 第4條 第9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舊法の 規定에 따라 稅理士의 登錄申請을 却下된 者는 新法の 規定에 따라 稅理士의 登錄을 거부된 者로 간주한다.
4. 舊法の 規定에 따라 國稅廳長에게 제출한 登錄申請書 기타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서류는 이 法律의 施行日(이하 「施行日」이라 한다)에 있어서 新法の 規定에 따라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이하 「連合會」라 한다)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舊法の 規定에 따라 稅理士名簿의 登錄은 施行日以後는 新法の 規定에 따른 稅理士名簿의 登錄으로 간주한다.
6. 舊法の 規定에 따라 國稅廳長이 교부한 稅理士證票는 施行日 이후는 新法の 規定에 따라 連合會가 교부한 稅理士證票로 간주한다.
7. 舊法 第22條 第1項 또는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者에 있어서 당해 처분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訴願에 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8. 國稅廳長은 施行日에 있어서 國稅廳에 비치한 稅理士名簿 기타 稅理士의 登錄에 관한 書類를 連合會에 인계하여야 한다.
9. 連合會는 이 法律의 公布日 이후 지체없이 會則의 변경에 관한 필요한 節次를 행하여야 한다.

附則(抄) (1961 法 第145號 學校教育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시행에 따른 關係法律의 정비에 관한 法律)
이 法律은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61년 法律 第144號)의 시행일[196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62 法 第67號 國稅通則法の 시행 등에 따른 關係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17 條(稅理士法の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改正後の 稅理士法 第2條 第1號, 第31條 第1號 그리고 第35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國稅通則法 附則 第11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종전의 稅法の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되는 再調査의 請求 또는 審査의 請求 또는 審査의 결정은, 각각 不服申請 또는 不服申請에 관한 결정 또는 裁決로 간주한다.

附則(抄) (1962 法 第161號 行政不服審査法の 시행에 따른 關係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1. 이 法律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法律에 따른 改正後の 規定은 이 附則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律의 施行前に 이루어진 行政廳의 처분 이 法律의 施行前に 된 申請과 관련된 行政廳의 不作為 기타 이 法律의 施行前に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단, 이 法律에 의한 改正前の 規定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막지 않는다.
3. 이 法律의 施行前に 제기된 訴願, 審査의 請求, 異議申請, 기타 不服申請(이하 「訴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法律의 施行後에도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法律의 施行前に 된 訴願 등의 裁決, 決定 기타 處分(이하 「裁決 등」이라 한다) 또는 이 法律의 施行前に 제기된 訴願 등에 관하여 이 法律의 施行後에 된 裁決 등에 다시 不服이 있을 경우의 訴願 등에 대하여도 같다.
4. 前項에 規定하는 訴願 등에서 이 法律의 施行後에는 行政不服審査法에 따라 不服申請을 할 수 있게 된 處分과 관련된 것은 同法 이외의 法律의 적용에 관하여는 行政不服審査法에 따라 不服申請으로 간주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따라 이 法律의 施行後에 되는 審査의 請求, 異議申請 기타 不服申請의 裁決 등에 대하여는, 行政不服審査法에 따라 不服申請할 수 없다.
6. 이 法律의 施行前に 이루어진 行政廳의 處分에서 이 法律에 따른 改正前の 規定에 의해 訴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또한 그 提起期間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行政不服審査法에 따른 不服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은 이 法律의 施行日부터 기산한다.
8. 이 法律의 施行前に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9. 前8項에 정하는 것 이외에 이 法律에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政令으로 정한다.

附則(抄) (1965 法 第36號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の 시행 등에 따른 關係法令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5 條(기타 法令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規定의 원칙) 第2章의 規定에 따른 改正후의 法令의 規定은 별단의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965년분 이후의 소득세 또는 이들 법령의 規程에 規定하는 法人의 施行日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의 法人稅에 대하여 적용하고, 1964년분 이전의 소득세 또는 당해 법인의 同日前에 종료한 사업년도분의 法人稅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第 7 條(稅理士法の 일부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第41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의 稅理士法 第33條 第1項 後段에 規定하는 환급청구에 관한 서류, 同法 第33條의2 第1項에 規定하는 申告書(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同法 第34條에 規定하는 신고서는, 당해 改正후의 稅理士法 第33條 第1項 後段, 第33條의2 第1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書類 또는 申告書로 간주한다.

附則(抄) (1966 法 第85號 公認會計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施行期日) 이 法律 중 第1條 및 다음 항에서 附則 第21項까지의 規定은 公布日[1966년 6월 23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第2條 및 附則 第22項부터 第25項까지의 規定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9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稅理士法の 일부改正) 稅理士法(1951년 法律 第237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略)

附則(抄) (1967 法 第36號 登錄免許稅法の 시행에 따른 關係法令의 整備 등에 관한 法律)

1. 이 法律은 登錄免許稅의 施行日[196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68 法 第21號 所得稅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6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70 法 第8號 國稅通則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71 法 第101號 行政書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 중 다음 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公布日부터, 第1條, 다음 條 第1項, 第3項 및 第5項 그리고 附則 第3條의 規定은 公布日[1971년 6월 4일]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1971년 12월 1일]부터, 第2條, 附則 第4條 및 附則 第5條의 規定은 第1條의 規定의 施行日부터 起算하여 1년을 경과한 날 [197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5 條(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에 따른 關係法律의 일부 改正) (第1項 · 第2項 略)

3. 前2項의 規定에 따라 改正後의 司法書士法 第3條 第5號 및 稅理士法 第4條 第8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舊法の 規定에 따라 行政書士의 登錄의 취소는 新法の 規定에 따라 行政書士의 業務의 금지로 간주한다.

附則(抄) (1978 法 第82號 司法書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1.(施行期日) 이 法律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稅理士法の 일부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律에 따른 改正후의 稅理士法 第4條 第8號의 적용에 대하여는 舊法の 規定에 따른 징계처분인 司法書士의 認可의 취소처분은 新法の 規定에 따른 징계처분인 司法書士의 등록의 취소로 간주한다.

附 則(1980년 法 第26號)

1. 이 法律은 公布日[1980년 4월 14일]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規定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① 목차의 改正規定(「第49條의21」을 改正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第4條 第7號의 改正規定, 第5條의 改正規定(同條 第1項 第2號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第6條의 改正規定, 第8條 第1項의 改正規定(同項에 2號를 추가하는 改正規定을 제외한다), 同條 第2項의 改正規定(「第7號」를 「第8號 또는 第9號」로 고치는 부분 중 「第8號」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第10條 및 第12條 第1項의 改正規定, 第13條의 改正規定(「第

8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따른 지정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第14條부터 第17條까지, 第28條 第1項 및 第45條의 改正規定, 第46條의 改正規定(「國稅廳長은, 前條 第1項 또는 第2項」을 바꾸는 부분 및 同條 第2項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 第47條 및 第48條의 改正規定, 第5章 다음에 1章을 더하는 改正規定(第48條의2의 規定 중 「그리고 第8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第49條의12의 改正規定(同條 第2項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 第61條 第4號의 改正規定(同號를 同條 第3號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한다), 附則 第30項, 第32項 및 第34項의 改正規定 그리고 附則 第30項 및 第31項의 規定 1981년 4월 1일

- ② 第8條 第1項에 2號를 더하는 改正規定, 同條 第2項의 改正規定(「第7號」를 「第8號 또는 第9號」로 고치는 부분 중 「또는 第9號」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第13條의 改正規定(「第8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따른 指定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第5章 다음에 1章을 더하는 改正規定(第48條의2의 規定 중 「그리고 第8條 第1項 第10號의 規定에 따른 指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1982년 4월 1일
2. 改正前の 稅理士法(이하 「舊法」이라 한다) 第3條 第1項 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 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改正後の 稅理士法(이하 「新法」이라 한다) 第3條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서 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要件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新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3. 新法 第4條 第7號의 規定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新法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同日前에 舊法 第45條 第1項 또는 第2項 또는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계속 중전의 예에 따른다.
4. 新法 第4條 第8號 및 第9號의 規定은 이 法律 施行日(이하 「施行日」이라 한다) 이후에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施行日前에 舊法 第4條 第8號에 規定하는 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계속 중전의 예에 따른다.
5. 新法 第4條 第10號의 規定은 施行日 이후에 稅理士의 등록이 거부된 者 또는 稅理士의 등록이 취소된 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施行日前에 稅理士의 등록이 거부된 者 또는 稅理士의 등록이 취소된 者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6. 1981년 4월 1일 전에 計理士의 業務의 補助事務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受験資格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7. 1981년 4월 1일 전에 計理士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 및 富裕稅의 賦課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에 있어서 일부과목시험의 면제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8. 新法 第21條 第1項의 規定은 施行日 이후에 된 등록신청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9. 新法 第22條 第1項의 規定은 新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등록신청서를 受理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고, 舊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등록신청서를 受理한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10. 舊法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의 登録申請書를 제출한 者에 관련된 事務所의 명칭의 등록에 대하여는 施行日(시행일 이후에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舊法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名簿에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받은 날)에 있어서 등록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新法 第20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11. 新法 第24條 第1號 및 第43條의 規定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施行日前에 舊法 第24條 第1號 또는 第43條에 規定하는 처분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12. 新法 第26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은 施行日 以後에 稅理士의 登録取消處分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稅理士의 登録取消處分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13. 新法 第28條 第1項 後段의 規定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정지당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同日前に 懲戒處分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정지당한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14. 施行日前에 舊法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稅務官公署에 제출된 書面은 新法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제출된 書面으로 간주하고, 新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15. 施行日前에 舊法 第33條의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에 規定하는 申

告書에 첨부한 書面은 新法 第33條의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에 規定하는 申告書에 첨부한 書面으로 간주하고, 新法 第35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16. 施行日前에 舊法 第40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허가를 받은 稅理士의 당해 許可와 관련된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한 事務所에 대하여는, 新法 第40條 第3項의 規定은 적용하지 않는다.
17. 國稅廳長은 前項에 規定하는 稅理士業務를 행하기 위한 事務所에 대하여 이를 설치할 특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8. 新法 第41條 第1項의 規定은 施行日 이후의 同項에 規定하는 帳簿의 記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施行日부터 起算하여 3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은 舊法 第41條 第1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19. 新法 第45條, 第46條, 第47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48條의 規定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新法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따라 懲戒處分을 할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同日前에 舊法 第45條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懲戒處分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20. 新法 第49條의6 第1項의 規定은 施行日 이후에 新法 第22條 第1項의 規定 또는 附則 第9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舊法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등록을 받은 者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稅理士로서 施行日 전날에 그 者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설립된 稅理士會의 會員이었던 者는 施行日에 있어서 新法 第49條의6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의 稅理士會의 會員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 稅理士로서 施行日에 있어서 그 者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설립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닌 者는 施行日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당해 稅理士會에 입회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稅理士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당해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당해 稅理士會의 會員이 안되었을 때(附則 第16項에 規定하는 事務所를 가진 稅理士가 당해 사무소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설립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안되었을 때를 제외한다)는 그 翌日에 新法 第26條 第1項 第1號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23. 稅理士로서 施行日에 그 者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설립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施行日前에 舊法 第51條 第1項 또는 第51條의2의 規定에 따른 통지를 한 辯護士인 稅理士 또는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인 경우에 있어서 前項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項 中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은 「3년」으로 대치한다.

24. 前項에 規定하는 公認會計士인 稅理士(同項의 規定에 따라 대치하여 적용된 附則 第22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會의 會員이 된 者를 제외한다)가 행하고자 하는 稅理士業務에 대하여는, 施行日부터 起算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舊法 第51條의2의 規定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新法 第52條의 規定 中 「稅理士가 아닌 者는 이 法律」로 되어있는 것은 「稅理士會에 입회한 稅理士가 아닌 者는 이 法律 및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80년 法律 第26호)」로 한다.
25. 稅理士가 아닌 者로 施行日에 있어서 稅理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施行日부터 起算하여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新法 第53條 第1項의 規定은 적용하지 않는다.
26. 施行日前에 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27. 新法 第61條 第3號의 規定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받은 新法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同號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同日前에 받은 舊法 第45條 第1項 또는 第2項 또는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처분에 관련된 舊法 第61條 第4號에 해당하는 행위(施行日前에 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28.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56년 法律 第165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以下省略)

생략 <附則 (1956 法 第165號)의 第3, 4項 參照 P. 166>

29. 前項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の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附則 第3項 後段의 規定에 따라 설립된 同法 附則 第4項에 規定하는 新稅理士會에서 施行日 당시 존재하는 것은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區域을 新法 第49條 第1項의 管轄區域으로써 同項의 規定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新法 그리고 附則 第21項 및 第22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1999 法 第160號 改正)

30. 削除(2000 法 第49號・辨理士法 全文改正)

31. 削除(1999 法 第160號)

附則(抄) (1981 法 第64號 社會保險勞務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81년 6월 2일)부터 起算하여 1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27 條(稅理士法の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 후의 稅理士法 第4條 第9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舊法の 規定에 따른 면허의 취소처분은, 社會保險勞務士의 실격처분의 처분으로 간주한다.

附則(抄) (1983 法 第78號 國家行政組織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施行에 따른 關係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1. 이 法律(第1條를 제외한다)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法律의 시행일 전날에 法律의 規定에 따라 설치된 기관 등에서, 이 法律의 시행일 이후는 國家行政組織法 또는 이 法律에 따른 改正後의 關係 法律의 規定에 따른 政令(이하 「關係政令」이라 한다)의 規定에 따라 설치되도록 된 것에 관한 필요한 經過措置 기타 이 法律의 施行에 따른 關係政令의 제정 또는 改廢에 관한 필요한 經過措置는, 政令으로 정할 수 있다.

附則(抄) (1985 法 第86號 司法書士法 및 土地家屋調査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85년 6월 28일)부터 起算하여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6 條(稅理士法の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後의 稅理士法 第4條 第9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舊法 司法書士法 第12條 第3號의 規定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은 新司法書士法 第12條 第3號의 規定에 따른 업무의 禁止處分으로 간주한다.

附則(抄) (1986 法 第66號 外國辯護士에 의한 法律事務의 취급에 관한 特別措置法)

- 1.(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86년 5월 23일)부터 起算하여 2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88 法 第108號 消費稅法)

第 1 條(施行期日 등) ① 省略

②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律 중 다음의 各號에 계기하는 規定은 당해 各號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省略

2. 附則 (中略) 第31條부터 第45條까지(中略)의 規定 1989년 4월 1일 (1991 法 73號 改正)

第 38 條(稅理士法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 附則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通行稅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의 稅理士法 第2條 第1項(稅理士의 業務)의 規定은 前條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 前條의 規定의 施行前에 物品稅法에 대하여 稅理士法 第7條 第1項(試驗科目의 일부면제)에 規定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者로 同項에 規定하는 申請을 행하는 것에 대한 前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後의 同法 第6條 第1號(시험목적 및 시험과목)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號 科目 중 「또는 酒稅法」으로 되어있는 것은 「酒稅法 또는 物品稅法」이라 한다.

③ 適用日에 있어서 物品稅의 부과 또는 物品稅에 관한 法律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에 대한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後의 稅理士法 第8條 第1項 第4號(시험과목의 일부면제)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號 中 「또는 酒稅」로 되어있는 것은 「酒稅 또는 物品稅」로, 「期間」으로 되어 있는 것은 「期間(物品稅에 관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1991 法 第 73號 改正)

附則 (抄) (1988 法 第110號 地方稅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第 24 條(稅理士法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附則 第7條 第2項 및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오락시설이용세 및 요리음식등소비세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의 稅理士法 第51條의2 規定은, 前條의 規定의 施行後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 (抄) (1991 法 第73號 消費稅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1993 法 第89號 行政節次法の 시행에 따른 관계法律의 정비에 관한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행정절차법(1993 法律 第88號)의 시행일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後略)

附則(抄)(1995 法 第91號 刑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95년 5월 12일]부터 起算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後略)

附則(抄)(1997 法 第9號 地方稅法 및 國有資産등 所在市町村 交付金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1997년 3월 12일]부터 起算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後略)

第28條(稅理士法の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附則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중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特別地方消費稅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의 稅理士法 第51條의 2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抄)(1999 法 第87號 地方分權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關係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後略)

附則(抄)(1999 法 第102號 中央省廳등 개혁을 위한 國家의 行政組織關係 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內閣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9년 法律 제88號)의 施行日[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後略)

第59條(稅理士法の 一部 改正) 稅理士法(1951 法 第237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목차 중 「第5章의2 稅理士審査會(第48條의2-第48條의10)」을 삭제한다. 第5章의2를 삭제한다.

附則(抄)(1999 法 第151號 民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시행에 따른 關係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後略)

附則(抄)(1999 法 第160號 中央省廳등 改革關係法施行法)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第2條 및 第3條를 삭제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後略)

附則(抄)(2000 法 第49號)

第 1 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後略)

第 19 條(稅理士法の 一部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舊法 第17條의 規定에 따라 업무의 금지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는 前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後의 稅理士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가 될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附 則(2001 法 第38號)

1. 이 法律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法律의 시행하는 날(이하 「施行日」이라 한다)前에 改正前의 稅理士法(이하 「舊法」이라 한다) 第4條 第4號 및 第5號에 規定하는 舊稅務代理士法(1942년 法律 第46號)의 規程에 따른 刑에 처해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의 資格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施行日前에 舊法 第5條 第1項 第9號에 規定하는 舊大學令(1918년 勅令 第388號), 舊高等學校令(1918년 勅令 第389號) 또는 舊專門學校令(1903년 勅令 第61號)의 規定에 따른 大學, 高等專門學校, 大學豫科, 高等學校高等科나 專門學校 또는 政令으로 정하는 이들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수료한 者로서 이들 학교에서 法律學 또는 經濟學을 修學한 者 및 舊法 第5條 第1項 第10號에 規定하는 高等試驗本試驗에 합격한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수험자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4. 改正後의 稅理士法(이하 「新法」이라 한다) 第7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碩士學位를 취득하기 위하여 學校教育法(1947년 法律 第26號) 第68條의2 第1項에 規定하는 大學院 과정(同條 第3項 第2號에 規定하는 대학원에 상당하는 교육을 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진학하는 者에 대하여 적용한다.
5. 新法 第8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이들 號에 規定하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者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者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진학한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시험과목의 면제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6. 시행일전에 舊法 第8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에서 規定하는 教授, 助教授 또는 講師 중 어느 쪽 職에 취임한 者と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시험 과목의 면제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7. 시행일전에 舊法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稅務官公署에 제출된 書面은 新法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제출된 書面으로 간주하고, 新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8. 新法 第35條의 規定은 시행일 이후에 同條 第1項에 規定하는 조사를 할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9. 新法 第49條의6의 規定은 시행일 이후에 稅理士事務所를 소속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설립된 구역에 이전할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稅理士事務所를 소속 稅理士會 이외의 稅理士會가 설립된 구역에 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10. 新法 第49條의18의 規定은 시행일 이후에 開始하는 사업년도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이 法律의 시행 당시 舊法 附則 第37項의 허가를 받은 公認會計士가 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행하는 稅理士業務에 대하여는 同項부터 舊法 附則 第44項까지의 規定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舊法 附則 第37項 중 「당분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 附則 第2項부터 前項까지 정하는 것 외에 이 法律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經過措置는 政令으로 정한다.

附則(抄) (2001 法 第129號 商法 등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시행에 따른 관련法律의 정비에 관한 法律)

- 1.(施行期日) 이 法律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罰則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律의 施行前에 한 행위 및 이 法律의 規定에 따라 종전의 예에 다르도록 된 경우에 있어서 이 法律의 施行後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第 2 部 稅理士法施行令

(日本 稅理士法施行令)

制定 1956. 6. 15 政令 第216號

改正 1956 政令 第226號, 1961 政令 第194號, 1961 政令 第394號,
1962 政令 第391號, 1966 政令 第234號, 1972 政令 第 10號,
1975 政令 第131號, 1980 政令 第257號, 1981 政令 第 46號,
1981 政令 第 61號, 1985 政令 第 62號, 1988 政令 第361號,
1988 政令 第363號, 1990 政令 第117號, 1992 政令 第252號,
1997 政令 第 93號, 1997 政令 第385號, 1999 政令 第122號,
2000 政令 第 81號, 2000 政令 第 82號, 2000 政令 第307號,
2000 政令 第361號, 2001 政令 第330號

第 1 條(稅理士業務의 對象이 아닌 租稅) 稅理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 2條 第1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는 印紙稅, 登錄免許稅, 自動車重量稅, 電源開發促進稅, 關稅, 噸稅, 特別噸稅, 狩獵者登錄稅 및 入獵稅, 法定外 普通稅(法 第2條 第1項에 規定하는 法定外普通稅를 말하며, 地方稅法(1950년 法律 第226號) 第1條 第2項에서 준용하는 同法 第4條 第3項이나 第5條 第3項의 規定 또는 同法 第734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되는 普通稅를 포함한다) 및 法定外 目的稅(法 第2條 第1項에 規定하는 法定外目的稅를 말하며 地方稅法 第1條 第2項에서 준용하는 同法 第4條 第6項 또는 第5條 第7項의 規定 또는 同法 第735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부과하는 目的稅를 포함한다)라 한다.

(改正 1956 政 第226號, 1980 政 第257號, 1985 政 第62號, 1988 政 第361, 363號, 1990 政 第117號, 1997 政 第385號, 1999 政 第122號, 2000 政 第81號)

第 1 條의2(申告 等) 法 第2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行위는 租稅(前條에 規定하는 租稅를 除外한다)에 관한 法令 또는 行政不服 審査法(1962년 法律 第160號)의 規定에 따른 申告, 報告, 申請, 請求,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1980 政 第257號 追加)

第 1 條의3(會計에 관한 事務) 法 第3條 第1項 및 第5條 第1項 第2號 라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는 貸借對照表計定 및 損益計定을 설정하여 計理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機械的 事務를 除外한다)로 한다.(1980 政 第257號 追加, 2001 政 第330號 改正)

第 2 條(會計檢査 등에 관한 行政事務) 法 第5條 第1目 第2號 나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한 會計檢査, 金融檢査 또는 會社 기타 團體의 經理에 관한 行政事務는 다음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1. 會計檢査院의 職員이 행하는 租稅(關稅, 噸稅 및 特別噸稅를 除外한다) 收入에 관한 檢査事務 (1961 政 第194號 改正)
2. 地方公共團體의 監査委員 또는 補助職員이 행하는 租稅收入에 관한 監査事務
3. 法 第5條 第1項 第2號 라目에 規定하는 法人의 前條에 規定하는 會計에 관한 事務에 關連된 法令의 規定에 따라 행하는 檢査事務 (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4. 財政融資資金의 운용에 대하여 행하는 運用先의 監事事務 (2000 政 第361號 改正)
5. 銀行法(1981 法律 第59號) 기타 法律에 따른 檢査事務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것(1992 政 第252號, 2000 政 第307號 改正)
6. 證券去來法(1948 法律 第25號) 기타 法律에 따른 犯則事件의 調査事務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것 (上同)
7. 金融機關再建整備法(1946 法律 第39號) 또는 企業再建整備法(1946 年 法律 第40號)의 規定에 따라 행하는 整備計劃書 또는 最終處理方法書의 審査事務(1961 政 第194號, 1980 政 第257號 改正)

第 3 條(資金의 運用에 관한 事務) 法 第5條 第1項 第2號 다目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貸出 기타 資金運用에 관한 事務는 資金의 貸出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에 관하여 행하는 貸出先 또는 投資先의 業務 및 財産에 관한 帳簿書類의 審査事務 그리고 당해 審査事務를 포함하는 資金의 貸出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에 관한 事務라 한다.(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第 4 條(會計에 관한 事務) 削除 (1980 政 第257號 削除)

第 5 條(法律上 資格을 가지는 者) 法 第5條 第1項 第2號 라目に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法律上 資格을 가지는 者는 辨理士, 司法書士, 行政書士, 社會保險勞務士 또는 不動産鑑定士 또는 不動産鑑定士補라고 한다.(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第 6 條(試驗科目의 一部免除의 基準) 法 第7條 第1項에서 第3項까지 및 第11條 第2項에 規定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은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第 6 條의 2(受驗手數料 등) ① 法 第9條 第1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은 受驗科目數가 1인 경우에 있어서는 3,500円, 受驗科目數가 2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3,500円에 1,000円에 1을 넘는 受驗科目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1966 政 第234號 追加, 1975 政 第131號, 1981 政 第46號, 1997 政 第93號, 2000 政 第82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② 法 第9條 第2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은 8,800円으로 한다.(2001 政 第330號 追加)

第 6 條의 3(稅理士會의 通知) 稅理士會가 法 第4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大臣에게 通知할 때는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야 한다.(1981 政 第61號 追加, 2000 政 第307號 改正)

第 7 條(稅理士會의 設立) ① 稅理士가 法 第49條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당해 設立하고자 하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될 稅理士 5人 이상이 設立委員이 되고, 會則을 정하고, 設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法 第49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認可申請書를 國稅廳長을 경유하여 財務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0 政 第307號 改正)

② 設立委員이 設立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그 日時 및 場所 그리고 會議의 目的이 될 事項을 會議日 2주전까지, 會員이 되어야 할 稅理士에게 書面으로 通知함과 동시에 國稅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③ 設立總會의 議決은 會員이 될 稅理士의 2분의 1 이상의 出席과 그 出席者의 3분의 2 이상의 多數決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上同)

- ④ 會員이 될 稅理士로서 設立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者는 사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에 대하여 贊否의 意見을 밝힌 書面으로 出席者에게 委任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上同)
- ⑤ 前項의 規定에 따라 議決權을 行使하는 者는 設立總會에 出席한 것으로 간주한다.(上同)
- ⑥ 第1項의 申請書에는 會則 그리고 會員이 될 稅理士의 名簿 및 設立總會의 議事錄을 添附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0 政 第307號 改正)

第 7 條의2(稅理士會의 會則 變更) ① 法 第49條의2 第3項에 規定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同條 第2項 第4號부터 第9號까지 掲기하는 事項으로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② 稅理士會는 法 第49條의2 第3項의 認可를 받고자 할 때는 당해 認可申請書를 國稅廳長을 經유하여 財務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2000 政 第307號 改正)

③ 前項의 申請書에는 同項의 認可와 관련된 變更前의 會則 및 당해 變更後의 會則 그리고 당해 會則의 변경에 관한 總會의 議事錄을 添附하여야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改正)

第 8 條(總會의 召集) 稅理士會는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그 日時 및 場所 그리고 會議의 目的이 되는 事項을 總會日 2주전까지 당해 稅理士會의 會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會員인 稅理士에 한한다. 다음 條에 같다)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第 9 條(總會의 議事) ① 稅理士會의 總會의 議事は 會員의 2분의 1 이상의 出席과 그 出席者의 過半數로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1956 政 第226號 追加)

② 稅理士會의 總會에 있어서 會則의 變更에 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員의 2분의 1 이상 出席과 그 出席者의 3분의 2 이상 多數決로 결정하여야 한다.(上同)

③ 第7條 第4項 및 第5항의 規定은 前 2項의 議決에 대하여 준용한다.(上同)

④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회원은 稅理士會가 前條의 規定에 따라 總會의 召集通知를 하여야 할 會員으로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改正)

第 10 條(會員名簿) 稅理士會는 그 會員名簿를 作成하고 항상 整備해 두어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第 11 條(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設立) ① 稅理士會가 法 第49條의1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日本稅理士會連合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는 會員이 될 稅理士會는 會則을 정하여 設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法 第49條의15에 준용하는 法 第49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書를 國稅廳長을 경유하여 財務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61 政 第394號, 1980 政 第257號, 2000 政 第30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② 第7條 第6項의 規定은 前項의 申請書의 提出에 대하여 준용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第 11 條의2(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의 變更) ① 法 第49條의14 第2項에 規定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同條 第1項 第1號(法 第49條의2 第2項 第4號 및 第5號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第4號부터 第6號까지 계기하는 사항으로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② 第7條의2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法 第49條의14 第2項의 認可를 받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上同)

第 12 條(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總會) ①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그 會則에서 總會에서의 會員의 議決權을 會員인 稅理士會의 會員인 稅理士의 數에 따르는 것으로 할 수 있다.(1956 政 第226號 追加, 2001 政 第330號 改正)
② 第8條 및 第9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前項의 規定에 따라 會則에서 會員의 議決權에 관한 規定을 할 때는 同條 第1項 및 第2項 중 「出席者」라는 것은 「出席한 會員의 議決權」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改正)

第 12 條의2(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 ① 資格審査會의 委員에는 稅理士, 國稅 行政事務에 종사하는 職員, 地方稅 行政事務에 종사하는 職員 및 學識 經驗者 各 1人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②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法 第49條의16 第5項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 承認申請書를 國稅廳長을 경유하여 財務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961 政 第394號 追加, 2000 政 第307號 改正)

③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資格審査會의 委員에 缺員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보충하여야 한다.(1961 政 第394號 追加)

④ 資格審査會의 委員은 再任될 수 있다.(上同)

⑤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會務를 總括한다.(上同)

⑥ 資格審査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會議을 열거나 議決을 할 수 없다.(上同)

⑦ 資格審査會의 議事는 出席委員의 過半數로 決定하고 可否同數인 때는 會長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上同)

⑧ 前 各項에 規定하는 것 외에 資格審査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會則으로 정한다.(上同)

第 13 條(稅理士會의 報告) 稅理士會가 法 第49條의9의 規定에 따라 財務大臣에게 報告할 때는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야 한다. (1956 政 第226號 追加, 1980 政 第257號, 2000 政 第307號 改正)

第 14 條(臨時 稅務書類의 作成 등을 許可하는 任職員이 속한 法人 기타 團體) 法 第50條 第1項 但書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法人 기타 團體는, 農業協同組合, 漁業協同組合, 事業協同組合 및 商工會로 한다.(1956 政 第226號, 1972 政 第10號, 1980 政 第257號 改正)

第 14 條 의2(行政書士가 稅務書類의 作成을 할 수 있는 租稅) 法 第51條의 2에 規定한 政令으로 정하는 租稅는 石油가스세, 不動產取得稅, 道府縣담배稅(都담배稅를 포함한다), 市町村담배稅(特別區 담배稅를 포함한다), 特別土地保有稅 및 入湯稅로 한다.(1980 政 第257號 追加, 1985 政 第62號, 1988 政 第361, 363號 改正)

第 15 條(당해 職員의 證票携帶) 法 第49條의19 第1項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員이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업무상황 또는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검사하는 경우 또는 法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당해 職員이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에게 질문 또는 그 업무에 관한 帳簿書類를 검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職員은 그 신분을 나타낼 證票을 휴대하여 利害關係人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1956 政 第226號, 1961 政 第394號, 1980 政 第257號, 2001 政 第330號 改正)

附 則

1. 이 政令은 法施行日(195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法 附則 第4項 및 第8項에 規定하는 稅法에 관한 講習은 稅理士會(法 附則 第12項의 法人을 포함한다), 稅理士會連合會 또는 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은 기관이 國稅廳長에게 신고한 實施計劃에 따라 행하는 國稅 및 地方稅에 관한 法令의 講習으로 한다.
3. 法 附則 第4項 및 第8項에 規定하는 受講時間은 前項에 規定하는 各 기관이 행하는 講習을 통하여 계산한다.
4. 法 附則 第5項의 規定에 따른 稅理士試驗委員의 認定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행한다.
 - ① 稅務署(舊 外地에서 이에 상응하는 官署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또는 富裕稅의 賦課에 관한 事務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 되는 者
 - ② 稅務署에서 前號에 계기한 사무 이외의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 되는 者
 - ③ 國稅局(舊 稅務監督局 및 舊 財務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國稅廳 또는 大藏省 主稅局(舊 外地에서 이들 官署에 상응하는 官署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또는 富裕稅의 賦課 또는 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稅法, 富裕稅法 또는 國稅徵收法의 立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 되는 者
 - ④ 國稅局, 國稅廳 또는 大藏省 主稅局에서 前號에 계기하는 사무 이외의 國稅에 관한 行政事務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4년 이상이 되는 者
 - ⑤ 都道府縣, 特別區 또는 地方自治法(1947년 法律 第67號) 第155條 第2項에 規定하는 政令에서 지정하는 市에 있어서 營業稅, 事業稅 또는 特別所得稅, 市町村民稅 또는 固定資產稅의 賦課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 되는 者
 - ⑥ 前項에 계기하는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 同號에 계기하는 사무 이외의 地方稅의 賦課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해서 5년 이상이 되는 者
 - ⑦ 인구 5,000 이상의 市町村(地方自治法 第155條 第2項에 規定한 政令으로 지정하는 市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市町村民稅 또는 固定資產稅의 賦課

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직책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 되는 자

⑧ 前號에 계기하는 市町村에 있어서 同號에 계기하는 사무 이외의 地方稅의 賦課에 관한 事務를 분장하는 係長 이상의 職責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7년 이상이 되는 者

5. 前項 第1號부터 第4號까지 規定하는 직책의 둘 이상에 있었던 者 또는 同項 第5號부터 第8號까지 規定하는 직책의 둘 이상에 있었던 者는 당해 직책에 대하여 이들 號에 規定하는 年數를 5년으로 하는 비율에 따라 年數를 환산해서 同項 第1號부터 第4號까지 規定하는 職責 둘 이상에 있었던 기간 또는 同項 第5號부터 第8號까지 規定하는 직책 둘 이상에 있었던 기간을 통산한 경우에, 그 기간이 5년 이상이 될 때는 각각 同項 第2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 간주한다.

6. 前2項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第4項 각호에 規定하는 직책과 동등 이상의 職責으로 稅理士試驗委員의 인정을 받은 직책은 각각 당해 각호에 規定하는 직책으로 간주한다.

7. 前項에 規定하는 稅理士試驗委員의 인정을 받은 절차에 대하여는 大藏省 令으로 정한다.

8. 法 附則 第31項 第1號에 規定하는 20년 이상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사무의 구분에 따라 政令으로 정하는 年數는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사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계기하는 年數로 한다.(1956 政 第226號 추가, 1961 政 第194號 改正)

① 官公署에서 國稅에 관한 사무 또는 官公署에서 地方稅에 관한 사무 중 事業稅 또는 固定資産稅(舊 地方稅法(1940년 法律 第60號) 기타 地方稅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따른 營業稅, 地租, 家屋稅 및 이들 附加稅를 포함한다)의 賦課 또는 地方稅에 관한 法令의 立案에 관한 사무 20년 (1961 政 第194號 改正)

② 官公署에서 地方稅에 관한 사무 중 前號에 계기하는 사무 이외의 것 25년(上同)

9. 法 附則 第31項 第1號에 계기하는 者에는 前項 각호에 계기하는 사무에 종사한 者로 同項 第1號에 계기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 年數를 20으로 나누어 25를 곱해서 얻은 年數와, 同項 第2號에 계기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 年數를 합제한 年數가 25년 이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61 政 第194號 改正)

10. 法 附則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은 法 附則 第31項 第1號에 계기하는 者에 관해서는 法 第6條 第2號에 規定하는 會計學에 속한 과목을 주로 한 會計에 관한 실무에 관하여, 同項 第2號에 계기하는 者에 대하여는 同條 第1號에 規定하는 稅法에 속한 과목을 주로 한 租稅에 관한 實務에 관하여, 각각 필기 및 구두로 행한다. 단, 필기에 의한 시험성적점수와 第12項의 規定에 따라 가산된 점수와 합계점수가 필기 및 구두에 의한 시험의 滿點 合計數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는 구두에 의한 시험을 면제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61 政 第61號 改正)
11. 法 附則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의 합격은 필기 및 구두에 의한 시험의 득점수의 합계수에 다음 項의 規定에 따라 가산하는 점수를 가산한 點數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點數가 필기 및 구두에 의한 시험의 만점의 합계수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는 者를 합격자로 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2. 法 附則 第33項의 規定에 의한 年數의 참작은, 그 者의 法 附則 第30項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試驗의 得點數의 合計數에, 필기 및 구두에 의한 시험의 만점의 合計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點數와 法 附則 第31項 각호에 계기하는 者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規定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年數(第9項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 者에 대하여는 同項에 規定하는 합계한 年數)에서 당해 각호에 規定하는 年數(第9項의 規定의 적용을 받는 者에 대하여는 25년)를 공제한 年數(당해년도에 1년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는 그 端數를 1년으로 계산한 年數)의 1年當 당해 만점의 합계수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點數와의 합계액(당해 합계수가 당해 만점의 합계수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점수를 넘을 때는 당해 점수)을 가산하는 방법에 의한다.(1956 政 第226號 追加, 1961 政 第194號 改正)

附 則(1956 政 第226號)

1. 이 政令은 공포일[195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稅理士法 第49條 第1項 또는 稅理士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1980년 法律 第26號) 附則 第28項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56년 法律 第165號 이하 「一部改正法」이라 한다) 附

則 第3項 後段 또는 稅理士法 第49條의1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稅理士會(이하 「新稅理士會」라고 한다)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一部改正法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 第49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하는 稅理士會 또는 稅理士會連合會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가옥에 新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事務所用으로 제공하는 것의 登記에 관하여는 一部改正법 부칙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免許稅를 면제한 다.(1980 政 第257號 改正)

3. 一部改正法 부칙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免許稅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者는 그 면제를 받고자 하는 登記의 申請書에 당해 登記를 받을 토지 또는 가옥이 新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의 事務所用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國稅廳長의 證明서를 添附하여야 한다.

附 則(1961 政 第194號)

이 政令은 공포일(196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61 政 第394號)

1. 이 政令은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61년 法律 第137號)의 시행일(196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以下 省略)

附 則(1962 政 第391號 行政不服審査法 및 行政不服審査法の 시행에 따른 관계 法律의 정비 등에 관한 法律의 시행에 따른 關係政令의 整備에 관한 政令)

1. 이 政令은 行政不服審査法(1962 法律 第160號)의 시행일(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政令에 의한 改正후의 規定은 이 政令의 施行前에 이루어진 行政廳의 處分 기타 이 政令의 施行前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단, 이 政令에 의한 改正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을 막지 않는다.
3. 이 政令의 施行前에 제기된 訴願, 審査請求, 異議申請, 기타 불복신청(이하 「訴願」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이 政令의 施行後에도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政令의 施行前에 제기된 訴願 등의 裁決, 決定 기타 處

分(이하 「裁決 등」이라 한다) 또는 이 政令의 施行前에 提起된 訴願 등에 관하여 이 政令의 施行後에 이루어지는 裁決 등에 다시 不服이 있을 경우의 訴願 등에 관하여도 같다.

4. 前項에 規定하는 訴願 등에서 이 政令의 施行後에는 行政不服審査法에 의한 不服申請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處分에 관련된 것은 이 政令에 의한 改正後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同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다.

附則(抄)(1966 政 第234號 公認會計士法施行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政令)(施行期日)

1. 이 政令은 공포일(196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改正後의 稅理士法施行令 第6條의2의 規定은 이 政令의 시행일 이후에 실시 공고가 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政令의 시행일전에 실시 공고가 된 시험에 관하여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1972 政 第10號)

이 政令은 공포일(197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75 政 第131號)

이 政令은 공포일(197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80 政 第257號)

1. 이 政令은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80년 法律 第26號)의 시행일(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稅理士 이외의 者가 改正후의 稅理士法施行令(다음 항에 있어서 「新令」이라고 한다) 第1條에 規定하는 租稅 이외의 租稅에 관하여 이 政令의 시행일전에 위촉을 받은 사건으로 같은 날에 그 처리가 종료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 당해 稅理士 이외의 者가 행하는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이하 이 項에서 「改正法」이라고 한다)에 의한 改正後의 稅理士法 第2條 第1項 각호에 제기하는 업무에 상당하는 행위(改正法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 第2條에 規定하는 稅理士業務인 행위에 해당하는 행

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이 政令의 시행일부터 1961년 3월 31일까지의 동안에 있어서 新令 第13條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同條 중 「法 第49條의9」라고 되어 있는 것은 「法 第49條의9 또는 法 第49條의10 第2項」으로, 「大藏大臣」으로 되어 있는 것은 「大藏大臣 또는 國稅廳長」으로 한다.
4. 稅理士法施行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政令(1956년 政令 第226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省略(附則(1956 政令 第226號) 參照)
5. 社會保險勞務士法施行令(1968년 政令 第327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號 중 「第2條」를 「第2條 第1項」으로 고친다.
6. 沖繩(오끼나와) 복귀에 따른 국세관계법령의 적용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政令(1972년 政令 第151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7. 會社臨時特別稅法施行令(1974년 政令 第100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附則(1981 政 第46號 保險募集의 단속에 관한 法律에 의한 등록수수료에 관한 政令 등의 일부를 改正하는 政令)

第1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1981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抄)(1981 政 第61號)

1. 이 政令은 1981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2. 大藏省組織令(1952년 政令 第386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3. 沖繩의 복귀에 따른 국세관계법령의 적용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政令(1972년 政令 第151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4. 前項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의 沖繩의 복귀에 따른 국세관계법령의 적용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政令 第127條 第6項에 規定하는 업무에 종사한 者에 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則(抄)(1985 政 第62號)

이 政令은 1985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抄) (1988 政 第361號 消費稅法の 시행에 따른 關係政令의 정비 등에 관한 政令)

第 1 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1989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 5 條(稅理士法施行令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 法 附則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 稅理士法(1951년 法律 第237號) 第2條 第1項(稅理士의 업무)의 規定의 적용에 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施行令 第1條(稅理士業務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租稅)의 規定은 第5條의 規定의 施行後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② 法 附則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入場稅에 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施行令 第14條의2(行政書士가 세무서류의 작성을 행할 수 있는 租稅)의 規定은 第5條의 規定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附則(抄) (1988 政 第363號 地方稅法施行令의 일부를 改正하는 政令)

第 1 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1988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略)

第 8 條(稅理士法施行令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 지방세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88년 法律 第110號. 다음 항에서 「改正法」이라고 한다) 附則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電氣稅 및 가스稅에 관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前の 稅理士法施行令(다음 항에서 「舊 稅理士法施行令」이라고 한다) 第1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의 施行後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② 改正法 附則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道府縣 담배消費稅, 改正法 附則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市町村 담배消費稅 및 改正法 附則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木材去來稅에 관하여는, 舊 稅理士法施行令 第14條의2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抄) (1990 政 第117號 去來所稅法施行令)

第 1 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1990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

(略)

第 6 條(稅理士法施行令의 일부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去來稅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

定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施行令 第1條(稅理士 업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租稅)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抄) (1992 政 第252號)

- 1.(施行期日) 이 政令은 1992년 7월 20일부터 施行한다.
- 2.(經過措置) 이 政令은 시행일전에 金融檢査官 또는 證券檢査官이 행하는 .
검사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시험의 수험자격에 대
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則(抄) (1997 政 第93號 稅理士法施行令 등의 一部를 改正하는 政令)

- 1.(施行期日) 이 政令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抄) (1997 政 第385號 日本銀行法施行令)

- 1.(施行期日) 이 政令은 법의 시행일(1998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後略)

附則(抄) (1999 政 第122號)

第 1 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1999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 2 條(稅理士法施行令의 一部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有價證券去來稅法 및
去來所稅法을 폐지하는 法律 부칙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 종
전의 예에 따르도록 된 去來所稅에 대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
의 稅理士法施行令 第1條의 規定은 第9條의 規定의 施行後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附則(抄) (2000 政 第81號)

1. 이 政令은 2000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抄) (2000 政 第82號)

- 1.(施行期日) 이 政令은 2000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抄) (2000 政 第307號)

第1條(施行期日) 이 政令은 2001년 1월 6일부터 施行한다.

附則(抄) (2000 政 第361號)

1. 이 政令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政令의 施行前에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전의 稅理士法시행령 第2
條 第4號에 規定하는 資金運用部資金 또는 美國對日援助對充資金의 운용

에 대하여 행하는 運用先의 監査事務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後の 同號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改正後の 同號에 規定하는 財政融資資金의 運用에 관하여 행하는 運用先의 감사사무로 간주한다.

附則(抄) (2001 政 第330號)

1. 이 政令은 2002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 3 部 稅理士法施行規則

(日本 稅理士法施行規則)

制定 1951. 6. 15 大藏省令 第55號

改正 1951 藏令 第 93號, 1954 藏令 第107號, 1956 藏令 第 48號,
1961 藏令 第 38號, 1961 藏令 第 76號, 1966 藏令 第 47號,
1967 藏令 第 44號, 1969 藏令 第 20號, 1975 藏令 第 19號,
1980 藏令 第 41號, 1981 藏令 第 7 號, 1982 藏令 第 22號,
1986 藏令 第 4 號, 1992 藏令 第 66號, 1994 藏令 第110號,
1994 藏令 第111號, 1997 藏令 第 18號, 1998 藏令 第 51號,
1998 藏令 第 97號, 1998 藏令 第166號, 1999 藏令 第 54號,
2000 藏令 第 14號, 2000 藏令 第 61號, 2000 藏令 第 69號,
2001 財令 第 58號

第1章 稅理士の業務

第1條(申告書 등) 稅理士法(1951년 法律 第237號, 이하 「法」이라 한다)

第2條 第1項 第2號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書類는 申告書, 報告書, 申請書, 請求書, 計算書, 明細書 기타 이에 준하는 書類라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第1章의 2 稅理士試驗

第1條의2(金融檢査등의 事務) ① 稅理士法施行令(1951년 政令 第216號, 이하 「令」이라 한다) 第2條 第5號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檢査事務는 다음에 掲記하는 것으로 한다.(1992 藏令 第66號 追加, 1998 藏令 第97號, 166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1. 金融廳組織規則(1998년 總理府令 第81號) 第7條 第1項에 規定하는 金融證券檢査官이 행하는 金融檢査事務 (2000 藏令 第12號, 69號 改正)
2. 財務省組織規則(2001년 財務省令 第1號) 第232條 第1項에 規定하는 金融證券檢査官이 행하는 檢査事務 (2000 藏令 第69號 改正)
3. 金融廳組織規則 第11條 第1項에 規定하는 證券去來檢査官이 행하는 檢査事務 (2000 藏令 第61號, 69號 改正)
4. 財務省組織規則 第191條 第1項에 規定하는 證券去來檢査官이 행하는 檢査事務 (2000 藏令 第69號 改正)

② 令 第2條 第6號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犯則事件의 調査事務는 다음에 掲記하는 것으로 한다.(1992 藏令 第66號 追加, 1998 藏令 第97號, 166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1. 金融廳 組織規則 第12條 第1項에 規定하는 證券去來特別調査官이 행하는 犯則事件의 調査事務 (2000 藏令 第61號, 69號 改正)
2. 財務省組織規則 第193條 第1項에 規定하는 證券去來特別調査官이 행하는 犯則事件의 調査事務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第1條의3(大學 등과 同等 以上の 學校) 法 第5條 第1項 第3號에 規定하

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학교는 學校教育法(1947 法律 第26號)의 規定에 따라 大學, 專修學校(同法 第82條의10에 規定하는 專門課程에 한한다) 및 1953년 文部省告示 第5號(大學院 및 大學의 專攻科의 入學에 관하여 大學을 졸업한 者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文部科學大臣이 정하는 件) 第5號부터 第9號까지 規定하는 大學校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제 1 條의4(受驗資格認定の 申請) ①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에 관하여 法 第5條 第1項 第5號 또는 同條 第3項에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號 樣式에 따라 稅理士試驗受驗資格認定申請書에 다음에 掲기하는 書類를 添付하여 國稅審議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0 藏令 第41號, 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1. 法 第5條 第1項 第5號의 認定을 받고자 할 때는 學歷 또는 經歷을 證明하는 書面 (1969 藏令 第20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2. 法 第5條 第3項의 認定을 받고자 할 때는 事務 또는 業務의 내용을 證明하는 書面 (上同)

② 前項의 申請書의 提出이 있었던 경우에 國稅審議會가 法 第5條 第1項 第5號 또는 同條 第3項의 인정을 했을 때 또는 그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國稅審議會 會長은 그 내용을 당해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2 條(受驗願書) ① 稅理士試驗을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2號 양식에 따라 稅理士試驗受驗願書에 다음에 掲기하는 서류를 添付하여 稅理士試驗受驗願書의 접수기간 내에 당해 試驗을 받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國稅局長을 經유하여 이를 國稅審議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69 藏令 第20號, 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1. 稅理士試驗受驗申請書
2. 受驗票 및 寫眞票
3. 受驗資格을 가진 것을 證明하는 書面

② 法 第7條의 規定에 따라 시험과목 중에 일부 과목에 관하여 시험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시험의 면제를 받을 과목을 前項 第1號의 稅理士試驗受驗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1969 藏令 第20號 追加)

③ 前項에 規定하는 者 중 法 第7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의 각호에 掲기하는 서류를 添付한

별지 第3號 양식에 의한 研究認定申請書를 第1項의 稅理士試驗受験願書에 첨부하여야 한다.(2001 財令 58 追加)

1. 석사학위를 授與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성적증명서
3. 석사학위취득에 관련된 석사논문의 사본
4. 별지 第4號 양식에 따른 지도교수의 증명서
5. 前號까지 제기한 서류 외에 國稅審議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④ 法 第8條의 規定에 따라 試驗科目 중 일부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시험면제를 받을 과목을 第1項 第1號의 稅理士試驗受験申請書에 기재하여, 그 資格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書面을 同項의 稅理士試驗受験願書에 첨부하여야 한다.(1969 藏令 第20號 追加, 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⑤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國稅局長이 稅理士試驗受験願書를 수리하였을 때는 당해 원서는 同項의 規定에 따라 國稅審議會 會長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1961 藏令 第38號, 1969 藏令 第20號, 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2條의2(法 第7條 第2項 등의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科目) ① 法 第7條 第2項에서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과목은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1. 租稅(關稅, 噸稅 및 特別噸稅를 제외한다. 다음 號에서 같다)에 관한 法律(법 第6條 第1號에 規定한 稅法에 속한 과목을 제외한다)
2. 外國과의 租稅에 관한 協定을 다루는 과목
3. 法 第6條 第1號에 規定하는 稅法에 속한 과목 및 前2號에 제기하는 과목에 속하는 과목

② 法 第7條 第3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과목은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1. 原價計算論
2. 會計監査論
3. 法 第6條 第2號에 規定하는 會計學에 속하는 과목 및 前2號에 제기하는 과목과 유사한 과목

第2條의3(認定基準의 公告 등) ① 國稅審議會는 法 第7條 第2項 및 第3項에 規定하는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했을 때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解除하였을 때도 같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② 第2條 第3項에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로부터 同項의 研究認定申請書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國稅審議會가 당해 申請書를 제출한 者에 대하여 당해 認定을 했을 때 또는 인정을 하지않았을 때는 國稅審議會 會長은 그 취지를 당해 申請書를 제출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③ 第2條 第4項에 規定하는 시험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同條 第1項의 稅理士試驗受験願書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國稅審議會가 당해 願書를 제출한 者에 대하여 당해 면제를 할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면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때는 國稅審議會 會長은 그 趣旨를 당해 願書를 제출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 條의4(管理監督的 地位 등) 法 第8條 第1項 第10號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職責은 다음 各號에 계기하는 官公署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各號에 계기하는 國稅(關稅, 噸稅, 및 特別噸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地方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職責으로 한다.(1982 藏令 第22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1. 稅務署, 國稅局, 國稅廳(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財務省 主稅局, 國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係長 이상의 職責 또는 國稅調査官, 國稅徵收官 기타 이 職責들에 상응하는 專門的인 職責(다음 號에서 「國稅調査官 등」이라 한다) (2000 藏令 第69號 改正)
2. 前號에 계기하는 官公署 이외의 官公署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係長 이상의 職責 또는 國稅調査官 등에 준하는 職責으로 그 職務의 複雜, 困難 및 責任度가 前號에 계기하는 職責에 상당하는 것.

第 2 條의5(指定研修의 要件) 法 第8條 第1項 第10號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요건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1. 官公署가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職務上의 훈련으로써 행하는 研修
2. 法 第6條의 2號에 規定하는 會計學에 속하는 과목(이하 이 條에서는 간단히 「會計科目」이라 한다)을 필수로 하는 研修.
3. 會計科目에 관하여 고도의 研修를 행하는 것일 것.
4. 前號에 規定하는 研修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필요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研修時間이 확보되어있을 것.
5. 會計科目에 관련된 研修의 효과를 測定하기위하여 試驗이 행해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研修의 修了要件으로 되어있을 것.

第2條의6(指定研修의 公告 등) ① 國稅審議會는 法 第8條 第1項 第10號에 規定하는 研修를 지정한 때는 그 취지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도 같다.(1982 藏令 第22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② 國稅審議會는 前項에 規定하는 研修가 前條에 規定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檢證하는 것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3條(試驗免除의 申請 등) ① 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따라 法 第6條에 정한 試驗科目의 전부에 관해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者(다음 項에 規定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別紙 第5號 양식에 의한 稅理士試驗免除 申請書에 다음에 제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國稅審議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69 藏令 第20號, 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1. 주민표의 사본

2. 法 第8條의 規定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書面(1981 藏令 第7號 改正)

② 法 第7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國稅審議會의 인정을 받는 것에 의하여 前項에 規定하는 試驗科目의 전부에 관해 試驗의 免除를 받을 수 있게 된 者로 당해 認定 및 당해 免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6號 양식에 의한 研究認定申請書 겸 稅理士試驗免除申請書에 第2條 第3項 각 호에 제기하는 서류 및 前項 각호에 제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國稅審議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③ 第1項의 申請서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國稅審議會가 당해 申請서를 제출한 者에 대하여 試驗科目의 전부에 관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면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때는 國稅審議會 會長은 그 취지를 당해 申請書を 제출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④ 第2項의 申請書の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國稅審議會가 당해 申請書を 제출한 者에 대하여 法 第7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認定을 했을 때 또는 認定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에 관하여 시험을 면제한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면제하지 않은 것을 결정한 때는 國稅審議會 會長은 그 취지를 당해 申請書を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4 條(受験手數料 등) 法 第9條 第1項의 受験手數料 또는 同條 第2項의 認定手數料는 각각 第2條 第1項의 稅理士試驗受験願書 또는 同條 第3項의 研究認定申請書 또는 前條 第2項의 研究認定申請書 겸 稅理士試驗免除申請書에 收入印紙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1966 藏令 第47號, 1975 藏令 第1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5 條(試驗實施地) 稅理士試驗은 東京都, 埼玉縣, 大阪府, 札幌市, 仙台市, 名古屋市, 金澤市, 廣島市, 高松市, 福岡市, 熊本市, 那覇市 및 國稅審議會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행한다.(1981 藏令 第7號, 1986 藏令 第4號, 1999 藏令 第54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第 6 條(試驗實施의 日時 및 場所 등의 公告) 國稅審議會 會長은 稅理士試驗實施 첫날의 2개월 전까지 稅理士試驗實施 日時 및 場所 그리고 稅理士試驗受験願書の 접수기간 기타 稅理士試驗의 受験에 관해 필요한 事項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第 7 條(試驗合格者 등의 公告) 國稅審議會 會長은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 및 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의 免除科目이 法 第6條에 정하는 試驗科目의 전부에 해당하는 者の 姓名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1981 藏令 第7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第 2 章 登 録

第 8 條(登録事項) 法 第18條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録을 받아야 하는 事項은 다음에 계기하는 事項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1. 姓名, 生年月日, 本籍 및 住所 그리고 法 第3條 第1項 각호의 구분에 따른 資格 및 그 자격의 取得年月日 (1980 藏令 第41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2. 다음의 가目中서 다目까지 계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 가目

에서 다目까지 정하는 事項 (2001 財令 第58號 改正)

가. 稅理士法人의 사원이 될 경우

稅理士法人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稅理士法人의 명칭 및 所屬事務所 (당해 事務所가 分事務所인 경우에는 主된 事務所를 포함한다. 나目에서도 같다)의 住所地

나. 法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의 補助者로서 常時 同項에 規定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者(第16條 및 第18條에서 「補助稅理士」라고 한다)가 될 경우

그 종사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 및 住所地 또는 稅理士法人의 명칭 및 소속사무소의 所在地

다. 가目이나 나目に 개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稅理士事務所의 명칭 및 住所地.

3.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에 종사하던 者에 대하여는 당해 사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 前 5년 동안 종사하던 職責名 및 그 기간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9 條(稅理士 名簿) ① 稅理士 名簿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1982 藏令 第22號 改正)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法 第19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名簿를 磁氣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第19條 및 第22條 第3項에서 같다)로 調製할 경우에는 電子計算器(電子計算器에 의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해 둘 수 있는 機器를 포함한다. 第19條 및 第22條 第3項에서 같다)의 操作에 따른 것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10 條(變更登錄의 申請) 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變更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변경의 내용 및 이유, 변경이 생긴 年月日 기타 참고가 될만한 事項을 기재한 登錄變更申請書를 所屬稅理士會를 經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改正)

第 11 條(登錄의 申請) ① 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사항은 第8條에 規定하는 事項, 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者の 學歷 및 經歷, 당해 者가 法 第4條 각호 및 第24條 각호에 개기하는 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기타 참고가 될만한 事項으로 한다.(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② 法 第21條 第1項의 登録申請書(다음 항에서 「登録申請書」라고 한다)에는 다음에 제기하는 書類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1980 藏令 第41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1. 신청자의 사진 (2001 財令 第58號 追加)
2. 이력서 (2001 財令 第58號 追加)
3. 호적초본 (2001 財令 第58號 追加)
4. 住民票의 사본 (2001 財令 第58號 追加)
5. 신청자가 成年被後見人(민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99년 法律 第149號> 附則 第3條 第1項에서 成年被後見人으로 간주되는 者를 포함한다), 被保佐人(同條 第2項에서 被保佐人으로 간주되는 者를 포함한다), 被補助者, 民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의 시행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등에 관한 法律(1999 法律 第151號) 附則 第3條에서 계속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있는 準禁治産者 및 破産者로 復權할 수 없는 者가 아니라는 내용의 官公署의 증명서 (2001 財令 第58號 追加)
6. 申請者가 法 第4條 第4號에서 第10號까지 및 第24條 각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誓約하는 書面 (2001 財令 第58號 追加)
7. 前號까지 제기하는 書類 등 이외에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③ 登録申請書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1961 藏令 第76號 追加, 1980 藏令 第41號 改正)

④ 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稅理士會는 法 第18條의 規定에 따른 登録을 받고자 하는 者가 그 登録을 받고자 하는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所屬事務所の 所在地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稅理士會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1982 藏令 第22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12 條(稅理士證票) 稅理士證票는 別紙 第7號 양식에 따라 淡青色으로 한다.(1951 藏令 第93號, 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13 條(稅理士證票 返還 등의 節次) ① 稅理士는 稅理士證票를 분실하거나 또는 損壞한 때는 당해 분실 또는 損壞한 稅理士證票의 番號, 당해 분실 또는 損壞한 年月日 및 장소 기타 참고가 될만한 事項을 기재한 書面을

당해 稅理士의 소속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稅理士證票가 損壞되었기 때문에 당해 書面을 제출할 때는 당해 損壞된 稅理士證票를 당해 書面に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改正)

② 法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證票를 반환하고자 하는 者は 당해 稅理士證票의 교부를 받은 稅理士의 所屬稅理士會 또는 소속된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返還하여야 한다.(上同)

③ 法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證票의 再交付를 신청하는 稅理士 및 稅理士證票를 분실하거나 또는 損壞하였기 때문에 그 再交付를 신청하는 稅理士는 再交付申請書를 당해 稅理士의 소속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上同)

④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稅理士에게 교부한 稅理士證票를 다른 稅理士證票로 바꿀 수 있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14 條(登録의 抹消에 관한 申告) 法 第26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가 同條 第1項 第1號, 第2號 또는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者は 그 申告書를 당해 해당하게 된 稅理士가 소속되었던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改正)

第 14 條의2(稅理士名簿의 登録 등의 通知)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録했을 때 또는 當該 登録한 事項을 변경했을 때 또는 당해 登録을 抹消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國稅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61 藏令 第76號 追加, 1980 藏令 第41號 改正)

第 14 條의3(登録抹消의 制限과 관련된 懲戒節次의 開始時期 등) ① 法 第47條의2에 規定하는 稅理士가 懲戒의 節次에 회부된 경우란 稅理士에 대하여 懲戒處分과 관련된 聽聞 또는 辨明의 기회부여에 대하여 行政節次法(1993년 法律 第88號) 第15條 第1項 또는 第30條에 規定하는 통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② 財務大臣은 稅理士에 대하여 前項에 規定하는 통지를 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통지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3 章 雜 則

第 15 條(稅務代理權限證書) 法 第30條(法 第48條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稅務代理의 권한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書面은 別紙 第8號 양식에 따라 稅務代理權限證書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16 條(稅務書類 등에의 附記) ① 法 第33條 第3項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事項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1. 稅理士法人의 社員 또는 그 補助稅理士가 署名捺印할 경우 당해 稅理士法人의 名稱
2. 稅理士의 補助稅理士가 署名捺印할 경우 당해 稅理士의 稅理士사무소의 名稱

② 法 第33條의2 第3項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同項에 規定하는 서면을 작성한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의 前條의 稅務代理權限證書의 제출의 有無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17 條(計算事項, 監査事項 등을 기재한 書面) 法 第33條의2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書面은 別紙 第9號 양식 또는 별지 第10號 양식에 따라 기재한 書面으로 한다.(1956 藏令 第48號 追加, 1961 藏令 第76號, 1980 藏令 第41號, 2000 藏令 第69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18 條(事務所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者) 法 第40條 第1項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者는 補助稅理士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19 條(稅理士業務에 관한 帳簿의 磁氣디스크에 의한 調製方法)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은 法 第41條 第3項(法 第48條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 업무에 관한 帳簿를 磁氣디스크로 조제하는 경우에는 電子計算機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0 條(業務制限에 관한 承認申請) 法 第42條 但書規定에 의한 國稅廳長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者는 그 사유 및 그 者가 離職前 1년내에 말고 있

던 職責의 所掌이 속한 사무 및 離職事由를 기재한 申請書를 그 者が 등록을 받은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所屬事務所の 住所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을 경유하여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56 藏令 第48號 追加, 1980 藏令 第41號, 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1 條(業務의 範圍) 法 第48條의5에 規定하는 法律 第2條 第2項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써 財務省令이 정하는 業務는 財務書類의 작성, 會計帳簿의 記帳代行 기타 財務에 관한 事務(同項에 規定하는 稅理士業務(第26條 第1項에서 「稅理士業務」라고 한다)에 부수해서 행하는 것 및 다른 法律에서 그 사무를 業으로써 행하는 것이 制限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業으로써 행하는 業務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2 條(稅理士法人의 名簿) ① 法 第48條의10 第2項에 規定하는 稅理士法人의 名簿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하는 樣式에 따른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②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稅理士法人의 名簿를 항상 整備해 둠과 동시에 國稅廳長의 요구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提出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③ 日本稅理士會連合會는 法 第48條의10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法人의 名簿를 磁氣디스크로 조제할 경우에는 電子計算機의 操作에 의한 것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3 條(稅理士會의 分割) ① 法 第49條 第2項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數는 5,000人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改正)

② 法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國稅廳長에 대하여 同項에 規定하는 指定區域을 정하는 것을 청구하는 稅理士會는 그 사유를 기재한 申請書에 당해 청구가 總會 기타 正當한 權限을 가진 기관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稅理士會의 주된 事務所の 所在地를 관할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稅理士會가 희망하는 지정구역이 있을 때는 당해 희망하는 지정구역을 기재한 書面 및 당해 희망하는 지정구역내에 稅理士事務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所屬事務所の 등록을 받은 稅理士의 3분의 2 이상이 同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會를 설립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을 밝힌 書面을 당해 申請書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③ 國稅廳長은 法 第49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에 規定하는 指定區域을 定할 시에는 다음에 定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1. 한개의 稅務署管轄區域의 일부만이 당해 指定區域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2. 法 第49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設立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되어야 할 稅理士의 數 및 同條 第5項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것으로 될 稅理士會의 會員이 되어야 할 稅理士의 數 중 어느 것이든 第1項에 規定하는 數의 대략 3분의 1을 밑돌지 않을 것.

④ 國稅廳長은 稅理士會로부터 第2項에 規定하는 申請書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法 第49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에 規定하는 指定區域을 定했을 때는 당해 指定구역 및 法 第49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會를 設立할 수 있는 기한을 指定區域을 定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는 그 사유를 당해 申請서를 제출한 稅理士會에 대하여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한다.(上同)

第 24 條(會員의 異動의 通知) 稅理士會는 會員인 稅理士의 異動이 있었을 때는 그 姓名 및 住所 그리고 入會 또는 退會의 年月日을 당해 稅理士會의 主된 事務所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國稅局長 및 國稅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56 藏令 第48號 追加, 1980 藏令 第41號, 1982 藏令 第22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第 25 條(貸借對照表 등의 閱覽期間) 法 第49條의18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定하는 期間은 5년간으로 한다.(2001 財令 第58號 追加)

第 26 條(稅理士業務를 행하는 辯護士 등의 通知) ① 法 第51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辯護士 또는 辯護士法人은 이들 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행하는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所屬辯護士會를 경유하여 당해 稅理士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國稅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 財令 第58號 改正)

② 國稅局長은 前項의 書面을 수리하였을 때는, 당해 서면을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書面을 同項의 書面을 제출한 辯護士 또는 辯護士法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80 藏令 第41號, 2001 財令 第58號 改正)

附則 (抄)

1. 이 省令은 法行日〔195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稅務代理士法施行規則(1942년 大藏省令 第13號)는 폐지한다.
3. 法附則 第4項 각호에 계기하는 者 또는 法附則 第8項에 規定하는 公認會計士는 法 第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登録申請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法附則 第4項 또는 第8項에 規定하는 講習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당해 申請書와 별도로 당해 申請書를 제출한 稅理士會를 경유하여 日本稅理士會連合會에 제출할 수 있다.(1961 藏令 第76號 改正)
4.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登録免許稅法(1967년 法律 第35號) 別表 第1의 第23號(5)에 規定하는 登録免許稅는, 前項에 規定하는 강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수 있다.(1967년 藏令 第44號, 1980 藏令 第41號 改正)
5. 法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을 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7號 양식에 따라 稅理士試驗受験願書에 特別稅理士試驗受験申請書, 受験票 및 寫眞票 그리고 다음의 각호에 계기하는 구분에 따라 法附則 第31項에 規定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 당해 稅理士試驗受験願書の 접수기간 내에, 당해 試驗을 받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國稅局長을 경유하여 稅理士審査會 會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條 第4項의 規定은 이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1956 藏令 第48號 追加, 1961 藏令 第38號, 76號, 1969 藏令 第20號, 1980 藏令 第41號, 1981 藏令 第7號 改正)
 - ① 法附則 第31項 第1號에 規定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者가 근무했던 기간을 증명하는 官公서의 證明서(1956 藏令 第48號, 1961 藏令 第38號 改正)
 - ② 法附則 第31項 第2號에 規定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者가 計理士 또는 會計士補의 등록을 받고 있었던 기간을 증명하는 所管廳의 證明書 및 그 者가 計理士 또는 會計士補의 업무를 행했던 기간을 증명하는 다른 2명 이상의 公認會計士, 會計士補, 計理士 또는 稅理士의 證明書 또는 소속단체의 證明書(1956 藏令 第48號 改正)
6. 法附則 第35項에서 준용하는 法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受験手數料는 前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受験願書에 收入印紙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1956 藏令 第48號, 1966 藏令 第47號, 1975 藏令 第19號 改正)

7. 法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까지 기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필기에 의한 당해 시험은 東京都, 高崎市, 大阪市, 札幌市, 仙台市, 名古屋市, 金澤市, 廣島市, 高松市, 福岡市, 熊本市, 那覇市 및 稅理士審査會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행한다.(1956 藏令 第48號, 1961 藏令 第7號 改正)
8. 稅理士審査會 會長은 法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필기에 의한 稅理士試驗實施日의 1개월 전까지 당해 試驗의 實施期日 및 場所 그리고 稅理士試驗受験願書의 접수기간 기타 당해 稅理士試驗의 受験에 관한 必要事項을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上同)
9. 法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口頭에 의한 稅理士試驗의 期日 및 場所는 필기에 의한 당해 試驗의 종료후 稅理士審査會 會長이 정하고, 口頭에 의한 試驗을 받아야 할 者에게 通知한다.(上同)
10. 稅理士審査會 會長은 法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 당해 試驗에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證書를 授與함과 함께 그 姓名을 官報에 公告한다.(上同)
11. 稅理士審査會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法 附則 第30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試驗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停止하거나 또는 合格의 決定을 취소할 수 있다.(上同)
12. 法 附則 第37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規模는 委嘱者數가 10인 것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改正)
13. 前項에 規定하는 委嘱者의 數를 계산할 때 委嘱者가 개인일 때는 당해 個人의 數에 2분의 1을 곱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14. 法 附則 第38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다음에 게기하는 事項(第2號 및 第3號에 게기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委嘱者마다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改正)
 - ① 法 第2條 第2項에 規定하는 稅理士業務(이하「稅理士業務」라 한다)를 행하고자 하는 事務所의 명칭
 - ② 행하고자 하는 稅理士業務의 法 第2條 第1項 각호에 게기하는 事務別 및 당해 稅理士業務에 대한 보수의 예상액
 - ③ 委嘱者가 法人일 경우일 때는 그 代表者의 姓名 및 資本 또는 出資金額
 - ④ 第11條 第1項에 規定하는 사항(法 第24條 第7號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⑤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

15. 國稅局長은 公認會計士로부터 法 附則 第38項의 規定에 따라 申請書의 提出이 있었을 경우에 法 附則 第37項의 許可를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당해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16. 國稅局長은 公認會計士로부터 法 附則 第38項의 規定에 따라 申請書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法 附則 第37項의 許可를 하지 않을 때 또는 公認會計士가 받은 同項의 許可를 法 附則 第41項 또는 第43項의 規定에 따라 취소할 때는 이들 公認會計士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를 書面을 통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書面에는 許可를 하지 않는 이유 또는 許可를 취소하는 이유를 附記한다.(上同)
17. 法 附則 第42項에 規定한 財務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다음에 계기하는 事項(第2號 및 第3號에 계기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委嘱者마다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1980 藏令 第41號 追加, 2000 藏令 第69號 改正)
 - ① 稅理士業務를 행한 事務所의 명칭
 - ② 행한 稅理士業務의 法 第2條 第1項 각호에 계기하는 事務別 및 당해 稅理士業務에 대한 報酬額
 - ③ 委嘱者가 法人인 경우일 때 그 代表者의 姓名 및 資本 또는 出資金額
 - ④ 第11條 第1項에 規定하는 事項(法 第24條 第7號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異動의 有無 및 당해 사항에 異動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
 - ⑤ 기타 참고가 될만한 事項

附 則(1951 藏令 第93號)

이 省令은 公布日[1951년 11월 12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54 藏令 第107號)

1. 이 省令은 1955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2. 1955년 3월 31일까지는 이 省令에 따라 改正前의 稅理士 法施行規則에 정하는 양식에 따를 수 있다.

附 則(1956 藏令 第48號)

이 省令은 公布日〔1956년 7월 18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61 藏令 第38號)

이 省令은 公布日〔1961년 6월 15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61 藏令 第76號)

이 省令은 稅理士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61년 法律 第137號)의 實施日〔1961년 12월 10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66 藏令 第47號)

1. 이 省令은 公布日〔1966년 8월 12일〕부터 施行한다.
2. 改正後의 公認會計士試驗規則 第8條 第2項, 第11條 第2項 및 第15條 第4項 그리고 稅理士法施行規則 第4條 및 附則 第6項의 規定은 이 省令의 施行日 이후에 實施公告가 될 試驗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省令의 施行日 前에 實施公告가 된 試驗에 대하여는 이들 規定에 불구하고 계속 종전의 例에 따른다.

附 則(1967 藏令 第44號)

이 省令은 1966년 8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69 藏令 第20號)

이 省令은 公布日〔1969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75 藏令 第19號)

이 省令은 公布日〔1975년 4월 22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80 藏令 第41號)

1. 이 省令은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80년 法律 第26號)의 實施日[1980년 10월 13일]부터 施行한다.
2. 이 省令의 施行日(이하 「施行日」 이라 한다)로부터 起算하여 3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改正後의 稅理士法施行規則(이하 「新規則」 이라 한다) 第11條 第3項 중 「日本稅理士會連合會가 정하는 양식」 이라는 것은 「稅理士施行規則의 일부를 改正하는 省令(1980년 大藏省令 第41號. 第14條의3에서 「改正省令」 이라 한다)에 따라 改正前의 별지 第5號 양식」으로, 新規則 第14條의3 중 「별지 第5號 양식」 이라고 된 것은 「改正省令에 따라 改正前의 別紙 第9號 양식」으로 대치한다.
3. 新規則 別紙 第4號 양식의 規定은 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로 교부하는 稅理士證票에 대하여 적용한다.
4. 稅理士로 施行日에 있어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稅理士法の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이하 「改正法」 이라 한다) 附則 第22項(第23項의 規定에 따라 대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따라 그 者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될 때까지 기간 또는 改正法에 따라 改正後의 稅理士法 第26條 第1項 第1號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어 同項의 規定을 적용될 때까지의 기간은, 당해 稅理士와 관련된 新規則 第10條 및 第13條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規定중 「所屬稅理士會」라는 것은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國稅局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稅理士會」로, 당해 稅理士에 관련된 新規則 第14條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條 中 「稅理士가 소속된 稅理士會」로 되어있는 것은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國稅局의 관할 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稅理士會」로 대치한다.
5. 改正法 附則 第24項에 規定하는 公認會計士인 稅理士에 대하여는 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改正前의 稅理士法施行規則 第17條의 規定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6. 施行日에 改正法에 따라 改正前의 稅理士法 第51條의2의 規定에 따라 통지를 한 公認會計士인 稅理士가 改正法 附則 第24項의 規定에 따라 계속 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되는 同條의 規定에 따라 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동안에 계속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한 후, 改正法에

따라 改正後の 稅理士法 附則 第37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業務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新規則 附則 第12項의 規定의 적용에 대하여는 同項 中 「10」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으로 대치한다.

7. 改正法 附則 第29項에 規定하는 財務省令에 정하는 구역은 다음 表의 上欄에 記기하는 稅理士會의 구분에 따라 同表 下欄에 記기하는 구역으로 한다.(1994 藏令 第111號, 2000 藏令 第69號 改正)

稅理士會	區 域
東京稅理士會	東京都
東京地方稅理士會	東京國稅局의 管轄구역 (東京稅理士會에 關聯된 區域을 除外한다)
名古屋稅理士會	愛知縣 中 名古屋市, 半田市, 常滑市,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豊明市, 日進市, 西春日井郡, 愛知郡 및 知多郡 그리고 岐阜縣
東海稅理士會	名古屋國稅局의 管轄구역 (名古屋稅理士會에 關聯된 區域을 除外한다)

附 則(1981 藏令 第7號)

- 이 省令은 1981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 沖繩(오키나와)의 復歸에 따른 國稅關聯法令의 적용의 特別措置 등에 관한 省令 (1972년 大藏省令 第42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附 則(1982 藏令 第22號)

- 이 省令은 1982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 沖繩의 復歸에 따른 國稅關聯法令의 적용의 特別措置 등에 관한 省令 (1972년 大藏省令 第42號)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省略)

附 則(1986 藏令 第4號)

이 省令은 公布日[1986년 3월 15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2 藏令 第66號)

이 省令은 1992년 7월 20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4 藏令 第110號)

이 省令은 1995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4 藏令 第111號)

이 省令은 公布日[1994년 11월 18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7 藏令 第18號)

이 省令은 1997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8 藏令 第51號)

1. 이 省令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改正後의 稅理士法施行規則(이하 「新規則」이라 한다) 第1號 양식, 第2號 양식 및 第3號 양식에 정하는 書式은 이 省令의 施行日 이후에 新規則 第1條의3 第1項, 第2條 第1項 또는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제출하는 이들 規程에 規定하는 申請書 및 願書에 대하여 적용하고, 同日前에 제출한 이들 申請서 및 願書에 대해서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前項에 規定하는 書式(新規則 第2號 양식에 정하는 書式을 제외한다)은 당분간 改正前의 稅理士法施行規則의 相當하는 規定에 정하는 申請書에 新規則 第1號 양식 및 第3號 양식에 준하여 기재한 것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附 則(抄)(1998 藏令 第97號)

- 1.(施行期日) 이 省令은 金融監督廳設置法の 施行日[1998년 6월 22일]부터 施行한다.

2. (稅理士法施行規則의 一部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省令의 施行日前에 第2條의 規定에 따른 改正前の 稅理士法施行規則 第1條의2 第1項 각호에 規定하는 金融證券檢查官 또는 證券去來檢查官이 행하는 檢查事務 또는 同條 第2項에 規定하는 證券去來特別調査官이 행하는 犯則事件의 調査事務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1998 藏令 第166號)

1. 이 省令은 金融再生委員會設置法(1998년 法律 第130號)의 施行日[199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改正前の 稅理士法施行規則 第1條의2 第1項 第1號에 規定하는 金融證券檢查官이 행하는 金融檢查事務, 同項 第3號에 規定하는 證券去來檢查官이 행하는 檢查事務 또는 同條 第2項 第1號에 規定하는 證券去來特別調査官이 행하는 犯則事件의 調査事務에 종사한 기간을 가진 者와 관련된 稅理士試驗의 受驗資格에 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1999 藏令 第54號)

이 省令은 公布日[1999년 4월 26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2000 藏令 第14號)

이 省令은 2000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2000 藏令 第61號)

이 省令은 2000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2000 藏令 第69號)

1. 이 省令은 2001년 1월 6일부터 施行한다.
2. 이 省令의 施行當時 존재하는 이 省令에 따른 改正前の 양식에 의한 용지

는, 당분간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附 則(抄)(2001 財令 第58號)

1. 이 省令은 2002년 4월 1일부터 施行한다.
2. 이 省令의 施行當時 존재하는 이 省令에 의한 改定前の 양식에 따른 용지는 당분간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3. 이 省令의 施行時 이 省令에 따른 改正前の 양식에 따라 사용된 稅理士證票은 이 省令에 따른 改正後の 양식에 따른 稅理士證票로 간주한다.

第 4 部 日本稅理士會連合會會則

制定	1957年 1월24일 (1957년 2월16일 認可)	全改	1980년10월 2일 (1981년 2월 2일 認可)
變更	1958년 7월23일 (1958년 8월 2일 認可)	變更	1981년 7월24일
	1959년 7월21일 (1959년 8월31일 認可)		1982년 7월23일 (1982년 8월23일 認可)
	1961년11월 6일 (1961년12월10일 認可)		1982년11월18일
	1962년 4월27일		1984년 1월10일 (1984년 4월17일 認可)
	1962년 7월24일		1984년 4월 5일
	1962년11월15일		1985년 2월21일
	1963년 7월19일 (1964년 6월18일 認可)		1989년 3월23일
	1965년 7월16일		1990년 1월23일
	1966년12월 2일 (1966년12월22일 認可)		1990년 4월20일
	1967년 7월20일 (1967년 7월29일 認可)		1992년 4월21일
	1968년 2월 9일		1992년 7월24일 (1992년 9월10일 認可)
	1969년 7월25일		1993년 4월21일
	1969년 9월12일		1995년 7월26일 (1995년 9월 8일 認可)
	1970년 7월21일		1996년 7월23일 (1996년 9월12일 認可)
	1971년 1월 8일 (1971년 9월 9일 認可)		1999년 1월26일 (1999년 3월15일 認可)
	1972년 4월25일 (1972년 5월15일 認可)		2000년 3월23일 (2000년 3월24일 認可)
	1972년 7월26일		2000년 7월25일
	1973년 7월27일		2001년 2월22일
	1975년 4월22일		2001년 7월26일
	1975년 7월25일 (1975년 9월 1일 認可)		2001년10월18일 (2002년 4월 1일 認可)
	1978년10월26일		
	1979년 7월27일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라 칭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稅理士의 使命 및 職責에 비추어 稅理士의 義務의 遵守 및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한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事務를 행하는 동시에 稅理士의 登錄 및 稅理士法人의 申告에 관한 事務를 행함을 目的으로 한다. (2001. 10. 18 變更)

第3條(事業) ① 本會는 前條에 規定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稅理士會 및 그 會員의 指導, 連絡 및 監督에 관한 必要한 事項에 대하여 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하여 勸告하거나 또는 指示를 하는 것
 2.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에 관한 制度에 관하여 調査研究을 하는 것
 3. 稅理士會의 會員의 業務의 改善進歩에 관하여 調査研究을 하는 것
 4. 稅理士에 관한 制度 및 稅理士의 業務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
 5. 會報를 發行하는 것
 6. 稅理士의 登錄 및 稅理士法人의 申告에 관한 事務를 하는 것(2001. 10. 18 變更)
 7. 稅理士의 研修에 관하여 必要한 施策을 행하는 것 (2001. 10. 18 變更)
 8. 小規模零細納稅者에 대한 稅理士의 業務에 관하여 必要한 施策을 행하는 것
 9. 稅理士會의 會員의 業務에 관한 帳簿의 作成에 관하여 必要한 施策을 행하는 것(2001. 10. 18 變更)
 10. 기타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행하는 것
- ② 本會는 稅務行政 기타 租稅 또는 稅理士에 관한 制度에 대하여 權限이 있는 官公署에 建議하거나 또는 그 諮問에 答申한다.

第4條(事務所의 所在地) 本會는 東京都 品川區에 事務所를 設置한다. (1984. 4. 5, 2000. 7. 25 變更)

第5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全國의 稅理士會로 한다.

第 6 條(規則 등에의 委任) ① 本會는 稅理士法(이하 「法」 이라 한다) 기타 法令 및 本會 會則의 規定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行하기 위하여 規則 또는 細則, 기타 規程을 定할 수 있다.

② 規則은 總會의 議決에 따라 制定하거나 改廢한다.

第2章 役 員

第 7 條(役員) ① 本會에 다음의 役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15人 이내 (2001. 2. 22 變更)
3. 理 事 100人
4. 監 事 15人 (2001. 2. 22 變更)

第 8 條(役員の 選任) ① 役員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1985. 2. 21 變更)

② 法 第24條 各號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明確해진 者는 役員이 될 수 없다. (2001. 10. 18 變更)

③ 役員이 缺員이 되었을 때는 補缺選任을 한다. 단,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다음의 定期總會까지 補缺選任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役員(會長을 제외한다)의 補缺選任時에는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第1項에 規定하는 方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1985. 2. 21 追加)

⑤ 役員の 選任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 各項에서 定하는 것 외에는 規則으로 定한다. (1985. 2. 21 變更)

第 9 條(會長 및 副會長)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이 缺員일 때는 그 職務를 행한다.

第 10 條(理事)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務의 執行에 參與한다.

第 11 條(專務理事) ① 會長은 理事 중에서 專務理事 3 人 이내를 위촉한다.

② 專務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서 會務의 執行을 관장한다.

第 12 條(常務理事) ① 會長은 第16條 第2項의 規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 중에서 常務理事 若干人을 委嘱한다.

② 常務理事는 常務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務의 執行에 參與한다.

第 13 條(監事) ① 監事は 會計 및 會務의 執行을 監査하고, 不正을 發見하였을 때는 이를 總會에 報告한다.

② 監事は 前項에 規定하는 것 이외에 이 會則에 따라 그 權限에 속한 事項을 행한다.

③ 監事は 本會의 다른 役員을 겸하거나 또는 本會의 使用人이 될 수 없다.

第 14 條(役員의 任期) ① 役員의 任期는 就任後 두 번째 定期總會의 終了時까지로 한다. 단, 補缺 또는 增員에 의하여 就任한 役員의 任期는 다른 役員의 任期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任期의 滿了에 의하여 退任하는 役員은 새로이 選任된 役員이 就任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第 15 條(役員의 退任) 役員은 당해 役員에 選任된 때의 所屬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되었을 때 또는 總會에서 解任의 決議가 있었을 때는 退任한다.

第 16 條(會務의 執行) ① 會長, 副會長 및 專務理事는 會務의 執行時에는 稅理士에 관한 法令 또는 이 會則 또는 規則의 規定 또는 總會, 理事會 또는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反할 수 없다.

② 會務의 執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第 17 條(代表權의 制限) 本會와 會長 및 副會長과의 이익이 相反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이들은 本會를 代表하는 權限을 지니지 않는다.

第 18 條(役員의 秘密嚴守 義務) 役員은 正當한 이유없이 직무상 알게 된 稅理士會의 會員에 관한 秘密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役員이 아니게 된 後에도 또한 같다.

第3章 理事會 및 常務理事會

第 19 條(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된다.

②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決定한다.

1. 總會에 提出해야할 議案
2. 이 會則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項
3.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 또는 答申에 관한 事項
4. 前 各號에 제기한 것 이외에 會務의 執行에 관한 重要事項

第 20 條(理事會의 運營)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그 構成員의 2분의 1 이상이 出席하지 않으면 會議을 開催할 수 없다.

②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맡는다

③ 理事會의 議事は 出席者の 過半數로 議決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의한다.

④ 理事會의 議事に 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は 그 議決에 참여할 수 없다.

⑤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에 대하여 會議을 召集할 必要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常務理事會의 의결에 따라, 議案을 記載한 書面을 構成員에게 送付하여, 당해 議案에 대한 贊否의 意見을 요청하여 書面に 의한 議決을 할 수 있다.

⑥ 前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은 理事會의 議決과 同一한 効力を 갖는다.

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5項의 書面に 의한 議決에 관하여 準用한다.

第 21 條(常務理事會) ① 常務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로 構成한다.

② 常務理事會는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理事會의 權限(第19條 第2項 第1號 및 第2號에 제기하는 事項의 決定을 제외한다)의 一部를 行使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따라 常務理事會가 決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당해 常務理事會의 議長은 이를 다음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 常務理事會는 第2項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다음 事項을 決定한다.

1. 理事會에 附議해야할 議案
2. 이 會則에 있어서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項

⑤ 前條의 規定은 常務理事會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條의 規定 중 「理事會」라고 되어 있는 것은 「常務理事會」로, 「常務理事會의 의결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副會長 및 專務理事의 2分の 1 이상의 同意를 얻어」라고 대치하는 것으로 한다.

第4章 顧問, 相談役 및 評議員

第 22 條(顧問 및 相談役) 會長은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歩에 必要한 事項을 諮問하기 위하여 稅理士業務에 關하여 學識經驗을 지닌 者 중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顧問 및 相談役을 委囑할 수 있다.

第 23 條(評議員會)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으로 構成한다.

② 會長은 總會에 附議해야할 事項 중 稅理士會의 會員의 利害에 直接關係가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評議員會에 이를 諮問하여야 한다.

③ 評議員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④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會長은 評議員會를 召集할 必要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常務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諮問해야할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評議員에게 送付하여 評議員會의 召集에 대체할 수 있다.

第 24 條(評議員의 選出) ① 評議員은 稅理士會의 稅理士인 會員(이하 「稅理士會員」이라 한다) 중에서 당해 稅理士會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2001. 10. 18 變更)

② 稅理士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議員의 推薦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稅理士會의 總意가 反映되어 推薦하여야 한다.

③ 稅理士會로부터 推薦된 評議員의 수는 均等割數(1인으로 한다) 및 會員割數(300인에서 均等할수 總수를 공제한 數를 稅理士會에 評議員을 委囑하는 해의 7월 31일 현재 稅理士會의 稅理士會員數에 비례하여 割當한 數로 한다. 이 경우에 割當數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에는 당해 단수치의 큰 것부터 순차로 會員割數의 總수에 찰 때까지 1인으로 절상한다)의 合計數로 한다.(1985. 2. 21, 2001. 10. 18 變更)

- ④ 評議員은 本會의 役員을 겸임할 수 없다.
- ⑤ 評議員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 ⑥ 第14條 第2項의 規定은 評議員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5章 總 會

- 第 25 條(召集) ① 會長은 매년 7 月에 定期總會를 召集한다.
- ② 會長은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 ③ 會長은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召集의 理由 및 議案에 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④ 監事는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 ⑤ 前項의 規定에 따라 監事に 의한 臨時總會의 召集은 監事の 過半數로 결정한다.
- ⑥ 總會를 召集할 때는 總會H 2주일 전까지 그 H時, 場所 및 議案 그 리고 議案의 說明을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稅理士會에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 第 26 條(議決權) ① 稅理士會는 그 會의 稅理士會員의 數와 同數의 議決權을 갖는다.(2001. 10. 18 變更)
- ② 前項의 會員의 數는 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前月말 現재에 따른다.
- 第 27 條(議決의 要件) ① 總會의 議決은 稅理士會의 2분의 1 이상이 出席하고 그 出席한 稅理士會의 議決權의 過半數로 결정하며,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總會에서 會則의 變更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理士會의 2분의 1 이상이 出席하고 그 出席한 稅理士會의 議決權의 3분의 2 이상의 多數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 第 28 條(委任에 의한 議決權의 行使) ①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稅理士會는 사전에 議案에 대하여 贊否의 意見을 명시한 書面으로 出席한 다른 稅

理士會에 委任하여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權을 行使하는 稅理士會는 總會에 出席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 29 條(總會에서 決定하여야 할 事項) 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決定한다.

1. 이 會則에서 總會의 議決 또는 承認을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事項
2. 會則의 變更
3. 本會의 重要な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4. 前 각호에 제기한 것 외에 會務에 관한 重要事項

第 30 條(議事の 制限) 總會에 있어서는 第25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理士會에 사전에 通知한 議案 이외의 事項을 決定할 수 없다.

第 31 條(利害關係者の 排除) 總會의 議案에 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있는 稅理士會는 그 議決에 참가할 수 없다.

第 32 條(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に 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② 總會의 議事錄에는 議事の 要領 및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 및 出席者 2人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第6章 稅理士の 登録

第 33 條(稅理士名簿) ① 本會에 稅理士名簿를 비치한다.

② 前項의 稅理士名簿는 磁氣디스크로 만든다. (2001. 10. 18 追加)

第 34 條(稅理士名簿에 登録해야할 事項 등) ① 稅理士名簿에는 다음의 事項을 登録한다.

1. 稅理士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
2. 稅理士가 될 資格의 구분 및 그 資格의 취득년월일
3. 國稅 또는 地方稅에 관한 行政事務(沖繩 復歸(1972년)前의 政府稅 또는 市町村民稅에 관한 行政事務를 포함한다)에 從事하고 있던 者에 대

하여는 당해 事務에 從事하지 않게 된 날 前 5년 동안 從事했던 職責名 및 그 期間

4. 稅理士法人의 社員이 되는 경우에는 그 稅理士法人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稅理士法人의 名稱 및 所屬事務所(당해 事務所가 분사무소일 경우에는 주된 事務所를 포함한다. 다음 號에서 같다)의 소재지
5. 法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의 補助者로서 常時 同項에 規定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되는 경우에는 그 從事하는 稅理士事務所의 名稱 및 所在地 또는 稅理士法人의 名稱 및 所屬된 事務所의 소재지
6. 前2號에 제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는 설립하고자 하는 稅理士事務所의 名稱 및 所在地 (2001. 10. 18 變更)
- ② 前項 第6號에 規定하는 稅理士事務所의 名稱은 그 稅理士의 稅理士事務所라는 것을 明示하는 것으로 한다.(1982. 7. 23, 2001. 10. 18 變更)
- ③ 稅理士名簿에는 第1項 각호에 제기하는 事項이 登錄된 者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最終學歷 및 經歷
 2. 所屬稅理士會의 名稱
 3. 稅理士의 登錄을 받은 후 報酬가 있는 公職에 취임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公職 및 당해 公職의 就任 年月日 및 당해 公職의 退任 年月日
 4. 法 第43條 前段의 懲戒處分 또는 法 第44條에 規定하는 懲戒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懲戒의 種類 및 懲戒를 받은 年月日
 5. 登錄番號 및 登錄年月日
 6. 登錄事項變更의 年月日 및 變更의 事由
 7. 登錄取消 年月日 및 그 事由
 8. 稅理士證票 交付 年月日 및 證票의 番號

第 35 條(稅理士의 登錄申請) ① 稅理士名簿에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稅理士登錄申請書(이하「登錄申請書」라고 한다)를 前條 第1項 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事務所(당해 事務所가 分事務所일 경우에는 주된 事務所를 제외한다)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를 經由하여 本會에 提出하여야 한다.(2001. 10. 18 變更)

② 前項의 登錄申請書에는 그 副本 3통을 첨부하여 提出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申請書에는 다음의 각호에 제기하는 書類 등을 添付하여야 한다.

1. 稅理士가 될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
2. 法 第3條 第1項 但書에 規定하는 期間이 通算해서 2年 이상이 되는

것을 證明하는 書面

3. 申請者の 寫眞 (提出日前 3개월 이내에 撮影한 것)
 4. 履歷書
 5. 호적초본 또는 個人事項證明書 (提出日前 3개월 이내에 交付를 받은 것으로 하고,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일 때는 外國人登錄法의 規定에 따라 外國人の 登錄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한다) (1999. 1. 26 變更)
 6. 住民票의 사본 (提出日前 3개월 이내에 交付를 받은 世帶全員の 것) (1999. 1. 26 變更)
 7. 法 第4條 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지 않는 者라는 취지의 官公署의 證明書
 8. 法 第4條 第4號에서 第10號까지 및 法 第24條 各號에 해당하지 않는 者라는 취지의 誓約書 (1984. 1. 10, 2001. 10. 18 變更)
- ③ 第1項에 規定하는 登錄申請書에는 登錄免許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法으로 정하는 登錄免許稅額에 相當하는 登錄免許稅를 納付했다는 의미인 領收證書를 붙여야 한다.

第 36 條(登錄申請書의 進達 등) 稅理士會는 登錄申請書を 受理하였을 때는 副本 1通씩을 登錄申請者の 住所地の 管轄稅務署長 및 당해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町村(特別區 및 全部事務組合을 포함한다) 및 都道府縣의 長에 送付하고, 原本을 附屬書類와 함께 本會에 進達하여야 한다.

第 37 條(登錄에 관한 調査) ① 稅理士會는 前條에 規定하는 登錄申請書の 進達에 대하여는 당해 申請者の 登錄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행하고, 그 調査에 관한 資料 및 稅理士會의 會長의 意見書を 添付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會는 稅理士의 登錄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행하기 위하여 登錄調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登錄調査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 稅理士會의 會則으로 정하여야 한다.

第 38 條(登錄審査會) ① 本會에 登錄審査會를 둔다.

② 登錄審査會는 登錄申請者の 登錄에 관하여 必要한 審査를 행한다.

③ 登錄審査會는 會長 및 委員 若干人으로 組織한다.

④ 登錄審査會의 會長은 本會의 會長이 맡는다.

⑤ 委員은 副會長, 事務理事 및 常務理事 중에서 本會의 會長이 委嘱하는 者로 이를 맡는다.

- ⑥ 登錄審査會는 委員의 過半數의 出席이 없으면 開會 또는 議決할 수 없다.
- ⑦ 登錄審査會의 議事は 出席委員 過半數의 同意한 바에 따라 議決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登錄審査會의 議事は 非公開로 하고,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은 正當한 이유없이 登錄審査會의 議事に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이 아니게 된 후에 있어서는 또한 같다.
- ⑨ 登錄審査會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 各項에 規定하는 것 외에 總會에서 정한다.

第 39 條(稅理士名簿의 登錄 또는 登錄의 拒否) ① 本會는 登錄審査會의 議決에 따라 稅理士名簿의 登錄을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하고, 登錄을 適當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 登錄을 拒否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法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와 관련된 者에 대하여 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을 拒否하고자 할 때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登錄申請書を 提出한 날로부터 3개월이 經過하여도 당해 申請에 대하여 아무런 處分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登錄申請書を 提出한 者로부터 國稅廳長에 대하여 審査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請求가 있었던 날에 本會가 당해 登錄을 拒否한 것으로 한다.

第 39 條의2(登錄取消의 이유가 되는 事實의 通知) 稅理士會는 그 稅理士會員이 法 第25條 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事實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本會에 通知하여야 한다.(2001. 10. 18 追加)

第 40 條(登錄의 取消) ① 本會는 稅理士의 登錄을 받은 者가 法 第25條 第1項 各號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는 行政節次法 第1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하는 聽聞을 거친 후 登錄審査會의 議決에 따라서 登錄을 취소할 수 있다.(1995. 7. 26, 2000. 3. 23, 2001. 10. 18 變更)

② 前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취소할 경우에 있어서는 資格審査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 41 條(登錄事項의 變更) 本會는 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變更登錄의 申請이 있었을 때는 登錄事項을 變更한다.

第 42 條(記載事項의 變更) ① 稅理士는 第34條 第3項 第1號 및 第3號에

게기하는 記載事項에 變更이 생겼을 때는 그 내용을 本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本會는 前項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記載事項을 變更한다.

第 43 條(登録의 抹消) 本會는 稅理士가 法 第26條 第1項 各號 중 하나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登録을 말소한다. 단, 당해 稅理士가 懲戒節次에 회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登録의 抹消를 행하지 않는다.(2001. 10. 18 變更)

第 44 條(登録등 手數料) ① 稅理士名簿의 登録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金額의 手數料를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1. 登 錄 50,000円
2. 登録事項의 變更 2,500円
3. 稅理士證票 분실에 따른 再交付 6,000円
4. 稅理士證票의 再交付 (前號를 제외하고 稅理士證票의 記載事項의 變更 등에 따른 交付를 포함한다) 2,500円
5. 證 明 1,200円 (1992. 7. 24 變更)

② 前項 各號의 둘 이상에 該當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各號에 정하는 金額의 手數料를 합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③ 住居表示의 實施나 變更 또는 行政區劃 등이나 그 名稱의 變更(그 變更에 따른 地番의 變更을 포함한다)에 따른 登録事項의 變更 또는 稅理士證票의 記載事項의 變更에 따른 證票의 交付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 第2號 또는 第4號에 게기하는 金額의 手數料納付를 요하지 아니한다. 戶籍에 記載되어 있는 姓名의 誤字가 正字로 記載됨에 따라 姓名의 變更에 따른 登録事項의 變更 또는 稅理士證票의 記載事項의 變更에 따른 證票의 交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1995. 7. 26 變更)

④ 지진, 風水害, 火災 기타 이들과 유사한 災害에 起因하는 登録事項의 變更, 稅理士證票의 분실 또는 記載事項의 變更에 따른 證票의 交付 또는 登録 등의 證明에 관하여는 稅理士會로부터의 申請에 따라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 第2號에서 第5號까지 게기하는 手數料의 納付를 免除할 수 있다.(1996. 7. 23 追加)

⑤ 本會가 登録을 拒否한 경우 또는 登録申請者가 登録의 申請을 取下한 경우에 있어서는 本會는 第1項 第1號의 手數料를 返還한다.(1996. 7. 23 變更)

第 45 條(稅理士名簿登録 등의 公告) 本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録을 하였을

때 및 登錄을 말소하였을 때는 그 취지 및 登錄을 抹消한 경우에는 그 事由를 官報를 통해 公告한다.

第 46 條(稅理士證票의 交付 및 返還) ① 本會는 稅理士名簿에 登錄한 者에게 稅理士證票를 交付한다.

② 稅理士의 登錄이 抹消된 때는 당해 말소된 者, 그 法定代理人 또는 그 相續人은 지체없이 稅理士證票를 本會에 返還하여야 한다. 稅理士가 法 第 43條의 規定에 該當하게 된 경우 또는 法 第45條 또는 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稅理士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第 47 條(稅理士證票의 分失 또는 損壞) 稅理士는 稅理士證票를 分失하거나 또는 損壞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그 理由를 本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 48 條(稅理士證票 分失의 公告) 本會는 稅理士로부터 稅理士證票의 分失 신고가 있었을 때는 당해 分失한 稅理士證票는 効力を 잃었다는 내용을 官報를 통해 公告한다.

第 49 條(稅理士證票의 再交付) 稅理士로부터 稅理士證票를 分失하거나 損壞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을 때 또는 法 第28條 第1項 後段의 規定에 該當하는 稅理士가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本會는 申請에 의하여 그 者에게 稅理士證票를 再交付한다.

第 50 條(登錄 등의 細部事項) 登錄의 절차, 登錄의 取消 및 抹消, 稅理士名簿, 稅理士證票 기타 登錄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第33條에서 前條까지로 規定하는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第 6 章의 2 稅理士法人의 申告

(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 2(稅理士法人名簿) ① 本會에 稅理士法人名簿를 비치한다.

② 前項의 稅理士法人名簿는 磁氣디스크로 만든다.(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3(稅理士法人名簿에 登載해야할 事項) ① 稅理士法人名簿에는 다음의 事項을 登載한다.

1. 稅理士法人의 名稱, 目的, 成立日,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出資金의 總額

2. 社員의 姓名, 住所, 稅理士登錄番號, 所屬稅理士會 및 出資金額

② 稅理士法人名簿에는 前項 各號에 게기하는 事項이 登載된 法人에 관하여 동시에 다음의 事項을 登載한다.

1. 稅理士法人을 代表할만한 社員이 있을 때는 그 社員의 姓名

2. 分事務所를 設치했을 때는 그 事務所의 名稱, 設置日, 所在地 및 그 事務所に 常駐하는 社員의 姓名

3. 登載된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는 그 變更事項, 變更年月日 및 變更의 事由

4. 稅理士法人이 解散했을 때는 그 解散年月日, 解散의 事由 및 清算人의 姓名 및 住所

5. 稅理士法人이 合併했을 때는 그 合併年月日, 合併의 事由 및 合併法人 또는 合併에 의해 設立된 法人의 名稱 및 所在地

6. 解散한 稅理士法人의 清算이 終了했을 때는 그 清算終了 年月日
(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4(稅理士法人의 申告) ① 稅理士法人은 成立日로부터 2주일 이내에 稅理士法人設立申告書에 登記簿謄本 및 定款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에 設立되어 있는 稅理士會를 經由하여 本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稅理士法人의 申告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項에 規定하는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5(申告書의 進達) 稅理士會는 前條에 定하는 申告書を 受理했을 때는 本會에 進達하여야 한다.(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6(稅理士法人名簿에의 登載) 本會는 前條의 進達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稅理士法人名簿에 登載한다.(2001. 10. 18 追加)

第 50 條의7(登載 등 手數料) ① 稅理士法人名簿의 登載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各號에 게기하는 手數料를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1. 設 立 10,000円

2. 分事務所의 設置 10,000円

3. 登載事項의 變更 2,500円
 4. 證 明 1,200円
 ② 第44條 第2項의 規定은 登載등 手數料에 準用한다. (2001. 10. 18 追加)

第 7 章 資格審査會

第 51 條(資格審査會) ① 本會에 資格審査會를 둔다.

② 資格審査會는 本會의 請求에 의하여 稅理士의 登錄이나 登錄의 拒否 또는 登錄의 取消에 대하여 審議를 행한다.

第 52 條(資格審査會의 組織) ① 資格審査會는 會長 및 資格審査會의 會長이 財務大臣의 承認을 받아 委囑한 委員 4人으로 組織한다. (2000. 7. 25 變更)

②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本會의 會長이 맡는다.

③ 委員에는 稅理士, 國稅行政事務에 従事하는 職員, 地方稅行政事務에 従事하는 職員 및 學識經驗者 各 1 人으로 구성된다.

④ 資格審査會의 會長은 資格審査會의 委員에 缺員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⑤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缺員이 생겼을 경우의 補缺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로 한다.

第 53 條(資格審査會의 議事 등) ① 資格審査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이 아니면 開會 또는 議決할 수 없다.

② 資格審査會의 議事は 出席委員 過半數로 이를 議決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資格審査會의 議事は 非公開로 하고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은 正當한 理由가 없이 資格審査會의 議事に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會長, 委員 및 本會의 職員을 그만두게 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④ 資格審査會는 審査에 관하여 必要가 있을 때는 當事者, 關係人 및 官公署 기타 適當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陳述, 說明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한다.

第 54 條(規則에의 委任) 資格審査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2條에 定하는 것 외에 規則으로 定한다.

第 8 章 稅制審議會 (1990. 1. 23 追加)

第 55 條(稅制審議會) ① 本會에 稅制審議會를 둔다.

② 稅制審議會는 會長의 諮問에 응하고 稅制 및 稅務行政全般에 對한 調査 및 審議를 행하고 그 結果를 會長에게 答申한다.(1990. 1. 23 追加)

第 56 條(稅制審議會의 組織) ① 稅制審議會는 委員 24人 이내로 組織한다.

② 委員는 特別委員 및 專門委員으로 하고 特別委員은 稅制 및 稅務行政에 關한 學識經驗者 중에서, 專門委員은 稅理士 중에서, 각각 會長이 委囑한다. (2001. 10. 18 變更)

③ 專門委員의 數는 8人 이내로 하고, 그 半數以內를 常任委員으로 해서 庶務에 從事시킨다.

④ 委員의 任期는 第1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稅制審議會의 會長은 特別委員의 互選에 의하여 選出한다.(1990. 1. 23 追加)

第 57 條(稅制審議會의 審議) 稅制審議會의 審議는 稅制審議會總會 및 專門委員會에서 행한다.(1990. 1. 23 追加)

第 58 條(規則에의 委任) 稅制審議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2條에 定하는 것 외에 規則으로 定한다.(1990. 1. 23 追加)

第9章 品位維持

(1990. 1. 23 종전 第8章, 2001. 10. 18 變更)

第 59 條(品位維持의 指導) 稅理士會는 그 會員이 稅理士의 使命에 비추어 稅理士業務의 改善進步 및 納稅義務의 適正한 實現에 노력함과 동시에 稅理士의 信用 또는 品位을 해칠만한 行爲을 하지 않도록 指導하여야 한다.(1990. 1. 23 종전 第55條)

第 60 條(會則 등의 遵守) 稅理士會의 會員은 稅理士에 관한 法令, 本會의 會則 및 稅理士會의 會則 및 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1990. 1. 23 종전 第56條)

第 61 條(非稅理士와의 提携의 禁止) ①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은 法 第52條 및 法 第53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로부터 業務의 알선을 받아서는 안된다.(2001. 10. 18 變更)

②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은 누구에게도 稅理士 또는 稅理士法人으로서의 자신의 名義을 利用시켜서는 안된다. (2001. 10. 18 變更, 1990. 1. 23 종전 第57條)

第 62 條(名稱의 使用制限)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은 稅理士에 관한 法令 또는 本會 또는 稅理士會의 會則에 정하는 것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따라 인정된 것 외에 그 組織하는 團體에 稅理士會 또는 日本稅理士會連合會 기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1990. 1. 23 종전 第58條, 2001. 10. 18 變更)

第10章 帳簿作成

(1990. 1. 23 종전 第9章, 2001. 10. 18 變更)

第 63 條 削除(1990. 1. 23 종전 第59條, 2001. 10. 18 削除)

- 第 64 條(帳簿作成의 義務) ① 稅理士 및 稅理士法人은 稅理士業務에 관하여 帳簿를 作成하고 委囑者別로 동시에 1件마다 稅務代理, 稅務書類의 作成 또는 稅務相談의 內容 및 그 顛末을 記載하여야 한다.(2001. 10. 18 變更)
- ② 前項의 帳簿는 閉鎖後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하는 帳簿의 標準樣式(記載事項을 포함한다)은 常務理事會에서 定한다.
- ④ 第1項의 帳簿는 磁氣디스크로 調製할 수 있다.(2001. 10. 18 追加)
(1990. 1. 23 종전 第60條)

第 11 章 研 修

(1990. 1. 23 종전 第10章)

- 第 65 條(稅理士의 研修) 稅理士는 本會 및 所屬 稅理士會가 행하는 研修를 받아, 그 資質의 向上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1990. 1. 23 종전 第61條, 2001. 10. 18 變更)
- 第 65 條의2(研修事業) ① 本會는 稅理士의 業務의 改善進歩 및 그 資質의 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必要한 研修에 관한 施策을 행한다.
- ② 前項에 規定하는 研修의 內容 및 實施의 基準 및 運用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常務理事會에서 定한다.
- ③ 稅理士會는 本會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研修를 實施하여야 한다.
- ④ 稅理士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研修를 實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要領 및 結果를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2001. 10. 18 追加)

第12章 稅務援助

(1990. 1. 23 중전 第11章)

第 66 條(稅務援助의 實施) ① 稅理士會는 本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小規模零細納稅者(無償 또는 현저히 낮은 報酬가 아니면 稅理士나 稅理士法人으로 委囑하는 것이 困難한 經濟的 理由를 가진 者를 말한다)에 대한 稅理士의 業務에 관한 施策(이하 「稅務援助」라고 한다)을 實施하여야 한다.(2001. 10. 18 變更)

② 前項에 規定하는 稅務援助는 稅理士會의 會員의 業務를 侵害하는 일이 없도록 實施하여야 한다.

③ 稅理士會의 會員은 그 所屬稅理士會가 實施하는 稅務援助에 從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990. 1. 23 중전 第62條)

第 67 條(稅務援助實施의 基準) ①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稅務援助로써 實施하는 業務는 다음의 事務로 한다.

1. 稅務에 관한 相談
2. 記帳에 관한 指導
3. 稅務書類 作成에 관한 指導
4. 前 各號에 제기하는 것 외에 本會 및 稅理士會가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事務

② 稅務援助의 實施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이 章에 規定하는 것 외에 規則으로 정한다.(1990. 1. 23 중전 第63條)

第13章 監 督

(1990. 1. 23 중전 第12章)

第 68 條(稅理士會 및 그 會員에 대한 一般的 監督) 本會는 稅理士會의 事業 또는 稅理士의 業務의 適正한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必要가 있을 때는 稅理士會나 그 會員으로부터 報告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必要한

勸告를 하거나 指示를 할 수 있다.(1990. 1. 23 중전 第64條)

第 69 條(稅理士會에 대한 監督) ① 稅理士會는 稅理士에 관한 法令, 本會의 會則 및 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② 本會는 運營上 必要가 있다고 인정될 때 稅理士會에 대하여 그 행하는 業務에 관하여 質問할 수 있다. (1990. 1. 23 중전 第65條)

第 70 條(意見의 聽取) 稅理士會는 그 會則을 變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本會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 稅理士會가 法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廳에 대하여 指定區域을 정하는 것을 請求할 때 또는 法 第49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則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990. 1. 23 중전 第66條)

第 71 條(稅理士會의 報告義務) ① 稅理士會는 다음의 各號 중 하나에 該當할 때는 지체없이 當該 各號에 제기하는 事項을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2001. 10. 18 變更)

1. 總會를 召集하는 경우 그 日時, 場所 및 議案
 2. 總會가 終了한 경우 그 決議의 內容
 3. 官公署에 建議를 한 경우 그 建議의 內容
 4. 官公署의 諮問에 대하여 答申을 한 경우 그 答申의 內容
 5. 稅理士會가 그 會員에 대하여 法 第45條, 法 第46條 또는 法 第48條의20에 規定하는 行爲 또는 事實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財務大臣에게 通知한 경우 그 行爲 또는 事實의 內容(1981. 7. 24 追加, 2000. 7. 25, 2001. 10. 18 變更)
 6. 法 第49條의17 또는 法 第49條의19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大臣으로부터 命令을 받아 報告를 요구받거나 또는 勸告를 받은 경우 그 命令, 報告 또는 勸告(2000. 7. 25, 2001. 10. 18 變更)
 7. 事務所를 移轉한 경우 移轉後의 事務所
 8. 任員 또는 그 姓名에 變更이 있었던 경우 變更後의 任員의 姓名
 9. 稅理士會가 그 會員에 대하여 處分을 한 경우 그 處分의 種類 및 그 顛末
 10. 稅理士會의 區域에 관하여 指定 또는 變更이 있었던 경우 그 區域
- ② 稅理士會는 每月末에 있어서 그 會員數를 翌月 10日까지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1990. 1. 23 중전 第67條)

第 72 條(稅理士會의 會員에 대한 監督) ① 本會는 稅理士會의 會員이 法

또는 本會나 稅理士會의 會則에 違反한 경우에는 當該 稅理士會의 意見을 요청한 다음 當該 會員을 訓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訓告를 행하는 경우에는 本會의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③ 本會는 第1項의 訓告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當該 會員에게 그 취지를 通知하여 相當 期間內에 본인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辨明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本會는 運營上 必要가 있을 때는 稅理士會의 會員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質問을 할 수 있다.(2001. 10. 18 變更)(1990. 1. 23 종전 第68條)

第 73 條(稅理士會의 會員의 不服請求) ① 稅理士會의 處分을 받은 그 會員이 그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경우에는 本會에 不服請求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不服請求는 處分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不服請求에 대한 裁決은 常務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不服請求에 관한 節次에 대하여는 前3項에 정하는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1993. 4. 21追加) (1990. 1. 23 종전 第69條)

第14章 會費 및 거출금

(1990. 1. 23 종전 第13章)

第 74 條(會費) ① 稅理士會는 會費로 一事業年度에 대하여 當該 事業年度에 在籍한 그 會員數에 19,200円(事業年度의 中途에서 入·退會한 者에 대하여는 19,200円에 會員이었던 개월수(入會한 달에 端日數가 있을 때는 한달로 計算하고, 退會한 달에 端日數가 있을 때는 計算한다)를 곱하여 12로 나누어 얻은 金額으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金額을 負擔한다.(1981. 7. 24, 1982. 7. 23, 1989. 3. 23, 1990. 4. 20, 1992. 4. 21, 1996. 7. 23, 1999. 1. 26 變更)

② 稅理士會는 每月末에 있어서 그 會員數에 1,600円을 곱하여 얻은 金額

을 그 달의 다음 달말까지 本會에 納付한다.(1981. 7. 24, 1982. 7. 23, 1989. 3. 23, 1990. 4. 20, 1992. 4. 21, 1996. 7. 23, 1999. 1. 26 變更) (1990. 1. 23 종전 第70條)

第 75 條(特別會費) ① 稅理士會는 本會의 特別한 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特別會費를 負擔한다.

② 前項의 特別會費의 目的, 金額 및 納期에 대하여는 總會에서 정한다.

③ 第27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에 規定하는 總會의 議決에 關하여 準用한다.

④ 特別會費는 特別會計로써 處理한다.(1990. 1. 23 종전 第71條)

第 76 條(會費의 免除) ① 本會는 稅理士會가 그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그 稅理士會員에 대해서 特定한 期間에 있어서 會費의 全部를 免除한 경우에 있어서 그 會員이 계속하여 1년 이상 必要양를 위하여 稅理士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稅理士會에 대하여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해야 할 會費 중에서 그 會員 1人當 1,600円에 그 會費를 免除한 개월수를 곱하여 얻은 金額을 免除할 수 있다.(1982. 11. 18, 1989. 3. 23, 1990. 4. 20, 1992. 4. 21, 1996. 7. 23, 1999. 1. 26, 2000. 7. 25, 2001. 10. 18 變更)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費를 免除하는 期間의 始期는 當該 會費의 免除를 決定한 날이 속한 事業年度 開始日前으로 遡及하지 않는다.(1981. 7. 24, 1982. 7. 23, 1982. 11. 18 變更)

③ 會費의 免除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前2項에 정하는 것 외에는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2000. 7. 25 變更) (1990. 1.23 종전 第72條)

第 77 條(거출금) 稅理士會는 새로 入會한 者가 있던 달에 대하여는 그 月分の 會費에 거출금으로써 그들 1人當 15,000円의 비율로 計算한 金額을 더하여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1992. 7. 24 變更) (1990. 1. 23 종전 第73條)

第15章 庶務 및 會計

(1990. 1. 23 종전 第14章)

第 78 條(事務局) ① 本會에 事務局을 두고 庶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 및 所要 職員을 둔다.

③ 事務局長은 專務理事의 命을 받아 事務局의 事務를 處理한다.

④ 事務局의 職制 및 事務處理에 대하여는 前2項에 정하는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1990. 1. 23 종전 第74條)

第 79 條(事業年度) 本會의 事業年度는 4月 1日에 시작되고 다음해 3月 31日에 끝난다.(1990. 1. 23 종전 第75條)

第 80 條(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費, 거출금, 稅理士名簿의 登錄 등에 관한 手數料의 收入, 稅理士法人 名簿의 登載 등에 관한 手數料의 收入, 寄附金 기타 收入으로써 支辨한다.

(1990. 1. 23 종전 第76條, 2001. 10. 18 變更)

第 81 條(交付金) ① 本會는 第44條 第1項 各號 및 第50條의 7 第1項 各號에 정하는 手數料의 收入의 一部를 交付金으로 稅理士會에 交付할 수 있다.(2001. 10. 18 變更)

② 交付金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1990. 1. 23 종전 第77條, 2001. 10. 18 變更)

第 82 條(財産의 管理) 本會의 財産은 會長이 管理한다.(1990. 1. 23 종전 第78條)

第 83 條(財産目錄의 作成) 會長은 每事業年度末에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本會의 資産 및 負債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1990. 1. 23 종전 第79條)

第 84 條(豫算 및 決算) ① 會長은 定期總會에 그 會議日이 속하는 事業年度の 豫算 및 事業計劃을 提出하여 그 議決을 요구하는 동시에 前事業年度の 決算 및 事業報告에 대하여 그 承認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期間에 있어서는 會長은 通常의 會務를 執行하는데 必要한 經費金額에 한하여 支出할 수 있다.(1990. 1. 23 종전 第80條, 2001. 2. 22 追加, 2001. 7. 26 變更)

第 85 條(監査報告) 監事は 各 事業年度에 있어서 本會의 會計 및 會務의 執行을 監査한 結果에 대하여 翌事業年度의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1990. 1. 23 중전 第81條)

第 85 條의2(公告 및 開示) ① 本會는 第84條 第1項의 承認을 받은 決算에 관련된 收支計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官報에 公告한다.

② 本會는 第84條 第1項의 承認을 받은 決算에 관련된 收支計算書, 純財産增減計算書, 貸借對照表, 財産目錄 및 附屬明細書 그리고 事業活動에 관련된 報告書 및 監査報告書를 事務所에 비치해두고 5年間 一般 閱覽에 제공한다.

③ 前項의 附屬明細書에는 다음의 各號에 개기하는 事項을 記載한다.

1. 長期借入金의 明細
2. 충당금의 明細
3. 固定資産의 取得 및 處分 그리고 減價償却費의 明細
4. 第2項의 事業活動에 관련된 報告書에는 다음의 各號에 개기하는 事項을 記載한다.
 - (1) 事業의 內容
 - (2) 設立의 根據가 되는 法律 및 主務大臣
 - (3) 任員의 定數, 姓名, 職責, 任期 및 經歷
 - (4) 事務局의 職員數
 - (5) 事業概況
 - (6) 事業의 實施狀況(2001. 7. 26 追加)

第 86 條(會計處理의 細部事項) 本會의 會計處理에 대하여는 이 章에서 정하는 것 외에 常務理事會에서 정한다. (1990. 1. 23 중전 第82條)

第16章 새로이 設立된 稅理士會 등에 관한 特例 (1990. 1. 23 중전 第15章)

第 87 條(任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任員은 그 所屬된 稅理士會가 法 第49條 第4項이나 第5項에 의하여 새로 稅理士會를 設立하거나 또는 稅理士會

의 區域變更에 의하여 그 選任時에 所屬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됨에 따라 退任時는 새로 選任된 任員이 就任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1990. 1. 23 종전 第83條)

第 88 條(評議員의 選任에 관한 特例) ① 評議員은 그 所屬된 稅理士會가 法 第49條 第4項 이나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稅理士會를 設立했을 때 또는 稅理士會의 區域變更에 의하여 그 委囑되었을 때에 所屬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當該 設立日 또는 當該 區域의 變更이 있었던 날로써 退任한다.

② 法 第49條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稅理士會가 設立되었을 때는, 當該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의 稅理士會員 중에서 稅理士會가 推薦하는 評議員數는, 當該 設立日前的 稅理士會에서 第2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議員數를, 當該 設立日 당시에 있어서 새로 設立된 當該 各稅理士會의 稅理士會員數의 비율로써 按分하여(1人에 모자라는 端數가 있을 때는 1人으로 간주한다) 計算한 數로 하고 第24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2001. 10. 18 變更)

③ 前項의 規定에 따라 새로 委囑된 評議員의 任期는 그 委囑日 當時 在任하고 있는 다른 評議員의 任期와 같다.(1990. 1. 23 종전 第84條)

第 89 條(議決權에 관한 特例) 總會日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 이후에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의 議決權數는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 設立日의 稅理士會員數와 同數로 한다.(1990. 1. 23 종전 第85條, 2001. 10. 18 變更)

第 90 條(稅理士會의 申告義務에 관한 特例) ① 새로 設立된 稅理士會는 設立後 신속히 다음에 계기하는 事項을 本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1. 稅理士會의 名稱 및 事務所
2. 設立總會의 開催日時, 場所, 議案 및 決議의 內容
3. 會則 및 規則
4. 任員의 姓名, 會員名簿 및 會員數

② 法 第49條 第5項의 規定에 따라 設立總會의 開催를 요하지 않을 경우는 前項 第2號에 規定하는 「設立總會」를 「同項 各號에 정하는 事項을 決定한 總會」로 대치하고 前項의 規定을 適用한다.(1990. 1. 23 종전 第86條)

第 91 條(거출금에 관한 特例) 稅理士會의 會員이었던 者가 새로 稅理士會가 設立됨에 따라 또는 稅理士會의 區域이 變更됨에 따라 그 者의 稅理士事務

所 또는 稅理士法人의 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하는 區域의 稅理士會의 會員이 될 경우 當該 稅理士會가 그 者에 대하여 入會金の 納入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會則에 規定한 때는 第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者에 관련된 거출금의 納付를 요하지 않는다.(2001. 10. 18 變更) (1990. 1. 23 종전 第88條)

附 則(1980年 10月 2日)

1. 이 會則은 1980年 10月 13일부터 施行한다. 단, 第19條부터 第21條까지, 第25條부터 第50條까지, 第55條부터 第58條까지, 第60條부터 第63條까지 및 第85條의 規定은 法 第49條의 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 [1981年 2月 2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第44條의 規定은 當該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45日을 經過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收納하는 登錄 등 手數料에 대하여 適用한다.
2. 稅理士法의 일부를 改正하는 法律(1980年 法律 第26號)의 施行日(以下「施行日」이라 한다)에서 改正前의 稅理士法 (以下「舊法」이라 한다)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同項의 登錄申請書를 提出한 者에 관련된 第34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따른 稅理士事務所의 名稱의 登錄에 대하여는 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6개월을 經過하는 날까지 기간은 第4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 第2號에 정하는 手數料의 納付를 요하지 않는다.
3. 第35條 第1項의 規定은 施行日 이후로 되는 登錄의 申請에 대하여 適用하고 施行日前에 되는 登錄申請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를 따른다.
4. 舊法 第40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國稅廳長의 許可를 받은 事務所에 관련된 登錄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를 따른다.
5. 第43條의 規定 중 法 第26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項은 施行日 이후에 稅理士의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適用하고 施行日前에 稅理士의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6. 第46條 第2項 後段의 規定은 1981年 4月 1日 이후에 懲戒處分에 의하여 稅理士業務가 停止된 경우에 대하여 適用하고, 同日前에 懲戒處分에 의하여 稅理士業務가 停止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7. 第60條의 規定에 따라 帳簿의 記載에 대하여는, 施行日로부터 起算하여

3개월을 經過하는 날까지의 동안은 舊法 第41條 第1項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稅理士로 施行日에 있어서 그 者의 稅理士事務所의 所在地를 포함한 區域에 設立된 稅理士會의 會員이 아닌 者에 관한 第34條 第3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記載事項에 대하여는 法 附則 第22項 및 第23項의 規定에 따라 稅理士會의 會員이 되는 날까지의 동안은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9. 改正前의 會則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會費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10. 1981年 4月 1日 이후 同年 9月 30日까지의 동안에 새로 稅理士會가 設立된 경우 새로 設立된 各稅理士會가 納付하는 前項에 規定하는 特別會費額은 1981年 4月 1日 現在에 있어서 當該 設立前의 稅理士會의 會員數에 2,000円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當該 設立日에 새로 設立된 當該 稅理士會의 會員數의 비율에 의하여 按分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11.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長은 特定한 會務의 執行을 分掌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第7條 第3號에 계기하는 理事 외에 理事 1人을, 稅理士會의 會員(本會의 任員인 者를 제외한다) 중에서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當該 選任된 理事의 任期는 다른 任員의 任期와 같다.(1981. 7.24 追加)

附 則(1981年 7月 24日)

1. 이 改正規定은 1981年 7月 24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70條 및 第72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1981年 7月 24日을 포함한 事業年度分の 會費부터 適用한다.
2. 稅理士會의 1981年 7月末까지 納付해야할 會費額은 第70條 第2項에 따라 納付하는 會費額에 同年 4月末 및 5月末 現在에 있어서 當該 會員數에 100円을 곱하여 얻은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附 則(1982年 7月 23日)

1. 이 改正規定은 1982年 7月 23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34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244 일본 세리사 법령

날[1982年 8月23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第70條 및 第72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1982年 7月23日을 포함한 事業年度分の 會費부터 適用한다.

2. 稅理士會의 1982年 7月末까지 納付해야 할 會費額은 第70條 第2項에 따라 納付하는 會費額에 同年 4月末 및 5月末 現在에 있어서 當該 會員數에 100円을 곱하여 얻은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附 則(1982年 11月 18日)

이 改正規定은 1982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하고, 1982年 11月 18日을 포함하는 事業年度分の 會費부터 適用한다.

附 則(1984年 1月 10日)

이 改正規定은 1984年 1月 10日부터 施行하고,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1984年 4月 17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1984年 4月 5日)

이 改正規定은 本會의 事務所移轉日(1984年 6月 18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985年 2月 21日)

이 改正規定은 1985年 2月 21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24條 第3項의 改正規定은 1985年 9月 이후에 委囑된 評議員부터 適用한다.

附 則(1989年 3月 23日)

이 改正規定은 1989年 3月 23日부터 施行하고 1989년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1990年 1月 23日)

1. 이 改正規定은 1990年 1月 23일부터 施行(이하 「施行日」이라 한다)한다.
2. 이 改正規定의 施行日에 있어서 稅制審議會의 委員인 者의 任期는 第56條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1年 7월에 召集되는 定期總會終了時까지로 한다.
3. 稅制審議會設置要綱(1965年 4月 8日 制定)은 廢止한다.

附 則(1990年 4月 20日)

이 改正規定은 1990年 4月 20일부터 施行하고 1990年 4月 20일을 포함하는 事業年度分の 會費부터 適用한다.

附 則(1992年 4月 21日)

이 改正規定은 1992年 4月 21일부터 施行하고 1992年 4月 1일부터 適用한다. 단, 1992年 4月 21일을 포함하는 事業年度分の 會費에 대하여는 第74條 및 第7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5,600円으로 되어 있는 것을 14,400円, 1,300円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0円으로 각각 대치한다.

附 則(1992年 7月 24日)

1. 이 改正規定은 1992年 7月 24일부터 施行한다.
2. 第44條의 改正規定은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1992年 9月 10日]부터 効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當該 認可를 받은 날부터 起算하여 45일을 經過한 날이 속하는 月 이후 收納하는 登録 등 手數料에 대하여 適用한다.
3. 第77條의 改正規定은 1992年 7月 1日 이후에 各稅理士會에 入會한 者에 대하여 適用한다.

附 則(1993年 4月 21日)

이 改正規定은 1993年 4月 2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5年 7月 26日)

이 改正規定은 1995年 7月 26日부터 施行한다. 단,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1995年 9月 8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1996年 7月 23日)

1. 이 改正規定은 1996年 7月 23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44條 第4項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은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 [1996年 9月 12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第74條 및 第76條의 改正規定은 1996年 7月 23日을 포함하는 事業年度分의 會費부터 適用한다.
2. 稅理士會의 1996年 7月末까지 納付해야 할 會費額은 第74條 第2項에 따라 納付하는 會費額에 同年 4月末 및 5月末 現在에 있어서 當該 會員數에 200円을 곱하여 얻은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附 則(1999年 1月 26日)

이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35條의 改正規定은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1999年 3月 15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2000年 3月 23日)

이 改正規定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 法 第49條의13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大藏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2000年 3月 24日]부터 効力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2000年 7月 25日)

1. 이 改正規定은 2000年 7月 25日부터 施行한다.
2. 第4條의 改正規定은 本會의 事務所 移轉日(2001年 1月 22日)부터 適用한다.

3. 第52條 및 第71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6日부터 適用한다.
4. 第76條의 改正規定은 2002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단, 當該 規定이 適用될 때까지 동안의 會費의 免除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附 則(2001年 2月 22日)

이 改正規定은 2001年 2月 22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7條의 改正規定은 千葉縣稅理士會 設立日(2001年 4月 2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2001年 7月 26日)

1. 이 改正規定은 2001年 7月 26日부터 施行한다.
2. 第85條의2 第1項의 規定은 2001年 4月 1日 이후 事業年度의 決算부터 適用하고, 2000年 4月 1日부터 2001年 3月 31日까지의 事業年度의 決算에 관련된 計算書類의 公告에 대하여는 계속 從前의 例에 따른다.

附 則(2001年 10月 18日)

이 改正規定은 200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26條, 第33條부터 第35條까지, 第39條의2, 第40條, 第43條, 第44條, 第61條, 第62條, 第64條부터 第66條까지 및 第89條의 改正規定은 法 第49條의14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財務大臣의 認可를 받은 날 [2002年 4月 1日]부터 効力이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美國 IRS에서의
代理行爲에 관한 規程**

제작 및 인쇄처

미국등록대리인협회 연방사무소

판매수익금은 대정부 활동기금으로 귀속되어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회원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NAEA는 출판에 앞서 이 문서를 검토해 주신 세무대리과장Leslie Shapiro의
사무소에 감사 드립니다.

이 책에는 다른 출처에서 입수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Circular No. 230(Treasury Department Circular No. 230)
(1994년 6월 개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및 감정사의 IRS에서의 대리
행위에 관한 규정.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세청(IRS)

1986년 1월 26일까지 개정된 연방규정(Federal Regulation) 코드 31, 서
브타이틀 A, 파트 10과 1992년 9월 9일(Vol. 57, No. 175) 연방등록처 및
1994년 6월 20일(Vol. 59, No. 17)의 연록처에 있는 개정 내용.

재무부 Circular No. 230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및 감정사의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

이 책자는 1966년 8월 9일 개정된 재무부 Circular No. 230 의 개정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1966년 8월 13일자 31 FR 10773에 있는 대로이며 다음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누락된 섹션 표제 §10.58을 삽입하고 있는 1966년 9월 27일 자 31 FR 12638의 개정 내용.

세부 조항 (b)와 (c)를 §10.57에 추가하고, §10.51의 (c) 조항의 끝부분을 연장하여 조문을 첨가한 1966년 11월 2일자 31 FR 13992에 있는 1966년 10월 28일자의 개정 내용.

주로 규정상의 몇몇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이해의 상충과 징계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강화하며, 법률상의 참고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1970년 8월 19일자 31 FR 13205에 있는 1970년 8월 14일의 개정 내용.

새 조문을 세부 조항 10.3 (e)가 아닌 세부 조항 10.3 (c)에 잘못 추가한 1970년 8월 19일 개정안의 오류를 교정한 1971년 5월 11일자 36 FR 8671의 개정 내용.

부연설명과 함께 낡은 용어와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기관 퇴직자의 대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1977년 7월 28일자 42 FR 38550에 있는 개정 내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및 IRS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기타 자격사의 대리행위에 관한 광고와 수입활동에 관한 조항의 확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한 1979년 1월 24일자 44 FR 4940 개정 내용.

1974년 근로자연금보장법(ERISA)에 따른 연금계획에 대한 IRC의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보험계리사에게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정한 1979년 1월 24일자 44 FR 4944에 있는 개정 내용.

세금환급서류를 작성하거나 IRS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사를 명시하고 절세수단 의견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언을 제공하는 기준을 설정한 1984년 2월 23일자 49 FR 6719에 있는 개정 내용.

1984년 7월 18일 이후 26 U. S. C. 6701 (a)에 따라 방조 및 교사죄로 처벌을 받은 감정사에 대해 재무부 또는 IRS의 소송절차와 관계된 감정사의 감정서와 증언의 무효처리를 규정하는 1984년, 98 Stat. 695 재정적자축소법 (Deficit Reduction Act)의 섹션 156을 시행하기 위한 1985년 10월 17일자 50 FR 42014에 있는 개정 내용.

IRS에서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격사가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한 1986년 1월 22일자 51 FR 2875에 있는 개정 내용. 등록갱신 요건은 지속적인 자격사 교육의무의 이행이다. 이외에도 이 개정에 따라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개정 전에는 IRS의 장이 했던 몇 가지 업무를 세무대리과장으로 이관하도록 규정 변경.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의 광고와 수입행위에 대한 규정의 조항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사법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1992년 9월 9일자 57 FR 41093에 있는 개정 내용.

세금환급서류작성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인이 그러한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환급서류작성에 대한 성공사례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IRS에서의 제한적 대리행위에 관한 일부 기존 제한규정이 IRS에서의 제한적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사항이 독립된 단체에 의하여만 들어지는 경우에 개인에 대해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게 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등록대리인의 신분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1994년 6월 20일자 59 FR 31523에 있는 개정 내용.54

目 次

미국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

섹션

10.0 파트별 주요 내용	259
----------------------	-----

서브파트 A -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

10.1 세무대리과장	259
10.2 정의	260
10.3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	260
10.4 등록 자격	262
10.5 등록 신청	263
10.6 등록	264
10.7 자기 대리 규정제정 참여 대리행위 제한 특별 대리행위 및 세금환급서류 작성	271
10.8 관세사	273

서브파트 B - IRS에서의 대리행위와 관련된 의무와 제한사항

10.20 자료 제출	274
10.21 고객의 정보누락에 대한 인지	274
10.22 정확성에 대한 노력	275
10.23 미결정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	275
10.24 자격정지 또는 박탈을 당한 자와 IRS 퇴직자로부터의 조력	275
10.25 정부 피고용자의 파트너에 의한 대리행위	276
10.26 정부 퇴직자, 그의 파트너 및 보조자에 의한 대리행위	276
10.27 공증인	279
10.28 수임료	279
10.29 이해관계의 상충	279
10.30 수임활동	280
10.31 세금환급 수표의 매도	282
10.32 변호사업 업무활동	282
10.33 절세수단에 관한 의견서	282
10.34 세금 환급 견해와 관련된 자문, 환급서류 작성 또는 서명에 적용되는 기준	288

서브파트 C -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10.50 자격 박탈 또는 정지 권한	290
----------------------------	-----

10.51 불명예스러운 행위	290
10.52 규정 위반	292
10.5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에 관한 정보의 접수	292
10.54 소송절차의 개시	293
10.55 조정협의	293
10.56 소장 내용	294
10.57 소장과 기타 서류의 송달	294
10.58 답변	295
10.59 보충 협의	296
10.60 답변서에 대한 회신	296
10.61 증거 불일치 소장의 변경	296
10.62 동의와 요청	297
10.63 대리 출석	297
10.64 행정판사	297
10.65 공판	298
10.66 증거	298
10.67 증언조서	299
10.68 전사	300
10.69 자의적인 사실확인과 결론	300
10.70 행정판사의 결정	300
10.71 재무장관으로의 항고	301
10.72 재무장관 결정	301
10.73 자격박탈 또는 정지의 효과 등록카드의 반환	301
10.74 자격박탈 또는 정지의 통지	302
10.75 자격복권 청원	302
10.76 형사상 유죄결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신속 정지	302

서브파트 D - 감정사의 자격박탈 규정

10.77 자격박탈 권한 자격박탈의 효과	305
10.78 소송절차의 개시	305
10.79 소장 내용	306
10.80 소장과 기타 서류의 송달	306
10.81 답변서	307
10.82 보충 협의	308
10.83 답변서에 대한 회신	308
10.84 증거 불일치 소장의 변경	308
10.85 동의와 요청	308
10.86 대리 출석	309
10.87 행정판사	309
10.88 공판	309
10.89 증거	310
10.90 증언조서	310
10.91 전사	311
10.92 자의적인 사실확인과 결론	311

10.93 행정판사의 결정	312
10.94 재무장관으로의 항고	312
10.95 재무장관 결정	312
10.96 최종 명령	313
10.97 자격복권 청원	313

서브파트 E - 총칙

10.98 기록	314
10.99 유보	314
10.100 경과 규정	314
10.101 특별 명령	314

AUTHORITY: Sec. 3, 23 Stat. 258, Sec. 2-12, 60 Stat. 237 et seq; 6 U.S.C. 301, 500, 551-559, 31 U.S.C. 1026; Reorg. Plan No. 26 of 1950, 15 FR 4935, 64 Stat. 1280, 3 CFR, 1949-1953 Comp., p. 1017, 10.7 and 10.33(d) also issued under 31 U.S.C. 321 and 330

SOURCE: Department Circular 230, Revised 31 FR 10773, Aug. 13, 1966, unless otherwise noted.

§ 10.0 파트별 주요 내용

본 파트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및 IRS¹⁾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서브파트 A에는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규정, 서브파트 B에는 그러한 대리행위와 관련된 의무와 제한, 서브파트 C에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 서브파트 D에는 감정사의 자격박탈에 적용되는 규정, 서브파트 E에는 정부 문서의 열람과 관련된 조항과 함께 총칙이 포함되어 있다.

[42 FR 38352, July 28, 1977,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59 FR 31526, June 20, 1994]

서브파트 A-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

§ 10.1 세무대리과장

- (a) 사무소의 설치. 세무대리과장의 사무소는 재무부 장관의 사무소 안에 설치한다. 세무대리과장은 재무장관이 임명한다.
- (b) 직무. 세무대리과장은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등록신청을 관장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및 감정사와 관련된 징계절차규정을 제정하며 자신이 관할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본 파트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직무 및 재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c) 과장대리. 재무부 장관은 과장이 부재 중이거나 공석인 경우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부의 간부나 직원을 지명한다.

1) IRS(Internal Revenue Service) : 미국 국세청

§ 10.2 정의

문맥상 명백히 다른 뜻을 의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파트에서는

- (a) 변호사는 주, 사유지, 구역, 연방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최상급 법원의 변호사협회에 소속된 결격사유가 없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 (b) 공인회계사는 주, 사유지, 구역, 연방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적법하게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c) 국세청장은 내국세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 (d) 과장은 세무대리과장을 의미한다.
- (e) IRS에서의 대리행위는 IRS가 집행하는 제반 법령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특권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IRS 또는 IRS의 간부나 직원과의 업무 처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대리행위에는 필요한 문서들의 작성과 제출, IRS와의 통신과 대화, 그리고 조정협의, 공판과 상담에서 납세자를 대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f) 대리인이란 본 파트의 §10.3의 (a), (b), (c) 또는 (d)에 기술된 자를 지칭한다.
- (g) 세금환급은 세무조정과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한 심판(심사)청구를 포함한다.
- (h) 청은 국세청을 의미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7 FR 1017, Jan. 21, 1972; 42 FR 38352, July 28, 1977; 49 FR 6719, Feb. 23, 1984; 59 FR 31526 June 20, 1994]

§ 10.3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a) 변호사. 현재 IRS에서의 대리행위가 정지되어 있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있지 않은 모든 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특정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서면확인서를 IRS에 제출함으로써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b) 공인회계사. 현재 IRS에서의 대리행위가 정지되어 있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있지 않은 모든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현재 공인회계사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특정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서면확인서를 IRS에 제출함으로써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c) 등록대리인. 본 파트에 근거하여 등록된 모든 대리인은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d) 등록보험계리사.

- (1) 29 U. S. C. 1242에 근거하여 보험계리사등록공동위원회에 의해 보험계리사로 등록된 자는 자신이 현재 보험계리사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수입하고 있는 특정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서면확인서를 IRS에 제출함으로써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등록보험계리사로서의 대리업무는 다음의 법령 조항에 있는 사항에 대한 대리행위에 국한된다.

Internal Revenue Code(제목 26 U.S.C.) 섹션: 401(근로자연금 적격성), 403(a)(연금이 섹션 404(a)(2)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아닌지와 관련된), 404(고용자 부담금의 공제), 405(채권구매계획에 관한 적격성), 412(특정 근로자연금계획을 위한 기금지원 조건), 413(단체협의연금과 2인 이상의 고용자에 의해 유지되는 연금계획 적격조건 신청), 414(근로자연금 범위와 관련된 정의와 특별규정이 있는), 4971(섹션 412하에서 누적기금결손의 결과로 부과된 소비세와 관련된), 6057(연금의 연간등록), 6058(특정 지연배상 연금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6059(보험계리사의 정기보고), 6652(e)(연금에 따른 연간등록 및 기타 통지사항 미제출), 6652(f)(지연배상연금계획과 관련된 자료 미제출), 6692(보험계리보고서 미제출), 7805(b)(이 파트에 적시된 법령의 조항에 있는 IRS의 규정이나 결정 서한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29 U.S.C. 1083(부당한 연금에 지출된 자금에 대한 권리포기와 관련하여)

- (2) 이 서브섹션에 근거하여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등록대리인과 같은 방식으로 본 파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e)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10.5(c) 또는 §10.7 하에서 자격이 부여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섹션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f) 정부기관의 간부와 직원, 그리고 그 이외의 자. 미합중국 정부 의 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간부나 직원 컬럼비아 특별구의 간부나 직원, 의회의 상·하의원; 또는 상주대표를 포함한 개인은 이러한 대리행위가 18 U.S.C. 203 또는 205를 위반하는 경우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g) 주정부 기관의 간부나 직원. 주 또는 그 하위 조직의 세금 문제에 대해 평결이나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다루는 직무를 담당하는 주 또는 그 하위 조직의 간부나 직원은 그 주와의 고용 관계상 연방 세금 문제와 관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경우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36 FR 8671, May 11, 1971; 44 FR 4944, Jan. 24, 1979; 59 FR 31526, June 20, 1994]

§ 10.4 등록자격

- (a) 시험을 통한 등록. 세무대리과장은 IRS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조세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고 본 파트의 조항에 규정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대리인의 적법한 자격정지나 자격박탈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신청자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b) IRS 퇴직자의 등록. 세무대리과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대리인의 적법한 자격정지나 자격박탈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아래에 기술된 IRS에서의 근무경력과 실무경험으로 그와 동일한 등록자격이 인정되는 신청자에게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1) IRS 근무경력을 근거로 하는 등록은 세무대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세무대리과장은 각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이 내용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학력 등 외에도 신청자의 IRS 이력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재사항에는 (i) 근무한 직위, (ii) 그 직위의 임명과 면직 일자, (iii) 해당 직무경험에 대한 등급을 별도로 기재함과 아울러 각각의 직위에서 부여 받은 업무의 성격, 그리고 (iv) 그 직위에 있었을 때의 부서장의 이름과 함께, 참고될 만한 경우 신청자의 경험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신청자의 그러한 업무 경험이 자격부여에 있어서 직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자에게 적격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IRS내의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IRS내에서의 신청자의 직무의 성격과 등급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요청서와 함께 IRS내의 적정한 간부에게 그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3) IRS 근무경력을 근거로 하는 등록신청자의 자격심사에서 세무대리과장은 다음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 (i) 그러한 근무경력을 근거로 하는 등록은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또는 신청자의 IRS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의 업무 또는 IRS내의 특

정 부서만으로 제한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 (ii) IRS 근무경력을 근거로 하는 등록신청은 퇴직후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 (iii) IRS 근무경력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최소 5년 동안 IRS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내국세 규정과 이 규정에 있는 소득, 재산, 증여, 고용 또는 소비세에 관련되는 조항의 적용과 해석에 필히 관여했어야 한다.
- (iv) 본 섹션의 조항 (b)(3)(iii)의 적용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고용 기간의 총계 중 3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 5년간의 지속적 근무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자연인.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등록은 자연인에게만 부여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42 FR 38352, July 28, 1977; 51 FR 2875, Jan. 26, 1986; 59 FR 31526, June 20, 1994]

§ 10.5 등록 신청

- (a) 서식; 수수료. 등록신청자는 서식 23 신청서를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시 각 등록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 IRS를 피지급인으로 한 서식 23에 정해진 금액의 수표나 송금환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신청자의 등록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미연방에 귀속된다.
- (b) 추가 정보; 검사(examination). 등록신청 심사조건으로서, 세무대리과장은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선서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두조사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서면 요구로 신청자에게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c) 임시등록증. 세무대리과장은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리행위 등록증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자에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임시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만약 신청서가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만약 기술된 정보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 등록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만약 세무대리과장에게 신청서에 있는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경우 또는 신청자가 다른 사유로 등록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임시등록증

은 교부될 수 없다. 임시등록증의 발행은 대리행위를 위한 등록 또는 등록자격에 대한 사실확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세무대리과장은 임시등록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d) 신청서의 거부에 대한 불복신청: 세무대리과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함에 있어서 신청자에게 그에 대한 사유(들)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거부통지서를 수취한 후 30일 이내에 근거 사유와 함께 서면 불복 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무장관은 불복신청에 대해 가능한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Sec. 501. Pub. L. 82-137, 8b Stat. 290: 31 U. S. C. 483a).

[38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2, July 28, 1977: 51 FR 2875, Jan. 26, 1986]

§ 10.6 등록

- (a) 명부: 세무대리과장은 아래에 나열된 모든 개개인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유효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2) 등록갱신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자;
 - (3)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휴업상태에 있는 자;
 - (4)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해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자;
 - (5) 본 파트의 섹션 §10.55에 따라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한 등록으로부터 취소요청이 세무대리과장에 의하여 수락된 자; 그리고
 - (6) 등록의 신청이 거부된 자.
- (b) 등록카드. 세무대리과장은 본 규정이 발효된 후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위한 등록신청이 승인된 자에게 등록카드를 발행한다. 등록카드는 카드에 표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1987년 2월 1일 전에 발급된 등록카드를 1987년 3월 1일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이 상실된 등록카드는 소지한 자는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 (c) 등록조건. 본 파트의 규정에 따라 등록갱신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등록된 자에게는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개업 등록이 등록된다.
- (d) 등록의 갱신.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세무대리과장으로부터 갱신통지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요청에 대한 회피사유가 될 수 없다.

- (1)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하기 위하여 1986년 1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자는 1986년 11월 1일과 1987년 1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등록을 1986년 11월 1일과 1987년 1월 31일 사이에 접수한 자는 1987년 3월 1일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의 첫 유효일자는 1987년 4월 1일이다.
- (2) 그 후의 갱신신청은 1989년 11월 1일과 1990년 1월 31일 사이에 하여야 하며, 그 후로는 매 3년마다 11월 1일과 1월 31일 사이에 하여야 한다. 등록갱신기간에 첫 등록을 접수한 자는 갱신연도의 3월 1일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등록의 유효일자는 1990년 4월 1일이며, 그 후는 매 3년째 4월 1일이다.
- (3) 세무대리과장은 각자에게 등록갱신을 통지하며 그러한 갱신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한다.
- (4)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된 등록갱신신청서에는 적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번 접수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5)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Washington, DC 20224, IRS, 세무대리과장으로 부터 교부 받을 수 있다.
- (e) 갱신조건: 정기보수교육.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등록된 자는 등록갱신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세무대리과장이 정한 갱신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정기보수교육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 (1) 1987년 4월 1일자로 유효한 갱신등록의 경우.
 - (i) 최소한 24시간의 정기보수교육 학점을 1986년 1월 1일에서 1987년 1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야 한다.
 - (ii) 최초등록을 1986년 1월 1일에서 1987년 1월 31일 사이에 접수한 개인은 1987년 4월 1일자로 유효한 등록 갱신으로부터는 면제 받지만 등록갱신을 위해 정해진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1990년 4월 1일에서 그 후 매 3년 주기마다 유효한 갱신등록의 경우.
 - (i) 최소한 72시간의 정기보수교육 학점을 1987년 2월 1일에서 1990년 1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다음 매 3년마다 같은 시간의 정기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3년의 기간을 등록주기라 한다.
 - (ii) 등록주기 각 연도마다 최소 16시간의 정기보수교육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iii) 등록주기 동안에 최초등록을 접수한 자는 등록주기 기간 중 매달 두 시간의 자격부여 정기보수교육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한 달 중의 어느 일자에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은 한 달 전체에 대한 등록으로 간주된다.
- (f) 자격부여 정기보수교육

- (1) 일반적인 경우. 정기보수교육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교과과정이:
 - (i) 회계, 재무관리,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및 과세를 포함하는 연방과세나 연방조세와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방과세나 연방조세에 대한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짜여진 자격부여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 (ii) 공인된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2) 자격부여 프로그램.
 - (i) 정규과정. 계속보수교육과정으로서의 정규 과정은 다음의 경우 자격부여능력이 있다:
 - (A) 출석을 규정할 때;
 - (B) 프로그램이 특정 과정의 주제 문제에 관한 토론을 가르치거나 이끌어 나가는 데에 배경, 훈련, 교육과(또는) 경험이 적합한 자격이 있는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규정할 때; 그리고
 - (C) 시행자가 서면으로 정리된 개요와(또는) 교과서 및 출석증명서를 제공하고 이 모두를 출석자가 등록갱신 후 3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할 때.
 - (ii) 통신 또는 개인학습 프로그램(녹음테이프 프로그램 포함). 자격부여 계속보수교육 프로그램에는 등록된 개인이 독학으로 하되 자격이 있는 시행자에 의해 시행된 통신 또는 개인학습과정이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부여 시간은 공인교육기관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세미나 또는 교과과정의 측정방법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계속보수교육과정으로서 자격부여능력이 있으려면 그것들은:
 - (A) 시행자에 의한 참가자 등록을 필요로 한다.
 - (B) 참가자의 수료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필기시험 등); 그리고
 - (C) 시행자가 서면으로 정리된 개요와(또는) 교과서 및 출석 증명서를 제공하고 출석자가 등록 갱신 후 3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iii)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로서 활동할 경우.
 - (A) 본 파트의 계속보수교육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로서 활동한 각 시간에 대해 한 시간의 계속보수교육학점이 부여된다.
 - (B) 이 프로그램에서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로서 활동한 각각의 시간에 대해 교과과정 실 준비시간에 따라 두 시간의 계속보수 교육학점이 수여된다. 이 학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 하에 교과

준비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C) 교육과 교과준비에 대한 최대 학점은 등록주기당 계속보수교육에 필요한 의무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D) 등록주기동안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가 두 번 이상 같은 교과 과목으로 발표하는 경우 계속보수교육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iv) 출판된 기고문, 책 등에 대한 학점.

(A) 회계, 재무관리,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및 과세를 포함하는 연방 과세나 연방조세와 관련된 인쇄물에 대해 그 내용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방과세나 연방조세에 대한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짜여진 경우 계속교육학점이 부여된다.

(B) 학점은 교재준비에 소요된 각 시간당 1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각 자는 자기 책임 하에 준비소요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C) 출판물에 대한 최대 학점은 등록주기당 계속보수교육에 필요한 의무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3) 정기시험. 개인은 등록주기에 대한 등록갱신자격을 다음과 같이 충족시킬 수 있다:

(i) 갱신 이전 3년간의 기간동안 본 파트에 따라 시행되는 특별 등록시험의 각 부문에서 합격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등록주기의 마지막 연도에 최소 16시간의 자격부여 계속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g) 시행자.

(1) 시행자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2) 시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자는:

(i) 공인된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ii) 회계 또는 법률 부문에서 면허발급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 사유지, 구역, 연방,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면허발급단체에 의하여 계속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가 받아야 한다;

(iii) 세무대리과장으로부터 본 파트의 범위 안에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계속보수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적 기관이나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iv) 인정된 계속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승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시행자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자격부여시행자는 프로그램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 (i) 교과과정에 대해 자격을 인정을 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ii) 교과과제가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 (iii) 강사, 토론지도자, 연사가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자여야 한다;
 - (iv) 프로그램에 실무적인 내용과 발표에 대한 평가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v)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 (vi) 시행자는 각 참가자의 프로그램 수료와 출석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록부는 프로그램 종료 후 3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연속적인 회의, 대회,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의 경우,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서 각 참가자의 프로그램 수료와 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 (4) 공인 시행자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세무대리과장에게 신청하고 그러한 신청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세무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 (5) 세무대리과장이 승인한 시행자 협정서와 자격을 가진 전문적 기관 또는 단체 시행자는 한 등록주기동안 유효하다. 그러한 시행자의 명단은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 (h) 계속보수교육 교과과정 이수 산정.
 - (1) 모든 계속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접촉시간으로 환산하여 측정된다. 가장 짧은 프로그램은 1 접촉시간이다.
 - (2) 접촉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50분간의 연속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학점은 완전한 한 단위 접촉시간, 다시 말하여 50분 또는 이의 배수에 해당되는 시간에 한하여 부여된다. 예를 들어, 50분 이상 100분 미만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은 1 접촉 시간으로 계산된다.
 - (3) 연속적인 회의,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의 각 강의는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연속적인 회의에서 두개의 90분 분량의 강의(180분)는 3 접촉시간으로 계산된다.
 - (4) 대학이나 단과대학 교과과정의 경우, 각 학기 시간학점은 15 접촉시간과 동등하며 3개월 학기 시간학점은 10 접촉시간과 동등하다.
- (i) 기록보유 요건.
 - (1)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자격부여 계속보수교육 학점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i) 시행기관의 명칭;
 - (ii) 프로그램이 시행된 위치;
 - (iii)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 설명, 예를 들어 교과과정의 개요와(또는) 교과서 등;
 - (iv) 출석 일수;
 - (v) 신청 학점 시간;
 - (vi) 적정하다면, 강사의 이름,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 그리고
 - (vii)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수료증과(또는) 서명된 출석부.
- (2) 강사, 토론 지도자 또는 연사로서 행한 활동에 대한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갱신 후 3년 동안 다음의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i) 시행 기관의 명칭;
 - (ii) 프로그램이 시행된 위치;
 - (iii)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 설명;
 - (iv) 프로그램 날짜; 그리고
 - (v) 신청 학점 시간.
- (3) 출판물에 대한 계속교육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갱신후 3년 동안 다음의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i) 출판자;
 - (ii) 출판물의 제목;
 - (iii) 출판물 1부; 그리고
 - (iv) 출판 일자.
- (j) 의무면제.
- (1) 세무대리과장은 다음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의 계속교육요건에서 그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 (i) 계속교육 요건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
 - (ii) 현역 군복무 의무의 연장;
 - (iii) 고용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국외 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로서 그 기간 동안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 (iv)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2)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근거서류의 예로 진단서, 군 명령서 등이 있다.
- (3) 면제신청서는 갱신신청기간의 마지막 날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4) 면제요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고 휴업등록자명부에 등재한다.

(5) 면제요청이 승인된 경우, 세무대리과장은 그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러한 갱신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한다.

(6) 면제가 승인된 자는 등록갱신 신청서를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k) 보수교육 미수로.

(1) 개인이 본 파트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는 세무대리과장이 판단한다. 등록갱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과장은 당사자에게 통보 받은 최종 주소로 제1종 우편물로 통보한다. 통지서에는 충족시키지 못한 근거를 기술하고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무대리과장은 그 정보를 고려하여 등록갱신 적합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2) 세무대리과장은 본 파트에 의하여 보존될 필요가 있는 모든 기록의 복사본을 통보 받은 최종우편주소지로 제1종 우편물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당사자가 그러한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요구된 계속보수교육시간학점을 불허할 수 있다.

(3) 등록갱신에 필요한 신청서를 적기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갱신요건 미충족 통지서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갱신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3년간 휴업등록자명부에 등재된다. 이 기간 중, 개인은 IRS에서의 대리행위 자격을 상실한다.

(4) 휴업등록상태 중 또는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하기에 부적격한 기간 중 이에 해당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등록대리인, 그 직책인 "E.A." 및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적격성을 뜻하는 기타 형식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휴업등록자는 휴업등록기간 중에 등록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충족조건에 계속보수교육과정의 수료가 포함되는 경우 최소 16시간의 자격부여 계속보수교육시간을 갱신 신청서의 제출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이수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계속보수교육학점은 개인이 개업 명부로 재등록된 등록주기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휴업상태로 등록된 자는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휴업상태에 등재된 이후 3년 이내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이름은 휴업명부에서 삭제되고 등록이 종료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에 의하여 본 파트의 규정대로 등록 적격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 (7) 세무대리과장의 사무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는 휴업등록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 (l) 휴업·은퇴상태.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휴업등록을 요청할 수 있고 휴업은퇴로 등록되며 IRS에서의 대리행위자격을 상실한다. 그러한 자는 본 파트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각 등록갱신 신청시점에 등록갱신 신청서를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휴업은퇴상태로 등록된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주기에 따른 필요한 계속보수교육시간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업등록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휴업은퇴상태는 세무대리과장의 사무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m) 자격정지나 박탈 중의 갱신. 징계조치 사유로 IRS에서의 대리행위가 부적격한 자는 부적격 기간 중 등록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n) 입증. 세무대리과장은 본 파트에 규정된 등록갱신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등록된 자와 (또는) 적격한 시행자의 계속교육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Control No. 1545-0946에 의하여 관리예산실에 의하여 승인되었음.)

(31 U. S. C. 483a)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2, July 28, 1977; 51 FR 2875 Jan. 26, 1986]

§ 10.7 자기 대리; 규정제정 참여; 대리행위 제한; 특별 대리행위; 그리고 세금환급서류 작성

- (a) 자기 대리.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충분히 밝힐 경우 IRS에서 스스로를 대리할 수 있다.
- (b) 규정제정 참여. 누구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규정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5 U. S. C. 553을 참조.
- (c) 대리행위 제한.
- (1) 일반적으로. 본 섹션의 (c)(2)항의 제한사항을 조건으로 대리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 충분한 신원과 납세자를 대리할 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본 (c)(1)항에 기술된 상황 하에서 IRS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본 (c)(1)항에 기술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i) 누구나 직계 가족의 일원을 대리할 수 있다.
- (ii) 개인 사용자의 정규직 직원은 사용자를 대리할 수 있다.
- (iii) 합명회사의 파트너나 정규직 직원은 그 합명회사를 대리할 수 있다.
- (iv) 기업(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협회 또는 조직된 단체의 임원이나 정규직 직원은 그 회사, 협회 또는 조직된 단체를 대리할 수 있다.
- (v) 수탁인, 재산보전관리인, 후견인, 인격대표자, 유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신탁회사, 재산보전관리회사, 후견회사 또는 부동산관리회사의 정규직 직원은 신탁회사, 재산보전관리회사, 후견회사, 부동산관리회사를 대리할 수 있다.
- (vi) 정부의 기관과 그 산하 기관의 간부나 정규직 직원은 공무 중 정부의 기관과 그 산하 기관을 대리할 수 있다.
- (vii) 미합중국 국외에서 근무하는 IRS의 직원을 상대로 누구나 어떤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할 수 있다.
- (viii) 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세금환급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 또는 세금환급서류를 작성하되(세금환급 또는 규정에 따른 지시사항에 의하여) 환급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자는 해당 환급에 해당되는 과세연도 또는 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IRS의 조사국의 간부와 직원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2) 제한사항

- (i)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중인 자는 §10.7(c)(1)에 따라 IRS에서의 제한된 대리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ii) 세무대리과장은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대리인의 자격박탈이나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여한 자에게 통지를 하고 조정협의 기회를 제공한 후 §10.7(c)(1)의 규정에 따라 IRS에서의 제한된 대리행위에 종사할 적격성을 거부할 수 있다.
- (iii) §10.7(c)(1)(viii)의 권한을 근거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자는 대리행위의 기준, 권한 범위, 그리고 세무대리과장이 규정하는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적용이 용인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d) 특별 대리행위. 세무대리과장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전제로 특정 문제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적격하지 않은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e) 세금환급서류의 작성과 정보의 제공. 대리인은 IRS 또는 IRS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요청에 따라 세금환급서류를 작성하고, IRS에서 납세자를 위한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49 FR 6719, Feb 23, 1984; 51 FR 2875, Jan 26, 1986; 59 FR 31526, June 20, 1994]

§ 10.8 관세사

본 파트의 규정에 어느 조항도 허용된 일정 세관구역의 내국세의 지역 책임자의 사무소 또는 IRS의 연방사무소에서 자신이 관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대신하여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에 따라 특히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도록 관세청장에 의하여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관세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브파트 B - IRS에서의 대리행위와 관련된 의무와 제한사항

§ 10.20 자료 제출

- (a) IRS에 대한 자료 제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 계리사는 법률상 권한을 부여 받은 IRS의 간부나 직원의 적합하고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IRS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기록 또는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기록이나 자료가 선의로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월권이라고 믿는 경우 또는 그러한 정보나 기록을 취득하기 위한 요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록이나 정보를 취득하려는 IRS 또는 IRS의 간부나 직원의 적합하고 법률에 근거한 노력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 (b) 세무대리과장에 대한 자료 제출. 어떤 자료가 선의로 그리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월권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믿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의 본 파트 위반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세무대리과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본 파트에 따라 구성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의 자격정지나 박탈의 소송절차에서 그에 관련하여 증언하도록 요청을 받는 경우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대리인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21 고객의 정보누락에 대한 인지

고객이 고용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IRS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미합중국의 세법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세금환급서류, 문서, 보증서 또는 미합중국의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에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그러한 불합치, 오류 또는 누락의

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2 FR 38352, July 28, 1977,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22 정확성에 대한 노력

모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다음의 경우 본인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a) 세금환급서류, 서류, 서약서 및 IRS 업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시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와 이것들을 승인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b) 자신이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하는 구두 또는 서면 대리행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 (c) IRS 업무와 관련되어 자신이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두 또는 서면 대리행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경우.

[35 FR 13205, Aug. 19, 1970, as amended at 42 FR 38352, July 28, 1977; 57 FR 41095, Sept. 9, 1992]

§ 10.23 미결정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IRS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비합리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10.24 자격정지 또는 박탈을 당한 자와 IRS 퇴직자로부터의 조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IRS에서의 대리행위 시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 (a)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자격정지나 자격박탈 하에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그로부터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b) 그러한 자를 동료, 파견인 또는 하부대리인으로서 고용하거나 수입료를 공유 하여서는 안 된다.
- (c) 본 규정의 §10.26 또는 연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 퇴직자로부터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44 FR 4940, Jan. 24, 1979; 57 FR 41095, Sept. 9, 1992]

§ 10.25 정부 피고용자의 파트너에 의한 대리행위

미합중국 행정부와 미국의 독립기관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의 파트너는 정부의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또는 그것이 자신의 공무의 대상이 되는 IRS 업무에 대해 타인을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 10.26 정부 퇴직자, 그의 파트너 및 보조자에 의한 대리행위

(a) 정의. §10.26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 (1) “조력하다”란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2) “정부 피고용자”란 18 U. S. C. 202(a)에 정의된 “별정직 정부 피고용자”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의 산하 기관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 또는 하원의원, 또는 주 입법기관의 기타 간부나 직원을 의미한다.
- (3) “회사의 일원”이란 어떤 회사의 단독 대리인이나 단독대리인의 피고용자 또는 조력자, 또는 합명회사, 조인트 벤처, 법인, 자격사 단체 또는 비정부 단체를 대리하는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의 파트너, 주주, 제휴회사, 계열회사 또는 피고용자를 의미한다.
- (4) “대리인”이란 §10.3(e)에 기술된 자를 의미한다.
- (5) “공무”는 의사결정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의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행위를 승인, 거부 또는 지휘하는 행정적 또는 실무적인 권한을 의미하되,

그 권한이 진행 중이나 최종적이거나, 단독으로 집행이 가능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집행이 가능하느냐, 개인적으로 하느냐, 하급자를 통하여 하느냐와는 상관하지 않는다.

- (6) “참여하다” 또는 “참여”는 승인 또는 거부의 결정을 행사할 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정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심사함으로써 또는 조정협의를나 조사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성격의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규정”은 재무부 규정(입법예고안이나 재무부 결정으로 공포되었거나 공포 준비 중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과 국세청 관보에 게재된 내국세 결정과 내국세 절차를 포함한다. “규정”은 본 섹션의(a)(8)조항에 정의된 “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8) “결정”은 IRS가 관장하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권리, 특권이나 책임과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결정되거나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단체나 단체들과 관련이 되고 동일 과세기간이 개입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미합중국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의 사실 관계(들)와 관련한 결정, 판정, 사실확인, 서신결정통지, 실무적인 자문, 계약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를 의미한다. “결정”은 본 섹션의 (a)(7)항에 정의된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일반 규정.

- (1) 정부 퇴직자는 대리행위가 18 U. S. C. 207(a)나 (b) 또는 미합중국의 다른 어떤 법률에 저촉될 경우 IRS 업무에서 퇴직 후 타인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 (2) 결정에 참여했던 정부 퇴직자는 그 결정의 특정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자를 퇴직 후 그 결정에서 대리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조력해선 안 된다.
- (3) 정부와의 고용 기간 종료 1년 이전의 기간동안 어떤 결정에 대한 공무를 수행했던 정부 퇴직자는 퇴직 후 1년간 그 결정에 대한 특정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자를 그 결정에서 대리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조력해선 안 된다.
- (4) 정부 퇴직자는 퇴직 1년 전에 자신이 규정의 공포, 철회, 개정, 변경,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였거나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규정의 공포, 철회, 개정, 변경, 해석과 관계하여 퇴직 후 1년 내에 재무부 직원을 상대로 대리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본 조항은 퇴직자가 자신을 대리하여 출석하거나 그 결정과 관련된 규칙의 적용이나 해석과 관계된 결정과 연관하여 IRS에서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퇴직자는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자신이 습득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

고 규칙이 무효이거나 불법이라고 주장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본 조항은 그러한 퇴직자가 다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자문을 하거나 대리행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 회사 대리.

(1) 정부 퇴직자가 회사에 소속된 경우 동 회사의 구성원은 정부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본 섹션의 (b)(1)(18 U. S. C. 207(b)는 제외) 또는 (b)(2)항의 제한사항과 관련된 거래의 특정 당사자이었거나 당사자인 타인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정에서 대리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조력할 수 없다:

- (i) 정부 피고용자가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회사의 구성원이 그가 퇴직할 때까지 또는 그가 그 결정에 참여한 것이 종료된 이후 6개월까지 어느 것이 먼저이든 그가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 소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피고용자와 토의하지 않았을 경우;
- (ii) 정부 퇴직자가 결정에 참여하는 도중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토의하지 않았거나 또는 만약 그러한 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8 U. S. C. 208(b)의 요건에 합치하였을 경우; 그리고
- (iii) 그가 대리행위에 조력하지 않도록 회사가 정부 퇴직자를 고립시키는 경우.

(2) 정부 퇴직자가 소속된 회사의 구성원은, 그가 대리행위에 조력하지 않도록 회사가 정부 퇴직자를 고립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섹션의 (b)(3) 조항의 제한사항이 그러한 결정에서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특정 당사자이었거나 당사자인 자를 대리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조력할 수 없다.

(3) 정부 퇴직자의 고립이 본 섹션의 (c)(1) 또는 (c)(2)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그러한 고립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정부 퇴직자와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의 구성원이 각서로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또 규정에 명시된 기타 장소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회사, 정부 퇴직자, 그러한 고립이 필요한 결정(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d) 진행중인 대리행위. 본 규정의 공포 이전에 실제 대리행위가 시작된 특정 문제에 관한 대리행위와 관련하여 정부 퇴직자, 그의 파트너와 동료에 의한 대리행위는 본 파트의 규정에 대한 1972년 6월 개정안에 정한 규정(37 F.R. 11676에 공포)에 따른다: 단 대리행위가 공포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정부 퇴직자와 그의 파트너 및 동료에게 있다.

§ 10.27 공증인

공증인으로서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IRS가 관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고문,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또는 IRS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인서를 받거나, 서약을 관리하거나, 문서를 확인하거나 또는 공무를 집행할 수 없다. (26 Op. Atty. Gen. 236).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28 수입료

- (a)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IRS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고객을 대리함에 있어 터무니없는 수입료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 (b) 세금환급서류 작성에 대한 성공 사례금. 대리인은 본래의 세금환급서류작성에 대한 성공사례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리인은 수입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수정 세금환급이나 반환청구가 IRS에 의해 상당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대리인이 합리적인 예상을 하는 경우 수정된 세금환급이나 (본래의 세금환급에 대한 반환청구가 아닌) 반환청구를 작성한데 대해 성공사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공사례금은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금액의 백분율 또는 절약된 세금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달성된 특정 결과에 따른 수입료를 포함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59 FR 31527, June 20, 1994]

§ 10.29 이해관계의 상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완전히 공개된 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명백히 동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있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대리할 수 없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30 수임활동

(a) 광고와 수임활동의 제한사항.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보험계리사 또는 기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는 IRS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대중매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i) 거짓의, 사기성이 있는, 과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제적이거나 부당한 진술 또는 주장; 또는
 - (ii) 현혹하거나 속이는 진술 또는 주장. 등록대리인은 자신의 자격사 명칭을 기술함에 있어, "공인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IRS와의 고용자/피고용자 관계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IRS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등록된" "IRS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그리고 "IRS 앞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으로 기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등록대리인과 등록보험계리사는 그 명칭을 EA 또는 E. A.로 축약할 수 있다.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보험계리사 또는 기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IRS 업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수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수임활동은 직접적인 대인접촉과 전화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제한사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i)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현재의 또는 이전의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 (ii) 가족 구성원과의 통신의 경우;
 - (iii) 접촉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잠재적인 고객이 아닌 한, 전문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다른 대리인에게 알리는 경우;
 - (iv) 우편에 의한 수임활동; 또는
 - (v) 1954(26 U. S. C.)의 Internal Revenue Code의 섹션 501(c)(3) 또는 (4)에 열거된 면제된 기관의 피고용자, 구성원 또는 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에 의한 강제적이지 않은 직접 접촉하는 수임활동.

특정 대상을 겨냥한 DM방식의 수임활동, 즉 그 대상의 독특한 환경이 수임활동의 근거가 되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또는 기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가 자신이 직접 또는 대신하여 배부하는 우편물 발송의 경우 봉투와 그 우편물의 첫 페이지 상단에 대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명백

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모든 수입활동에는 수령자의 선정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b) 수입료 정보.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및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는 다음의 수입료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i) 특정한 반복적 서비스에 대한 고정 수입료.
- (ii) 시간당 수입료.
- (iii) 특정 업무에 대한 수입료율표.
- (iv) 최초의 상담에 청구되는 요금.

유료로 제공되는 업무에 관한 수입료 정보의 설명서에는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밝히는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 그리고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는 문서화된 수입료율표가 제공될 수 있음을 공포할 수 있다.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 및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적합한 자는 시간당 수입료, 일정한 반복적 업무에 대한 확정수입료, 특정 업무에 대한 수입료율표 및 최초 상담에 부과되는 수입료를 적정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공포하여 부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러한 시간당 수입료율이나 수입료가 마지막으로 공포된 후 30일 미만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c) 교신. 수입료 정보를 포함한 교신에는 전문직명부, 전화번호부, 인쇄 매체, 우편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기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나: 단, 선택된 방법으로 인해 교신이 거짓이거나, 속이거나,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본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에게 수입요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알렸을 경우 대리인이 잠재적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본 규정의 위반으로 해석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방송 내용을 미리 녹화해야 하고 대리인은 실제 진과방송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한다. DM 통신의 경우 대리인은 통신이 발송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배포된 사람의 명부나 기타 기재사항과 함께 실제 발송된 우편물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그 사본을 마지막 발송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최소한 36개월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d) 부적절한 제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IRS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대리인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섹션 하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고객을 구하거나 대리행위를 하는 자나 법인을 동료, 파견인, 또는 하위대리인으로 고용하거나 그로부터 고용이나 조력을 수락하거나 혹은

그들과 수입료를 공유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관계와 관련하여 IRS에서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위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의 어느 조항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등록보험계리사를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금지하지 아니한다.

[44 FR 4943, Jan. 24, 1979,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31 세금환급 수표의 매도

소득세 환급서류 작성자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등록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에게 발행된 소득세와 관련하여 발행된 수표를 배서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

[42 FR 38353, July 28, 1977,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32 변호사업 업무활동

본 파트의 어떤 규정도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를 변호사 업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1 FR 10773, Aug. 13, 1966. Redesignated at 42 FR 38353, July 28, 1977]

§ 10.33 절세수단에 관한 의견서

(a) 절세수단에 관한 의견서와 제안자료. 절세수단을 위한 투자의 연방세 효과를 분석하여 절세수단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대리인은 다음의 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실적 문제.

(i) 대리인은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실이 정

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제안자료에 기술되었음을 납득하여야 하며 향후 활동에 대한 대리행위가 합리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 (ii) 대리인은 자신의 배경과 지식에 근거하여 진실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지 않아야 하는 절세수단에 관해 주장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장되는 관련 사실이 거짓이라고 믿을 사유가 있지 않다면 대리인은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나 독립된 검증을 수행하거나 사실에 대한 고객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추정할 필요가 없다.
 - (iii) 만약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나 예상되는 투자의 채무 수행이 절세수단과 관련이 있다면 대리인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거로서의 평가서 또는 추정채무제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A) 평가서 또는 추정채무제표가 서류상으로 정확한 경우;
 - (B) 평가서 또는 추정채무제표를 작성하는 자가 작성 능력이 있고 의심이 갈 정도의 평판을 가지지 않았다고 대리인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 (C) 평가서가 관련된 연방세 규정에 따라 명시된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정의에 근거를 둔 경우.
 - (iv) 만약 매입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언급된 매입가격을 참고하여 설정된다면 대리인은 언급된 매입가격이 그것의 공정시장가격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그 재산이 매입되었던(또는 매입될) 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 (2) 법과 사실을 관련시키기. 대리인은 반드시 법을 실제의 사실과 관련시켜야 하며, 미래의 활동에 근거를 둔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어떠한 사실이 추정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 (3) 중요한 문제의 확인. 대리인은 모든 중요한 연방세 문제가 고려되었으며 IRS의 조사가 상당히 예상되는 모든 문제가 제안자료에서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언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4) 각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서. IRS 조사가 상당히 예상되는 것으로 제안서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중요한 세금 문제에서 이 문제 자체만으로 볼 때 투자자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리인은 가능한 경우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중요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견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의견서에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5) 종합 평가.

- (i) 대리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세금혜택이 상당히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 대리인이 그러한 종합 평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종합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의견서에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종합 평가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결론짓는 의견서는 진술된 사유가 타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 정밀조사를 받는다.
- (ii) IRS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형적 투자자에 대한 재무 효과의 측면에서 보아 상당한 절반 이상의 중요한 세금혜택이 어느 정도는 실현될 것이라는 결론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낙관적인 종합 평가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 (iii) 만약 종합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종합 평가로 볼 때 전체적으로 중요한 세금혜택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면 대리인의 의견이 낙관적인 종합 평가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비관적인 종합 평가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눈에 잘 띄게 제안자료에서 밝혀야 한다.
- (iv) 다음의 실례는 본 조항의 원칙을 설명한다:

실례 (1). 합자회사는 매각차용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투자 파트너에게 발생하는 주요 세금혜택은 감가상각과 이자공제가 된다. 내국세법의 섹션 162(일반적 그리고 필요한 사업 경비)에 규정된 몇 가지 공제 사유로 좀더 사소한 세금혜택이 투자자에게 발생된다. 만약 그 합자회사가 (이자와 감가상각 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세금 목적을 위한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대리인이 결론을 내리면 대리인은 내국세법 섹션 162에 의해 주장할 수 있는 공제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세금혜택이 실현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실례 (2). 내국세법의 S 규정에 따른 법인의 선정이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제안자료는 법인의 총 투자의 75%에 해당되는 연구와 실험 지출을 위한 공제는 법인의 운영의 첫 두 해 동안 적용되고 다른 비용이 총 투자의 다른 15%를 차지하며 이 기간동안 그 법인의 수익은 없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대리인은 연구와 실험 지출에 대한 공제가 인정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이외의 세금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은 이 결론을 근거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세금혜택이 실현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례 (3). 상품계약에서 손익상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 해에 적자로 결산을 마감하고 둘째 해에 흑자로 결산을 마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는 주요 세금혜택은 상쇄이익의 차기년도까지의 지연과 결합되는 첫 년도 손실이다. 대리인은 그 손실이 첫 해에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는다. 따라서 제안된 주요 세금혜택이 소득의 1년 연장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허용되지 않는 손실이 둘째 해에는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아 주요 세금혜택이 실현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례 (4). 유한합자회사가 주거용 임대 부동산을 취득, 소유,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제안자료에서는 과세 가능한 첫 6년간 \$2,000,000의 총수입과 \$10,000,000의 총공제가 발생되어 \$8,000,000의 순손실이 예측된다. 총공제 중 감가상각과 이자가 \$7,000,000, 다른 공제가 \$3,000,000로 추정된다. 대리인은 모든 감가상각과 이자공제가 허용가능하고 다른 공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결론짓는다. 대리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주요 세금 이익이 실현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6) 의견의 기술. 대리인은 제안자료가 정확히 그리고 공정하게 절세수단에 대한 의견의 성격과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증하여야 한다.

(b) 다른 의견에 대한 의존

(1)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주요 세금 문제의 일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i) IRS의 상당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타 주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성 있는 결과에 대한 의견과 대리인의 의견과 같은 방식으로 배부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주요 세금혜택이 실현될 것 같은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유능한 대리인이 제공할 경우; 그리고
- (ii) 대리인은 다른 의견서와 제안자료를 검토한 후본 섹션의 (a) 조항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앞서 언급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주요 세금혜택이 실현될 것 같은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장기간 고용되지 않은 대리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로 하여 종합평가를 제공한 대리인이 제시한 종합 평가가 문면으로 보아 부정확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주요 세금 문제의 일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예측과 추정. 제안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리인의 고객이 아닌 잠재적 투자자에게 배부되어 있는 절세수단제안의 세금결과에 있어, 이와 관련된

어 있거나 이에 근거를 둔 예측과 추정에 관련된 대리인은 다른 의견에 의존하기를 원하는 대리인이 본 섹션의 (a) 조항의 기준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리인에 의하여 합치하지 못하였고 (b)(1)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때 주요 세금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른 대리인의 의견에 의존할 수 있다. 대리인의 보고서에서는 여타 의견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제시된 중요한 세금 문제를 밝혀야 하며 그러한 각각의 문제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본 섹션의 (a) 조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c) 정의.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 (1) “대리인”은 §10.3(e)에 기술된 자를 포함한다.
- (2) 본 섹션에서 사용된 용어인, “절세수단”은 다음의 두 가지중 하나의 속성을 가진 연방소득세나 소비세 목적을 위한 중요하고 의도된 특징을 가진 투자이다: (i) 다른 소득원에서 발생한 일정 연도의 소득을 축소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실현되는 투자로 인한 소득초과에 대한 공제 또는 (ii) 다른 소득원에서 발생한 일정 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쇄시키기 위해 당해연도에 실현되는 투자로 인한 소득에 귀속되는 세금 부과액보다 초과하는 채권. 이 용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방 채권 연금 가족 신탁 [그러나 직접적인 대리인 - 고객 관계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신탁상품은 제외된다]; 적절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스톡옵션 구조조정에 따라 발행된 유가증권 만약 유일한 세금혜택이 백분율 감모상각일 경우, 광물개발벤처 그리고 어느 연도에도 일정 연도의 투자소득에 귀속되는 세금에 비해 공제가 초과될 것 같지 않다라고 예상되는 경우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수단의 특징을 가지기 위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각각의 경우의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에 좌우된다. 투자가 절세수단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제안자료에 기술된 특징에 상당한 가중치가 주어진다.
- (3) “절세수단 의견”은 이 용어가 본 섹션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연방세금 측면에서 본 절세수단에 관한 대리인의 조언으로 제안자료에 있거나 언급되어 있을 수 있고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언급될 수 있으며 또한 자문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한 고객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시될 수도 있다. 이 용어는 대리인에 의해 또는 대리인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제안자료의 세금 측면 또는 세금 위험 부분을 포함하며 별도의 의견 서신이 발송되었는지와 제안자료나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대리인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 예측나 추정이 투자의 연방세금 측면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예측되고 또 본 조항의 첫 조문의 기타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절세수단 의견이다. 그

러나 이 용어는 대리인의 이름이나 대리인이 세금 측면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제안자료 내용이나 또는 판매촉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오직 제안자료의 제안자 부분 또는 검토 부분에 대한 자문제공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본 섹션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중요한” 세금 문제는:

- (i) 일정 연도에 절세수단 투자를 함으로써 소득을 초과하는 수입을 초과한 공제를 제공하여함으로 인한 다른 근소득원들로부터 연방세금 소득수입으로부터의 절세를 받도록 상당한 공헌을 하는 절세수단과 관련된 모든 연방 수입 소득세나 초과 세금소비세 문제; 또는 일정 연도의 절세수단 투자에 따른 세금을 초과하는 부채납세의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세채권;
 - (ii)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상황(가치하락 감가상각이나 투자조세신용 채권 초과세(recapture)탈환, 장기 자본증진소득 처리 방법의 가능성 또는 절세수단 투자의 판매나 기타 다른 방식에 따른 처분 후 현금 흐름을 초과한 과세대상가능한 수입소득의 실감현 절세방법 투자의 판매 또는 다른 처분)에 상당한 영향(이롭든 불리하든)을 미끼칠 수 있는었던 절세수단과 관련된 여타 연방소득세나 소비세 문제; 그리고
 - (iii) IRS가 절세수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절세수단 투자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처벌, 세금의 추가 또는 이자 과세청구금액의 잠재적 적용 가능성. 어느 것이 제재인지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안자료가 배부될 때 적용되는 정보를 기반근거로 하여 대리인이 선의로 아래 결정하여야 한질 것이다.
- (d) 자문 위원회. 세무대리과장은 대리인이 §10.33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한 세무대리과장에게 자문하도록 하기 위해의 경우 IRS에서의 대리행위 권한을 지닌 자 중 최소한 5명을 선임하여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 위원회는 세무대리과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아래 세무대리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33 조항의 증언된 위반과 관련하여 추천을 검토하고 건의한다.

[49 FR 6722, Feb. 23, 1984; 49 FR 7116, Feb. 27, 1984, as amended at 59 FR 31527, June 20, 1994]

§ 10.34 세금환급 견해와 관련된 자문과 환급서류 작성 또는 서명에 적용되는 기준.

(a) 실행 기준

- (1)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 견해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적절하게 IRS에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단순히 기재된 그 내용만으로(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 수공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견해가 환급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리인은 준비자로서 작성자로서 환급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대리인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환급으로 견해를 선택하도록 고객에게 권고하지 않을 수 있거나 환급으로 견해를 선택한 환급금의 그 금액만큼을 준비할 수 있다.
 - (i) 그 견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대리인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 (ii) 그 견해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대리인이 적절하게 견해를 공개함으로써 시킴과 1986년 내국세법 섹션 6662에 있는 정확성-관련 처벌을 피할 모든 기회와 적절한 공개의 요건을 에 대하여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
- (2) 처벌 가능성 통지. 환급에 대하여 신청으로 견해를 선택하도록 고객에게 권고하거나 또는 준비작성자로서 환급 서류들을 준비작성하거나 서명하는 대리인은 통지, 되거나 준비작성, 되거나 보고신고 된 견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있는 처벌에 대해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또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할 경우 부여되는 처벌 회피 모든 기회와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정한 공개의 필요사항요건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하여야한다. 본 (a)(2)항은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 (3)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 환급신청으로 견해를 선택하라고 고객에게 권고하거나 또는 준비작성자로서 환급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의 확인 없이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대리인에게 제공되거나 사실상 알려진 정보의 연관성을 감춰진 뜻을 무시하여서는 안되며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완전하다고 보여지면 합리적인 질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4) 정의.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 (i) 현실적인 가능성. 세법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잘 알려진 분석을 통해 이 그러한 사람으

로 하여금 독립적인 신뢰성 단순히 기재된 그 내용만으로도 수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략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 그 견해는 독립적인 단순히 기재된 그 내용만으로도 수궁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 중요한상당한 규모의 억제된 축소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인 의 진술에 관한 26 CFR 1.66624 (d)(3)(iii)에 있는 권한이나 그 후속제 기술된 권한이나, 또는 후임의 모든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환급서류가 감사를 받지않기 때문이거나 그 문제가 감사 대상으로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IRS에 의하여 신청이 조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납세자의 환급이 감사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ii) 사소하다. 명백히 부적절하다면 부적정한 견해는 사소한 것이다.

- (b) 징계의 기준. 대리인은 §10.52에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섹션에 대한 의도적이고 무모한 위반행위나, 총체적인 무능력에 기인한 결과에 의해서만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서브파트 C -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 10.50 자격 박탈 또는 정지 권한

31 U.S.C. 330(b)의 규정에 따라 재무장관은 통지를 하고 변론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리인을 IRS에서의 대리행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무능력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대리인, 이 파트의 규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대리인 또는 사기 행위를 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을 현혹하거나 위협하는 대리인에 대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57 FR 14095, Sept. 9, 1992; FR 31528, June 20, 1994]

§ 10.51 불명예스러운 행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서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받을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행위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미합중국내국세법에 따른 형법 위반 또는 부정직이나 신의의 위배에 관련되는 위반의 유죄확정.
- (b) 어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무부나 재무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연방세금문제에 평결을 내리도록 권한이 주어진 조세법원을 상대로 계류되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정확하거나 현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현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개입하는 것. 증언이나 연방세금환급서류, 재무제표, 등록신청서, 보증서, 선언서 또는 서면이나 구두로 하는 기타 서류나 진술서에 포함된 사실이나 기타 내용이 "정보"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 (c) 본 파트 §10.30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수임활동, 수임을 획득하기 위해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을 속일 목적으로 그릇된 또는 현혹하는 대리행위의 행

- 사, 그리고 대리인이 IRS나 IRS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특별한 심사나 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암시하는 행위.
- (d) 미합중국 내국세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연방세금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연방세금 또는 연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개입하는 행위, 연방세금 또는 연방세금의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고의로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제의하는 행위 또는 연방세금 또는 연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을 감추는 행위.
 - (e) 고객으로부터 세금이나 기타 미합중국에 대한 채무의 납부를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횡령하거나 적정하고 신속하게 송금하지 않는 행위.
 - (f) 위협, 그릇된 비난, 강박 또는 강제를 행사하는 행위, 특별히 부추길 수 있을 만한 것을 제공하거나 혜택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선물, 호의 또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IRS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공무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 하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제의 또는 동의하는 행위.
 - (g) 주, 사유지, 구역, 연방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 연방 하부기관에 게 부여된 정당하게 구성된 권한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로서의 자격박탈이나 정지
 - (h) 자격정지자, 박탈자, 부적격자를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기간 동안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조력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해 자격을 박탈당한 자와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관련된 자격사업무를 하기 위해 협업관계를 행하는 것은 본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 (i) 저속한 언어의 사용, 거짓인 것을 알면서 거짓된 비난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모욕적인 행위 및 악의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문건을 배부하거나 발행하는 행위.
 - (j)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현혹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또는 총체적인 무능으로 인하여 그릇된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나 연방세법에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 무능한 의견을 제공하는 양태. 본 조항에 기술된 그릇된 의견에는 다음의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사실 또는 법에 대해 고의적으로 하는 허위 진술, 현행 법률상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견해에 대한 확인, 불법 또는 사기로 알려진 행위에 대한 자문이나 조력 제공,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의 은폐 또는 세금 의견 또는 제안자료에 있는 중요한 사실이 그릇되거나 현혹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무모한 행위는 어떤 상황 하에서 대리인이 꼭 기울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 기준을 지극히 벗어난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터무니 없는 누락 또는 실

수이다. 행위의 양태는 대리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또는 총체적 무지로 인하여 행동했는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이다. 총체적 무능에는 총체적인 무관심, 어떤 상황 하에서 행해진 총체적인 부적절한 준비, 그리고 고객에 대한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을 반영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5, Aug. 19, 1970, 42 FR 38353, July 28, 1977; 44 FR 4946, Jan. 24, 1979; 49 FR 6723, Feb. 23, 1984; 57 FR 41095, Sept. 9, 1992; 59 FR 31528, June 20, 1994]

§ 10.52 규정 위반

다음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인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해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을 받을 수 있다.

- (a) 본 파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 (b) (§10.51(j)의 의미 범위 내에서) 무모하게 또는 총체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본 파트의 §10.33 또는 §10.34를 위반하는 경우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9 FR 6724, Feb. 23, 1984; 57 FR 41095, Sept. 9, 1992; 59 FR 31528, June 20, 1994]

§ 10.5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에 관한 정보의 접수

IRS의 공무원이나 고용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가 본 파트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정보를 접수했을 때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보고서나 사본을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IRS의 세무대리과장,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 Sept. 9, 1992]

§ 10.54 소송절차의 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가 IRS에서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의 조항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은 그러한 자를 견책하거나 자격박탈 또는 정지를 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세무대리과장이 서명한 후 세무대리과장의 사무소에 제출하면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이 소송절차는 고의적인 경우나 시간, 소송절차의 성격, 공공의 이익이 허용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실이나 행위를 제소된 피고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피고가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증명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가 부여될 때까지는 본 섹션의 규정상 개시되지 않는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57 FR 41095m Sept. 9, 1992]

§ 10.55 조정협의

- (a) 일반적으로. 세무대리과장은 피고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정지를 하기 위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와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협의의 결과가 당사자가 피고인 소송절차와 관련한 약속인 경우 그 약속을 소송절차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의사록에 기록할 수 있다.
- (b) 자격반납 또는 자발적 자격정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 또는 등록보험계리사는 자격박탈 또는 정지 소송절차의 개시나 종결을 피할 목적으로 IRS에서의 대리행위 정지를 승낙할 수 있으며 등록대리인의 경우 자신의 자격반납을 제의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의받은 등록대리인의 자격반납을 수용하거나 제의받은 승낙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보험계리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 amended at 35 FR 13206, Aug. 19, 1970; 57 FR 41095, Sept. 9, 1992]

§ 10.56 소장의 내용

- (a) 협의. 소장에는 소송절차의 근거를 구성하는 명백하고 간단한 주장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협의를 명백하게 통지할 경우 그 소장은 완전하다고 간주된다.
- (b) 답변 요구. 소장 또는 소장에 첨부된 별도의 문건에 피고가 언제까지, 어느 장소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통지하여야 하되 그 날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피고가 요구대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결정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선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3, July 28, 1977; 57 FR 41095, Sept. 2, 1992]

§ 10.57 소장과 기타 서류의 송달

- (a) 소장. 소장이나 그 사본은 다음에 기술된 배달증명 우편 또는 1종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남겨 놓는 방법 또는 피고가 동의한 방법.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피고나 그를 대리한 자가 서명한 반환우체국수령증은 송달증빙이 된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수령을 하지 않아 배달되지 않은 채 반송되는 경우 소장을 피고가 등록한 주소나 세무대리과장이 알고 있는 최종 주소로 피고에게 1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완전한 송달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나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피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남겨 놓는 방법으로 송달이 되는 경우, 송달 방법을 명시한 송달을 한 자에 의한 반송 증명이 그러한 송달의 증빙이 된다.
- (b) 소장 이외의 문서 송달. 소장 이외의 문서 송달은 본 섹션의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세무대리과장이 아는 최근 주소로 1종 우편으로 피고에게 서류를 발송하거나 법원에 등록된 피고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1종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에게 송달될 수 있다. 그러한 우편발송은 완전한 송달을 구성한다. 통지서는 피고 또는 법원에 등록된 당사자의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전보로써 송달될 수 있다.

- (c) 서류 제출. 자격박탈이나 정지에 대한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허용되어 있으나 제출 장소가 본 서브파트나 규정, 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워싱턴 D. C. 20220 재무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1 FR 13992, Nov. 2, 1966; 42 FR 38354, July 28, 1977]

§ 10.58 답변

- (a) 제출. 피고는 답변 제출시한 연기신청 후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가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소장이나 소송절차 개시 통지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세무대리과장에게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b) 내용. 답변서에는 답변의 근거를 구성하는 사실이 진술되어 있어야 하고 피고 자신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소장에 기술된 중요한 주장을 부인하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장에 있는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특별한 답변 사항을 확고히 진술하여야 한다.
- (c) 소장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서 부인하지 않은 소장의 모든 주장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입증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공판에서 그 주장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피고에게 보낸 통지서에 기록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가 그 기일을 연장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에 있는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공판의 포기로 간주되며 행정판사는 공판이나 추가 절차 없이 결석결정을 내릴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59 보충 혐의

피고가 답변서에서 오류에 의해서 또는 불성실하게 소장에 있는 중요한 사실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나 피고가 자격박탈이나 정지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고의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일 때에 세무대리과장은 이에 대해 피고에게 보충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충 혐의에 대해 피고에게 적정하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건에 대한 기타 혐의와 함께 그러한 보충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60 답변서에 대한 회신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드시 회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에서 제기한 새로운 문제는 거부되는 것으로 간주되나 세무대리과장은 자신의 재량이나 행정판사의 요청으로 회신을 할 수도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1 증거; 불일치; 소장의 변경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과 소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증거 사이에 상위한 점이 있을 경우 행정판사는 증거와 일치되도록 소장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단,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실도 모른 채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대방에게 변경된 소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을 대비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행정판사는 그렇게 변경된 소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2 동의와 요청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에게 동의(動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3 대리 출석

피고나 지명된 피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할 필요가 없는 법률고문이나 다른 대리인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변호사나 IRS의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

§ 10.64 행정판사

- (a) 임명. 5 U.S.C. 3105 (1966)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의 자격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소장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행정판사의 권한. 여러 권한 중, 행정판사는 자신에게 할당되거나 위탁되는 자격박탈 또는 정지에 대한 소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1) 서약 또는 확약을 집행한다.
 - (2) 동의와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행정판사의 재량에 의해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공판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그 과정과 집행을 조정한다.
 - (4) 진행 규칙을 채택하고 소송절차를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때때로 그것을 변경한다.
 - (5) 증거 제출에 대해 결정하고 관련된 증거물을 접수하며 증인을 심문한다.
 - (6) 증언조서를 접수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 (7)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접수하여 심사한다.

- (8)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 문제의 해결이나 단순화를 위한 조정협의를 개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9)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행동을 행사하거나 조치를 취한다.
- (10) 1심 결정을 내린다.

[31 FR 10773, Aug. 13m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3, 38354, July 28, 1977]

§ 10.65 공판

- (a) 일반적으로, §10.54에 의하여 행정판사는 대리인의 자격박탈이나 정지를 청구하는 소장에 대한 공판을 주재한다. 공판은 속기로 기록하여 옮겨 쓰고 증인의 증언은 서약이나 확약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공판은 5. U.S.C. 556에 규정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10.76(g) 규정에 따라 요청된 소송절차상의 공판은 새로이 행해져야 한다.
- (b) 불출석. 공판 통지서가 적절하게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어느 일방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판사는 궐석으로 불참자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88354, July 28, 1977; 59 FR 31528, June 20, 1994]

§ 10.66 증거

- (a) 일반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등록대리인의 자격박탈이나 중지를 청구하는 소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일반 법정에서는 통용되는 증거규칙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판사는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반복적인 증거는 제외시킨다.
- (b) 증언조서. 10.90의 규정에 따라 행한 증인의 증언조서는 인정될 수 있다.
- (c) 문서의 입증. IRS와 세무대리과장 사무소의 공문서, 기록, 서류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진본 확인 없이도 증거로서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문서,

기록, 서류는 IRS나 재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에 의해 증명되거나 확인된 사본에 의해 입증될 수도 있다.

- (d) 증거물. 문서, 기록 또는 서류가 증거물로서 증빙에 사용되는 경우 행정판사는 자신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의해 증거물의 철회를 허락할 수도 있다.
- (e) 이의. 입증에 대한 이의는 간단한 형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진술하여야 하고 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한 기록에는 그에 대한 변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이의에 대한 결정은 기록의 일부분이 된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6, Aug. 19, 1970;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7 증언조서

공판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언조서는 행정판사의 서면승인으로 세무대리과장이나 피고 또는 그들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증언조서는 다른 상대방에게 10일 이상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일반적인 목적의 증인서약을 집행하도록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나 내국세 분야에서 증인서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IRS의 공무원 또는 직원 앞에서 구두 또는 서면 심문으로 심문조서를 행한다. 그 통지서에는 증인의 이름과 증언조서를 행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0일 통지의 조건은 쌍방에 의해 문서로 포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언조서는 쌍방 간에 서로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당사자에게 행해질 수 있다. 증언조서가 문서심문으로 행해지는 경우 반대심문은 서면심문으로 행해진다. 그러한 서면심문서 사본은 통지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서면반대심문서의 사본을 증언심문이 행해지는 날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대신하여 증언심문을 하는 측은 행정판사에게 증언심문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증언심문서 보고에 필요한 비용은 심문조서를 행하고자 하는 측의 부담으로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8 전사

공판이 정부 계약자에 의해 속기로 보고되는 경우 정부와 계약자 간에 정한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전사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공청회가 IRS의 일반 직원에 의해 속기로 보고되는 경우 무료로 또는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 후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공판에서 또는 증언조서를 행할 때 제출되는 증거물의 사본은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 후 제공될 수 있다(Sec. 501, Pub. L. 82-137, 65 Stat. 290(31 U.S.C. 483a)).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69 자의적인 사실확인과 결론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어느 일방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판사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쌍방에게 자의적인 사실 확인과 결론,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70 행정판사의 결정

행정판사는 공판이 종료되고 쌍방이 적정한 시일 내에 제출한 자의적인 결정과 결론이 접수된 후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에는 (a) 사실, 법률, 기록에 제시되어 있는 심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결론은 물론 그러한 사실 확인과 결론의 사유나 근거가 있는 진술서, (b) 자격박탈, 정지, 견책 또는 소장 각하 명령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판사는 세무대리과장에게 결정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피고나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재무장관으로의 항소나 재무장관의 동의에 의한 결정 검토가 없는 경우 행정판사의 결정은 더 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행정판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후 재무장관 결정이 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71 재무장관으로의 항고

행정판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일방은 재무장관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그 항고서를 2부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서에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그 불복에 대한 근거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고서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되면 세무대리과장은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항고서나 그 사본 접수 후 30일 내에 상대방은 답변 개요를 2부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답변 개요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되면, 세무대리과장은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항고서와 답변 개요를 제출한 후 세무대리과장은 모든 기록을 재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72 재무장관 결정

행정판사의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심사에 대해 재무장관은 기관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장관은 기록 또는 그 기록에 그 문제의 제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심사한다. 세무대리과장은 재무장관의 결정 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38354, July 28, 1977]

§ 10.73 자격박탈 또는 정지의 효과 등록카드의 반환

피고에 대한 최종 명령이 자격박탈인 경우 피고는 §10.75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과장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한 또는 허락될 때까지는 최종명령이 내려진 후 IRS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피고에 대한 최종 명령이 자격정지인 경우 피고는 정지기간 중 IRS에서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등록대리인이 자격박탈이나 정지가 되면 당사자는 자격박탈의 경우 취소를 하기 위하여 또는 중지 기간 동안 압류를 위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등록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 10.74 자격박탈 또는 정지의 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대리인을 자격박탈 또는 정지시키는 최종명령서가 발급되면 세무대리과장은 IRS의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 연방 정부의 관련 부처에 그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로 허가해 준 주의 적정한 기관에게 자격이 박탈되거나 중지된 자를 세무대리과장이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10.75 자격복권 청원

세무대리과장은 IRS에서 대리행위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자로부터 자격이 박탈된 지 5년이 경과된 후 자격복권 청원이 있을 경우 수락할 수 있다. 향후 청원인이 본 파트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할 것 같지 않다거나 그러한 복권 부여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세무대리과장이 확신하지 않는 한 복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35 FR 13206, Aug. 19, 1970]

§ 10.76 형사상 유죄결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신속 정지

- (a) 적용되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은대리인이 본 섹션의 (b)조항에서와 같이 기술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정지시키기 위해 본 섹션에 따라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b) 적용되는 자. 본 섹션에 근거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소장이 송달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면허증이 §10.51(g)에 기술된 허가관청, 법원, 대행기관, 단체 또는 위원회에 의한 소송으로 (면허세 미납부는 포함되지 않음) 자격정지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 (2) U.S.C. 제목 26에 규정된 범죄, 또는 U.S.C. 제목 18에 규정된 사기나 배임의 중죄에 의해 유죄결정을 받은 경우.
- (c) 소송절차의 개시.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세무대리과장이 서명한후

세무대리과장의 사무소에 제출하고 §10.57(a)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면 본 섹션에 근거한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그 소장에는 소송절차의 근거를 구성하는 주장이 명료하고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 소장 또는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에는 피고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장소와 기간;
 - (2) 요구한 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쥘석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 (3) 피고가 소장의 내용에 대해 말하기 위해 세무대리과장과의 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답변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 (4) 피고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일의 종료 즉시 또는 조정협의를 요청된 경우 조정협의 후 즉시 정지될 수 있다는 것
- (d) 답변서. 본 섹션에 기술된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세무대리과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한 소장이 송달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섹션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0.58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기일 내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조정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만 세무대리과장과의 조정협의를 가질 권리가 있다. 조정 요청이 답변서에 없거나 답변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조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세무대리과장은 답변서의 마감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그 피고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e) 조정. 세무대리과장 또는 그 피위임자는 본 섹션에 기술된 조정을 주재한다. 조정은 세무대리과장이 선정한 장소와 시간에 개최되나 피고가 이른 일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과장에게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가 경과한 후 14일 내에서는 안 된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를 대신하여 조정에 출석할 수 있다. 조정이 끝난 후 피고가 본 섹션의 (b)항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즉시 또는 피고가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조정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세무대리과장은 피고를 IRS에서의 대리행위로부터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 (f) 정지 기간. 본 섹션에 따른 자격정지는 서면정지통지서가 발급된 날짜에 개시된다. 대리인의 자격정지는 다음 일자보다 이른 시점까지 유효하다.
- (1) 세무대리과장은 대리인이 본 섹션의 (b)조항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면 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또는
 - (2) 본 섹션 (g)조항에서 언급되어 있고 §10.54에 근거하여 개시되는 소송절차에서 행정판사나 재무장관은 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g) §10.54에 근거하여 개시되는 소송절차. 본 §10.76에 근거하여 세무대리과장이 대리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경우 대리인은 세무대리과장에게 §10.54에 근거한 소장을 발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서는 대리인의 자격정지가 개시된 후 2년 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무대리과장은 이 청구서를 수취한 후 30일 내에 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된 소장을 발급해야 한다.

서브파트 D - 감정사의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 10.77 자격박탈 권한; 자격박탈의 효과

- (a) 자격을 박탈할 권한. 31 U.S.C. 330을 개정하는 1984, 98 Stat. 695의 섹션 156의 규정에 따라 재무장관은 적법하게 통지를 하고 공판의 기회를 부여한 후 개정된(26 U.S.C. 6701(a)) 1954년 내국세 코드 섹션 6701(a)에 따라 1984. 7. 18 이후 형을 선고 받은 감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b) 박탈의 효과. 감정사가 31 U.S.C. 330과 본 서브파트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 (1) 해당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서는 재무부나 IRS에서의 행정소송절차에서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 (2) 해당 감정사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증거나 증언을 제출할 수 없다. (b)(1)항은 자격박탈 효력발생일 후 해당 감정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만 적용될 뿐 효력발생일 또는 그 전에 작성된 감정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b)(1)항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증거력 인정에서 제외되는 감정서는 그 감정에서 납세자의 선의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 (b)(2)조항은 어떤 증언이나 증거가 자격박탈 효력발생일 보다 앞서 작성된 감정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박탈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그러한 증언이나 증거의 제출에 적용된다.

§ 10.78 소송절차의 개시

- (a) 일반적으로. 세무대리과장이 26 U.S.C. 6701(a)에 근거하여 감정사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었음을 통지 받거나 혹은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은 그러한 자를 견책하거나 소장을 제출하여 해당 감정사의 자격박탈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자격박탈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가 감정사를 상대로 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과장은 형을 선고

받은 감정사와 그 형에 대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

- (b) 자진 탈퇴. 자격박탈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종결을 피하기 위해 감정사는 자격박탈에 동의할 수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제안을 받은 동의서에 따라 감정사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 10.79 소장의 내용

- (a) 혐의. 감정사의 자격박탈을 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소송절차의 근거를 구성하는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개정된(26 U.S.C. 6701(a)) 1954년 내국세 코드 섹션 6701(a)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미 선고된 형에 대해 언급하고 소송절차의 개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경우 소장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 (b) 답변 요구. 소장 또는 소장에 첨부된 별도의 문건에 피고가 언제까지, 어느 장소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통지하여야 하되 그 날짜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피고가 요구대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궤석결정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선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10.80 소장과 기타 서류의 송달

- (a) 소장. 소장이나 그 사본은 다음에 기술된 배달증명 우편 또는 1종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남겨 놓는 방법 또는 피고가 동의한 방법.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피고나 그를 대리한 자가 서명한 반환우체국수령증은 송달증빙이 된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수령을 하지 않아 배달되지 않은 채 반송되는 경우 소장을 피고가 등록한 주소나 세무대리과장이 알고 있는 최종 주소로 피고에게 1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완전한 송달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나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피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남겨 놓는 방법으로 송달이 되는 경우, 송달 방법을 명시한 송달을 한 자에 의한 반송 증명이 그러한 송달의 증빙이 된다.

- (b) 소장 이외의 문서 송달. 소장 이외의 문서 송달은 본 섹션의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세무대리과장이 아는 최근 주소로 1종 우편으로 피고에게 서류를 발송하거나 법원에 등록된 피고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1종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그러한 우편발송은 완전한 송달을 구성한다. 통지서는 피고 또는 법원에 등록된 당사자의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전보로써 송달될 수 있다.
- (c) 서류 제출. 본 서브파트의 규정에 따른 자격박탈과 연관 또는 규정이나 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거나 허용이 되어 있을 경우 워싱턴 D. C. 20224 국무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10.81 답변서

- (a) 제출. 피고는 답변 제출시한 연기신청 후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가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소장이나 소송절차 개시 통지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세무대리과장에게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b) 내용. 답변서에는 답변의 근거를 구성하는 사실이 진술되어 있어야 하고 피고 자신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소장에 기술된 중요한 주장을 부인하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장에 있는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 (c) 고발장 상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서 부인하지 않은 소장의 모든 주장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입증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공판에서 그 주장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피고에게 보낸 통지서에 기록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가 그 기일을 연장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에 있는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공판의 포기로 간주되며 행정판사는 공판이나 추가 절차 없이 결석결정을 내릴 수 있다.

§ 10.82 보충 혐의

피고가 답변서에서 오류에 의해서 또는 불성실하게 소장에 있는 중요한 사실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나 피고가 자격박탈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고의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일 때에 세무대리과장은 이에 대해 피고에게 보충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충 혐의에 대해 피고에게 적정하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건에 대한 기타 혐의와 함께 그러한 보충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83 답변서에 대한 회신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드시 회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에서 제기한 새로운 문제는 거부되는 것으로 간주되나 세무대리과장은 자신의 재량이나 행정판사의 요청으로 회신을 할 수도 있다.

§ 10.84 증거 불일치 소장의 변경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과 소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증거 사이에 상위한 점이 있을 경우 행정판사는 증거와 일치되도록 소장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단,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실도 모른 채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대방에게 변경된 소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을 대비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하고 행정판사는 그렇게 변경된 소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

§ 10.85 동의와 요청

세무대리과장이나 행정판사에게 동의(動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 10.86 대리 출석

피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법률고문이나 다른 대리인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과장은 변호사나 IRS의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

§ 10.87 행정판사

- (a) 임명. 행정판사는 5 U.S.C. 3105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판사는 감정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소장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행정판사의 권한. 여러 권한 중, 행정판사는 자신에게 할당되거나 위탁되는 자격박탈에 대한 소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1) 서약 또는 확약을 집행한다.
 - (2) 동의와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행정판사의 재량에 의해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공판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그 과정과 집행을 조정한다.
 - (4) 진행 규칙을 채택하고 소송절차를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때때로 그것을 변경한다.
 - (5) 증거 제출에 대해 결정하고 관련된 증거물을 접수하며 증인을 심문한다.
 - (6) 증언조서를 접수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 (7)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접수하여 심사한다.
 - (8)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 문제의 해결이나 단순화를 위한 조정협의를 개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9)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행동을 행사하거나 조치를 취한다.
 - (10) 1심 결정을 내린다.

§ 10.88 공판

- (a) 일반적으로. 행정판사는 감정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소장에 대한 공청회

를 주재한다. 공판은 속기로 기록하여 옮겨 쓰고 증인의 증언은 서약이나 확약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공판은 5. U.S.C. 556에 규정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b) 불출석. 공판 통지서가 적절하게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어느 일방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판사는 결석으로 불참자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1 FR 10773, Aug. 13, 1966, as amended at 42 FR 88354, July 28, 1977; 59 FR 31528, June 20, 1994]

§ 10.89 증거

- (a) 일반적으로. 감정사의 자격박탈을 청구하는 소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일반 법정에서는 통용되는 증거규칙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판사는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반복적인 증거는 제외시킨다.
- (b) 증언조서. §10.90의 규정에 따라 행한 증인의 증언조서는 인정될 수 있다.
- (c) 문서의 입증. IRS와 재무부의 공문서, 기록, 서류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진본 확인 없이도 증거로서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문서, 기록, 서류는 IRS나 재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에 의해 증명되거나 확인된 사본에 의해 입증될 수도 있다.
- (d) 증거물. 문서, 기록 또는 서류가 증거물로서 증빙에 사용되는 경우 행정판사는 자신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의해 증거물의 철회를 허락할 수도 있다.
- (e) 이의. 입증에 대한 이의는 간단한 형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진술하여야 하고 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한 기록에는 그에 대한 변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이의에 대한 결정은 기록의 일부분이 된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10.90 증언조서

공판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언조서는 행정판사의 서면승인으로 세무대리과장이나 피고 또는 그들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증언조서는 다른 상

대방에게 10일 이상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일반적인 목적의 증인서약을 집행하도록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공무원이나 내국세 분야에서 증인서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IRS의 공무원 또는 직원 앞에서 구두 또는 서면 심문으로 심문조서를 행한다. 그 통지서에는 증인의 이름과 증언조서를 행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0일 통지의 조건은 쌍방에 의해 문서로 포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언조서는 쌍방 간에 서로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당사자에게 행해질 수 있다. 증언조서가 문서심문으로 행해지는 경우 반대심문은 서면심문으로 행해진다. 그러한 서면심문서 사본은 통지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서면반대심문서의 사본을 증언심문이 행해지는 날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대신하여 증언심문을 하는 측은 행정판사에게 증언심문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증언심문서 보고에 필요한 비용은 심문조서를 행하고자 하는 측의 부담으로 한다.

§ 10.91 전사

공판이 정부 계약자에 의해 속기로 보고되는 경우 정부와 계약자 간에 정한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전사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공청회가 IRS의 일반 직원에 의해 속기로 보고되는 경우 무료로 또는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 후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공판에서 또는 증언조서를 행할 때 제출되는 증거물의 사본은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 후 제공될 수 있다(Sec. 501, Pub. L. 82-137, 65 Stat. 290(31 U.S.C. 483a)).

§ 10.92 자의적인 사실확인과 결론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어느 일방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판사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쌍방에게 자의적인 사실확인과 결론,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0.93 행정판사의 결정

행정판사는 공판이 종료되고 쌍방이 적정한 시일 내에 제출한 자의적인 결정과 결론이 접수된 후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에는 (a) 사실, 법률, 기록에 제시되어 있는 심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결론은 물론 그러한 사실 확인과 결론의 사유나 근거가 있는 진술서, (b) 자격박탈 또는 소장 각하 명령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판사는 세무대리과장에게 결정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피고나 법원에 기록된 그의 변호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재무장관으로의 항소나 재무장관의 동의에 의한 결정 검토가 없는 경우 행정판사의 결정은 더 이상의 소송절차 없이 행정판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후 재무장관 결정이 된다.

§ 10.94 재무장관으로의 항고

행정판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일방은 재무장관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피고가 항고를 하는 경우 그 항고서를 2부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서에는 행정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그 불복에 대한 근거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고서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되면 세무대리과장은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항고서나 그 사본 접수 후 30일 내에 상대방은 답변개요를 2부 작성하여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답변개요가 세무대리과장에게 제출되면 세무대리과장은 피고에게 그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항고서와 답변 개요를 제출한 후 세무대리과장은 모든 기록을 재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 10.95 재무장관 결정

행정판사의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심사에 대해 재무장관은 기관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함에 있어 재무장관은 기록 또는 쌍방이 그 기록에서 언급한 부분을 심사한다. 세무대리과장은 재무장관의 결정 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10.96 최종 명령

감정사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최종명령서가 발급되면 세무대리과장은 IRS의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과 연방 정부의 관련 부처에 그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 10.97 자격복권 청원

세무대리과장은 자격이 박탈된 지 5년이 경과된 후 자격이 박탈된 감정사의 자격복권 청원을 수락할 수 있다. 향후 청원인이 26 U.S.C. 6701 (a)의 규정에 반하여 행동할 것 같지 않다거나 그러한 복권 부여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세무대리과장이 확신하지 않는 한 복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서브파트 E - 총 칙

§ 10.98 기록

- (a) 자료공개. 대리행위를 하도록 등록된 자의 명부, 대리행위의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당한 자의 명부 및 자격을 박탈당한 모든 감정사의 명부가 세무대리과장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른 기록도 IRS와 재무부의 공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
- (b) 징계절차. 관련된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세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합의가 미리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인이 자신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의 공판이 공개되고 그 자료와 관계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은 수락될 수 있다.

§ 10.99 유보

§ 10.100 경과 규정

본 개정 규정의 효력발생일 전에 개시되었으나 종료되지 않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대리인에 대한 자격박탈 또는 정지를 위한 소송절차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의 효력발생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근거하여 본 파트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소송절차는 그 효력발생일 이후에 개시될 수 있다.

[50 FR 42014, Oct. 17, 1985]

§ 10.101 특별 명령

재무장관은 본 파트의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직인] 진 E.헨슨
재무부, 법률고문장

韓國租稅研究所 研究委員 名單

職 位	姓 名	略 歷
所 長	林 淳	韓國稅務士會 會長・經營博
研究委員	李 澤	漢陽大 教授・經營博・稅務士
研究委員	高 愚	檀國大 教授・經博・稅務士
研究委員	具 承	國會議員・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宋 璿	稅務士
研究委員	徐 璿	韓國稅務士會 副會長・稅務士
研究委員	郭 光	韓國稅務士會 研究理事・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金 泰	西江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金 光	江原大 教授・經營博
研究委員	金 光	亞洲大 教授・會計博
研究委員	金 東	서울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金 完	서울市立大 教授・法博・稅務士
研究委員	南 相	서울大 教授・經營博
研究委員	柳 漢	高麗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朴 宰	成均館大 教授・行政博
研究委員	徐 熙	江南大 教授・經營博
研究委員	宋 雙	서울市立大 教授・法博・稅務士
研究委員	安 昌	江南大 教授・法博
研究委員	玉 武	梨花女大 教授・法博
研究委員	尹 建	延世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李 萬	高麗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李 哲	漢陽大 教授・法博
研究委員	田 雄	檀國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全 春	가톨릭大 教授・經營博
研究委員	崔 洗	韓國外國語大 教授・經博
研究委員	崔 明	慶熙大 教授・法博
研究委員	丘 秉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權 寧	稅務士
研究委員	權 海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金 桂	稅務士
研究委員	金 冕	稅務士
研究委員	金 英	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金 在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金 鍾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盧 泰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明 燭	稅務士・法博
研究委員	朴 炅	稅務士・圓光大 教授・法博
研究委員	白 永	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吳 文	稅務士
研究委員	吳 有	稅務士・經博
研究委員	李 承	稅務士
研究委員	李 賢	稅務士
研究委員	張 珩	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鄭 良	稅務士・經營博
研究委員	鄭 永	稅務士
研究委員	鄭 殷	稅務士
研究委員	黃 泳	稅務士・經營博

■ 研究叢書案內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⑥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7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中 東 雲 外 1988. 10

8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9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10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11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12 租稅制裁法制의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13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14 納稅者の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15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閔 煥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12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 3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 12

㉑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 3

㉒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 3

㉓ 申告納付稅制의 評價와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徐 熙 烈 1998. 3

㉔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改善方向

高 承 禧 1999. 3

㉕ 企業合併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9. 3

㉖ 聯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과 政策課題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0. 3

㉗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0. 3

■ 研究叢書案内

[28] 프랑스 租稅節次法 研究

安 昌 浦 2001. 3

[29] 稅效果會計論 研究

高 承 禧 2001. 3

[30] 오스트리아 稅務士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3
李 鍾 永

[31] 리스會計와 리스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1. 3

[32] 派生商品關聯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玉 武 錫 2001. 4

[33] 推計課稅方法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4

[34] 附加價値稅 改編方案 研究

安 昌 浦 2002. 3

35 營業權(企業價值)의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2. 3

36 負擔金 관련 行政審判代理業務의
擔當主體에 관한 研究

金 相 憲 2002. 3

37 企業年金의 會計와 稅務

高 承 禧 2002. 3

38 不動産 相关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3. 3

39 綠色申告 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研究

稅務士制度改善推進委員會 2003. 3

綠色申告制度研究委員會

40 電子商去來時代に 對應한 課稅體系整備와 稅務서비스 改善

李 在 奎 2003. 3

皇甫 烈

41 稅務서비스 市場開放에 대한 稅務代理業界의 對應

高 俊 誠 2003. 3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⑥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⑦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⑧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⑨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⑩ 獨逸稅務士法

崔 俊 璿 1996. 3

李 承 文

⑪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俊 1997. 2

⑫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 研究調查資料案內

[13] 獨逸法人稅法

金 光 洙 1999. 2

[14]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金 裕 燦 外 2003. 3

調 查 報 告 書
第14輯(2003. 3)

獨逸・日本・美國 稅務士關係法令集

2003年 3月 23日 印刷

2003年 3月 26日 發行

譯 者 金 裕 燦 外

發行人 林 香 淳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 : 1988年 11月 11日(바 1184)

〈非賣品〉